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92-01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 10

주관 연구기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연 구 기 관 명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이 광 남

연 구 원 : 오정한, 김민주, 정진호, 박광호, 김정태,
박정아, 윤동한, 김봉화, 남희수, 정영태,
김병수, 김창민, 표성현, 이상문, 김종화

요약문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위판장은 산지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어획물의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지로 신선한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이나
 - 국내 생산량의 감소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180개소의 위판장은 공급거점으로 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판장은 시설의 노후화, 내부위생 및 품질유지 시설의 미흡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유지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최근 급변하는 산지 수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WTO·FTA 확대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위판장의 운영실태 조사를 거쳐 수산물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의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의 도출임을 고려하여, 국내 수산물 산지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지위판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유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산지유통과 관련하여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을 분석하였으며, 산지위판장의 중장기 위판율을 추정하였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도출하였음

-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유통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다음으로 개별적인 연구주제인 산지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 위판율 전망을 계량분석하였으며,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조사를 위해 문헌 및 자문을 통한 자료 조사를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기존 문헌 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였음
-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수산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아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 및 조사 방법,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였음

2.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가. 산지시장 환경의 변화

- 수산물 산지시장의 여건변화를 크게 생산구조, 유통구조, 무역구조, 소매 및 소비구조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생산구조의 변화로는 어장축소와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정체와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시행, 고유가에 따른 어업생산 비용 증가 등이 있음
- 유통구조의 변화는 강제상장제 폐지에 따른 계통판매량의 감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따른 유통시스템의 변화,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 등이 있음
- 무역구조의 변화로는 WTO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를 살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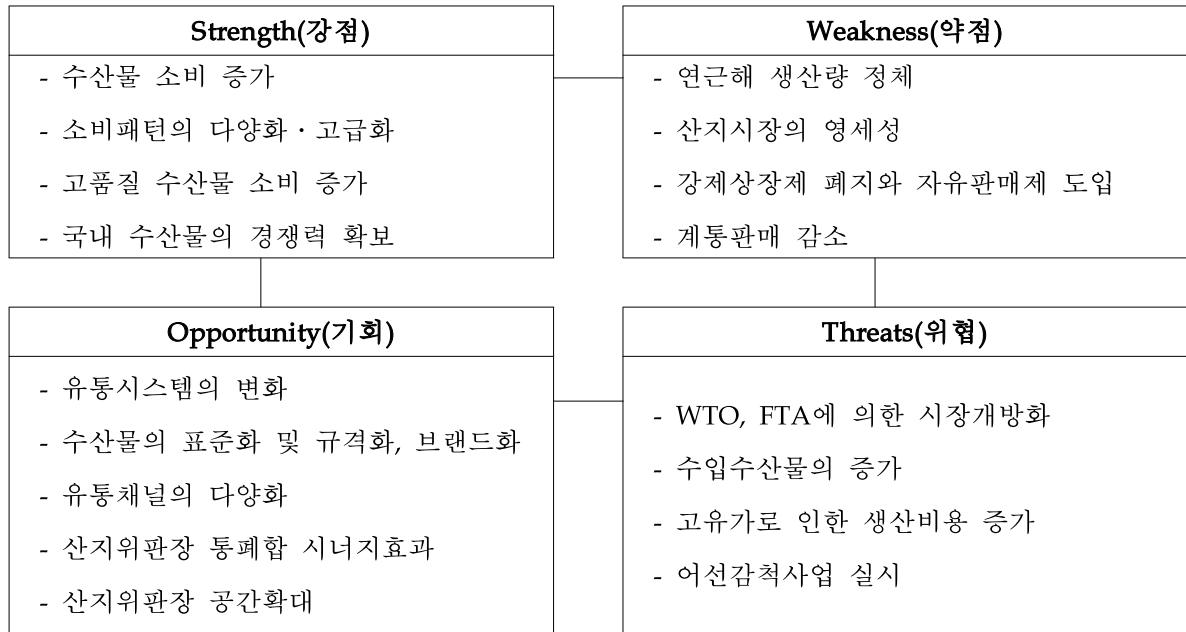
- 소매 및 소비구조의 변화로는 대형마트 등의 대형소매업체의 매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웰빙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른 수산물소비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표 1> 수산물 산지시장 여건변화 분석

여건변화	주요내용	세부내용
생산구조	연근해수산물 생산량정체	○ '96년 1,624천톤 → '05년 1,097천톤 → '06년 1,109천톤 → '07년 1,152천톤 - '96년 대비 '07년 생산량 29%감소
	연근해어선감척	○ 연안 : 6,357척 감척 - '94년 43,520 → '07년 59,527(↑36.8%) ○ 근해 : 1,967척 감척 - '95년 6,567 → '07년 3,573(↓45.6%)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용증가	○ 어업비용 중 연료비 비중 - 근해(25.1%), 연해(21.5%), 양식(7.7%)
유통구조	강제상장제폐지와 계통출하감소	○ 수산물생산량 10% 계통출하 감소 - '97년 62.3 → '07년 50.2% ○ 연근해생산량 4.2% 계통출하 감소 - '97년 84.7% → '07년 80.5% ○ 양식생산량 7.3% 계통출하 감소 - '97년 32.3% → '07년 25.0%
	유통시스템의 변화	※ 유통환경 및 유통시스템변화
	물류비용 상승	○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인상 - 최근 15~30%까지 상승
무역구조	무역구조	○수산물수입량 '00년 749천톤 → '07년 1,392천톤 - '00년 대비 '07년 수입량 86% 증가
소매 및 소비구조	소매구조	○대형소매업체(대형마트) 매출규모 증가 - '03년 19.7조원 → '07년 28.4조원(↑44%)
	소비구조	○수산물소비량(1인 연간) '00년 30.7kg → '07 41.2kg - '00년 대비 '07년 소비량 34% 증가

나. SWOT 분석을 통한 전망

-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 변화의 전망을 SWOT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음



<그림 1> 수산물 산지유통 SWOT 분석

3. 수산물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가. 개념정리

- 2008. 2. 4에 개정된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2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수협중앙회의 수협중앙회 경제사업규정 공판사업요령 제1장 제3조 2에 의하면 ‘농안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수산물을 수집·집하하는 시설인 집하장 중 별도로 정하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공판장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공판장 이외의 사업장을 경매식집하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위판장의 기준이 모호하여 위판장과 공판장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판장 실태조사에 앞서 용어의 정리 및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음. 일선수협이 개설하는 산지시장이 위판장이며, 공판장은 농안법상의 법적기준을 갖춘 시설임
 - 일반적으로 위판장과 공판장의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규모와 개설방법, 농안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위판장은 농안법을 준용하는 것이지 적용받는 것이 아님

나. 실태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08년 5월에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도지사가 수산물 위판장을 지정함에 따라 위판장지정고시에 지정된 위판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함
- 위판장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위판장은 전국 180개소로, 지역별로는 인천 6개소, 강원 30개소, 충남 15개소, 전북 2개소, 전남 35개소, 경북 22개소, 경남52개소, 울산 2개소, 부산 6개소, 제주 8개소임
- 실태조사 설문지는 전국 산지위판장 180개소로 협조공문과 함께 일괄 우편발송 하였으며, 설문지 발송 후 산지위판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면담 등을 통해 조사함
- 전체 180개소 산지위판장 중 방문한 산지위판장은 169개소이며, 회수한 설문지는 168개임
 - 섬지역은 시간상의 문제로 방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 실태조사 결과분석

- 회수된 실태조사지의 결과를 설문지 문항별로 분류하였음
 - 취급부류 및 경매방식, 위판장 규모, 구성원, 위판실적,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설치

여부, 위생기준, 장비보유현황, 이용어선현황, 수집분배방법, 인프라시설구축현황 등으로 분류함

- 또한 지역별 위판장 현황 정리와 함께 위판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함
-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위판장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강제상장제 폐지로 인한 위판량 감소와 위판장 경영의 어려움,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위판장의 경영악화, 중도매인의 신규모집 및 젊은 인력 양성 필요 등임

4.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사례 조사

가. 사례분석

- 일본에서 수산물 산지시장이란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공급거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어업협동조합(또는 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나 민간업체에 의해 개설 가능함
- 산지시장은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고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 관련대책을 종합하여 발표하였으며, 산지시장 개선안의 핵심사항은 시장통합 이외의 산지시장 경영 개선 방침도 병행하였다는 점임
- 통합된 산지시장의 목표상으로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의 3개 유형을 제안하고 거래규모, 배치, 시설 등을 설정하였음
- 관련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내 산지시장의 통합 실적은 소수에 머무는 실정으로, 여전히 영세한 산지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 일본의 산지시장 사례분석 결과

구분	내용
정의	-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 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 를 시행하는 공급거점
운영	- 어업협동조합, 민간업체에 의해 개설 가능
어협의 경영위기 극복대책	- 어업협동조합의 합병 - 경영개혁 및 사업개혁 - 업무집행 및 관리운영체제의 강화
정부의 산지시장 기능강화 관련대책	- 시장통합 이외의 산지시장 경영 개선 방침도 병행 - 통합된 산지시장의 목표상으로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 종유통형의 3개 유형을 제안

나. 한·일간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일본과 한국 모두 산지시장의 여건변화는 유사하며, 거래규모 축소, 소비변화, 유통주체가 주도권 변경, 산지시장 영세성(산지시장 기능 미발휘 발생) 등임
- 일본의 산지시장 통합정책으로 인해 통합에 이른 사례는 '98(985개소)→'07(약 800개소)로 비교적 얼마 되지 않으며, 목표년도 '10년까지 500개소로 통합할 계획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의 어려움이 상존하므로 정부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일본 현지 조사결과 산지시장의 통합은 가격보장 정책이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산지수산물시장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방침이 마련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둘째, 산지시장 기능 강화방침이 시범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설정비 우선(국지적·단편적), 셋째, 통폐합 불안감이 기대치보다도 높아 산지시장의 기능 재편 추진 한계 등임
- 우리나라의 산지시장통합 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범실시를 거친 뒤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걸맞는 투자, 리스크 부담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새로운 산지유통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생산구조의 재편, 어업경영 안정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즉, 산지시장 기능 강화는 통합 이외에도 유통기능의 변화에 수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지유통, 판매사업분야의 공동출하와 직판체제 정비, 지역의 산지 하역 및 출하장 정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하는 와중에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도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것임

<표 3>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산지 위판장 통폐합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급격한 국내외 수산 유통 변화 고려 필요 - 완도수협을 비롯한 일부 수협 부실에 따른 통폐합 고려 - 시도지사 시정·고시된 위판장 중 10개소 이상 문제점 나타남 - 연간 5백톤 미만 44개소(문제 위판장 29개소 제외)	- 180개소중 위판장 없음(7), 폐쇄 및 매각(3)
추진기본방향	- 중앙정부가 마련한 방침을 바탕으로 협의회 설치(지자체, 개설자, 생산자단체, 도매업자, 매수인, 소매단체 등) 및 동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통폐합계획 확정, 동 시장에 대한 시설 정비 및 마케팅능력 향상 등의 사업 보조	- 일본사례 참조 - 시도지사 폐지 가능
통합의 기본방향	- 통합에 따른 물량 확보, 경영합리화, 전문인력 양성, 신규 구성원 참여 촉진 및 거래·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위생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적극적 도입 등	- 일본사례 참조
목표기간 및 개소	-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결정보다도 지자체 의견 수렴 결정 필요	-
사전적 시범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추진	- 시범실시를 한 이후,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맞는 투자, 리스크 부담 검토를 거쳐 결정 ※ 실패 최소화 필요	- 일본실패 참조
추진 전제조건	- 통합된 산지 위판장에서 적정어가 보장 가능해야 성공	-
사업추진 효과	- WTO·FTA 확대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대응 가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지위판장 활성화 도모 가능 - 21세기형 산지위판장 기능정립 가능 - 거대 구매자(대형마트) 상대 어업인 가격결정력 확보	-

5.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지위판장의 지정에 대해서는 '08년 5월에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도지사가 수산물 위판장을 지정하도

- 록 되어 있으나, 위판장의 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형편임
- 수산업에 대한 산지위판장의 법적 지위 부재는 위판장의 지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기준 없이 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산지위판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산지위판장의 위판 물량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는 '97년 9월부터 시행된 임의상장제 이후 위판 물량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결과, 위판장 규모의 협소 및 시설 부재가 위판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됨

나. 위판장 활성화 세부실천 계획(안)

1) 세부실천계획

- 첫째, 위판장의 시설 현대화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산지위판장의 정비를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산지위판장의 위생강화, 산지위판장의 시설 현대화 등의 세부실천 계획 제시
- 둘째, 산지위판장의 운영 효율화방안으로 거점 산지위판장을 중심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 수립, 어장어항사업과의 연계, 위판장 통·폐합 등의 세부실천 계획 제시
- 셋째, 중도매인에 대한 지위강화방안으로 중도매인의 역할 확대, 중도매인 교육강화 등의 세부실천 계획 제시
- 넷째, 산지위판장의 다기능화방안으로, 산지위판장의 다기능, 산지위판장의 공간적 활용, 산지위판장의 유형화 등의 세부실천 계획 제시

2) 유형별 산지위판장 세부실천계획

- 산지위판장의 유형을 광역 유통형, 지역거점형, 도서지역형으로 구분하였음
- 광역 유통형은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 수산물 고차가공시설 구축, 수산물 보관 및 유통채널 개발, 산지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 등의 세부실천계획 수립
- 지역거점형은 위판기능 강화, 수산물 저차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인터넷을 통한 유통채널 활성화 등의 세부실천계획 수립
- 도서지역형은 물량장 기능 강화, 지역 어업인 편의 시설 확충 등의 세부실천계획 수립

<표 4> 산지위판장 유형별 현황

구분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도서지역형
특징	대규모 소비지시장을 지향, 고차가공업체등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시장브랜드화 도입 및 개발	위판장 기능의 강화, 기본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관광 등을 통한 부수적인 가치창출	유통 보다는 물량장의 기능을 강화, 어업인들의 편의도모
출하권 규모	전국 또는 대규모 소비지시장	지역내 (시·도 단위)	권역내(군 단위)
유통	소비지시장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직거래 및 다양한 루트 개발 필요	일정부분 소비지 시장으로 유통되지만 지역내 가공업체 등을 통해 부가가치창출	수집을 통한 다량 물량확보로 인한 육지로의 유통비용 절감

3) 지역별 · 유형별 산지위판장 분류

- 전국 180개소 위판장에 대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광역유통형 위판장과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거점형 위판장, 그리고 특수지역인 도서지역에 대한 도서지역형 위판장, 마지막으로 위판장 통·폐합을 고려할 수 있는 위판장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였음

<표 5> 전국 위판장 지역별·유형별 분류 및 통·폐합(안)

(단위 : 개소)

지역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도서지역형	통폐합고려	계
인천	1	5	-	-	6
강원	1	20	-	9	30
충남	1	12	-	2	15
전북	1	1	-	-	2
전남	1	20	3	11	35
경북	1	9	4	8	22
경남	1	43	2	6	52
울산	-	2	-	-	2
부산	1	6	-	1	8
제주	1	4	2	1	8
합계	9	122	11	38	180

○ 그 결과,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전국에 9개소, 지역거점형 위판장은 122개소, 도서지역형은 11개소, 통폐합을 고려 해야 할 위판장은 3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전국 광역유통형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인천	인천	선어	29,282	7,508	19,624	광역유통형
강원	주문진항	선어,활어,패류	12,509	9,327	28,290	광역유통형
충남	보령활어	활어	2,854	13,713	43,044	광역유통형
전북	해망동	선어	5,897	12,639	34,318	광역유통형
전남	여수선어	선어,건어	78,362	40,063	72,167	광역유통형
경북	구룡포활어	선어,활어	17,250	2,744	7,656	광역유통형
경남	통영본소	선어	4,411	39,084	29,335	광역유통형
부산	공동어시장	선어,활어	64,257	299,000	272,857	광역유통형
제주	한림1위판	선어	3,389	18,357	71,414	광역유통형

<표 7> 전국 지역거점형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인천	옹진연안	활어	3,798	3,962	31,256	지역거점형
	인천연안	선어,활어	2,185	3,574	29,117	지역거점형
	외포	기타	4,013	2,730	4,302	지역거점형
	소래	선어,활어	4,007	2,605	22,115	지역거점형
	영흥	활어,패류	1,653	1,517	5,662	지역거점형
강원	목호항	선어,활어	3,594	11,223	22,409	지역거점형
	속초항	선어	1,257	8,789	22,044	지역거점형
	삼척항	선어,활어	1,336	6,816	11,511	지역거점형
	거진항	선어,활어	7,379	2,871	8,623	지역거점형
	남애항	선어,활어,패류	9,706	1,768	8,515	지역거점형
	대진항	선어,활어	4,390	821	6,103	지역거점형
	대포항	선어,활어	1,289	962	5,510	지역거점형
	임원항	선어	694	1,497	4,961	지역거점형
	동명항	활어	653	507	4,627	지역거점형
	아야진항	선어,활어	10,010	1,661	4,088	지역거점형
	가진항	활어	496	1,203	2,332	지역거점형
	장호항	선어,활어	1,607	1,151	1,951	지역거점형
	기사문항	선어,활어	5,091	495	1,825	지역거점형
	공현진항	활어	물량장	356	1,373	지역거점형
	오호항	활어	165	226	1,060	지역거점형
	사천진항	선어,활어,패류	545	481	1,020	지역거점형
	동산항	선어,활어	132	230	777	지역거점형
	문암1항	활어	106	140	529	지역거점형
	문암2항	활어	물량장	109	467	지역거점형
	금진항	선어,활어	1,500	20	293	지역거점형
충남	안흥	선어,활어,건어	1,488	11,553	35,700	지역거점형
	마량	선어,활어, 패류,해조	979	7,904	7,751	지역거점형
	장항	선어,건어,해조류	1,461	2,600	16,462	지역거점형
	대천항	활어,패류,건어	4,225	1,960	7,722	지역거점형
	홍원	선어,활어,패류	1,415	1,445	10,568	지역거점형
	백사장	선어,활어	917	714	7,214	지역거점형
	영목	활어	350	283	1,390	지역거점형
	몽산포	활어	420	216	1,986	지역거점형
	무창포	모두취급	643	170	1,825	지역거점형
	드르니	활어	995	164	1,579	지역거점형
	마검포	활어	물량장	102	909	지역거점형
연포	선어, 활어	756		1,527	지역거점형	
전북	비용도	활어	163	703	5,324	지역거점형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전남	목포동부	선어	2,582	21,252	69,029	지역거점형
	송도	선어,활어,기타	2,838	14,468	44,782	지역거점형
	여수건어	건어	78,362	7,800	34,840	지역거점형
	독대김	활어	125		1,077	지역거점형
	완도건어물	건어	3,980		14,363	지역거점형
	법성	선어	970	2,955	13,496	지역거점형
	목포서부	선어	4,156	2,852	6,816	지역거점형
	진도본소	해조류	1,409	2,585	2,385	지역거점형
	금일	해조류	2,529	2,344	8,478	지역거점형
	국동	패류	4,072	1,455	7,193	지역거점형
	완도활선어	선어,활어	7,177	1,394	12,554	지역거점형
	군내	활어	5,210	1,169	9,540	지역거점형
	강진활선어	선어,활어	1,162	989	9,891	지역거점형
	나로도수산물	선어,활어	2,646	935	5,777	지역거점형
	서망	선어	1,990	867	8,307	지역거점형
	녹동	선어,활어,패류	3,031		24,869	지역거점형
	사초	활어	330	193	1,938	지역거점형
	송림	활어	132	38	343	지역거점형
	계마	선어	544	21	458	지역거점형
	소안수산물	활어	378	4	300	지역거점형
경북	감포	선어	1,370	20,147	29,825	지역거점형
	후포	선어,활어	1,419	13,577	30,206	지역거점형
	죽변	선어,활어	1,054	12,886	3,290	지역거점형
	강구	선어,활어	1,359	11,332	20,204	지역거점형
	죽도	선어	1,234	11,294	36,990	지역거점형
	축산	선어	2,073	10,757	14,860	지역거점형
	원남	선어,활어	400	2,756	2,908	지역거점형
	동빈활어	활어	1,744	1,011	10,835	지역거점형
	창포	선어	43	48	268	지역거점형
경남	삼천포활어	활어	3,437	2,538	22,484	지역거점형
	서남해	활어	2,000	1,168	6,300	지역거점형
	기선권형망 마산	건어	1,980	4,353	18,298	지역거점형
	마산본소	선어	1,750	20,810	35,405	지역거점형
	고현	선어,활어	1,699	305	784	지역거점형
	단항	활어,패류	1,650	1,086	8,068	지역거점형
	용원	활어	1,584	6,724	15,012	지역거점형
	구조라	활어	1,482	185	1,075	지역거점형
기선권현망 본소	건어	1,308	16,501	70,843	지역거점형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경남	안골	선어, 활어	1,300	124	925	지역거점형
	대포	활어	1,147	238	889	지역거점형
	근해통발	활어	1,124	1,095	5,831	지역거점형
	속천	선어, 활어	1,043	535	4,112	지역거점형
	장승포	선어, 활어	985	6,201	3,860	지역거점형
	삼천포선어	선어	885	33,088	36,088	지역거점형
	사천활어	활어	713	827	4,013	지역거점형
	잠수기마산	패류	667	2,026	3,426	지역거점형
	삼천포건어	건어	654	4,451	26,144	지역거점형
	삼천포패류	패류	513	1,860	7,163	지역거점형
	잠수기통영	패류	498	835	4,022	지역거점형
	잠수기거제	패류	403	409	1,334	지역거점형
	외포	활어	398	3,722	4,824	지역거점형
	남해군활어	활어	385	2,410	18,200	지역거점형
	재첩	패류	311	168	419	지역거점형
	굴수하본소	패류	309	13,870	55,348	지역거점형
	남포항	패류	300	2,250	10,092	지역거점형
	성포	활어	283	227	1,614	지역거점형
	명개	패류	237	3,516	5,902	지역거점형
	평산	활어, 패류	227	233	1,371	지역거점형
	옥포	활어	218	123	250	지역거점형
	남해군선어	선어	206	10,841	7,838	지역거점형
	잠수기남해	패류	204	199	821	지역거점형
	노량	활어	182	2,671	14,651	지역거점형
	감암	활어, 패류	180	2,680	12,836	지역거점형
	제덕	활어	175	388	3,856	지역거점형
	원천	활어	144	65	771	지역거점형
	능포	활어	122	284	622	지역거점형
	광암	선어	120	87	330	지역거점형
	삼산	활어	100	36	285	지역거점형
하일	활어	100	311	2,243	지역거점형	
우두	활어	81	162	1,150	지역거점형	
당항	활어	60	96	301	지역거점형	
선소	활어	50			지역거점형	
울산	방어진	선어, 활어	20,696	8,271	17,724	지역거점형
	정자	활어				지역거점형
부산	자갈치	선어	2,788	31,868	38,096	지역거점형
	다대	선어, 활어, 해조	15,020	25,058	25,351	지역거점형
	부산	패류	840	8,266	11,881	지역거점형
	대변	선어	909	6,257	6,457	지역거점형
	남포동	건어	656	5,710	30,145	지역거점형
	민락	활어	8,990	527	2,134	지역거점형
제주	성산포	선어, 활어	2,402	12,322	72,022	지역거점형
	서귀포	선어	2,267	8,252	58,000	지역거점형
	모슬포	선어, 활어	3,197	6,498	14,471	지역거점형
	제주시	선어, 패류	1,755	5,288	25,236	지역거점형

<표 8> 도서지역형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전남	조도	해조류	166	845	2,449	도서지역형
	거문도	선어,활어	1,260	6,702	12,562	도서지역형
	흑산도	선어	660	1,318	14,023	도서지역형
경북	저동	선어	669	6,049	10,364	도서지역형
	현포	선어	118	287	553	도서지역형
	태하	선어	920	218	470	도서지역형
	천부	선어	313	38	139	도서지역형
경남	사랑	패류	245	117	1,210	도서지역형
	육지	활어	607	1,190	6,684	도서지역형
제주	추자	선어	330	3,480	17,000	도서지역형
	신양	선어	100			도서지역형

<표 9> 전국 통·폐합고려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강원	봉포항	선어,활어,패류	1,652			통·폐합 고려
	덕산항		658			통·폐합 고려
	우암진항					통·폐합 고려
	어달항					통·폐합 고려
	사진항					통·폐합 고려
	초곡항					통·폐합 고려
	호산항					통·폐합 고려
	초도항					통·폐합 고려
	물치항					통·폐합 고려
충남	서산건어물	선어, 활어	1,282			통·폐합 고려
	보령선어	선어,패류,건어	3,300			통·폐합 고려
전남	영광	건어	695	661	747	통·폐합 고려
	해남마른김	해조류	6,194	349	4,154	통·폐합 고려
	남면	해조류	684			통·폐합 고려
	사도					통·폐합 고려
	발포물김	해조류	990	5,404	6,143	통·폐합 고려
	송공	해조류	800	3,720	3,184	통·폐합 고려
	접도	해조류	128	9,663	13,728	통·폐합 고려
	어란물김	해조류	231	9,636	10,290	통·폐합 고려
	구암물김	해조류	497	9,119	1,130	통·폐합 고려
	회동	해조류	226	6,965	7,772	통·폐합 고려
	원포	해조류	348			통·폐합 고려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경북	장기	선어,활어	3,315	1,505	6,908	통·폐합 고려
	트롤	선어	5,134	15,483	14,551	통·폐합 고려
	구룡포잡어	선어,활어	5,428	7,024	24,172	통·폐합 고려
	선동	선어	1,465	3,662	6,012	통·폐합 고려
	대보	선어,활어	150	1,020	1,211	통·폐합 고려
	대진	활어	2,850			통·폐합 고려
	사동	활어	263			통·폐합 고려
	구산	활어	99			통·폐합 고려
경남	통영2위판	선어	1,773			통·폐합 고려
	도천동	활어,패류	990	2,440	13,098	통·폐합 고려
	견유	활어	330	790	4,907	통·폐합 고려
	맥전포		200			통·폐합 고려
	하동갈사	활어	181	133	763	통·폐합 고려
	동해	활어	198			통·폐합 고려
부산	학리	활어	132	7	57	통·폐합 고려
제주	한림2위판	선어	1,026			통·폐합 고려

-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산지위판장 시설지원시에는, 산지위판장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광역유통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9개소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임
 - 농안법 상의 공판장 시설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충남 보령의 활어 위판장에 대한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지역별 거점이 되어 주위의 위판장에 대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으로도 위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는 지역거점형 위판장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거점형 위판장들은 광역위판장과 지리적인 문제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물량 처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 및 강원지역의 위판장들에 대한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0> 산지위판장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안)

구분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개소	9	122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유형 내 우선순위	보령 활어위판장	경남지역, 강원지역

6. 산지위판장 증장기 위판을 전망

가. 분석 필요성 및 현황

- 일반해면어업에서 생산되는 연근해 어획물의 판매는 약 1996년 이후 약30년 이상 이루어지던 의무상장제 폐지 이후 자율적인 임의상장제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수산물 가격안정 및 어업인 수취가 제고, 계통출하 확대로 수산물출하자(생산어업인)에게는 어대금을 즉시지급하고, 중도매인에게는 일정기간동안 대금결제납입을 유예해 주는데 소요되는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공판장 출하촉진사업이 진행 중임
- 업종별 위판율의 현황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상위 10개 업종의 위판율 하락폭이 전체해면어업의 위판율 하락폭보다 작으며, 이유는 생산량 기준 상위 10개 업종의 대부분이 근해어업에 포함되며, 생산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가지는 계통판매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자망 및 폐·조류채취의 위판율은 하락추세를 보임
- 어종별 위판율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15개어종의 어종별 위판율은 대부분의 어종에서 위판율은 안정화를 보이며, 주요 15개어종의 위판율 감소는 전어, 송어, 붕장어, 가자미류와 같이 횡감용 생선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어종에서 위판율의 지속적 감소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됨

나. 중장기 위판율 추정

-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OLS)을 통해 종속변수인 위판율과 물량변수인 근해어업생산량 및 연안어업생산량 가격변수인 계통판매가의 관계를 도출
- 모형에서 시계열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상관이 탐지가 되어 Corchran-Orcutt procedure를 통한 자기상관문제를 교정하였으며, 최종 분석된 결과를 보면 모형에 대한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독립변수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독립변수의 계수 부호를 살펴보면 자연대수를 취한 근해어업 생산량은 양수로 나타났으며, 자연대수를 취한 연안생산량과 계통판매단가는 음수로 나타남. 이는 일반 해면어업의 위판율은 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연안어업의 생산량 증가 및 계통판매단가의 증가는 위판율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판율의 변동성 추정의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월별 근해어업생산량변화에 따른 위판율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위판율은 월별 근해어업생산량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위판율의 장기변화를 예측해보면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은 2007년 80.5%에서 5년 후 2012년 79.20%, 10년 후에는 77.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위판율과 관련하여 TAC제도의 확대와 자원회복계획으로 인한 자원량의 증가 등의 효과는 추정된 모형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의 하락추세를 약화 또는 그 영향에 따라서는 위판율의 증가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11> 위판을 추정결과

	내 용	비 고
분석배경	수산업발전기금중 '공판장출하촉진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일반해면어업의 중장기 위판율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의 객관적 도출필요	수산업발전기금운영의 평가와 관련된 회의에서 논의 (2008.4.4)
분석사용자료	1997년 ~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 ¹⁾ 이용 종속변수 : 일반해면어업위판율 독립변수 :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계통판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단위차이 및 변수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대수취함
분석모형	Corchran- Orcutt 반복절차를 이용한 자기상관효과를 교정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	
모형추정결과	위판율 = 1.1494045 + 0.0811732 lnX1 -0.0435574 lnX2 -0.0976956 lnX3 X1 = ln근해어업생산량 X2 = ln연안어업생산량 X3 = ln디스플레이된 계통판매단가	수정된 R2 = 0.704 DW = 0.625
중장기 위판율 추정 결과	-2007년 80.5% -2012년(5년후) 79.20%, -2017년(10년후) 77.58%로 하락	추정가정 -근해어업생산량은 연도 별추세식을 따름 -연안어업생산량 및 계통 판매단가는 현재와 동일
기금지원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 영향	-기금지원은 위판율 지지효과를 가짐 -TAC확대 및 수산자원회복계획확대 등의 정책은 추정된 위판율하락을 감소시키는 효과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 -기금지원효과 포함 -수산자원관리 정책효과 미포함
분석 한계점	- 예측된 독립변수의 미래값을 이용하여 중장기 위판율을 예측하므로 예측력이 떨어짐 - 독립변수인 수산업에서 생산량의 장기적 변화는 수산자원의 특성상 모형에 따른 예측 어려움 - 수산자원관리정책등 외부적 효과 반영 못함	

7.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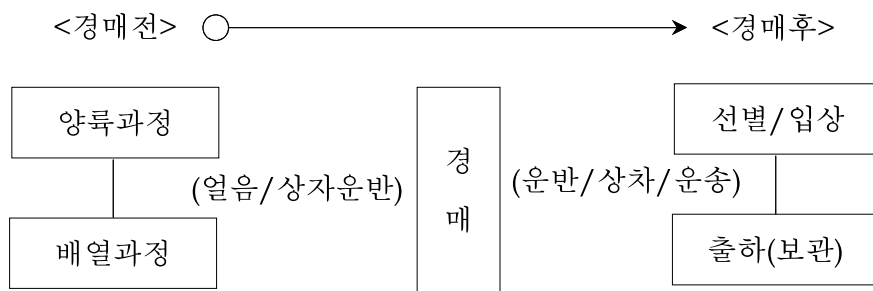
가. 수산물 유통시장 구조

○ 수산물 유통경로는 제품의 부류별 특성(선어, 패류, 건어류, 활어, 냉동 등)에 따라 다

1) 어업생산통계 월별생산량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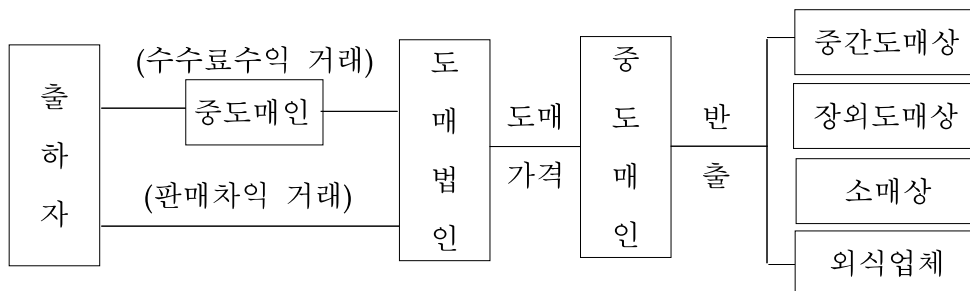
소 차이가 있으나 대분류를 하면 생산자 → 산지시장 → 소비지시장 → 소비자의 일반적 흐름으로 이루어짐

- 산지시장(출하단계) 유통경로는 생산자→산지수협→산지중도매인이라는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로 생산자는 양육과 배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협 위판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이후 비용은 산지중도매인이 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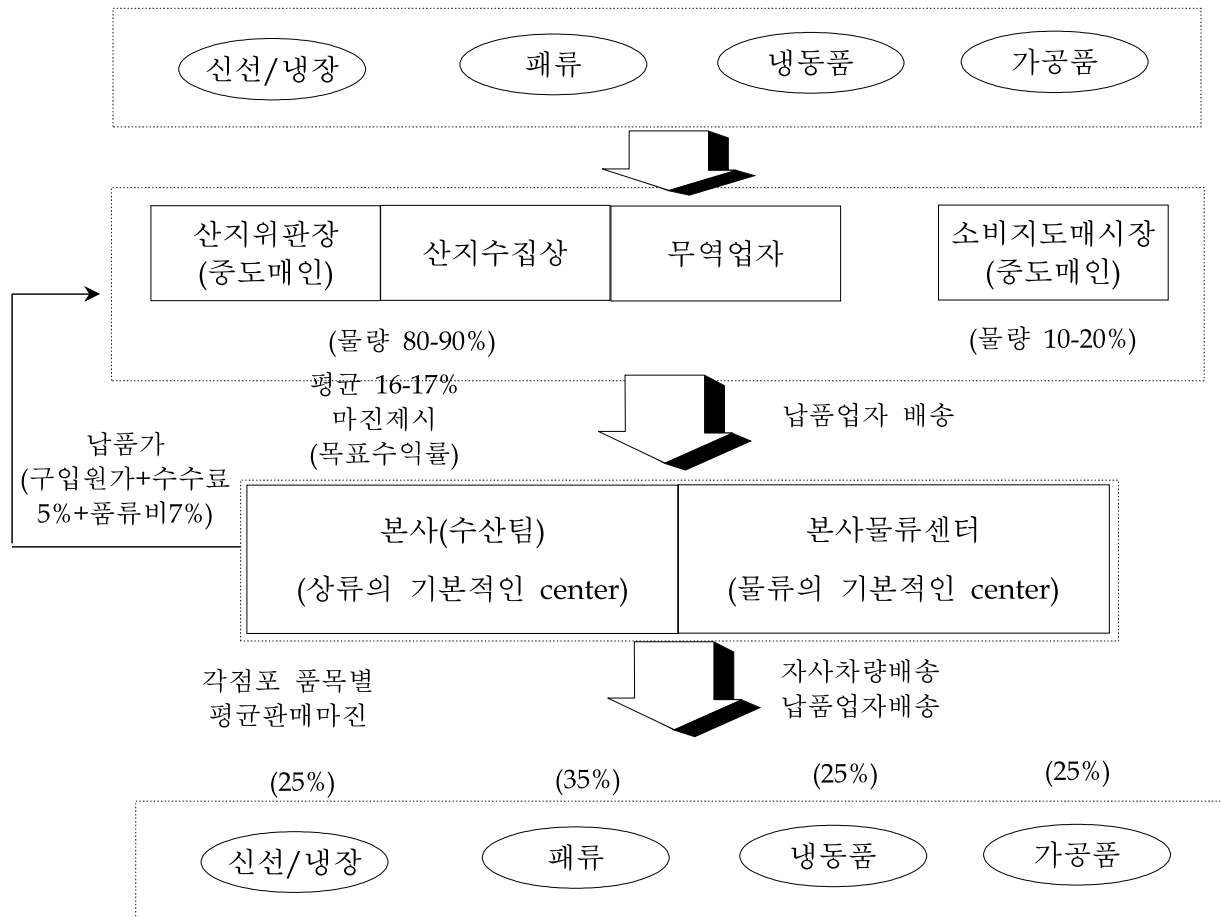
<그림 2> 산지시장(수협위판장) 유통과정

-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흐름은 산지 출하자(생산자, 산지중도매인, 출하법인, 수집상 등)들에 의한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에 위탁상장으로 시작됨
 - 일반적으로, 출하자는 도매법인에 직접 위탁상장을 시키거나 혹은 소비지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다시 2가지의 유형을 구분됨



<그림 3>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경로

- 최근 대형할인점이 늘어나면서 기존을 일반적인 유통경로상에서 중간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경로 단축시킴으로 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래단계가 단순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그림 4> 대형유통할인점(A사) 수산물 구입 및 판매 경로와 마진

나. 유통마진 분석

○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유통마진을 품종별로 선어류(갈치, 고등어 등) 및 패류(굴)가 건어류(건오징어) 및 활어류(넙치)보다 높았는데, 이는 건어류나 활어에 비해 선어류 및 패류의 유통단계 효율성 제고 혹은 단계축소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유통단계별로 보면, 소매단계에 가장 많은 유통마진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도매단계와 소매단계가 유사한 유통마진 비율을 가지면서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즉, 소매단계의 마진율이 높은 것은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부패 위험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이윤을 취하고 있기 때문

- 셋째, 유통기능별로는 유통비용이 총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2%에 비해 상업이윤이 39.9%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격 등락이 심하며 저장성이 부족하고 감모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편, 품종별 유통마진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산어가의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지에서의 물류비용을 줄여나가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지수협의 집하능력 강화(즉, 수협위판 기능 강화)와 저차가공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수협의 산지어가 조절기능을 강화가 필요함
 - 둘째, 수산물의 경우 타산업에 비해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은 점을 볼 때, 소비자에서의 유통마진을 절감함으로써 이 절감분이 생산자인 어가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면, 수산물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는 수협을 통해 직판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8. 수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가. 전자상거래 개념 및 현황

-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
- 연장선상에서 사이버쇼핑몰(cyber shopping mall,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이라고도 함)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가를 말하며,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01년 119조에서 2007년 517조 약 4배 이상의 성장을 해왔으며, 국내전자상거래의 약 90%정도는 기업간(B2B)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제 사이버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기업-소비자간(B2C)형태는 전체의 전자상거래 중 약 2%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2000년 1,010억원에서 2007년 3,930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전문몰의 거래액비율은 6.6%에서 2007년 24.6%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의 전문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좋아지며, 농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종합몰에서 전문몰로의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행동은 제품정보탐색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제품다양성, 정보제공성과 검색편리성은 초기신뢰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고객과의 거래상 고객만족은 초기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구매의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가치의 향상을 가져와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은 초기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연구 및 '농사랑' 및 'fishsale'의 사례를 통하여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대규모 포털 쇼핑몰과의 연계, 둘째, 수협 e-쇼핑과 피쉬세일의 연계 셋째, 수산물 전자상거래 포털화, 넷째,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과 쇼핑몰 연계, 다섯째, 최근 소비자의 성향 및 트렌드의 반영 등을 들 수 있음

<표 12>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효과	세부 내용
대규모 포털 쇼핑몰과의 연계	초기신뢰도 및 인지도의 상승효과	- G-마켓, 인터파크, 디엔샷 등의 인지도가 있는 대형 쇼핑몰들과의 D/B연계를 통해 입점하는 형식 등으로 인지도 향상 - 홍보 및 광고비용의 절감
수협 e-쇼핑 피쉬세일 연계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	- 소비자의 초기신뢰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관련쇼핑몰 업체의 규모, 인지도, 명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객만족을 들 수 있음 - 수협 e-쇼핑의 브랜드 인지도 + 피쉬세일의 쇼핑몰의 기능 및 일반소비자의 고객만족도 - 두 전문몰간의 연계로 인한 수산물인터넷쇼핑몰의 시너지 효과창출
수산물 전자상거래 포탈화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	- 쇼핑, 관광, 정보 등이 한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 소비자들의 이용에 편의성 제공 및 전문성 높임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과 쇼핑몰연계	제품 신뢰성증가	- 대리인을 통해 수산물의 선도, 크기, 포장과정 및 인터뷰를 통해 제품 신뢰성을 높임 - 실제고객이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의 이용경험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서비스 필요
최근 소비자의 성향 및 트렌드의 반영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	- 먹거리 건강중시풍조 및 웰빙에 관심증가 반영 (국산수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 또는 검증절차의 공개 및 청정지역이나 수산물인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균일한 배송비 적용 및 쿠폰서비스, 쇼핑몰상품권, 다양한 이벤트성 서비스

< 목 차 >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4

제2장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13

 제1절 산지시장 환경의 변화13

 제2절 SWOT 분석을 통한 전망30

제3장 수산물 산지위판장 실태 조사33

 제1절 개념정리33

 제2절 실태조사 개요38

 제3절 실태조사 결과분석48

제4장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사례 조사79

 제1절 수산물 유통79

 제2절 협동조합 경영위기와 산지유통 개선86

 제3절 산지수산물시장 개혁 방향86

 제4절 한일간 비교분석108

제5장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115

 제1절 현황 및 문제점115

 제2절 위판장 활성화 세부실천 계획(안)121

제6장 산지위판장 증장기 위판을 전망	167
제1절 분석필요성 및 현황	167
제2절 증장기 위판을 추정	177
제3절 소결	203
제7장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 조사	207
제1절 수산물 유통시장 구조	207
제2절 유통마진 분석	216
제3절 소결	223
제8장 수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235
제1절 개념 및 현황	235
제2절 사례분석	241
제3절 활성화 방안	252
제4절 소결	260
<참고 문헌>	263
< 부 록 >	265
부록1. 최근 재·개정된 수산물 산지유통 법안	265
부록2. 수산물 집하장 설치 운영 기준	271
부록3. 수산물 위판장 지정고시 내역	275
부록4. 일본 수산물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방침	285

< 표 목 차 >

<표 1-1> 당초 및 추가연구 변경내용 현황5

<표 1-2> 일본 출장 주요내용8

<표 1-3> 주요 연구내용별 조사 및 연구방법10

<표 1-4> 자문회의 주요 논의 내용11

<표 2-1>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14

<표 2-2> 연안어업 총어선척수와 감척규모16

<표 2-3> 근해어업 총어선척수와 감척규모16

<표 2-4> 국제유가 변동추이17

<표 2-5>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20

<표 2-6> 연근해수산물의 계통판매 현황21

<표 2-7> 양식수산물의 계통 판매 현황22

<표 2-8> 유통환경 및 유통시스템의 변화23

<표 2-9> 한국의 수산물 수입 추이25

<표 2-10> 소매 유통업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26

<표 2-11> 수산물 소비 현황28

<표 2-12> 수산물 산지시장 여건변화 분석29

<표 3-1> 수산업법상 위판장의 법적근거34

<표 3-2> 수협의 경매식집하장 및 시설/운영기준35

<표 3-3> 한국과 일본의 산지시장 개념비교36

<표 3-4>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37

<표 3-5>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농안법상 공판장 시설기준 준용)37

<표 3-6> 전국 위판장 지정고시 현황38

<표 3-7> 전국 위판장 개설현황39

<표 3-8> 전국 위판장 설문조사 결과47

<표 3-9> 지역별 위판장 개설현황48

<표 3-10> 취급어종별 위판장 분류49

<표 3-11> 경매방식별 위판장 분류50

<표 3-12> 대지면적별 위판장 분류50

<표 3-13> 유개 및 무개 여부별 위판장 분류51

<표 3-14> 건물년수별 위판장 분류51

<표 3-15> 건물구조별 위판장 분류52

<표 3-16> 위판장별 중도매인수52

<표 3-17> 위판물량별 위판장 분류53

<표 3-18> 위판물량 상위 30개소(2007년)54

<표 3-19> 위판금액별 위판장 분류55

<표 3-20> 위판금액 상위 30개소(2007년)56

<표 3-21> 필수시설별 위판장 분류	57
<표 3-22> 부수시설별 위판장 분류	58
<표 3-23> 위생기준별 위판장 분류	60
<표 3-24> 장비보유현황별 위판장 분류	61
<표 3-25> 이용어선 현황별 위판장 분류	62
<표 3-26> 수집방법별 위판장 분류	63
<표 3-27> 분배방법별 위판장 분류	63
<표 3-28> 소비·반출물량별 위판장 분류	63
<표 3-29> 인프라시설구축현황별 위판장 분류	64
<표 3-30> 지역별 위판장 현황	64
<표 3-31> 위판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	76
<표 3-32>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77
<표 3-33>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지원실적('04~' 08)	78
<표 4-1> 연도별 어협 통합실적(2008.09.01 현재)	88
<표 4-2> 도도부현별 어협통합실적(2008.09.01 현재)	89
<표 4-3> 일본의 어업협동조합 경영위기 극복대책	94
<표 4-4> 산지도매시장의 개설자별 거래 동향	97
<표 4-5> 에히메현 수산물 산지시장 재편정비계획(안) 개요	100
<표 4-6> 수산물산지시장의 유형별 목표상	102
<표 4-7> 수산물산지시장 통합 방침에 관련된 수산청의 보조사업	103
<표 4-8> 고치현 다노우라어항 산지시장 기능 강화 사례	104
<표 4-9> 수산물 유통비용 축소 방침 중 산지시장 관련 방침	107
<표 4-10> 일본의 산지시장 사례분석 결과	109
<표 4-11> 일본과 한국의 산지 수산물시장 정책 비교분석(1)	111
<표 4-12> 일본과 한국의 산지 수산물시장 정책 비교분석(2)	112
<표 4-13>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13
<표 5-1> 산지위판장의 법적 개념	115
<표 5-2> 공판장 시설기준	116
<표 5-3> 경매식 집하장 시설기준	117
<표 5-4> 일반해면어업 계통 및 비계통 판매량('98~' 07)	118
<표 5-5> 위판장의 규모 현황	119
<표 5-6> 산지위판장 필수시설 현황	122
<표 5-7> 산지위판장 부수시설 현황	123
<표 5-8> 위생기준별 위판장 현황	124
<표 5-9> 장비보유현황별 위판장 현황	125
<표 5-10> 산지유통의 비활성화 이유(설문결과)	125
<표 5-11> 위판금액별 위판장 현황	130
<표 5-12> 위판물량별 위판장 현황	130
<표 5-13> 일본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 따른 성과 및 사업량	134

<표 5-14> 위판물량이 없는 산지위판장 현황	135
<표 5-15> 위판장별 증도매인 수 현황	136
<표 5-16> 산지위판장 유형별 현황	145
<표 5-17> 위판장 유형화 분류 및 지원 기준	146
<표 5-18> 인천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47
<표 5-19> 강원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48
<표 5-20> 충남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49
<표 5-21> 전북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0
<표 5-22> 전남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1
<표 5-23> 경북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2
<표 5-24> 경남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4
<표 5-25> 울산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5
<표 5-26> 부산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6
<표 5-27> 제주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157
<표 5-28> 광역유통형 위판장 시설기준	158
<표 5-29> 지역거점형 시설기준	159
<표 5-30> 전국 위판장 지역별·유형별 분류 및 통·폐합(안)	160
<표 5-31> 전국 광역유통형 위판장(안)	160
<표 5-32> 전국 지역거점형 위판장(안)	161
<표 5-33> 도서지역형 위판장(안)	164
<표 5-34> 전국 통·폐합고려 위판장(안)	164
<표 5-35> 산지위판장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안)	166
<표 6-1> 공판장출하촉진사업 개념	168
<표 6-2> 공판장출하촉진사업 예산추이	169
<표 6-3> 주요업종의 생산량순위	170
<표 6-4> 상위 10개업종의 생산량 및 위판을 추이	171
<표 6-5> 상위 10개업종별 위판율	172
<표 6-6> 주요 15개 어종의 생산량순위	173
<표 6-7> 주요 15개 어종의 생산량변동 추이	174
<표 6-8> 주요 15개 어종의 위판율 변동 추이	175
<표 6-9> 주요 15개 어종의 어종별 위판율 변동 추이	176
<표 6-10> 수산물 생산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178
<표 6-11>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정	180
<표 6-12> 변수별 추세분석 결과 종합	190
<표 6-13> 모형의 적합도 검증	192
<표 6-14> 모형의 유의성 검증	193
<표 6-15> 독립변수의 계수검증	193
<표 6-16>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 검증	195
<표 6-17> Corchran-Orcutt 반복모형 최종 분석결과	195

<표 6-18> 시나리오별 위판율 변동성 추정	197
<표 6-19> 중장기 일반해면어업 위판율 변화	198
<표 6-20> 기금으로 인한 위판율의 지지와 전망	199
<표 6-21> 정부정책과 위판율과의 관계	201
<표 6-22> 위판율 추정결과 요약	205
<표 7-1> 양륙 및 배열비 노임협정가격 사례	209
<표 7-2> 산지시장 수협위판 수수료 내역	209
<표 7-3>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산물 월별 도매 및 소비자가격조사 품목	216
<표 7-4> 농수산물 유통공사 가격정보 조사방법	218
<표 7-5> 품목별 유통마진율	219
<표 7-6> 품목별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구성내역	220
<표 7-7> 품목별 유통마진의 유통기능별 구성내역	222
<표 7-8> 품목별·유통단계별 유통비용과 상업이윤내역	224
<표 8-1> 전자상거래의 장점 및 단점	236
<표 8-2> 전자상거래의 세부분류	237
<표 8-3>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	238
<표 8-4> 사이버쇼핑몰 운영형태별 거래액	238
<표 8-5> 사이버쇼핑몰 농수산물 거래액 및 순위	239
<표 8-6> 사이버쇼핑몰 농수산물 취급범위	240
<표 8-7> 농가의 전자상거래 이용현황	242
<표 8-8> 참여업체 및 어가 유형별 현황	246
<표 8-9> 참여업체 및 어가 지역별별 현황	247
<표 8-10> 피쉬세일 운영실적	247
<표 8-11> 피쉬세일 회원 구매현황	248
<표 8-12> 피쉬세일 성별 구매현황	248
<표 8-13> 피쉬세일 연령별 구매현황	249
<표 8-14> 포털사이트 검색키워드 광고 추진 현황	249
<표 8-16> 피쉬세일과 수협 e-쇼핑 특징비교	257
<표 8-17>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261

<그림 목차>

<그림 2-1>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추이14

<그림 2-2> 수입수산물 유통경로25

<그림 2-3> 수산물 산지유통 SWOT 분석30

<그림 4-1> 일본 수산물 유통80

<그림 5-1> 계통 및 비계통 판매량 추이118

<그림 6-1> 상위 10개업종 위판을 추이172

<그림 6-2> 연도별 주요어종 및 일반해면전체 비교추이174

<그림 6-3> 주요 15개 어종 위판을 추이175

<그림 6-4> 일반해면어업 월별 위판을 변동 추이185

<그림 6-5> 근해어업 월별 위판을 변동 추이185

<그림 6-6> 연안어업 월별 생산량 변동 추이186

<그림 6-7> 일반해면어업 계통판매단가 변동 추이186

<그림 6-8>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위판을 추세187

<그림 6-9> 근해어업 연도별 생산량 추세188

<그림 6-10>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비계통판매 평균단가 추세189

<그림 6-11>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계통판매단가 변동 추세189

<그림 6-12>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디스플레이트 계통판매단가 변동 추세190

<그림 6-13> 잔차와 그 예측치 산점도192

<그림 6-14> 잔차와 그 예측치 산점도196

<그림 6-15> 정부정책과 위판율과의 관계201

<그림 7-1> 산지시장(수협위판장) 유통과정208

<그림 7-2>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경로212

<그림 7-3> 대형유통할인점(A사) 수산물 구입 및 판매 경로와 마진214

<그림 7-4> 분석대상 주요 품종별 월별(2003년-2007년 평균) 생산비중 추이217

<그림 8-1> 사이버쇼핑몰 농수산물 전문몰 거래비중 추이240

<그림 8-2> 대형종합쇼핑몰과의 연계245

<그림 8-3> 농사랑의 차별화된 마케팅 현황246

<그림 8-4> 피쉬세일 매출액 및 주문건수 추이247

<그림 8-5> 전자상거래 구매결정요인 및 재구매의도25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산지 수협 위판장은 산지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어획물의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지로 신선한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임
-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감소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180개소의 산지 수협 위판장은 공급거점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판장은 시설의 노후화, 내부위생 및 품질유지 시설의 미흡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유지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최근 급변하는 산지 수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WTO·FTA 확대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위판장의 운영실태 조사, 일본의 위판장 운영 사례조사, 주요수산물 유통마진 및 위판율 추정, 전자상거래 현황 파악 등을 통하여,
-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 산지 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 위판율 전망,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수산물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의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위판장은 산지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어획물의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지로 신선한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이나
 - 국내 생산량의 감소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180개소의 위판장은 공급거점으로 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판장은 시설의 노후화, 내부위생 및 품질유지 시설의 미흡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유 지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최근 급변하는 산지 수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WTO·FTA 확대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위판장의 운영실태 조사를 거쳐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산지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위판장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안전, 웰빙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로 싼 가격보다는 안전성, 브랜드, 신선도 등 고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짐에 따라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고품질 수산물 소비의 증가가 예상됨

- 반면,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연근해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감소·정체추세에 있으며, 강제상장제의 폐지와 자유판매제의 도입으로 인해 계통판매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규모의 산지시장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압력과 관세철폐요구 등은 산지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산지시장의 역할 축소를 가속화 시키며, 국제적인 고유가현상이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 및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연근해 어선감축사업의 실시 등으로 위판량의 축소 등이 우려됨

- 하지만 수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 수산물에 있어서도 표준화 및 규격화, 브랜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수산물이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채널의 다양화에 따라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좀 더 고가의 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위판장의 경우는 대내외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모색방안이 필요한 실정이고,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등을 통하여 산지위판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기간 및 내용 변경

- 본 연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180개소/’08. 5. 고시 기준) 실태조사 대상 선정, 도서 및 연안지역에 산지위판장 분포로 인한 현장 실사조사로 인한 추가기간이 필요하고, 산지 위판장 현장 조사 후 활성화 방안 제시가 되어야 함으로, 실태조사 연장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완/검증을 통한 보고서 발간 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산지위판장 현장중심 조사(지역별/유형별/품종별 분석 포함) 후, 외국사례(일본), 활성화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이 되어야 함으로 2007. 10. 12 ~ 2008. 4. 9(6개월)에서 2007. 10. 12 ~ 2008. 10. 11(6개월 추가)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당초 연구 주요내용이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실태 조사(국내·국외),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역할 재조명, 수산물 산지유통체계 개선 및 위판장의 활성화방안 제시에서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조사, 산지 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 위판율 전망, 산지위판장과 소비자간 유통개선 방안,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추가되었음
- 또한, 당초 조사대상 위판장은 182개소로 2007년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수협유통사업부) 자료에 근거하여 현장실사조사를 하였으나, 연구기간 중에 위판장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 180개소가 되었음
 - 근거는 수산업법 제53조(’08.2.4),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2 및 3 (’08.1.25),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08.5.8), 농안법 제2조, 제19조, 제20조 (’07.7.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07.7.6)

- 관련 근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과 수협유통사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판장의 위치 및 이름과 개소수의 차이는 전국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151개소이고, 나머지 29개소는 불일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동 연구에서는 개정된 위판장 관련 근거법에 의하여 수협자료와 일치하는 151개소와 더불어 변경된 위판장수를 포함하여 현장실태조사를 근거하여 활성화방안 기초자료 활용 및 별도의 실태조사서 책자를 발간하였음

<표 1-1> 당초 및 추가연구 변경내용 현황

구분		당 초	변경
연구기간		2007. 10. 12 ~ 2008. 4. 9(6개월)	2007. 4. 10 ~ 2008. 10. 11(6개월 추가)
조사대상 위판장	개 소	182개소	180개소
	근 거	- 2007년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수협 유통사업부)	- 수산업법 제53조('08.2.4) -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2 및 3 ('08.1.25) -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 시('08.5.8) - 농안법 제2조, 제19조, 제20조 ('07.7.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07.7.6)
연구내용		-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실태 조사(국내·국외)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역할 재조명 - 수산물 산지유통체계 개선 및 위판장의 활성화방안 제시	-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실태 조사 - 외국(일본)의 수산물 산지 시장유통 사례 분석 -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조사 - 산지 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 위판율 전망 - 산지위판장과 소비자간 유통개선 방안 -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 수산물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의 발전방안 제시

나.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의 도출임을 고려하여, 국내 수산물 산지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지위판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유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산지유통과 관련하여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을 분석하였으며, 산지위판장의 중장기 위판율을 추정하였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도출하였음
-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우선 수산물 산지시장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산지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SWOT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3장에서는 산지위판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고시에서 지정한 산지위판장 180개소에 대한 생산지원 기능, 유통물류기능, 주요 출하처, 주요 취급어종, 물량, 금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일본의 산지유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 시장의 위기에 대한 어협의 대응책과 중앙정부의 산지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음
- 제5장에서는 산지위판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산지위판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6장에서는 산지위판장 위판율 추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계량분석을 통해 산지위판장 위판율을 추정하였으며, 추정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음

- 제7장에서는 선어류, 패류, 건어류로 구분하여 주요 품목들에 대해 유통구조를 조사하였고, 품목별·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하였음
- 제8장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농업 등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수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방법

- 먼저 제2장의 수산물 산지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연구방법은 첫째, 기존 보고서 및 논문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음. 둘째, 수산물 유통의 경우는 일본과 거의 유사하므로 일본 수산청(<http://www.jfa.maff.go.jp/>), 일본의 수산전문지, 현지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자료에 근거하여 접근하였음.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최근의 산지유통과 관련된 여건변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음
- 다음으로, 제3장의 산지위판장 실태조사는 '08년 5월에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지위판장 18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80개소 위판장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169개 위판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음
 -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방법은 첫째, 실태조사 위판장을 먼저 선정하였으며, 둘째, 수협위판장의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셋째, 본조사에 앞서 표본위판장을 선정한 후 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근거하에 조사표를 수정·보완하였음. 마지막으로 전체 180개소를 대상으로 위판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먼거리에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는 전화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완성하였음
- 제4장에서는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사례 조사를 위해 첫째, 일본의 전어련 및 대일본수산회 관계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동향을 파악하였고, 둘째, 일본의 수산청(<http://www.jfa.maff.go.jp/>)에서 수산물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방침(2001.3.30), 어협통폐합자료,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2007.6.8) 등의 자료를 확보하

였고, 그 이외에 일본의 (재)어가안정기금자료, 일본의 수산백서 등의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위판장 활성화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또한, 관계전문가(대학 및 KMI)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조사(2008.09.09 ~ 2008.09.12)에서는 도쿄 츠키치어시장, 오오다시장, 오사카 중앙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일본 산지시장 관련 자료입수 및 관계자면담을 하였음

<표 1-2> 일본 출장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간	2008.09.09 ~ 2008.09.12
지역	도쿄 츠키치어시장, 오오다시장, 오사카 중앙도매시장
내용	- 일본 산지시장 실태조사 - 일본 산지시장 관련 자료입수 및 관계자면담

- 제5장의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문헌조사,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일본의 관련 자료 및 현지방문조사자료에 기초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 위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제6장의 산지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위판율 추정에서 분석방법은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STATA 9.1 및 SPSS 12.0통계 패키지를 이용. 회귀분석(OLS)을 통해 위판율과 물량변수, 가격변수와의 관계를 도출하고 위판율의 미래변화를 예측하였음
- 물량관련 변수로는 국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중 근해어업의 생산량과 연안어업의 생산량을 가격변수는 계통판매단가를 사용하였으며, 함수관계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일반해면어업의 월별 생산고 실적을 사용함
- 분석에는 종속변수를 위판율, 독립변수로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계통판매단가를 사용하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위판율과 독립변수들간의 단위의 차이문제 및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대수모형(선형-대수)을 사용하였음

- Corchran-Orcutt 반복절차를 통하여 자기상관효과를 교정하였으며, 자료의 특성상 월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계절성 부분으로 인하여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동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함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에 대한 계통판매 위판율에 미치는 요인을 근해어업의 생산량, 연안어업의 생산량,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에 대한 계통판매 단위당 가격(이하 계통판매단가라 함)과의 관계로 가정하여 분석함
- 제7장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관련 문헌조사(연구보고서, 논문, 학회발표자료 등)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KMI 관측센터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 주요 품종별 유통경로 및 마진을 파악하였음. 셋째, 수협 및 관계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거쳐 분석하였음
- 제8장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첫째, 기존 보고서 및 논문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둘째, 수산물 Fishsale 및 수협관계자 자문을 통해 수산물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농사랑(<http://www.agrilove.co.kr/>)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확보와 넷째,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 이상의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유통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다음으로 개별적인 연구 주제인 산지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 위판율 전망을 계량분석하였으며,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조사를 위해 문헌 및 자문을 통한 자료 조사를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기존 문헌 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였음

<표 1-3> 주요 연구내용별 조사 및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조사방법	비고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기존 관련 문헌조사 - 일본의 관련자료 조사 - 최근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문헌 및 자문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 실태조사 위판장 대상 선정 - 위판장 실태조사표 작성 및 수정 - 예비조사(표본위판장)를 통한 수정보완 - 본조사 실시(도서지역 제외)	직접 방문조사
외국(일본)의 수산물 산지 시장유통 사례 분석	- 일본의 전어련 및 대일본수산회 관계자 전화조사 - 일본 수산청(http://www.jfa.maff.go.jp/) 조사 - 관계전문가(대학 및 KMI) 의견수렴 - 일본 현지 조사	문헌 및 방문조사
수산물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의 발전방안 제시	- 지금까지 연구자료 활용 - 농특위 발표자료('07.3) - 관계전문가 자문	기존자료활용
산지 위판장 위판율 및 중장기 위판율 전망	- 분석모형 개발 - 종속 및 독립변수 선정 및 자료정리 - OLS 및 Corchran-Orcutt 분석방법 이용 - STATA 9.1 및 SPSS 12.0통계 패키지 이용	계량분석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조사	- 기존 관련 문헌조사 - KMI 수산물관측센터 내부자료 - 수협 수산물유통 관련 관계담당자 인터뷰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 및 자문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 기존 관련 문헌조사 - 수산회 Fishsale 및 수협관계자 자문회의 - 농사랑(http://www.agrilove.co.kr/) 방문조사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문헌 및 방문조사

○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수산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고, 4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통해 자문을 받아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 및 조사 방법,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였음. 자문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4> 자문회의 주요 논의 내용

구분	일시	주요 내용
제1차 자문회의	2008. 2. 15 (금)	- 위판장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 - 조사설문지 및 조사지역에 대한 논의
제2차 자문회의	2008. 5. 16 (금)	-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논의 - 위판장별 특색에 따른 조사방안 논의 - 산지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제3차 자문회의	2008. 7. 31 (목)	- 수산물 유통환경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논의 - 위판장에서 중도매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논의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제4차 자문회의	2008. 9. 24 (수)	- 위판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논의 - 일본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논의 - 위판장 활성화 방안 논의

제2장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제1절 산지시장 환경의 변화

1. 생산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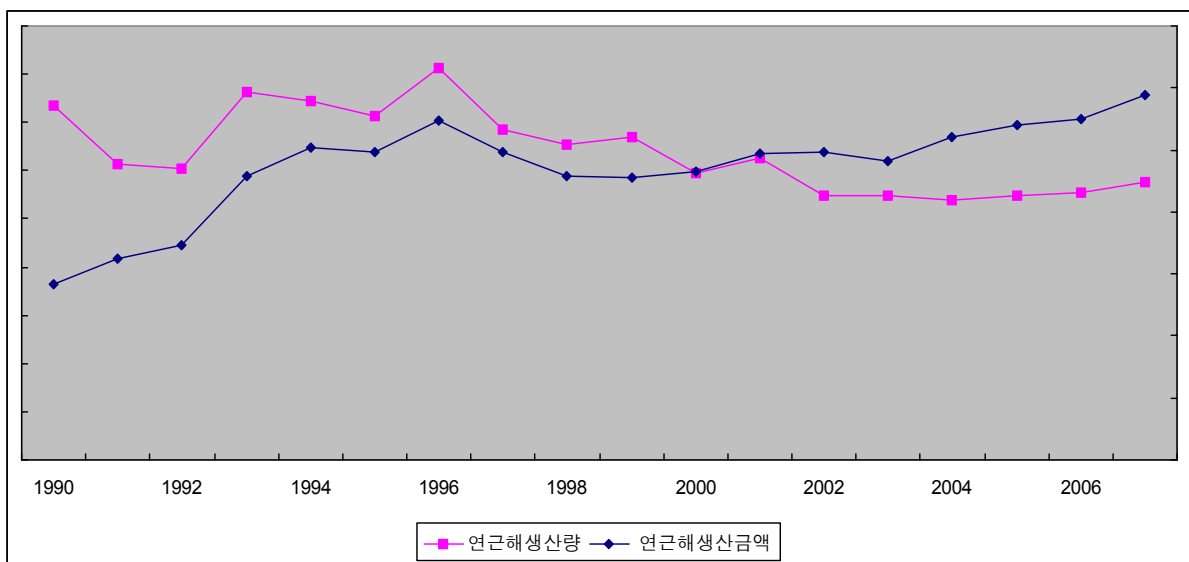
가. 연근해 생산량 변화

- 앞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어 1982년 5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 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원양어업은 사실상 어장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됨
- 이러한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이은 한·일('99), 한·중('01) 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조업수역은 협정체결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음
-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연근해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9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05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음

<표 2-1>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연 도	생산량(MT)	생산금액(천 원)
1990	1,471,810	1,416,235,667
1991	1,226,779	1,627,803,972
1992	1,206,542	1,736,647,355
1993	1,526,139	2,283,539,653
1994	1,486,357	2,520,606,111
1995	1,425,213	2,479,441,522
1996	1,623,822	2,735,079,190
1997	1,367,406	2,483,356,678
1998	1,308,336	2,293,637,349
1999	1,336,062	2,280,019,536
2000	1,189,000	2,329,483,389
2001	1,252,099	2,468,308,722
2002	1,095,812	2,487,006,174
2003	1,096,526	2,405,810,605
2004	1,076,687	2,609,717,094
2005	1,097,041	2,705,954,841
2006	1,108,815	2,751,251,398
2007	1,152,299	2,939,109,483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index.jsp>)



<그림 2-1>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추이

나. 연근해 어선감척

-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성과를 제고하며,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일반감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어업경영성과를 향상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음
- 1999년 한일어업협정, 2001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추가 감척사업이 추진되었음. 따라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감척사업은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감척사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일반감척사업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94-2007년 감척현황을 살펴보면, 연안어선은 세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안안강망, 낭장망, 해선망어업의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였음
- 또한 1999년 한일,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1999)』에 의거 국제규제감척사업이 추진되었음. 감척대상 어선에는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한 통발, 채낚기, 트롤어선 등과 중국수역에서 주로 조업한 안강망, 자망, 연승어선 등이 포함되었음
- 감척사업 결과, 연안어선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6,357척을 감척하였음. 그러나 총 어선척수는 '94년 43,520척에서 '07년 59,527척으로 36.8% 증가하였음

<표 2-2> 연안어업 총어선척수와 감척규모

구분	연안어업 어선수	감척척수	감척규모 (당해척수와의 비율, %)
1994	43,520	54	0.13
1995	44,790	111	0.25
1996	44,634	110	0.24
1997	50,073	48	0.10
1998	58,119	63	0.11
1999	60,839	0	0.00
2000	63,342	36	0.06
2001	62,976	55	0.09
2002	62,870	30	0.05
2003	62,532	16	0.03
2004	62,290	652	1.05
2005	60,892	748	1.23
2006	59,889	1,598	2.67
2007	59,527	2,836	4.79
총 감척수(94~07)		6,357	

자료: 해양수산통계연보, 농림수산물부

- 근해어업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967척을 감척하였으며, 그 결과 '95년 6,567척에서 '07년 3,573척으로 45.6% 감소하였음

<표 2-3> 근해어업 총어선척수와 감척규모

구분	근해어업 어선수	감척척수	감척규모 (당해척수와의 비율, %)
1995	6,567	6	0.10
1996	6,293	26	0.42
1997	6,345	87	1.43
1998	6,165	96	1.63
1999	5,937	700	12.29
2000	5,287	103	2.03
2001	5,014	505	10.54
2002	4,541	245	5.74
2003	4,166	56	1.42
2004	3,773	59	1.67
2005	3,687	0	0.00
2006	3,629	0	0.00
2007	3,573	84	2.48
총감척('95-'07)		1,967	

자료: 해양수산통계연보, 농림수산물부

다.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 '08년 초까지 유류가격은 배럴당 80\$ 내외로 유지되어 왔으나, 세계 각국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 휩싸이면서 유류가격이 100\$를 넘어서 140\$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유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표 2-4> 국제유가 변동추이

단위 : \$/bbl

	WTI	Brent	Dubai
2001.04	27.40	26.22	24.21
2002.04	26.22	26.13	24.57
2003.04	28.25	24.87	23.52
2004.04	36.71	33.39	31.53
2005.04	52.94	50.90	47.21
2006.04	69.55	70.51	64.22
2007.04	63.85	67.55	63.98
2008.01	92.99	92.32	87.24
2008.02	95.43	95.42	90.16
2008.03	105.64	104.22	96.81
2008.04	112.64	108.85	103.62
2008.05	125.42	122.67	119.50
2008.06	133.91	132.67	127.90
2008.07	133.36	133.60	131.31
2008.08	116.60	113.48	112.99
2008.09	103.69	98.19	96.30

자료 :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최근 고유가 현상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 강국의 수요증대, 공급기반의 약화 및 달러 약세화 등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함.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수산업계에도 그 영향을 미침
- 수산분야의 유류의존도는 여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1980년대 이후 유류 소비량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중간투입 중 유류비 비중은 26.3%에 달해 전체 77개 산업분야 중 2위(유기화학기초 산업 1위, 작물 12위) 수준(한국은행, 2000년도 산업연관표)

- '8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류소비량은 큰 폭으로 상승함
 - 어업생산량(천톤) : 2,410('81) → 2,514('00) → 2,487('03) → 2,714('05) → 3,032('06) → 3,275('07)
 - 유류소비량(천드럼) : 2,377('81) → 7,628('00) → 7,316('03) → 6,391('05) → 6,318('06) → 6,266('07)

- 이러한 유가 상승으로 업종별로 적자상태로 전환되거나, 경상이익이 감소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어선 1척 출어시 소요되는 기름값이 어획고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져 상당수의 어선이 출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출항포기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저하와 어촌지역 공동화의 가속화가 우려됨

- 업종별 영향을 분석해보면, 어업비용중 연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원양어업(35.7%), 근해어업(25.1%), 연안어업(21.5%), 양식어업(7.7%) 순으로 채산성 악화 전망됨
 - 원양어선은 어업경비중 연료비 비용이 35%이상 차지하고 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손실 대폭 확대 전망
 - 근해어업의 어업경영비중 연료비 비중은 33.0%로 증가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어업수익률은 -11.3%로 하락하여 적자전환 하였으며, 특히 연료소모가 많은 대형트롤, 쌍끌이대형기저, 기선권현망, 근해채낚기 어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됨
 - 연안어업은 어업경영비 중 연료비 비중은 '04년 19.1%에서 '06년 21.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지속시 연안어업 종사가구의 어가소득이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함
 - 어업경영비 중 유류비 비중이 '04년 8%에서 '06년 7.7%로 큰 차이가 없으나,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유가 지속시 어가소득이 불과 3.5% 감소하는 데에 그쳐, 유가상승에 의한 영향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이렇듯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수산업의 체질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유통구조의 변화

가. 강제상장제 폐지와 계통출하 감소

- 연근해 어획물의 강제상장제도의 실시 배경은 불법어획물의 유통방지로 수산자원보호와 어획물의 원활한 집하 및 분산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며 공개경매를 통한 공정거래 유도, 계획생산 유도 및 수급 안정도모로 정리할 수 있음
- 1912년도부터 약 80여 년 동안 시행된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 강제상장제도를 1994년 12월 1일부터 1단계로 수산물의 10개 품목(미역, 파래, 동죽, 고막, 활어, 도미, 넙치, 가자미, 문어, 꽃게), 또한 1996년도부터는 2단계로 패류(기타해조류 추가), 1997년도에는 3단계로 연근해 어획물의 전량을 자유판매제로 시행
- 그 동안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상장하여 판매하도록 하던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거래제도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강제상장제의 폐지와 자유판매제의 도입은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로 기존의 산지시장관료를 독점해왔던 수협의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어획물 판매의 경쟁적인 판매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어획물의 판매망이 생산자인 어민과 소비자 사이에 여러가지 유통형태가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계통판매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2-5>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연도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1992	2,142,020	1,473,613	68.8	2,339,034,146	1,582,110,205	67.6
1993	2,564,258	1,699,866	66.3	2,852,501,590	1,881,623,203	66.0
1994	2,558,483	1,622,031	63.4	3,241,172,325	2,171,905,558	67.0
1995	2,421,664	1,564,340	64.6	3,127,523,896	2,187,365,155	69.9
1996	2,498,632	1,711,074	68.5	3,378,401,459	2,404,049,786	71.2
1997	2,382,540	1,485,364	62.3	3,405,167,951	2,119,423,009	62.2
1998	2,085,566	1,372,644	65.8	3,243,952,321	2,029,591,498	62.6
1999	2,101,314	1,489,351	70.9	3,111,922,029	2,110,737,483	67.8
2000	1,842,373	1,337,756	72.6	3,013,339,340	2,131,778,937	70.7
2001	1,907,926	1,446,237	75.8	3,185,471,229	2,286,678,377	71.8
2002	1,877,331	1,338,966	71.3	3,281,523,294	2,233,559,128	68.1
2003	1,922,771	1,244,003	64.7	3,571,485,526	2,101,975,146	58.9
2004	1,994,402	1,204,486	60.4	3,826,821,646	2,287,488,486	59.8
2005	2,138,115	1,181,533	55.3	4,054,362,216	2,251,119,099	55.5
2006	2,368,089	1,239,395	52.3	4,194,420,034	2,207,640,207	52.6
2007	2,538,103	1,273,907	50.2	4,538,651,127	2,277,467,303	50.2

*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어업생산량: 연근해 및 양식생산량(내수면 및 원양 제외)

○ 1992년 68.8%였던 위판비율이 임의상장제 전환으로 1997년 위판비율은 물량기준으로 약 62.3%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1998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하여 1998년에는 65.8%, 1999년에는 70.9%, 2001년에는 75.8%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위판을 하지 않는 양식수산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 전체 위판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물량과 금액 면에서 각각 50.2%로 나타나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통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연근해수산물의 계통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 면에서는 1992년 84.8%였던 위판비율이 1997년 84.7%이후 2001년 89.8%까지 상승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물량 면에서 80.5%, 비용 면에서 67.9%로 나타났음

<표 2-6> 연근해수산물의 계통판매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연도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1992	1,206,542	1,022,857	84.8	1,736,647,355	1,401,272,999	80.7
1993	1,526,139	1,236,805	81.0	2,283,539,653	1,692,318,752	74.1
1994	1,486,357	1,238,701	83.3	2,520,606,111	1,952,550,723	77.5
1995	1,425,213	1,213,475	85.1	2,479,441,522	1,965,746,736	79.3
1996	1,623,822	1,406,382	86.6	2,735,079,190	2,200,671,554	80.5
1997	1,367,406	1,157,518	84.7	2,483,356,678	1,922,543,475	77.4
1998	1,308,336	1,144,635	87.5	2,293,637,349	1,877,979,839	81.9
1999	1,336,062	1,170,852	87.6	2,280,019,536	1,881,259,366	82.5
2000	1,189,000	1,032,297	86.8	2,329,483,389	1,932,095,870	82.9
2001	1,252,099	1,124,474	89.8	2,468,308,722	2,040,745,317	82.7
2002	1,095,812	968,972	88.4	2,487,006,174	1,986,424,330	79.9
2003	1,096,526	923,820	84.2	2,405,810,605	1,853,794,290	77.1
2004	1,076,687	912,551	84.8	2,609,717,094	2,017,175,699	77.3
2005	1,097,041	908,357	82.8	2,705,954,841	1,991,014,250	73.6
2006	1,108,815	917,314	82.7	2,751,251,398	1,952,993,102	71.0
2007	1,152,299	928,121	80.5	2,939,109,483	1,995,211,552	67.9

*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양식수산물 생산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7>과 같은데, 양식수산물은 위판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통판매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1997년 생산량 면에서 32.3%이었던 계통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생산량의 25.0%, 생산금액의 29.4%가 계통출하되어,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와 수요자(중간상인을 포함)간의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양식수산물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2-7> 양식수산물의 계통 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1992	935,478	450,756	48.2	602,386,791	180,837,206	30.0
1993	1,038,119	463,061	44.6	568,961,937	189,304,451	33.3
1994	1,072,126	383,330	35.8	720,566,214	219,354,835	30.4
1995	996,451	350,865	35.2	648,082,374	221,618,419	34.2
1996	874,810	304,692	34.8	643,322,269	203,378,232	31.6
1997	1,015,134	327,846	32.3	921,811,273	196,879,534	21.4
1998	777,230	228,009	29.3	950,314,972	151,611,659	16.0
1999	765,252	318,499	41.6	831,902,493	229,478,117	27.6
2000	653,373	305,459	46.8	683,855,951	199,683,067	29.2
2001	655,827	321,763	49.1	717,162,507	245,933,060	34.3
2002	781,519	369,994	47.3	794,517,120	247,134,798	31.1
2003	826,245	320,183	38.8	1,165,674,921	248,180,856	21.3
2004	917,715	291,935	31.8	1,217,104,552	270,312,787	22.2
2005	1,041,074	273,176	26.2	1,348,407,375	260,104,849	19.3
2006	1,259,274	322,081	25.6	1,443,168,636	254,647,105	17.6
2007	1,385,804	345,786	25.0	1,599,541,644	282,255,751	29.4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나. 유통시스템의 변화

- 수산물 유통환경은 과거 시장의존적 판매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제 수산물에 있어서도 표준화 및 규격화, 브랜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구어법의 표준화,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공동계산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대형소매점 및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
- 또한 소비의 경우에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 소매업체들의 국내 진출과 국내 대기업의 신 유통업체로의 진출 그리고 물류센터의 개장 등은 기존의 도매 시장 위주의 수산물 유통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유통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환경변화에서 급진적으로 수입개방의 확대, 소비의 고급화, 소매상의 대형화 등은 유통시스템의 규격품

출하와 유통의 정보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따른 산지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게 되었음

-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성, 신선도, 기능성 등 소비자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는 생산, 유통체계의 확립이 핵심과제임

<표 2-8> 유통환경 및 유통시스템의 변화

구분	종전	변화 형태
유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의 단순화 - 생산의 영세성 - 소매상의 영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 생산의 전문화, 조직화 - 수입개방의 확대 - 소매상의 대형화, 체인화 - 정보기술의 발달
유통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의한 수급조정 - 마케팅기능취약 - 비규격품 출하 - 국내농산물 차별화 미비 - 과도한 물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터, 신유통기관에 의한 수급조정 - 생산자 마케팅활동 수행 - 등급화, 규격품 출하 - 국내농산물의 유통과정 분리 - 유통에 정보기술 활용

다. 물류비용 상승

- 고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냉동차량의 운송료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산물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노량진 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의 냉동차주협회 등이 운송료 인상을 통보해 향후 수산물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 인상되는 운송료는 5톤 이하 35만원에서 45만원, 13톤 이하 45만원에서 52만원, 18톤 이하 55만원에서 63만원으로 15~30%까지 상승함. 품목별로 박스당 운송비도 30% 가까이 상승했으며, 인천과 외발산동 등은 5톤 기준의 3만원의 추가 운임을, 일산, 파주, 의정부, 동두천, 김포 등은 5만원의 추가운임을 고지함

- 이에 대해 출하주와 냉동취급상인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운송료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수산물 유통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수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 1990년 이후 WTO 도하라운드 수산업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등은 국제적 규제 증대 및 수산업 위기를 심화시켜 국내 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DDA 협상 결렬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개별국가들이 자국과 이해 깊은 국가나 지역공동체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 국가간, 지역간 FTA는 체결과 동시에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거나 민감한 분야는 보통 5~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회원국간 교역 증대, 투자 증가 등의 이점이 있으나 취약산업의 도태와 실업증가 등의 부담이 있음
- 이렇듯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FTA가 발효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관세철폐로 더 많은 양의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 <표 2-9>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물의 수입량은 점점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금액 면에서 2000년도 대비 약 2배의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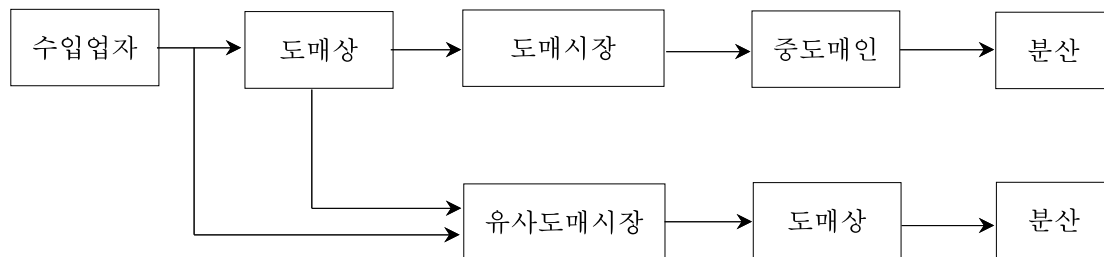
<표 2-9> 한국의 수산물 수입 추이

(단위: 천kg, 천불)

년 도	중 량	금 액
2000	749,191	1,410,598
2001	1,056,252	1,648,372
2002	1,186,400	1,884,417
2003	1,238,603	1,961,145
2004	1,280,915	2,261,347
2005	1,255,953	2,382,368
2006	1,377,101	2,769,348
2007	1,391,506	3,056,368

자료: 농림수산물부, 수산통계

-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압력과 관세철폐요구 등은 산지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산지시장의 역할 축소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입 수산물은 대량 수입의 경우 종합상사가 직접 또는 오피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소량 수입은 전문 수입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업자가 도매상으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구조와 달리 산지 경매를 하지 않아 산지 도매시장의 역할 축소를 가속화 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2-2>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

4. 소매 및 소비구조의 변화

가. 소매구조의 변화

- 국내 유통시장의 규모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 (10.6%)와 편의점(10.1)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어 소매업 성장을 이끄는 주요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업체별 매출액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슈퍼마켓 등의 소규모 소매점 및 재래시장이 약 83조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54.6%를 차지하며 1위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대형마트 18.7%, 백화점 12.2%, 홈쇼핑/인터넷 11.3%, 편의점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과 같은 대형소매업체들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백화점과 할인점이 전체 유통시장의 30% 넘게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할인점 및 백화점의 경우 전략적으로 수산물을 비롯한 1차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수산물 유통에서 대형소매업체 및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2-10> 소매 유통업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132.6 (-1.0)	134.5 (1.5)	140.6 (4.5)	146.5 (4.2)	151.6 (3.5)
백화점	17.2 (-3.0)	16.5 (-4.3)	17.2 (4.0)	18.1 (5.6)	18.5 (2.1)
대형마트	19.7 (12.1)	21.7 (10.2)	23.8 (9.5)	25.7 (8.3)	28.4 (10.6)
홈쇼핑/ 인터넷	12.0 (-2.1)	12.4 (3.4)	14.0 (13.1)	15.9 (13.1)	17.2 (8.6)
편의점	3.2 (23.0)	3.5 (10.8)	4.0 (11.4)	4.3 (7.9)	4.7 (10.1)
기타/ 재래시장	80.5 (-4.0)	80.4 (-0.1)	81.7 (1.6)	82.5 (1.0)	82.8 (0.3)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수산물 유통에서 대형소매업체 및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구매력을 갖춘 대형소매업체 및 백화점에 의해 기존의 수산물 유통경로와는 다른 새로운 유통경로가 생성됨
- 백화점 및 할인점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최종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산상품의 아이템(item)은 많게는 20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상품 전부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기에는 엄청난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품분류마다 원료 및 제품구입경로를 달리하고 있으며 판매방법도 달리하고 있음
- 이들 할인점은 수산물 구매팀과 물류센터를 통해 상적·물적 기능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구입은 각 지점에서 사전에 통보한 물량을 토대로 본사 구매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거래를 하는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을 통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산지 구매가 50%이상으로 소비지도매시장에서의 구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운송수단과 도로의 발달로 인한 유통경로의 축소가 나타남. 소비자가 산지에 직접 가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소비자 간의 새로운 거래형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산물 유통 증가를 들 수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산물 매출비중은 전자상거래 자체의 성장과 직거래를 통한 동일 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과거 수산물의 유통과 가격결정이 대부분 중도매인에 의해 이뤄졌으나, 현재는 소비자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소비구조 변화

-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안전, 웰빙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 소비는 정체추세에 있는 반면, 수산물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표 2-11> 수산물 소비 현황

연도	육류 소비량 (1인 연간/kg)	수산물 소비량 (1인 연간/kg)
2000	37.5	30.7
2001	38.2	35.6
2002	39.2	36.3
2003	39.0	38.5
2004	36.9	41.1
2005	36.6	39.9
2006	37.9	41.2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고품질 수산물 소비의 증가 예상
 - 원료상태의 소비에서 일부가공 또는 전체가공 형태로 소비 변화
 - 맛벌이 부부가정의 증가로 찌개 등 전통적 식단에서 간편하고 빠른 서구식 패스트푸드형 식사형태로 전환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로 짠 가격보다는 안전성, 브랜드, 신선도 등 고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짐
 - 횡감용 활어 국내유통량 : ('00) 61천톤 → ('04) 118천톤
 - 참치, 바닷가재, 연어, 넙치, 새우류 등 고급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5. 소결

- 수산물 산지시장의 여건변화를 크게 생산구조, 유통구조, 무역구조, 소매 및 소비구조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생산구조의 변화로는 어장축소와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정체와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시행, 고유가에 따른 어업생산 비용 증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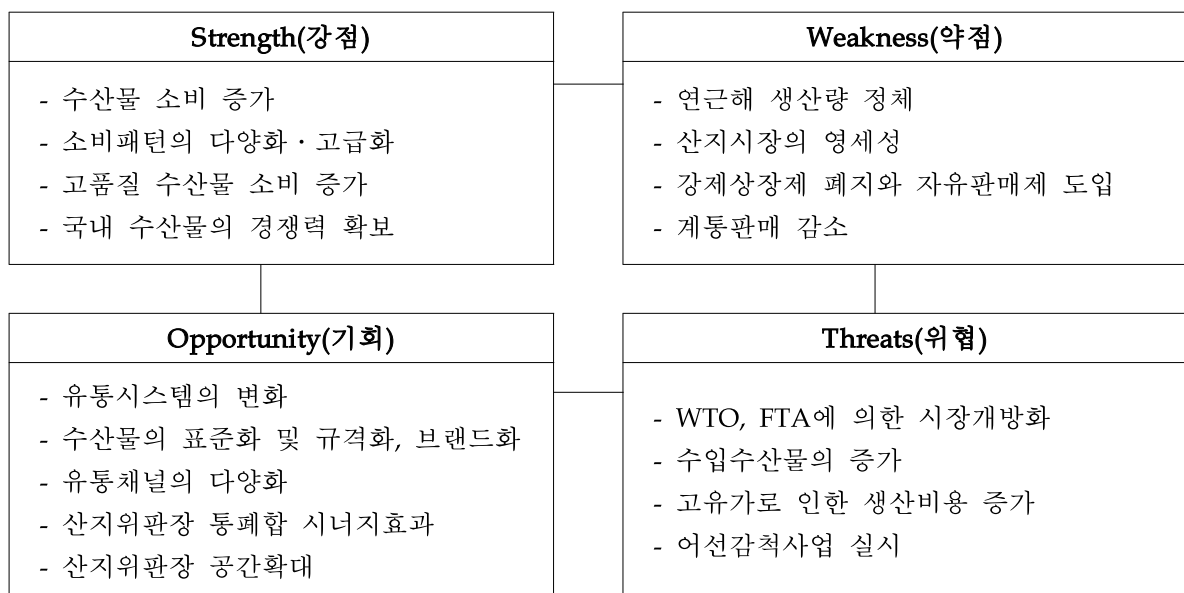
- 유통구조의 변화는 강제상장제 폐지에 따른 계통판매량의 감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따른 유통시스템의 변화,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 등이 있음
- 무역구조의 변화로는 WTO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를 살펴볼 수 있음
- 소매 및 소비구조의 변화로는 대형마트 등의 대형소매업체의 매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웰빙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른 수산물소비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표 2-12> 수산물 산지시장 여건변화 분석

여건변화	주요내용	세부내용
생산구조	연근해수산물 생산량정체	○ '96년 1,624천톤 → '05년 1,097천톤 → '06년 1,109천톤 → '07년 1,152천톤 - '96년 대비 '07년 생산량 29%감소
	연근해어선감척	○ 연안 : 6,357척 감척 - '94년 43,520 → '07년 59,527(↑36.8%) ○ 근해 : 1,967척 감척 - '95년 6,567 → '07년 3,573(↓45.6%)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용증가	○ 어업비용 중 연료비 비중 - 근해(25.1%), 연해(21.5%), 양식(7.7%)
유통구조	강제상장제폐지와 계통출하감소	○ 수산물생산량 10% 계통출하 감소 - '97년 62.3 → '07년 50.2% ○ 연근해생산량 4.2% 계통출하 감소 - '97년 84.7% → '07년 80.5% ○ 양식생산량 7.3% 계통출하 감소 - '97년 32.3% → '07년 25.0%
	유통시스템의 변화	※ 유통환경 및 유통시스템변화
	물류비용 상승	○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인상 - 최근 15~30%까지 상승
무역구조	무역구조	○수산물수입량 '00년 749천톤 → '07년 1,392천톤 - '00년 대비 '07년 수입량 86% 증가
소매 및 소비구조	소매구조	○대형소매업체(대형마트) 매출규모 증가 - '03년 19.7조원 → '07년 28.4조원(↑44%)
	소비구조	○수산물소비량(1인 연간) '00년 30.7kg → '07 41.2kg - '00년 대비 '07년 소비량 34% 증가

제2절 SWOT 분석을 통한 전망

- 이상으로 살펴본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 변화의 전망을 SWOT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함
- 일반적으로 SWOT 분석은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으로서 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진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진입에 따른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s(위협) 등을 분석하는 것임
- SWOT 분석 기법은 경영학 측면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의 수산물 산지유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용하였음
-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약점요인을 극복하여 강점이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그림 2-3> 수산물 산지유통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안전, 웰빙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로싼 가격보다는 안전성, 브랜드, 신선도 등 고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며,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고품질 수산물 소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의 위협요소에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함

2. 약점(Weakness)

- 조업수역 축소와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연근해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정체추세에 있음
- 또한 강제상장제의 폐지와 자유판매제의 도입으로 인해 어획물의 판매망이 생산자인 어민과 소비자 사이에 여러가지 유통형태가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계통판매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규모의 산지시장의 경우에는 더욱 약점으로 작용함

3. 기회(Opportunity)

- 수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 수산물에 있어서도 표준화 및 규격화, 브랜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산물이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유통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고가의 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또한 산지위판장의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산지위판장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공간확대를 통해 관광시설과의 연계 등 복합공간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4. 위협(Threats)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압력과 관세철폐요구 등은 산지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산지시장의 역할 축소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제적인 고유가현상이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 및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연근해 어선감축사업의 실시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제3장 수산물 산지위판장 실태 조사

제1절 개념정리

1. 산지 위판장의 개념

가. 수산업법

- 위판장은 1997년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의 전환에 따라 수산업법 제52조 “어업 조정명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어획물의 양륙제한”, 제21조 “어획물판매장소의 지정”등 근거법령이 삭제됨
- 그 이후로 위판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초에 개정이 되었으며, 위판장 관련 최근 개정된 법률들은 수산업법 제53조(‘08.2.4),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2 및 3(‘08.1.25),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08.5.8), 농안법 제2조, 제19조, 제20조(‘07.7.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07.7.6) 등임
- 2008. 2. 4에 개정된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2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위판장의 지정은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위판장)로 지정할 수 있음.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揚陸施設)을 갖춘 지역이 이에 해당함. 또한 시·도지사는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 위판장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위판장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판장의 지정취소는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표 3-1> 수산업법상 위판장의 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지정 및 취소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가능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08.24)
위판장의 지정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위판장)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揚陸施設)을 갖춘 지역	수산업법시행령 제5장 제41조의1 제1항
위판장의 통보	○시·도지사는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위판장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 위판장 관리자	수산업법시행령 제5장 제41조의2 제2항
위판장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는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수산업법시행령 제5장 제41조의3 제1항 및 2항

나. 공판사업요령

- 수협중앙회의 수협중앙회 경제사업규정 공판사업요령 제1장 제3조 2에 의하면 ‘농안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수산물을 수집·집하하는 시설인 집하장 중 별도로 정하는 시설 요건을 갖추고 공판장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공판장 이외의 사업장’을 경매식집하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 부칙에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설립된 수협 위판장(어촌계포함)은 이 요령에 의한 경매식집하장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협 중앙회 경제사업규정의 경매식집하장이란 수산업법의 위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
- 경매식집하장의 운영지침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규정의 수산물집하장 설치 운영기준’이며,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수산물집하장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3-2> 수협의 경매식집하장 및 시설/운영기준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정의	농안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수산물을 수집·집하하는 시설인 집하장 중 별도로 정하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공판장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공판장 이외의 사업장	수협중앙회 경제사업규정 공판사업요령 제1장 제3조 2
운영지침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수산물집하장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수산물집하장 설치 운영 기준

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개념비교

-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은 정확하게 법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산물산지 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에 따르면 수산물 산지시장이란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

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공급거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지시장 개념도 이와 유사함

- 한국의 위판장은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53조(‘08.2.4),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2 및 3(‘08.1.25)에 있음. 반면 일본은 위판장의 개념이 없음

<표 3-3>한국과 일본의 산지시장 개념비교

구분	한국	일본
산지시장 개념	일본과 유사한 개념적용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공급거점
위판장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	없음
법적근거	수산업법 제53조(‘08.2.4),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2 및 3(‘08.1.25)	정확한 법적 정의 없음

2. 위판장 및 공판장의 개념

- 현재 위판장의 기준이 모호하여 위판장과 공판장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판장 실태조사에 앞서 용어의 정리 및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았음
- 일선수협이 개설하는 산지시장이 위판장이며, 공판장은 농안법상의 법적기준을 갖춘 시설임
 - 일반적으로 위판장과 공판장의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규모와 개설방법, 농안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됨
 - 즉, 위판장은 농안법을 준용하는 것이지 적용받는 것이 아님

- 위판장과 공판장은 모두 거래방법에 상장경매원칙을 허용하거나 준용한다는 점에서 방법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공판장은 개설자가 수협이라는 점과 입지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매시장과 큰 차이가 없음
- 반면에 위판장은 수협이 개설하기는 하지만, 시설이나 운영에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고, 소매시장의 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에도 자유롭다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입지나 시설의 제한도 없음

<표 3-4>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

구분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개설근거법령	수산업법	농안법	농안법	농안법
판매, 수집방법	경매, 입찰, 위탁	경매, 입찰, 위탁, 매취	경매, 입찰, 위탁, 매취	예약수의거래
운영주체	수협	수협, 생산자단체	민간법인, 공동출자법인	정부, 지자체
개설자	수협	수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정부, 지자체
기능	지역권공급	지방도시 공급	대도시공급	물류센터 기능도, 소매 기능
소재지	어항입지	제한 없음	광역시, 시	구분없음
규모	제한없음	제한있음	제한있음	제한있음

-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은 <표 3-5>와 같으며, 농안법상 공판장 시설기준을 준용함

<표 3-5>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농안법상 공판장 시설기준 준용)

구분	산지위판장 시설기준(인구기준)			
	30만미만	30만이상~100만미만	100만이상	
단위	m ²	m ²	m ²	
대지	1,650	3,300	6,600	
건물	660	1,320	2,640	
필수 시설	경매장(유개)	500	990	1,980
	주차장	170	330	660
	냉장실	17(20톤)	30(50톤)	50(60톤)
	저빙실	17(20톤)	30(50톤)	50(60톤)
	오물처리장	30	70	100
	위생시설(수세식화장)	30	70	100
	사무실	30	50	70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30	50	70
부수 시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제2절 실태조사 개요

1. 전국 산지위판장 개설현황

- 본 연구에서는 '08년 5월에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도지사가 수산물 위판장을 지정함에 따라 위판장지정고시에 지정된 위판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함
- 위판장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위판장은 전국 180개소로, 지역별로는 인천 6개소, 강원 30개소, 충남 15개소, 전북 2개소, 전남 35개소, 경북 22개소, 경남52개소, 울산 2개소, 부산 6개소, 제주 8개소임
- 수협중앙회의 2007년 위판장 현황 자료에서 지정한 전국 위판장의 개수는 총 181개소로 위판장 지정고시와 차이가 나며,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6>와 같음

<표 3-6> 전국 위판장 지정고시 현황

지역	수협자료	시·지사 지정고시	증감
인천	8	6	▽2
강원	19	30	△11
충남	12	15	△3
전북	4	2	▽2
전남	49	35	▽14
경북	23	22	▽1
경남	44	52	△8
울산	3	2	▽1
부산	6	6	-
제주	11	8	▽3
합계	181	180	▽1

- 기존의 수협자료와 위판장 지정고시 내역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비교내역은 <표 3-7>와 같음, 비교사항에는 기존 수협자료의 위판장 명칭이 고시에 지정되면서 변경된 경우, 고시의 변경된 위판장 명칭을 기재하였음

<표 3-7> 전국 위판장 개설현황

지역	수협명	위판장명	소재지	수협	고시	비고
인천	경인북부	외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73	○	○	
	웅진	연안	인천시 중구 북성동 7가104-14	○	○	
		대청도	인천시 옹진군 대청리 377-1	○	-	
		대부도	경기 안산시 대부 북동 473번지	○	-	
		백령	인천시 옹진 백령면 진천리690-2	○	-	
	인천	연안	인천시 중구 북성동 7가 104-14	○	○	
		소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198	○	○	
	영흥	영흥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8-165	○	○	
중앙회	인천	인천 중구 항동 7가62	-	○		
강원	고성	거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51	○	○	
		대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30-5	○	○	
		아야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9-3	○	○	
		봉포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5	-	○	
		초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15	-	○	
	속초	속초	속초시 중앙동482-251	○	○	
		동명	속초시 동명동 1-131	○	○	
		사진	속초시 장사동 548-9, 11	-	○	
	대포	대포	속초시 대포동 421-1	○	○	
	양양	남애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2-7	○	○	
		물치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7-8	-	○	
		동산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137-2	○	○	
		기사문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89-32	○	○	
	강릉시	주문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512	○	○	
		사천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107	○	○	
		우암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43	-	○	
	동해시	목호	동해시 목호동 15-85	○	○	
		어달	동해시 어달동 190	-	○	
		금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24-8	-	○	
	삼척	삼척	삼척시 정하동 41-179, 186	○	○	
		장호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1	-	○	
		초곡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38	-	○	
		덕산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0, 11	-	○	
	원덕	원덕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1-132	○	○	
		호산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38-12	-	○	
	죽왕	가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1	○	○	
		공현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55-4	○	○	
오호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	○		
문암1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10-76	○	○		
문암2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13-37	○	○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수협명	위판장명	소재지	수협	고시	비고
충남	보령	활어	보령시 신후동 950-22	-	○	
		선어	보령시 신후동 950-88번지 외3	-	○	
		현포동	보령시 신후동 950-46 외 3필지	○	-	
		오천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8	○	-	
	서천	서천군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332-54	○	○	장항
	서산	안흥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13	○	○	
		건어물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20	-	○	
	서면	홍원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7	○	○	
		마량	서천군 서면 마량리 339-5	○	○	
	태안남면	몽산포	태안군 남면 몽산리 686-28	○	○	
		마검포	태안군 남면 신온리 2-32	○	○	
		드르니	태안군 남면 신온리 802-4	○	○	
	안면	백사장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69-90	○	○	
		영목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34-66	○	○	
	신후	대천항	보령시 신후동 2243-2	○	○	
무장포	활어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57	-	○	어촌계	
도황	연포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525-233	-	○	어촌계	
전북	군산	해망동	군산시 해망동 1011-17,20	○	○	
		비응도	군산시 비응도동 31-2	○	○	
	부안	곰소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214-94	○	-	
		격포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13	○	-	
전남	강진	마량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0-65	○	○	활선어
		신전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1-6	○	○	사초
	목포	동부	목포시 금화동 4-2	○	○	
		서부	목포시 금화동 15-1	○	○	
	신안	건어물	목포시 행복동 1가3	○	-	
		송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23외	○	○	
		송공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718-41	○	○	
	완도	활선어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00-1	○	○	
		건어물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13	○	○	
		군외	완도군 읍 당인리	○	-	
		노화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	-	
	영광	법성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82-23	○	○	
		영광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38-1	○	○	
		계마	영광군 흥농읍 계마리 894-8	○	○	
	금일	화목	완도군 금일면 화목리 1032	○	○	
소안	낙지	소안면 비자리 1435-2,3	○	○	수산물	
	물김	완도 소안면 맹선리,미라리 물량장	○	-		
	전북	물양장		○	-	
진도	본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61-1	○	○		
	회동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652-3	○	○		
	접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수품항 배후 단지 제5번	○	○		
	서망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11	○	○		
	조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556-1	○	○		
	원포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2-3	○	○		

지역	수협명	위판장명	소재지	수협	고시	비고
전남	해남군	삼산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28-36	○	○	마른김
		송평	해남군 화산면 송평리	○	-	
		어란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2045	○	○	
		구성	화산면 평호리	○	-	
		송호	송지면 송호리	○	-	
		내장	송지면 내장리	○	-	
		산소	황산면 산소리	○	-	
	흑산도	흑산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371-3	○	○	
	거문도	거문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7	○	○	
	고흥군	건어물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09-21	○	-	
		녹동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92	○	○	
		독대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1	○	○	
		발포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547-45	○	○	
		구암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806-4	○	○	
		돌섬끝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142-8	○	-	
		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83-4	○	-	
		송림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596-1	○	○	
		풍남물김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1063-32	○	-	
		화옥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화옥	○	-	
	사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733-2	-	○		
	나로도	나로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1250-2	○	○	수산물
여수	선어	여수시 봉산동 100-7	○	○		
	건어	여수시 봉산동 100-5	○			
	군내	여수시 군내리 555-12	○	○		
제3,4구 잠수기	국동	여수시 국동 1082-7	○	○		
경북	경주시	감포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69-14	○	○	
	구룡포	잡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리 954-2	○	○	
		활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리 954-2	○	○	
		트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	○	○	
		선동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리 954-11,12	○	○	
		대보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886-52	○	○	
	포항	장기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33	○	○	
		죽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3-7	○	○	
	강구	동빈활어	포항시 북구 동빈1가 148	○	○	
		강구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6-4	○	○	
	축산	창포	영덕군 강구면 창포리 745-3	○	○	
		축산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941-5	○	○	
		대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	○	○	
	후포	후포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141	○	○	
		사동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89-8	○	○	
		구산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00	○	○	
	죽변	죽변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20-28	○	○	
		원남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226-7	○	○	
	울릉	저동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2	○	○	
		도동	울릉군 마산 도동1리	○	-	
		태하	울릉군 서면 태하1리 695-2	○	○	
천부		울릉군 북면 천부1리 719-2	○	○		
현포		울릉군 북면 현포리 708-26	○	○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수협명	위판장명	소재지	수협	고시	비고
경남	거제	장승포	거제시 장승포동 713	○	○	
		성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31-1	○	○	
		옥포	거제시 옥포동 1955	○	○	
		구조라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 97-1	○	○	
		대포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642-25	○	○	
		외포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57-58	○	○	
		능포	거제시 능포동 480-43	○	○	
	고성	당항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26-2	○	○	
		하일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519-1	○	○	
		남포항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5	○	○	
		우두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40-8	○	○	
		삼산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73-6	○	○	
		거류	현장위판	○	-	
		동해	고성군 동해면 양촌 148-1	-	○	
	맥전포	고성군 하일면 춘암 790-1	-	○		
	마산	본소	마산시 동성동 310-1	○	○	
	삼천포	선어	사천시 서동 311-17	○	○	
		건어	사천시 동금동 579-5	○	○	
		활어	사천시 서동 322-61	○	○	
		패류	사천시 서동 311-134	○	○	
	사천	활어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	○	○	
	의창	용원	진해시 용원동 1111-17	○	○	
		안골	진해시 안골동 825	○	○	
	진해시	속천	진해시 속천동 6-2	○	○	
		제덕	진해시 제덕동 174-52	○	○	
	통영	본소	통영시 동호동 348	○	○	
		제2위판	통영시 동호동 349	-	○	
		건유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95-11	○	○	
		도천동	통영시 도천동 52-21	○	○	
	욕지	욕지	통영시 욕지동향 581-33	-	○	
	사랑	사랑	통영시 사랑금평 91-7	-	○	
	굴수하	본소	통영시 동호동 350	○	○	
	명계	명계	통영시 명정동 2-4	-	○	
	근해통발	근해통발	통영시 당동 해상	-	○	
	서남해	서남해	통영시 산양읍 삼덕 372-10	-	○	
	하동군	본소	하동군 노량리 742-11	○	○	노량
갈사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47-12	○	○		
하동읍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5-7	○	○	재첩	
남해군	미조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21	○	○		
	미조2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40	○	○		
	원천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148	○	○		
	남면	남해군 남면 평산리 1783	○	○	평산	
	창선	남해군 창선면 대벽 6-20	○	○	단항	
	감암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80-5	○	○		
	선소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130	-	○		
진동	고현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291-3	○	○		
	광암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267-3	○	○		
기선 권현망	본소	통영시 정량동 1405	○	○		
	마산지소	마산시 오동동 305-2	○	○		

제3장 수산물 산지위판장 실태 조사

지역	수협명	위판장명	소재지	수협	고시	비고
경남	제1,2구 잠수기	마산	마산시 신포동 2가 122-1,2	○	○	
		통영	통영시 도천동 1007	○	○	
		남해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1392-3	○	○	
		거제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9-36	○	○	
	진해시	속천	진해시 속천동 6-2	○	○	
		제덕	진해시 제덕동 174-52	○	○	
	통영	본소	통영시 동호동 348	○	○	
		제2위판	통영시 동호동 349	-	○	
		견유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95-11	○	○	
		도천동	통영시 도천동 52-21	○	○	
	육지	육지	통영시 육지동항 581-33	-	○	
	사랑	사랑	통영시 사랑금평 91-7	-	○	
	굴수하	본소	통영시 동호동 350	○	○	
	명계	명계	통영시 명정동 2-4	-	○	
	근해통발	근해통발	통영시 당동 해상	-	○	
	서남해	서남해	통영시 산양읍 삼덕 372-10	-	○	
	하동군	본소	하동군 노량리 742-11	○	○	노량
		갈사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47-12	○	○	
		하동읍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5-7	○	○	재첩
	남해군	미조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21	○	○	
		미조2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40	○	○	
		원천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148	○	○	
		남면	남해군 남면 평산리 1783	○	○	평산 단항
		창선	남해군 창선면 대벽6-20	○	○	
		감암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80-5	○	○	
		선소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130	-	○	
	진동	고현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291-3	○	○	
광암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267-3	○	○		
기선 권현망	본소	통영시 정량동 1405	○	○		
	마산지소	마산시 오동동 305-2	○	○		
제1,2구 잠수기	마산	마산시 신포동 2가 122-1,2	○	○		
	통영	통영시 도천동 1007	○	○		
	남해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1392-3	○	○		
	거제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9-36	○	○		
울산	울산	방어진	울산시 동구 방어 동175-6~8	○	○	
		울산	울산시 남구 삼산동904-10	○	-	
		강동	울산시 북구 정자동 638-3	○	○	정자
부산	부산시	다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798-1	○	○	
		차갈치	부산시 중구 남포동 5가117-6,7	○	○	
		남포동	부산시 남포동 1가 62-1	○	○	
		낙동	강서구 명지동 136-1	○	-	
		민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3-32	○	○	
	제1.2구 잠수기	부산	부산시 중구 남포동 4가 37-3	○	○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 남부민동 691-3,5	-	○		
부산동부	대변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306-3	○	○		
	학리	기장군 일광면 학리 251-8	○	○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수협명	위판장명	소재지	수협	고시	비고
제주	서귀포	본소	서귀포시 서귀동 667-6	○	○	
		태흥	서귀포시 태흥리 353-3	○	-	
	모슬포	본소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770-28	○	-	
		활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97	○	○	
	성산포	본소	성산읍 성산리 347-5	○	○	
		표선	표선면 표선리 45-5	○	-	
	제주시	본소	제주시 건입동 1439-4	○	○	
	추자도	추자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19~21	○	○	
		신양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34-1	○	○	
	한림	본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8	○	○	1위판장
선망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6-61	○	○	2위판장	
합계				181	180	

-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6개소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8개의 위판장과 차이가 있음. 웅진수협의 대청도와 대부도, 백령 위판장이 고시에서 제외된 반면 수협중앙회의 인천위판장이 추가됨
- 강원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30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19개의 위판장보다 11개소가 많음. 고성수협의 봉포위판장과 초도위판장, 속초수협의 사진위판장, 양양수협의 물치위판장, 강릉시수협의 우암진위판장, 동해시수협의 어달위판장과 금진위판장, 삼척수협의 장호위판장, 초곡위판장, 덕산위판장, 원덕수협의 호산위판장이 추가됨
- 충남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15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12개의 위판장보다 3개소가 많음. 보령수협의 현포동 위판장과 오천위판장은 고시에서 제외된 반면, 활어위판장과 선어위판장이 추가됨. 또한 서산수협의 건어물위판장이 추가되었으며, 무창포어촌계와 도황어촌계의 위판장이 추가됨
- 전북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2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4개의 위판장보다 2개소 적음. 부안수협의 2개 위판장이 제외되었음
- 전남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35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49개의 위판장보다 14개소 적음. 신안수협, 완도수협, 소안수협, 해남군수협, 고흥군수협의 일부 위판장이 제외된 반면 고흥군수협 송림위판장이 추가됨

- 경북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22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23개의 위판장보다 1개소 적음. 울릉수협의 도동위판장이 제외되었음
- 경남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52개소로서 전국 10개 시도중 가장 많으며,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44개의 위판장보다 8개소 많음. 고성수협의 동해와 맥전포위판장, 통영지역의 통영수협 제2위판장, 옥지, 사량, 명계, 굴수하, 서남해 수협, 남해군의 선소위판장이 고시에 추가된 반면 고성수협의 거류위판장은 제외되었음
- 울산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2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3개의 위판장보다 1개소 적음. 울산위판장이 제외되었음
- 부산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6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6개의 위판장과 개소는 일치하나 낙동위판장이 제외되고 공동어시장이 추가되었음
- 제주지역의 고시된 위판장은 총 8개소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11개소보다 3개소 적음. 서귀포와 모슬포, 성산포의 위판장이 1개소씩 제외되었음

2. 조사방법 및 결과

-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실태조사 위판장을 먼저 선정하였으며, 둘째, 수협위판장의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셋째, 본조사에 앞서 표본위판장을 선정한 후 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근거하에 조사표를 수정·보완하였음
- '08년 5월에 시·도지사에게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지위판장 180개소에 대하여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지는 전국 산지위판장 180개소로 협조공문과 함께 일괄 우편발송 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서도 협조공문을 각 산지위판장에 발송하였음

- 설문지 발송 후 산지위판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면담 등을 통해 조사함

- 전체 180개소 산지위판장 중 방문한 산지위판장은 169개소임
 - 섬지역은 시간상의 문제로 방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방문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6개소, 강원 30개소, 전북 2개소, 전남 32개소, 경북 18개소, 경남 50개소, 울산 2개소, 부산 8개소, 제주 6개소임
 - 전남의 거문도, 조도, 흑산도, 경북 울릉군의 4개소, 경남 통영시의 욕지, 사랑, 제주 추자도의 2개소 등 총 11개소는 섬지역으로 방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전체 180개소 산지위판장 중 회수한 설문지는 168개임
 - 강원지역의 우암진항, 어달항, 초곡항, 덕산항, 호산항, 초도항, 물치항 등 7개소는 어항만 있을 뿐 위판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 위판장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시만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설문지를 확보하지 못했음. 또한 속초시의 사진항위판장은 개장준비중인 상태라 실태조사 설문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음
 - 전남지역의 남면위판장은 임시 폐쇄상태이며, 사도위판장은 매각되어 현재 위판장이 없는 관계로 설문지를 확보하지 못했음
 - 경남지역의 맥전포위판장은 폐쇄한 상태로 설문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울산지역의 정자위판장은 현재 재건축 공사중인 관계로 설문지를 확보하지 못했음

<표 3-8> 전국 위판장 설문조사 결과

지역		개소	방문	설문지	비고
인천	인천시	6	6	6	
강원	강릉시	4	30	22	위판장 없음(7) 개장 준비중(1)
	동해시	2			
	속초시	4			
	삼척시	6			
	고성군	10			
	양양군	4			
	합 계	30			
충남	서천군	3	15	15	
	보령시	4			
	태안군	8			
	합 계	15			
전북	군산시	2	2	2	
전남	목포시	2	32	33	위판장 없음(2) 섬지역 방문제외(3)
	여수시	6			
	고흥군	7			
	강진군	2			
	해남군	2			
	영광군	3			
	완도군	4			
	진도군	6			
	신안군	3			
	합 계	35			
경북	포항시	8	18	22	섬지역 방문제외(4)
	경주시	1			
	영덕군	4			
	울진군	5			
	울릉군	4			
	합 계	22			
경남	마 산	5	50	51	위판장 폐쇄(1) 섬지역 방문제외(2)
	진 해	4			
	통 영	12			
	사 천	5			
	거 제	8			
	고 성	7			
	남 해	8			
	하 동	3			
합 계	52				
울산	울 산	2	2	1	위판장 재건축중(1)
부산	부산시	8	8	8	
제주	제주시	5	6	8	섬지역 방문제외(2)
	서귀포시	3			
	합 계	8			
총계		180	169	168	

제3절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전국 위판장 현황

가. 지역별 분류

- 지역별 위판장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이 52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남 35개소, 강원 30개소, 경북 22개소, 충남 15개소, 부산과 제주 각 8개소, 인천 6개소, 전북과 울산 각 2개소로 총 180개소임

<표 3-9> 지역별 위판장 개설현황

구분	개소	비율
경 남	52	28.9%
전 남	35	19.4%
강 원	30	16.7%
경 북	22	12.2%
충 남	15	8.3%
부 산	8	4.4%
제 주	8	4.4%
인 천	6	3.3%
전 북	2	1.1%
울 산	2	1.1%
합 계	180	100.0%

나. 취급부류 및 경매방식별 분류

- 취급어종별 위판장 현황을 살펴보면, 활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47개소로 가장 많으며, 선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33개소, 선어와 활어를 함께 취급하는 위판장은 35개임. 패류만 취급하는 위판장이 12개소, 해조류만 취급하는 위판장이 12개소 있으며, 건어물만 취급하는 위판장도 7개소 있었음
- 그 외 선어와 건어를 함께 취급하는 위판장 1개소, 선어와 패류를 함께 취급하는 위판장 1개소가 있었으며, 3가지 이상의 품목을 취급하는 위판장 15개소가 있었음

- 위판장 지정고시에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판장 운영을 하지 않는 위판장 7개소와 매각 또는 폐장한 위판장 2개소, 신축공사중이거나 개장준비중인 위판장 2개소는 미응답하였음

<표 3-10> 취급어종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활어	47	26.1%
선어	33	18.3%
패류	12	6.7%
해조류	12	6.7%
건어물	7	3.9%
선어, 활어	35	19.4%
활어, 패류	5	2.8%
선어, 건어	1	0.6%
선어, 패류	1	0.6%
3가지 이상 취급	15	8.3%
위판장 없음	7	3.9%
위판장 매각, 폐장	2	1.1%
신축공사, 개장준비중	2	1.1%
합계	180	100.0%

- 경매방식별로는 경매를 통해 위판하는 위판장이 128개소, 입찰을 통해 위판하는 위판장이 31개소 있었으며, 경매와 입찰을 함께 하는 위판장이 8개소 있었음
- 그 외 직판위판장이 1개소였고, 위판장 지정고시에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판장 운영을 하지 않는 위판장 7개소, 매각 또는 폐장한 위판장 2개소, 신축공사 중이거나 개장준비중인 위판장 2개소는 미응답하였으며, 물양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위판은 하지 않는다고 답한 위판장 1개소 있었음
- 경매를 통한 위판은 여러 명의 중도매인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매 참가인들은 손이나 음성 등으로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함. 반면 입찰은 중도매인들이 각자의 희망 매수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입한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타인의 희망가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름

<표 3-11> 경매방식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경매	128	71.1%
입찰	31	17.2%
경매+입찰	8	4.4%
직판	1	0.6%
위판장 없음	7	3.9%
위판장 매각, 폐장	2	1.1%
신축공사, 개장준비중	2	1.1%
물양장	1	0.6%
합계	180	100.0%

다. 위판장 규모

- 대지면적별 위판장 규모를 살펴보면, 5만㎡의 위판장은 여수수협외 선어·건어위판장과 부산시의 공동어시장으로 2개소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1만㎡~5만㎡의 위판장이 6개소, 5천㎡~1만㎡의 위판장 10개소였으며, 1천㎡~5천㎡의 위판장이 64개소로 가장 많았음. 5백㎡~1천㎡의 위판장은 26개소였으며, 5백㎡이사의 소규모 위판장이 55개소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남
- 그 외 물양장 3개소와 위판장 지정고시에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판장 운영을 하지 않는 위판장 7개소, 신축공사 중이거나 개장준비중인 위판장 2개소, 매각한 위판장 1개소는 미응답하였음

<표 3-12> 대지면적별 위판장 분류

대지면적별	개소	비율
5만㎡이상	2	1.1%
1만㎡ ~ 5만㎡	6	3.3%
5천㎡ ~ 1만㎡	10	5.6%
1천㎡ ~ 5천㎡	64	35.6%
5백㎡ ~ 1천㎡	28	15.6%
5백㎡이하	57	31.7%
물양장	3	1.7%
위판장 없음	7	3.9%
신축공사, 개장준비중	2	1.1%
위판장매각	1	0.6%
합계	180	100.0%

- 위판장의 유개 및 무개 여부로는 유개 위판장이 128개소, 무개 위판장이 11개소, 유개와 무개 위판장이 함께 있는 위판장이 7개소였음. 그 외 미응답이 34개소임

<표 3-13> 유개 및 무개 여부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유개	128	71.1%
무개	11	6.1%
유개, 무개	7	3.9%
미응답	34	18.9%
합계	180	100.0%

- 위판장 건물년수로는 50년 이상 된 위판장이 강구수협외 강구위판장으로 1개소 있었으며, 30년~50년된 위판장이 14개소, 20~30년된 위판장 16개소였으며, 10~20년된 위판장이 50개소로 가장 많았음. 10년~20년된 위판장은 21개소, 5년이하의 위판장이 24개소였으며, 그 외 미응답이 54개소임

<표 3-14> 건물년수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50년이상	1	0.6%
30~50년	14	7.8%
20~30년	16	8.9%
10~20년	50	27.8%
5~10년	21	11.7%
5년이하	24	13.3%
미응답	54	30.0%
합계	180	100.0%

- 위판장 건물구조는 철근 및 콘크리트로 된 위판장이 9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조립식 건물이 21개소, 천막시설 3개소, 컨테이너박스 사용 위판장이 2개소였음

<표 3-15> 건물구조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철근콘크리트	90	50.0%
조립식	21	11.7%
천막	3	1.7%
컨테이너박스	2	1.1%
미응답	64	35.6%
합계	180	100.0%

라. 위판장 구성원

- 중도매인수를 살펴보면, 중도매인 100명이상인 위판장이 여수수협외 선어·건어위판장으로 1개소였으며, 50명~100명인 위판장이 6개소, 30명~50명인 위판장 20개소, 20명~30명인 위판장 28개소였으며, 10명~20명인 위판장과 10명이하인 위판장이 각 50개소씩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6> 위판장별 중도매인수

구분	개소	비율
100명이상	1	0.6%
50~100명	6	3.3%
30~50명	20	11.1%
20~30명	28	15.6%
10~20명	50	27.8%
10명이하	50	27.8%
미응답	24	13.3%
합계	180	100.0%

마. 위판실적

- 산지위판장의 2007년 위판물량을 살펴보면, 위판물량이 5만톤 이상인 위판장이 부산의 공동어시장으로 1개소였으며, 1만톤~5만톤인 위판장이 24개소, 5천톤~1만톤인 위판장이 23개소, 3천톤~5천톤인 위판장이 9개소, 1천톤~3천톤인 위판장 35개소, 5백톤~1천톤 위판장 15개소였으며, 500톤미만의 위판장이 43개소로 가장 많았음

- 그 외 위판금액은 있지만 위판물량으로의 환산이 어렵다고 답한 위판장 5개소, 인근의 위판장 위판실적과 합산처리되어 보고된다고 답한 위판장 11개소가 있었으며, 위판장이 없는 7개소와 폐쇄, 매각한 3개소, 개장준비중인 3개소는 미응답하였음

<표 3-17> 위판물량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5만톤이상	1	0.6%
1만톤~5만톤	24	13.3%
5천톤~1만톤	23	12.8%
3천톤~5천톤	9	5.0%
1천톤~3천톤	35	19.4%
5백톤~1천톤	15	8.3%
5백톤 미만	44	24.4%
위판물량 추정불가	5	2.8%
인근위판장 합산	11	6.1%
위판장 없음	7	3.9%
위판장 폐쇄, 매각	3	1.7%
개장준비중	3	1.7%
합계	180	100.0%

- 위판물량별로 상위 30개소를 정렬해보면, 위판물량이 가장 많은 위판장은 부산의 공동어시장으로 299,000만톤이며, 다음으로 여수수협외 선어위판장이 40,063톤, 통영수협의 본소위판장이 39,084톤임

<표 3-18> 위판물량 상위 30개소(2007년)

(단위 : 톤)

시도	조합	위판장명	'07 위판물량
부산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299,000
전남	여수	선어	40,063
경남	통영	본소	39,084
경남	삼천포	선어	33,088
부산	부산시	차갈치	31,868
부산	부산시	다대	25,058
전남	목포	동부	21,252
경남	마산	본소	20,810
경북	경주	감포	20,147
제주	한림	1위판장	18,357
경남	기선권현망	본소	16,501
경북	구룡포	트롤	15,483
전남	신안	송도	14,468
경남	굴수하	본소	13,870
충남	보령	활어	13,713
경북	후포	후포	13,577
경북	죽변	죽변	12,886
전북	군산	해망동	12,639
제주	성산포	본소	12,322
충남	서산	안흥	11,553
경북	강구	강구	11,332
경북	포항	죽도	11,294
강원	동해시	목호항	11,223
경남	남해군	선어	10,841
경북	축산	축산	10,757
전남	진도	접도	9,663
전남	해남	어란물김	9,636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9,327
전남	고흥	구암물김	9,119
강원	속초시	속초항	8,789

○ 2007년 위판금액을 살펴보면, 1,000억이상의 위판장이 1개소, 500억~1,000억의 위판장이 7개소, 100억~500억의 위판장이 51개소, 50억~100억의 위판장이 28개소였으며, 10억~50억의 위판장이 41개소로 가장 많았음. 1억~10억의 위판장은 25개소, 1억미만의 위판장이 27개소임

<표 3-19> 위판금액별 위판장 분류

구분	개소	비율
1,000억 이상	1	0.6%
500억~1,000억	7	3.9%
100억~500억	51	28.3%
50억~100억	28	15.6%
10억~50억	41	22.8%
1억~10억	25	13.9%
1억 미만	27	15.0%
합계	180	100.0%

- 위판금액별로 상위 30개소를 정렬해보면, 위판금액이 가장 많은 위판장은 부산의 공동어시장으로 272,857백만원이며, 다음으로 여수수협외 선어위판장이 72,167백만원, 성산포수협의 본소위판장이 72,022백만원임

<표 3-20> 위판금액 상위 30개소(2007년)

(단위 : 백만원)

시도	조합	위판장명	금액
부산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272,857
전남	여수	선어	72,167
제주	성산포	본소	72,022
제주	한 립	1위판장	71,414
경남	기선권현망	본소	70,843
전남	목포	동부	69,029
제주	서귀포	본소	58,000
경남	굴수하	본소	55,348
전남	신안	송도	44,782
충남	보령	활어	43,044
부산	부산시	자갈치	38,096
경북	포항	죽도	36,990
경남	삼천포	선어	36,088
충남	서산	안흥	35,700
경남	마산	본소	35,405
전남	여수	건어	34,840
전북	군산	해망동	34,318
인천	옹진	연안	31,256
경북	후포	후포	30,206
부산	부산시	남포동	30,145
경북	경주	감포	29,825
경남	통영	본소	29,335
인천	인천	연안	29,117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28,290
경남	삼천포	건어	26,144
부산	부산시	다대	25,351
제주	제주시	본소	25,236
전남	고흥	녹동	24,869
경북	구룡포	잡어	24,172
경남	삼천포	활어	22,484

○ 위판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위판장이 4.0~5.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바. 필수시설

- 필수시설 항목은 주차장, 냉장실, 저빙실, 오물처리장, 정화조,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 대기실·출하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시설규모를 파악하였으며, 시설 유무는 <표 3-21>와 같음

<표 3-21> 필수시설별 위판장 분류

필수시설	유		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주차장	102	56.7	78	43.3
냉장실	56	31.1	124	68.9
저빙실	43	23.9	137	76.1
오물처리장	44	24.4	136	75.6
정화조	31	17.2	149	82.8
위생시설	106	58.9	74	41.1
사무실	120	66.7	60	33.3
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	43	23.9	137	76.1

- 주차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80개소 중 102개소이며,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곳에 위치한 소규모의 위판장들은 별도의 주차시설은 없지만 위판장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곳들이 많았음
- 냉장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56개소이며, 저빙실을 갖춘 위판장은 43개소로 나타남. 위판장의 규모가 크고 위판물량이 많은 위판장의 경우 대부분 냉장실 또는 저빙실을 갖추고 있었음
- 오물처리장을 갖춘 위판장은 44개소, 정화조를 갖춘 위판장은 31개소이며,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6개소로 나타남
- 사무실을 갖춘 위판장은 120개소임. 대부분의 위판장들이 경매, 위판장과 수협 사무실이 함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음. 물양장으로 사용되거나, 연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판 물량이 소규모인 경우 수협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는 위판장들이 있었음

- 하주대기실과 출하상담실을 갖춘 위판장은 43개소로 조사되었음

사. 부수시설

- 부수시설로는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냉동시설, 염장조, 염장실, 소각시설, 용융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중도매인사무실, 중도매인점포, 유류공급시설, 활어수조, 수족관,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시설규모를 파악하였으며, 시설 유무는 <표 3-22>와 같음

<표 3-22> 부수시설별 위판장 분류

부수시설	유		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상온창고	15	8.3	165	91.7
가공처리장	8	4.4	172	95.6
제빙시설	42	23.3	138	76.7
냉동시설	46	25.6	134	74.4
염장조	2	1.1	178	98.9
염장실	1	0.6	179	99.4
소각시설	4	2.2	176	97.8
용융기	1	0.6	179	99.4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5	2.8	175	97.2
오수처리시설	22	12.2	158	87.8
중도매인사무실	85	47.2	95	52.8
중도매인점포	18	10.0	162	90.0
유류공급시설	53	29.4	127	70.6
활어수조	41	22.8	139	77.2
수족관	14	7.8	166	92.2
휴게실	23	12.8	157	87.2

- 상온창고를 갖춘 위판장은 15개소이며, 가공처리장을 갖춘 위판장은 8개소로 나타남. 대부분의 위판장들이 창고 또는 가공처리 시설이 없었으며, 위판장에 속한 가공처리장은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빙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42개소, 냉동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46개소임. 제빙시설과 냉동시설은 냉장, 저빙시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위판장 규모가 크고 위판물량이 많은 위판장에서 갖추고 있었음

- 염장조를 갖춘 위판장은 2개소, 염장실을 갖춘 위판장은 1개소임. 염장처리는 위판장에서 위판된 후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판장 내에서 염장처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소각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4개소, 용융기를 갖춘 위판장은 1개소로, 대부분의 위판장이 갖추고 있지 않았음.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5개소,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2개소였음
- 중도매인 사무실을 갖춘 위판장은 85개소, 중도매인 점포를 갖춘 위판장은 18개소로 산지위판장의 경매와 가격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위판장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류공급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53개소임. 활어수조를 갖춘 위판장은 41개소이며, 수족관을 갖춘 위판장은 14개소로 활어를 취급하는 위판장 대부분이 활어수조 및 수족관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위판장은 23개소이며, 하주대기실과 휴게실을 겸한다고 답한 위판장들도 상당수 있었음

아. 위생기준

- 위생기준으로 총 여섯가지의 항목을 정하였음. 첫째, 지하수 등의 취수원의 위치는 화장실, 폐기물, 폐수처리시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와의 적정거리 유지 여부(20m 이상), 둘째, 어체 세척 등 수산물이 직접 닿는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정수처리된 해수의 사용 여부, 셋째, 외부의 먼지, 해충, 조류유입의 방지를 위한 위판장의 구획차단여부, 넷째, 부수시설과 위판장의 분리구획 여부, 다섯째, 소각시설 및 용융기와 위판장의 적정한 거리유지, 여섯째, 위판되는 수산물과 바닥사이의 적정한 거리유지 여부(30cm 이상)임

<표 3-23> 위생기준별 위판장 분류

위생기준	시행		비시행		해당사항없음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취수원의 위치의 적정거리 유지 여부	99	55.0	44	24.4	37	20.6
정수처리된 해수의 사용 여부.	52	28.9	87	48.3	41	22.8
위판장의 구획차단여부	60	33.3	93	51.7	27	15.0
부수시설과 위판장의 분리구획 여부	93	51.7	51	28.3	36	20.0
소각시설 및 용융기와 위판장의 적정한 거리유지	36	20.0	37	20.6	107	59.4
위판되는 수산물과 바닥사이의 적정한 거리유지 여부	96	53.3	53	29.4	31	17.2

- 지하수 등의 취수원의 위치는 화장실, 폐기물, 폐수처리시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와의 적정거리 유지 여부는 시행 위판장이 99개소, 비시행 위판장이 44개소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위판장이 37개로 취수원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위판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어체 세척 등 수산물이 직접 닿는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정수 처리된 해수의 사용 여부는 시행 위판장이 52개소, 비시행 위판장이 87개소, 해당사항 없는 위판장이 41개소로 정수 처리된 해수를 사용하지 않는 위판장이 더 많았음
- 외부의 먼지, 해충, 조류유입의 방지를 위한 위판장의 구획차단여부는 시행위판장 60개소, 비시행 위판장 93개소, 해당사항 없는 위판장 27개소로 구획차단이 되어있지 않는 위판장이 더 많음
- 부수시설과 위판장의 분리구획 여부는 시행위판장 93개소, 비시행 위판장 51개소, 해당사항 없는 위판장 36개소로 분리구획된 위판장이 더 많음
- 소각시설 및 용융기와 위판장의 적정한 거리유지는 시행위판장 36개소, 비시행 위판장 37개소, 해당사항 없는 위판장 107개소로 절반이 넘는 위판장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위판되는 수산물과 바닥사이의 적정한 거리유지 여부는 시행위판장 96개소, 비시행 위판장 53개소, 해당사항 없는 위판장 31개소로 절반 정도의 위판장이 수산물과 바닥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 장비 보유 현황

- 장비보유현황으로 지게차, 팔레트, 기타 장비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음

<표 3-24> 장비보유현황별 위판장 분류

장비보유	유		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지게차	39	21.7	139	77.2
팔레트	40	22.2	140	77.8

- 지게차를 보유한 위판장은 39개소, 팔레트를 소유한 위판장은 40개소로 보유하지 않은 위판장이 더 많았음
- 지게차와 팔레트 외 기타 장비로 컨베이어 벨트, 카고트럭, 하륙용 굴베어, 활어상자, 크레인 등을 보유한 위판장이 16개소였음

자. 이용 어선 현황

- 이용어선현황은 1일 기준으로 정박 가능한 척수와 실제 이용 척수를 조사함. 그러나 어선의 톤급에 따라 정박 가능 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 어선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위판장이 실제 이용 척수보다 정박 가능 척수가 더 많았으나, 간혹 실제 이용 척수가 더 많은 위판장도 있었음
- 정박가능척수를 살펴보면, 300척 이상 정박이 가능한 위판장이 10개소, 100척~300척이 31개소, 50척~100척이 35개소, 30척~50척이 23개소이며, 10척~30척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음. 10척 미만도 16개소 있었으며, 그 외 기타에는 물양장으로 이용하는 위판장이 별도로 있거나 취급품목을 차량으로 수송 받는 형태의 위판장도 있었음

- 실제이용척수로는 300척 이상 정박이 가능한 위판장이 6개소, 100척~300척이 13개소, 50척~100척이 35개소, 30척~50척이 32개소이며, 10척~30척이 41개소로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10척미만은 22개소, 기타 31개소임

<표 3-25> 이용어선 현황별 위판장 분류

이용어선	정박가능척수	실제이용척수
300척 이상	10	6
100척~300척	31	13
50척~100척	35	35
30척~50척	23	32
10척~30척	38	41
10척미만	16	22
기타	27	31
합계	180	180

카.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수집·분배 방법, 소비·반출물량, 배후지역 관련업체 현황, 위판장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현황, 소비시장 접근성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음
- 위판물량의 수집방법별로는 관내어선이 100%인 위판장이 49개소, 관내어선이 50% 이상이며 나머지는 인근지역 어선이 이용하는 위판장이 78개소, 관내어선 보다 인근어선의 비율이 더 높은 위판장이 24개소로 인근어선보다 관내어선이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26> 수집방법별 위판장 분류

수집방법	관내어선 100%	관내어선 50%이상	관내어선 50%미만	미응답
개소	49	78	24	29
비율	27.2	43.3	13.3	16.1

- 수집한 위판물량의 분배방법별로는 중매인이 100%를 유통하는 위판장이 124개소로 전체 위판장의 약 70%를 차지함. 그 외 수집상을 통해서도 위판물량의 일부분이 유통되는 위판장이 20개소임

<표 3-27> 분배방법별 위판장 분류

분배방법	중매인 100%	중매인 50%이상	중매인 50%미만	미응답
개소	124	14	6	36
비율	68.9	7.8	3.3	20.0

- 소비·반출물량별로 위판장을 분류하면, 위판물량을 100% 관내소비하는 위판장이 10개소, 50%이상을 관내소비하는 위판장이 30개소이며, 관내소비보다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물량이 더 많은 위판장이 54개소임. 그리고 절반 가량의 위판장에서는 위판물량을 중도매인에게 넘긴 이후의 관내·타지역 반출현황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음

<표 3-28> 소비·반출물량별 위판장 분류

소비·반출물량	관내소비 100%	관내소비 50%이상	관내소비 50%미만	미응답
개소	10	30	54	86
비율	5.6	16.7	30.0	47.8

-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현황으로 위판장 안내시설, 안내표지판, 조경시설 등의 설치 유무를 조사하였음. 위판장 안내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47개소, 안내표지판을 갖춘 위판장은 59개소, 조경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32개소로 조사항목을 갖추지 못한 위판장이 훨씬 더 많았음

<표 3-29> 인프라시설구축현황별 위판장 분류

인프라시설구축	유		무		미응답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안내시설	47	26.1	109	60.6	24	13.3
안내표지판	59	32.8	97	53.9	24	13.3
조경시설	32	17.8	123	68.3	25	13.9

2. 지역별 위판장 현황

○ 앞서 전국 위판장의 현황을 실태조사 항목별로 분류하였으며, 이어서 지역별로 위판장 현황을 정리하였음

<표 3-30> 지역별 위판장 현황

지역	조합	위판장명	취급부류	경매방식	중도매인수	'07위판실적		비고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인천	중앙회	인천	선어	경매	25	7,508	19,624	
	인천	연안	선어, 활어	경매	32	3,574	29,117	
		소래	선어, 활어	경매	13	2,605	22,115	
	경인북부	외포	기타	경매	6	2,730	4,302	
	웅진	연안	활어	경매	18	3,962	31,256	
영흥	영흥	활어, 패류	경매	10	1,517	5,662		
강릉시		주문진항	선어, 활어, 패류	경매	17	9,327	28,290	
		사천진항	선어, 활어, 패류	경매		481	1,020	
		우암진항						위판장없음
동해시		금진항	선어, 활어	경매		20	293	
		목호항	선어, 활어	경매	18	11,223	22,409	
		어달항						위판장없음
속초시		속초항	선어	경매	11	8,789	22,044	
		동명항	활어	입찰		507	4,627	
		사진항						개장준비중
강원	대포	대포항	선어, 활어	입찰	2	962	5,510	
	삼척시	삼척항	선어, 활어	경매	19	6,816	11,511	
		장호항	선어, 활어	경매	5	1,151	1,951	
		초곡항						위판장없음
	원덕	원덕항	선어	경매	7	1,497	4,961	
고성군		대진항	선어, 활어	입찰	5	821	6,103	
		거진항	선어, 활어	입찰	6	2,871	8,623	
		아야진항	선어, 활어	입찰	5	1,661	4,088	
		봉포항	선어, 활어, 패류	입찰				아야진에 위판
		초도항						위판장없음

제3장 수산물 산지위판장 실태 조사

지역	조합	위판장명	취급부류	경매방식	중도매인수	'07위판실적		비고
						물량 (톤)	금액 (백만원)	
강원	죽왕	가진항	활어	입찰	3	1,203	2,332	
		공현진항	활어	입찰	3	356	1,373	
		오호항	활어	입찰	3	226	1,060	
		문암1항	활어	입찰	3	140	529	
		문암2항	활어	입찰	3	109	467	
	양양군	남애항	선어,활어,패류	경매	24	1,768	8,515	
		물치항						위판장없음
		동산항	선어,활어	입찰	5	230	777	
충남	서천	장항	선어,건어,해조	경매	22			
		홍원	선어,활어,패류	경매	30	1,445	10,568	
	서면	마량	선어,활어, 패류,해조	경매,입찰	30	7,904	7,751	
		활어	활어	경매	14	13,713	43,044	
	보령	선어	선어,패류,건어	경매	16			활어합산
		신혹	대천항	활어,패류,건어	경매	39	1,960	7,722
	무창포 어촌계	활어	모두 취급	입찰	8	170	1,825	
		서산	안홍	선어,활어,건어	경매	23	11,553	35,700
	건어물		선어,활어	경매	23			안홍합산
	도황 어촌계	연포	선어,활어	경매	20		1,527	
	남면	몽산포	활어	입찰	12	216	1,986	
		마검포	활어	입찰	12	102	909	
		드르니	활어	입찰	12	164	1,579	
	안면도	백사장	선어,활어	경매,입찰	11	714	7,214	
영목		활어	입찰	4	283	1,390		
전북	군산	해망동	선어	경매	65	12,639	34,318	
		비용도	활어	경매	26	703	5,324	
전남	목포	동부	선어	경매	29	21,252	69,029	
		서부	선어	입찰	13	2,852	6,816	
	여수	선어	선어,건어	경매	126	40,063	72,167	
		건어	건어	경매	126	7,800	34,840	
		군내	활어	경매	23	1,169	9,540	
		남면	해조류					임시폐쇄(07)
	거문도	거문도	선어,활어	경매	13	6,702	12,562	
	제3,4구 잠수기	국동	패류	경매	33	1,455	7,193	
	고흥	녹동	선어,활어,패류	경매	55		24,869	
		발포물김	해조류	경매	30	5,404	6,143	
구암물김		해조류	경매	32	9,119	1,130		
송림		활어	경매	5	38	343		
사도							위판장매각	
독대김	활어	경매	10		1,077			
나로도	수산물	선어,활어	경매	19	935	5,777		
강진	활선어	선어,활어	경매	15	989	9,891		
	사초	활어	경매	5	193	1,938		
해남	어란물김	해조류	경매	7	9,636	10,290		
	마른김	해조류	경매	2	349	4,154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조합	위판장명	취급부류	경매방식	중도매인수	'07위판실적		비고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전남	영광	계마	선어	입찰	9	21	458	
		법성	선어	경매	26	2,955	13,496	
		영광	건어	경매	3	661	747	
	소안	수산물	활어	경매	4	4	300	
	완도	활선어	선어,활어	경매	28	1,394	12,554	
		건어물	건어	경매	29		14,363	
	금일	금일	해조류	경매	13	2,344	8,478	
	진도	서망	선어	경매	15	867	8,307	
		접도	해조류	경매	9	9,663	13,728	
		회동	해조류	경매	13	6,965	7,772	
		원포	해조류	입찰	5			본소합산
		조도	해조류	입찰		845	2,449	
	신안	진도	해조류	입찰	5	2,585	2,385	
		송도	선어,활어,기타	경매	49	14,468	44,782	
후산도	송공	해조류	경매	4	3,720	3,184		
	후산도	선어	경매,입찰	48	1,318	14,023		
경북	포항	죽도	선어	경매	48	11,294	36,990	
		동빈활어	활어	경매	12	1,011	10,835	
	구룡포	활어	선어,활어	경매	20	2,744	7,656	
		잡어	선어,활어	경매	23	7,024	24,172	
		선동	선어	경매	10	3,662	6,012	
		트롤	선어	경매	10	15,483	14,551	
		장기	선어,활어	경매	13	1,505	6,908	
		대보	선어,활어	경매	17	1,020	1,211	
	경주	감포	선어	경매,입찰	20	20,147	29,825	
	강구	강구	선어,활어	경매,입찰	19	11,332	20,204	
		창포	선어	경매	6	48	268	
	축산	축산	선어	경매	34	10,757	14,860	
		대진	활어	경매	5			축산 합산
	죽변	죽변	선어,활어	경매	17	12,886	3,290	
		원남	선어,활어	경매	9	2,756	2,908	
	후포	후포	선어,활어	경매	13	13,577	30,206	
		사동	활어	입찰	2			후포 합산
		구산	활어	경매	7			후포 합산
울릉	태하	선어	입찰	1	218	470		
	천부	선어	경매		38	139		
	저동	선어	경매	27	6,049	10,364		
	현포	선어	경매		287	553		
경남	마산	본소	선어	경매	68	20,810	35,405	
		고현	선어,활어	경매	13	305	784	
		광암	선어	경매	4	87	330	
	제1,2구 잠수기	마산지소	패류	경매	17	2,026	3,426	
	기전 권현망	마산지소	건어	경매	43	4,353	18,298	
	진해시	속천	선어,활어	경매	18	535	4,112	
		제덕	활어	경매	18	388	3,856	

제3장 수산물 산지위판장 실태 조사

지역	조합	위판장명	취급부류	경매방식	중도매인수	'07위판실적		비고
						물량 (톤)	금액 (백만원)	
경남	의창	용원	활어	경매	23	6,724	15,012	
		안골	선어,활어	경매	15	124	925	
	통영	본소	선어	경매	22	39,084	293,355	본소합산
		제2위판	선어	경매	22			
		도천동	활어,패류	입찰	28	2,440	13,098	
		견유	활어	경매	9	790	4,907	
	육지	육지		경매				
	사랑	사랑	패류	직판		117	1,210	
	굴수하	본소	패류	경매	31	13,870	55,348	
	기선 권현망	본소	건어	경매	25	16,501	70,843	
	멍개	멍개	패류	입찰		3,516	5,902	
	근해통발	근해통발	활어	입찰		1,095	5,831	
	서남해	서남해	활어	입찰	16	1,168	6,300	
	삼천포	선어	선어	경매	28	33,088	36,088	
		활어	활어	경매	20	2,538	22,484	
		패류	패류	경매	16	1,860	7,163	
		건어	건어	경매	33	4,451	26,144	
	사천	활어	활어	경매	8	827	4,013	
	거제	장승포	선어,활어	경매	8	6,201	3,860	
		능포	활어	경매	6	284	622	
		성포	활어	경매	5	227	1,614	
		옥포	활어	경매	4	123	250	
		구조라	활어	경매	6	185	1,075	
		대포	활어	경매	7	238	889	
		외포	활어	경매	13	3,722	4,824	
	제1,2구 잠수기	거제지소	패류	경매	6	409	1,334	
	고성	당항	활어	경매	13	96	301	
		삼산	활어	경매,입찰	7	36	285	
		하일	활어	경매	15	311	2,243	
		동해	활어	경매	10			우두합산
		맥전포		경매				폐장
		우두	활어	경매	10	162	1,150	
남포항	패류	경매	13	2,250	10,092			
남해	선어	선어	경매	9	10,841	7,838		
	활어	활어	경매	12	2,410	18,200		
	원천	활어	경매	12	65	771		
	평산	활어,패류	경매	7	233	1,371		
	단항	활어,패류	경매	13	1,086	8,068		
	감암	활어,패류	경매,입찰	18	2,680	12,836		
	선소	활어	경매	8			2008개장	
제1,2구 잠수기	남해	패류	경매	4	199	821		
하동군	재첩	패류	입찰	6	168	419		
	갈사지점	활어	경매	4	133	763		
	노량	활어	경매	22	2,671	14,651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조합	위판장명	취급부류	경매방식	중도매인수	'07위판실적		비고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울산	울산	방어진	선어,활어	경매	29	8,271	17,724	신축공사예정
		정자						
부산	부산공동어시장		선어,활어	경매	97	299,000	272,857	
	부산시	자갈치	선어	경매	51	31,868	38,096	
		남포동	건어	경매	60	5,710	30,145	
		다대	선어,활어,해조	경매	23	25,058	25,351	
		민락	활어	입찰	10	527	2,134	
	제1,2구 잠수기	부산	패류	경매	31	8,266	11,881	
	부산동부	대변	선어	경매	21	6,257	6,457	
학리		활어	경매	7	7	57		
제주	한림	1위판장	선어	경매	39	18,357	71,414	1위판합산
		2위판장	선어	경매	39			
	제주시	본소	선어,패류	경매	26	5,288	25,236	
	추자도	추자	선어	경매	12	3,480	1,700	
		신양	선어			6	29	
	서귀포	본소	선어	경매	38	8,252	58,000	
성산포	본소	선어,활어	경매,입찰	32	12,322	72,022		

○ 인천지역에는 위판장은 총 6개소이며, 2007년 위판실적은 웅진수협이 연안위판장이 31,256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수협이 연안위판장과 소래위판장임

○ 강원지역의 위판장은 총 30개소이지만, 이 중 우암진항, 어달항, 초곡항, 덕산항, 초산항, 초도항, 물치항의 7개소 위판장은 위판장 지정고시에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위판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판장 현황에 대한 조사내역이 없음. 또한 속초시수협 사진항위판장은 조사당시 개장준비중이었음

- 2007년 위판실적은 강릉시수협 주문진항위판장이 28,290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해시수협 묵호항위판장, 속초항수협 선어위판장 등임
- 고성군수협 봉포항위판장은 아야진위판장에서 위판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판실적 없었음
- 실제 운영중인 위판장 22개소 중 13개의 위판장이 입찰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이 입찰방식의 위판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충남지역 위판장은 총 15개소로, 이 중 수협소속 위판장이 13개소,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위판장이 2개소임
 - 2007년 위판실적은 보령수협의 활어위판장이 43,044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서산수협의 안흥위판장, 서면수협 흥원위판장 등임
 - 보령수협의 선어위판장의 위판실적은 활어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었으며, 서산수협의 건어물위판장의 위판실적은 안흥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어 별도의 위판실적을 알 수 없었음

- 전북지역의 위판장은 총 2개소임. 2007년 위판실적은 군산수협의 해망동위판장이 34,318백만원으로 비응도위판장보다 높음

- 전남지역의 위판장은 총 35개소는 지구별수협 34개소와 업종별수협 1개소(잠수기수협)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여수수협의 남면위판장은 2007년 이후 임시폐쇄 상태이며, 고흥수협의 사도위판장은 매각되어 조사내역이 없음
 - 2007년 위판실적은 여수수협의 선어위판장이 72,167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목포수협 동부위판장, 신안수협 송도위판장임
 - 진도수협 원포위판장의 위판실적은 본소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어 별도의 위판실적을 알 수 없었음

- 경북지역 위판장은 총 22개소이며, 이 중 2007년 위판실적은 포항수협 죽도위판장이 36,990백만원, 후포수협 후포위판장, 경주수협 감포위판장 순임
 - 축산수협의 대진위판장의 위판실적은 축산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었으며, 후포수협의 3개 위판장 위판실적 또한 일괄 전산처리되어 사동위판장과 구산위판장의 위판실적은 알 수 없었음

- 경남지역은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52개소의 위판장이 있음. 지구별수협이 42개소, 업종별 수협이 10개소(잠수기,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등)임. 이 중 고성수협 맥전포위판장은 폐장되어 조사내역이 없음
 - 2007년 위판실적은 기선권현망수협 본소위판장이 70,843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굴수하수협 본소위판장, 삼천포수협 선어위판장임

- 통영수협 제2위판장의 위판실적은 본소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었으며, 고성수협의 동해위판장의 위판실적은 우두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어 별도의 위판실적을 알 수 없었음. 또한 남해군수협 선소위판장은 2008년에 개장하여 2007년의 위판실적이 없음
- 울산지역 위판장은 총 2개소이며, 이 중 정자위판장은 신축공사예정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조사내역이 없음
- 부산지역의 위판장은 총 8개소이며, 지구별수협 7개소와 업종별수협 1개소로 이루어짐
 - 2007년 위판실적은 공동어시장이 272,857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부산시수협의 자갈치위판장, 남포동위판장임
- 제주지역의 위판장은 총8개소이며, 2007년 위판실적은 성산포수협 본소위판장이 72,022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한림수협 1위판장, 서귀포수협 본소위판장임
 - 한림수협의 2위판장의 위판실적은 1위판장 위판실적에 합산처리 되어 별도의 위판실적을 알 수 없음

3. 위판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전국 공통사항

- 오래된 위판장이 많아 상당수의 위판장들이 위판장 노후화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위판장 개보수를 건의함
- 강제상장제 폐지와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인해 위판량이 감소하여 위판장 경영의 어려움 발생
-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민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출어를 포기하거나 감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위판 실적의 감소로 이어져 위판장 또한 경영상태가 악화됨

- 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소규모의 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모집이 어려우며, 중도매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젊은 인력 양성이 필요함

나. 지역별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1) 인천지역

- 경인북부수협 : 외포위판장은 위판시설이 없어 현재 가건물에서 경매중임. 현대화 시설 갖춘 위판장 설립 요망
- 영흥수협 : 영흥위판장이 인근도시와 멀리 떨어져있어 중도매인 신규 모집이 어려움

2) 강원지역

- 강릉시수협 주문진항위판장, 동해시수협 묵호항위판장, 속초시수협 속초항 등의 몇 개 위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지역의 위판장들은 모두 위판장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속초시수협 : 동명항위판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우천시 비를 맞으며 위판하고 있음. 비가림 시설 필요함
- 삼척시수협 : 삼척항위판장의 시설노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함
- 죽왕수협 : 공헌진항위판장은 현재 물양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판장 시설이 필요함

3) 충남지역

- 충남지역 위판장들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썰물때에 어선의 접안이 어렵다는 점이었음

- 서면수협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기능항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될 것인가 의문시 되며, 그 단편적인 예로 다기능항 설계용역 단계부터 정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어 현재 업무(위판장 건립)를 추진하고자 하여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임
- 보령수협 : 현재 대다수의 지구별 수협이 임의 상장제하에서 조합원의 신뢰에 호소함으로써 위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협은 가격 제시의 역할만 수행할 뿐 극히 소량의 물량만 상장되는 형편임. 원칙적으로는 임의상장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나 차선으로는 중도매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위판을 성실히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특정 혜택(영어자금 추가지원 및 한도상향 조정, 각종 정부 보조사업(어선원 손해공제 국가보조 등) 차등적용)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보완을 건의함

4) 전남지역

- 여수수협 : 매립지에 위판장을 신축하여 침하에 의한 바닥균열과 기울어짐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염분이 건물로 스며들어 철근이 부식상태로 외부에 표출되어 있는 등 위생상태와 미관을 해치고 있는 등 위판장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국비 지원을 요망함
- 고흥수협 : 낙지 마리당 단가 매겨 위판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조정이 시급하나 중도매인들이 계속 마리당 단가 고수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강진수협, 영광수협, 진도수협 : 위치상 외진 곳에 위치하여 중매인 모집 어려움. 중매인 모집 홍보 요청함.
- 해남수협, 완도수협, 금일수협 : 위판장 규모가 협소하여 실질적 위판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판시설 확충이 절실함

5) 경북지역

- 강구수협 : 내천(오십천)과 해수면이 연접하고 있어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토사 등의 퇴적으로 선박 출·입항과 어획물 양육을 위한 위판장 기능의 축소로 외지선박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항준설 및 토사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요망
- 축산수협 : 위판장 시설이 노후하며 안전진단 후 시설보완 및 이전이 시급함
- 울릉군수협 : 저동위판장의 일부분은 시설노후화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위판장 재건축 및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태하위판장은 위판장 규모가 협소하여 실질적 위판이 지붕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천 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판장 형성이 필요함

6) 경남지역

- 의창수협 : 신항만 준공으로 물길이 막혀 해수의 공급이 어려워 위판장 앞의 해수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음. 위판장에 악취가 나고, 심할 경우 선도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의 해수 펌프 취수지를 확장하여 덜 오염된 해수 사용요망
- 통영수협 : 견유위판장의 주변 개발로 어항에 침전물이 쌓여 간조시 소형선박도 접안하기 힘든 상황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평이 많으니 조속한 시일내 항내 준설 요망
- 명계수협 : 위판장이 따로 없어 매우 불편하나 활명계라는 어종의 특수성과 출하자들이 소규모 영세업체로 분산되어 있어 위판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서남해수협 : 해상 가두리 양식조와 그 중간에 위판장이 더 있는 해상 위판장으로 이루어져, 기상 악화시 위험이 크며, 특히 가두리 양식조의 파손의 위험이 큼

- 삼천포수협 : 선어위판장은 현재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물이 고여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바닥의 복개가 필요하며, 활어위판장은 생활 하수의 바다 유입으로 위판에 사용되는 해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므로 생활하수에 대한 정화가 필요함. 또한 건어위판장은 위판장의 지붕이 앞으로 좁게 나와 있어 우천시 불편함
- 고성군수협 : 하일위판장은 활어위판으로 대야에 활어를 놓고 위판하여 폐사가 발생함. 산소주입기와 활어 수조 필요
- 남해군수협 : 활어위판장과 선어위판장의 어항이 좁고 위판장 규모가 협소하여 확장이 필요하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1, 2구잠수기수협 남해지소 : 위판물량이 없어 폐쇄를 고민중
- 하동군수협 : 노량위판장에서는 현재 남해대교 근처로 위판장이 너무 많아 어가 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건의함

7) 울산지역

- 울산수협 : 방어진위판장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

8) 부산지역

- 공동어시장 : 원활한 위판업무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위판장 개보수 작업을 통한 위판장 현대화 필요
- 잠수기수협 : 위판시 임시 가설 위판장에서 위판하고 있어, 위판장의 신축자금 필요
- 부산동부수협 : 대변위판장은 시설이 협소하여 위판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어

민들의 불편 감소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위판장 시설의 설치가 필요

9) 제주지역

- 제주지역 수협이 공통건의사항은 어항 수심이 얕아서 대형선망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요망하며, 대부분 위판물량이 많아 현재의 위판장 공간이 부족하여 위판장 증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함 등이었음
- 한림수협, 성산포수협, 서귀포수협 : 위판물량이 많아 현재의 위판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위판장 추가 건설 필요함

다. 소결

1) 산지위판장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이상의 위판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위판장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강제상장제 폐지로 인한 위판량 감소와 위판장 경영의 어려움,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위판장의 경영악화, 중도매인의 신규모집 및 젊은 인력 양성 필요 등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은 몇 개 위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판장들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편함을 건의하였으며, 충남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지리적 문제로 인해 썰물때에 어선의 접안이 어려움을, 전남지역은 외진 곳에 위치한 위판장의 중매인 모집 어려움과 도로상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판장의 위판시설 확충을 건의하였음. 경북지역은 시설 노후화된 위판장의 안전진단과 시설보완 및 이전이 시급하며, 경남지역은 주변 어항 개발, 하수 유입 등으로 악화된 수질에 대한 대책 필요함. 또한 부산지역은 원활한 위판업무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위판장 개보수 작업 필요함을 건의하였으며, 제주지역은 어항 수심이 얕아서 대형선망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준설공사가 필요하며, 위판물량이 많아 현재의 위판장 공간이 부족하여

위판장 증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음

<표 3-31> 위판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전국	- 위판장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위판장 개보수 요망 - 강제상장제 폐지로 인한 위판량 감소, 위판장 경영의 어려움 발생 - 유통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가 경영악화가 위판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짐 - 중도매인의 신규모집 및 젊은 인력 양성이 필요
강원	- 몇 개 위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판장들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편
충남	-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썰물때에 어선의 접안이 어려움
전남	- 외진곳에 위치한 위판장의 중매인 모집이 어려움 - 도로상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판장의 위판시설 확충이 필요
경북	- 시설 노후화된 위판장의 안전진단과 시설보완 및 이전이 시급
경남	- 주변 어항 개발, 하수 유입 등으로 악화된 수질에 대한 대책 필요
부산	- 원활한 위판업무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위판장 개보수 작업 필요
제주	- 어항 수심이 얕아서 대형선망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준설공사 요망 - 위판물량이 많아 현재의 위판장 공간이 부족하여 위판장 증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

2) 산지위판장 건립사업

-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의 목적은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륙판매로 어업인수취가를 제고하고, 수산물 수급 및 공급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임
- 낙도, 벽지 준공어항 등 새로운 위판장 시설 확충을 통한 원활한 양륙·판매 및 기존 노후위판장 시설 등의 증·개축으로 수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설 확충을 추진방향으로 함
-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4조제2항이며, 회계명은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및 제주계정)임

-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이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여야 함
- 지원조건은 04년(국비 30%, 용자 30%, 자담 40%) → '05년(국비 30%, 자담70%) → '06부터(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으로 변경되었음

<표 3-32>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구분	내용
목적	-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륙판매로 어업인수취가 제고 - 수산물 수급 및 공급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
추진방향	낙도, 벽지 준공어항 등 새로운 위판장 시설 확충을 통한 원활한 양륙·판매 및 기존 노후위판장 시설 등의 증·개축으로 수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시설 확충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4조제2항
회계명	34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대상자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지원조건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 이상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의 지난 5년간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에 걸쳐 총 18개의 위판장이 신축 또는 개축되었음

<표 3-33>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지원실적('04~'08)

(단위 : 백만원)

연도	개수	시도	수협명	위판장명	사 업 비				
					계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 담
'04	4	충 남	신혹수협	대천항(신축)	1,242	180	-		1,062
		전 북	고창수협	동호(신축)	223	67	67	-	89
		전 남	진도수협	서망사업소(신축)	526	158	157	100	111
		제 주	성산포수협	본소(증축)	102	30	30		42
'05	2	전 남	영광수협	법성포(신축)	659	192	-		467
			장흥수협	정남진(신축)	703	210	-	493	-
'06	2	전 남	나로도수협	수산물(개축)	1,105	440	-		665
		경 북	울릉수협	현포(개축)	500	150	-		350
'07	5	강 원	고성수협	아야진항(개축)	210	84	-	126	-
			양양수협	낙산(신축)	300	120	-	135	45
		경 남	진해수협	속천(개축)	800	320	-	240	240
			통영수협	제2위판장(신축)	1,295	280	-	210	805
		제 주	제주시수협	김녕(신축)	810	320	-	240	250
'08	5	강 원	고성수협	공현진항(개축)	300	120	-	90	90
		경 북	경주수협	감포(증축)	2,780	1,112	-	834	834
		충 남	보령수협	활선어(신축)	750	300	-	225	225
			서천수협	홍원(신축)	700	280	-	210	210
		전 남	진도수협	선어(신축)	1,000	400	-	3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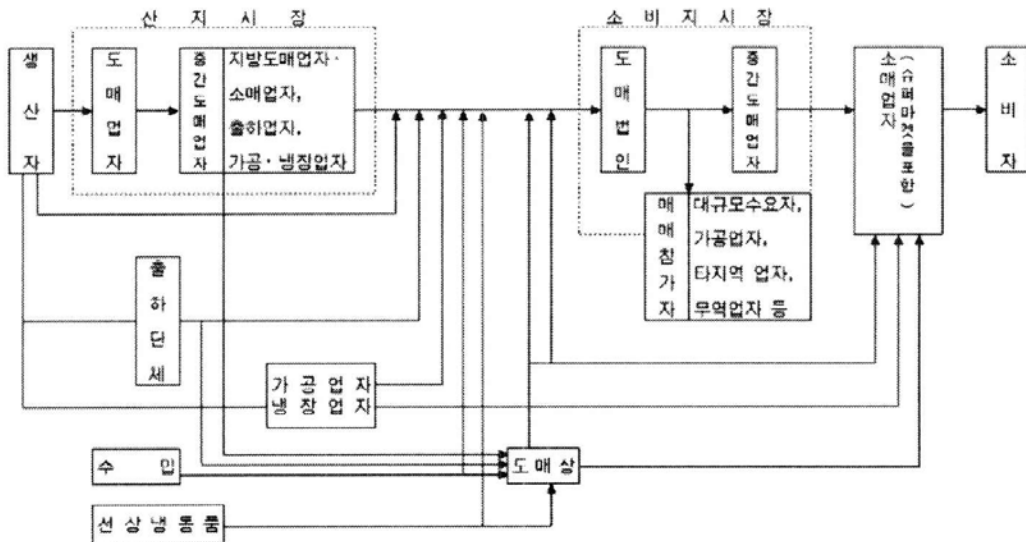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제4장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사례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

1. 수산물 유통현황

- 어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세계 제 1위의 수산국인 일본은 어획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식업과 수산 가공업 및 원양어업이 발달함. 막대한 양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본에서는 어패류가 싸고, 많은 양이 안정되게 공급되어야 함
- 일본의 수산업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발달하여 양식 어획 생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최근 물류비용 등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산지 생산자에게 배송을 요구, 도매시장을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배송역할까지 전담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수산물은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 최종 소매 점포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임
- 일본의 최종단계에 있어서의 용도별 출하량을 조사한 결과 총선어의 약 31%, 냉동품의 26%가량이 선어로 소비되고 있으며 선어로 소비되는 것은 횡감용, 찌개·구이·조림을 위한 소형으로 절단 가공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 일본 수산업이 위축되면서 수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수입 수산물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어업종사자들의 고령화 현상 또한 일본 수산업의 문제이고, 일본의 산지시장 문제점은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취급물량 감소, 수산물 소비부진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의 저가격화 및 가격정체임
- 일본 수산물 유통 채널을 도식화 하면 <그림 5-1>과 같으며,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경제주체가 개입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유통채널이 존재함



자료 : 「도매시장의 현상과 과제」, 농림수산성 식품유통국 시장과, 1995

<그림 4-1> 일본 수산물 유통

- 일본 수산물 유통채널을 유형화하면 크게 시장유통채널과 시장의 유통채널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유통채널은 산지유통단계 혹은 소비지유통단계에서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채널형태이며, 시장의유통 채널은 어느 쪽의 유통단계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채널 형태임
- 시장유통 채널의 형태는 도매시장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도유통」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산물 유통 방식은 과거에 주로 산지에 본거지를 둔 도매상이 중심이 되어 유통기능을 맡고 있던 「도매상제 기구」와 구별하여 「도매시장기구」라고 함
- 일본은 Supply Chain Management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 절차(Supply Chain)를 개혁하고, 유통경로 단축과 물류합리화, 생산·유통·소비지간의 정보공유체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유통가 공개선 모델 사업자금조성비」로 시행하였음

- SCM은 수산물을 공급함에 있어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공급과정 전체의 재편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함에 있음
- 최근에는 수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목표를 생산중심에서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확대. 수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수산가공업의 경영체질 강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대책 등을 수립하였음

2. 시장별 유통현황

가. 도매시장에서의 저온유통

- 전통적인 수산물 도매상을 통하는 것과 현대화된 도매상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으로 나뉘며 현대화된 도매상에서는 제대로 된 냉동고와 냉장고를 구비하여 저온관리, 재래도매상은 냉동고와 냉장고의 구비 및 관리가 저온관리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며, 또한 수산물의 취급도 외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음
-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시장 전체에 저온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산물의 취급도 선도보존에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음

나. 소비시장에서의 저온유통

- 경매를 마친 수산물은 가공공장이나 냉동창고 또는 중도매인을 거쳐 대형 할인점, 백화점이나 소매상으로 유통되며, 할인점에서는 냉동고와 냉장고를 완비하였으며, 이 경우 포장어류는 쇼케이스에 진열하여 소비, 비포장 수산물은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을 깔아 선도를 유지하면서 판매됨

- 냉동품은 투명한 냉동 쇼케이스에 따로 전시되어 판매되어 수산물의 저온관리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매점에서는 보통 냉동창고는 구비하고 있지만, 냉장수산물은 그냥 얼음을 깔아 저온관리되며 이 경우에 당일에 소비되지 않으면 다시 냉동하는 경우도 많음
- 이 경우, 그 수산물은 동결-해동과정을 거치면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가치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저온관리가 대단히 취약한 실정임
- 일본의 소비시장에서 수산물 저온관리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경매를 마친 수산물은 도매시장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할인점, 백화점, 수산물 전문유통업체 또는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의 수산물 전문유통업체에서는 수산물의 저온유통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음
- 일본의 소매점에서 저온관리 형태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전문점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판매점 안에 냉장고와 냉동고를 각각 구비, 냉장품도 얼음을 주위에 채운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수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저온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다. 유통 변화

- 일본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공급 측 유통, 중간 유통, 수요 측 유통으로 크게 구성돼 있는데 수산물 공급 구조의 변화, 시장 외 유통의 확장, 대형마트의 유통 주도력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각종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중요한 변화는 수산물의 중간유통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 수산물의 중간유통은 소비지도매시장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변화임. 일본의 중앙도매시장은 최근 집하 우위성이 떨어지면서 크게 붕괴하고 있음
- 이처럼 집하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산지 유통시스템이 어업생산량 감소로 인해 집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작됐고 공급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수입수산물, 양식물, 활어, 가공품 등의 유통과정이 다른 루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아울러 도매시장에 강력한 공급 기능을 가진 유통인이 증가하면서 중앙도매시장의 집하기능과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외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음
- 수입수산물과 양식물, 활어, 가공품 등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으며 이미 냉동 참치와 새우, 가공품, 활어 등의 품목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주요 유통루트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새로운 유통루트로 등장해 강력한 공급력을 과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장 외 유통의 확장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의 주도력도 크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과 시장간 업자와 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며, 중앙도매시장의 시장 수는 지금까지 7차에 걸친 정비계획에 의해 전국에서 53개 시장으로 증가했음

라. 도매시장 제도의 변화

- 도매시장 제도의 변화는 유통환경조건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변화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원칙에 관한 주된 정책대응 내용을 살펴보면, 1971년에 새로운 「도매시장법」이 성립되면서부터 2회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1) 1999년 법개정

- 1999년 법개정의 취지는 “도매시장을 둘러싼 상황 변화(산지의 대형화, 시장외유통의 증대, 관련업자의 경영악화 등)에 대처하여 도매시장의 새로운 전개와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신용력 향상을 위한 도매법인과 중간도매업자의 경영체질 강화, 시장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거래방법의 개선, 유통의 광역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재편의 원활화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도매시장법 및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관하여」, 1999년 7월)하는 것임
- 주된 개정 내용은 시장관련업자의 경영체질의 강화,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방법 개선, 도매시장 재편 등의 추진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도매시장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거래방법에 대해서는,
 - ①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는 공정 및 효율이어야 하는 취지를 명시함과 동시에, 거래, 수량, 가격 등의 공표 조치를 충실히 함(정보공개의 충실)
 - ② 거래방법에 관해서는 개설자가 시장 및 품목마다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업무규정(조례)으로 설정함(경매·입찰원칙의 폐지). 이 경우에는 매취매매에 관한 가격·수량의 공표, 최저경매수량의 설정, 시장거래위원회에 의한 개선의견 등의 조치를 강구함
 - ③ 시장관련업자 등으로 구성하는 시장거래위원회의 설치, 확실한 결제확보의 명시, 상물(商物)일치원칙, 수탁판매규제의 완화 등을 도모함

2) 2004년 법개정

- 2004년 법 개정의 취지는 “최근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생산·소비 양측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심·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도모되도록 도매시장의 거래규제의 완화 및 적정한 품질 관리의 추진, 도매시장 재편의 원활화 등의 조치를 강구”(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도매시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개요)에 관하여」, 2004년 6월)하는 것임
- 주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① 도매시장의 품질관리 고도화를 도모함
 - ② 상물(商物) 일치규제의 완화(제39조), 즉 전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거래방법에 의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매할 때는 시장 내의 현물(現物)을 반입하지 않아도 됨
 - ③ 도매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완화, 즉 도매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위해 도매법인 등이 매취집하, 시장외에서의 판매, 기능·서비스에 적절한 위탁수수료의 징수를 가능케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함. 단, 수탁수수료에 관한 규정(자유화)에 관해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④ 중간도매업자에 대한 재무기준의 명확화, 즉 중간도매업자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중간도매업자의 재무기준을 정해 이것을 기초로 경영을 개선함
 - ⑤ 거래정보를 충실히 공표함

마. 산지유통정책의 전개와 과제

- 수산물 산지시장의 대부분은 도매시장법에서 규정되는 「기타 시장」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어업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청이 주체가 되고 있음
- 효율화와 기능 강화는 수산물 산지 유통 정책의 중심 과제이며, 소위 산지유통재편의 정책이념으로서 내세워 왔음. 예를 들면,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수산물 유통의 근대화(=효율화)를 목적으로, 1969년부터 추진되는 「산지유통가공센터 조성사업」(1969년~1979년)과, 유통기능의 고도화와 집약화를 목적으로 한 「유통가공 거점정비사업」(1980년~1986년) 등이 있음
- 또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와 산지가격형성력의 저하 등을 배경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산지유통가공 기능강화대책사업」(2000년~2005년)이, 그리고 경쟁력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산지시장합병추진대책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지시장유통은 기본적으로는 「push형 유통」으로서의 기능임. 즉 이 유통모델에서 생산자는 어획물을 어업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어업협동조합은 수탁한 어획물을 경매·입찰을 원칙으로 산지중개인에게 도매만 하면 유통(물류)에 관한 역할은 종료되고, 그 후의 유통은 산지중개인이 중심이 되어 도매업인과 중간도매업자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기본패턴임
- 산지시장유통을 둘러싼 환경조건의 격변은 「push형 모델」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는데, 즉 저가격 수입품의 대량공급과 소비자 수요의 변화가 기존 산지시장 유통 채널에 수정을 가하게 되어 생산자와 어업협동조합이 과거처럼 원활히 어획물을 유통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업생산 부진이 더해져 산지시장 유통에 있어서 가격형성기능의 저하(산지가격의 하락과 높은 기회비용)와 산지시장 경영의 부진(높은 원가)이 문제가 되고 있음

제2절 협동조합 경영위기와 산지유통 개선

1. 어업협동조합 경영위기 현황

가. 생산량 감소/어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격하락

- 일본의 최근 10년간(1997년-2006년)의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생산량은 30.1%, 생산금액은 3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어련(전국어업협동조합, 우리나라 수협중앙회 해당) 조합원의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 연안어업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30%가 65세 이상) 조합원수는 약 7만명이 감소(21% 감소)
- 한편, 수산물의 수입증가와 더불어,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어업용 유류의 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이 처해 있는 등 대내외적인 어업여건이 매우 악화

나. 전어련의 사업 적자

- 전어련의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판매사업(경제사업) 규모는 최고조에 비해 5,000억엔 이상 감소
- 또한, 경제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어련의 사업이익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은 점점 확대
- 따라서 전어련으로서는 어업경영을 유지한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임

다. 전어련의 극복을 위한 과제

- 첫째, 전어련의 운영과 사업 활동에 대한 충실
 - 전어련의 본질적인 역할인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전어련에 힘을 모아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하여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것
- 둘째, 전어련의 사회적 역할 실현
 - 조합원의 경영과 생활을 지킨다는 본래의 사명과 함께 수산기본법의 이념 실현을 위해 수산물의 안정공급 확보, 수산식료 공급 산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 환경보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실현
- 셋째, 전어련의 경영개혁
 - 수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사업체로써의 재구축을 향하여 조합원 및 임직원이 일체가 되어 사업과 조직 및 경영개혁을 실현하는 것

2. 어업협동조합 경영위기 극복 대책

가. 어업협동조합의 합병

- 소규모 어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장래의 조합원수를 예측하여 합병을 추진
 - 즉,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정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경우 5~10년 후의 조합원수를 예측하여 인근(주변) 어업협동조합과 합병을 도모
- 연도별 어업 통합실적을 살펴보면,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76개 어협이 참가하였으며, 제7차연장까지 거쳐 1967년 2,443개였던 어협수는 2007년 1,109개로 축소되었음

<표 4-1> 연도별 어협 통합실적(2008.09.01 현재)

연도	통합건수	참가어협수	어협수	비고
1967	14	35	2,443	통합조성법규정 건수 79건 참가수 240 어협
1968	25	72	2,371	
1969	21	62	2,309	
1970	19	71	2,275	
1971	13	35	2,261	제1차연장 건수 58건 참가수 150 어협
1972	11	25	2,247	
1973	13	36	2,224	
1974	17	44	2,197	
1975	4	10	2,191	제2차연장 건수 15건 참가수 33 어협
1976	5	12	2,184	
1977	1	2	2,184	
1978	5	11	2,178	
1979	4	8	2,173	제3차연장 건수 13건 참가수 32 어협
1980	5	12	2,164	
1981	3	8	2,155	
1982	2	6	2,152	
1983	0	0	2,151	건수 10건 참가수 20 어협
1984	3	6	2,150	
1985	1	2	2,150	
1986	6	12	2,145	
1987	3	6	2,141	제4차연장 건수 23건 참가수 81 어협
1988	3	13	2,133	
1989	2	7	2,127	
1990	2	7	2,118	
1991	3	8	2,103	제5차연장 건수 68건 참가수 242 어협
1992	13	46	2,071	
1993	11	40	2,035	
1994	14	49	2,001	
1995	13	44	1,970	제6차연장 (합병촉진법) 건수 89건 참가수 367 어협
1996	13	50	1,933	
1997	17	59	1,890	
1998	12	33	1,866	
1999	19	52	1,829	제7차연장 건수 123건 참가수 553 어협
2000	16	80	1,762	
2001	19	70	1,710	
2002	23	132	1,601	
2003	32	124	1,056	
2004	18	52	1,472	
2005	26	149	1,345	
2006	23	103	1,264	
2007	24	125	1,159	
2008	10	58	1,109	
합계	488	1,776		

자료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신용·합병추진부

○ 어협통합실적을 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2008년 어협수는 1,109개소임

<표 4-2> 도도부현별 어협통합실적(2008.09.01 현재)

도도부 현명	1997 년도말 어협수	1998~ 2002년		2002 년도말 어협수	2002~2007년		2007 년도말 어협수	2008년				비 고
		건수	참가수		건수	참가수		건수	참가 수	해산수 (신설)	당월말 미어협수	
북해도	119	7	15	111	17	54	74				74	
아오모리	56	1	2	56	3	8	50				50	
이와테	33	0	0	38	4	15	27				27	
미야기	54	5	19	40	2	35	7				7	
아키타	12	1	9	4	0	0	4				4	
야마카타	1	0	0	1	0	0	1				1	
후쿠시마	17	1	7	11	1	7	5				5	1
이바라키	37	1	6	3	1	2	30				30	
치바	42	1	2	41	0	0	41				41	
동경	23	3	7	19	1	3	17				17	1
가나가와	24	0	0	24	0	0	24				24	
니이가와	52	3	6	49	4	34	19				19	1
후쿠야마	20	3	8	15	2	7	10				10	
이시가와	41	4	15	28	2	29	1				1	
후쿠이	22	2	8	16	1	4	13				13	
시즈오카	31	2	3	30	1	2	29	1	6		24	
아이치	46	0	0	43	4	13	33				33	
미에	110	6	68	47	1	5	42			1	41	
시가	43	1	3	40	1	2	38				38	
교토	23	2	6	18	3	15	6				6	
오사카	23	0	0	523	0	0	23				23	
효고	66	1	3	64	6	18	52	1	2		51	
와카야마	55	0	0	55	3	16	42	2	14		30	
돗토리	19	1	5	15	2	11	6				6	
시마네	29	3	6	26	2	25	3				3	
오카야마	43	0	0	43	4	13	29				29	
히로시마	64	1	2	63	4	8	59				59	1
야마구치	90	3	28	65	6	56	15				15	
가가와	54	6	16	43	4	8	39				39	
도쿠시마	35	0	0	35	0	0	35				35	
에히게	83	4	9	78	3	17	64				64	
고우치	78	3	21	60	4	17	47	1	25		23	
후쿠오카	75	1	6	69	10	34	42	3	6	1	38	
사가	34	0	0	34	2	22	14				14	
나가사키	116	14	38	92	12	30	74	2	5		71	
오이타	30	2	31	1	0	0	1				1	
구마모토	60	6	16	49	3	13	39				39	
미야자키	22	1	2	21	1	2	20				20	
가고시마	68	0	0	68	9	28	49				49	
오키나와	35	0	0	35	0	0	35				35	
합계	1,890	89	367	1,601	123	553	1,159	10	58	2	1,109	4

자료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신용·합병추진부

- 「1현 1어협」 또는 「복수 자립어협」 구축하여 연합회의 전문적인 사업기능 일체화, 현 내의 인재·시설·재산을 활용
 - 어업협동조합(우리나라 일선수협에 해당) 합병을 “합병 기본계획”에 의한 기간 내에 완수
 - 1현 1어협 구축 시 계획 책정단계에서 현·시정촌,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
 - 「복수 자립어협」 추진은 광역 어협합병으로 산지 및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며, 현 어련·신어련과의 사업연계를 강화하여 합병의 특색 살린 판매사업 개발, 구매사업 이용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나. 경영개혁

- 흑자체질 건전경영 실현
 - 흑자체질의 건전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이익」 중시의 경영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의식개혁이 필요
 - 전어련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관리비를 사업으로부터의 수익(사업 총이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위기적 경영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영개혁을 통한 임직원·조합원의 의식변화가 요구됨
- 경영개혁 추진
 - 사업개혁 실천을 위해서는 사업별 손익상황과 비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 조합원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여 사업개선을 추진
 - 이를 위해 각 조직(어업협동조합)의 여건에 맞는 합병사업 및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다. 사업개혁

1) 판매사업 개혁

- 첫째, 전어련(중앙회) 판매사업과 산지(일선조합) 시장기능의 강화가 필요
 - 산지시장의 강화 대책은 전어련의 판매사업의 강화와 일체적으로 간주하여 진행

- 산지시장의 통합과 품질관리의 고도화, 산지시장의 거래기능의 강화, 산지 시장의 물류기능의 강화, 산지시장의 운영개혁(매수인의 공동화 또는 개방화), 인재의 확보·육성이 필요
- 둘째, 소비자 관점의 판매사업 구축이 필요
 -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소비자-거처 니즈(Needs)를 파악한 판매전략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 브랜드의 창출과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 필수
- 셋째, 새로운 판매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전어련(JF), 어련(일선수협), 전어련의 역할분담)
 - 현권역 및 전국역이 기능 분담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
- 넷째, 「산지소비(地産地消)」운동을 추진
 - 어업인 가게(Fishermen Market)에 의한 산지소비시장 거점 만들기, 지역특산 가공사업이나 레스토랑 사업과 어업인 가게 연계 판매, 생활협동조합과 농협과의 연대를 통한 강화 및 확대가 필요
- 다섯째,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직 구축, 즉, 전어련(연합회)과 어업협동조합(회원조합)이 제휴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침」을 확립하여 관리체제를 구축
 - 리스크의 현재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시장의 거래 룰(결제 룰이나 보증금, 여신한도 등)을 현 권역에서 통일할 필요
 - 또한,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인재의 육성 및 배치가 필요

2) 구매사업개혁

-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전어련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여 전어련이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
 - 전어련 구매사업은 “공동구입” 비율을 높임으로써 가격과 안정공급의 장점을 발휘
 - 사업개혁의 기본방침으로는 물류 효율화로 철저한 비용 절감과 슬림화, 이용향상 운

동의 재구축화와 지역수요에 대응한 사업량 확보, 수요결집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공급시스템 구축, 조합원과 어업협동조합과의 일체적 개혁 추진, 합병 및 재편에 대응한 다양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지 채산성 확보 등

라. 업무집행 및 관리운영체제 강화

1) 업무집행체제의 정비·강화

- 업무집행체제의 정비·강화로 능률적인 집행체제의 확립을 들 수 있음
 - 1현 1어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연합회에 대해 신속하고 적합한 업무집행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상근관리 체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경영관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

- 다음으로 경영책임의 명확화
 - 경영에 대한 리스크 다양화 및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의 책임은 커지고 있으며, 이사의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을 추진
 - 특히, 경영상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의 역할 발휘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집행체제 확립이 중요

2) 임원의 자격요건 정비

- 집행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부대표, 자질 및 경험 있는 민간기업 출신자의 임원 등록과 임원의 정년제과 임기제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

- 또한, 여성부를 시작으로 협력조직의 어업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참가가 필요
 - 여성부대표의 참여로서 어업협동조합 이사회 참가(일정의 발언권 부여)나 어업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 파악, 의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

- 그 외에도, 광역합병 어업협동조합(1현 1어업협동조합을 포함), 연합회(전어련)에 대한

이사 선출 기준 설정(임원 선출 기준)이 필요

3) 관리 운영체제의 정비 · 강화

- 리스크 관리나 법령 준수를 중요시 하는 경영 자세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임원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정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 감사체제의 정비와 사외감사, 상근 감사의 적극적인 도입, 감사기구의 강화 추진 등이 필요
- 다음으로 경영정보의 개방 및 투명성 확보
 - 어업협동조합의 경영내용(문제점 포함)과 사업개혁의 검토 및 실천 등에 관하여 잡지(수산전문지 등)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4) 경영관리위원회 제도

- 경영관리 위원회는 조합의 중요 사항 결정이나 이사회에 임명을 행하며, 고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조합경영에 관해서는 경영관리 위원회가 선임한 이사(전문경영인)가 담당하는 제도
 -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일본의 농협 및 어업협동조합 지배구조의 형태는 동일하며, 큰 틀에서는 유럽의 복수제(총회 → 경영관리위원회 → 이사회)를 도입하고 있다. 경영관리위원회는 유럽의 관리이사회에 해당되고, 이사회는 집행이사회에 해당
- 경영관리위원회 제도는 조합의 경영부실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농협법 개정으로 동 제도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농업부문 산하단체에도 도입을 의무화
 - 2002년에는 수산부문인 전어련에서 동 제도 채택, 연합회(전어련)는 의무적으로 경영관리위원회 제도(지배구조 체계)를 도입, 회원조합(어업협동조합)의 경우 도입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음²⁾
-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의 4분의 3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2) 2007년 3월 현재, 경영관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미야기 어업협동조합 1개소뿐임

어야 함

-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을 호선
- 이사회 이사는 경영관리위원회가 선임하며,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선임
- 이사회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원 상근이며, 전문 경영인으로 함.

○ 일본의 어업협동조합 경영위기 극복 대책을 요약하면,

- 첫째, 어협합병(합병 기본계획"에 의한 기간내에 완수),
- 둘째, 경영개혁(흑자체질의 건전경영 실현, 건전경영 확보를 향한 경영개혁 추진),
- 셋째, 사업개혁(판매 및 구매사업 개혁),
- 넷째, 업무집행 및 관리운영 체제 강화,
- 다섯째,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경영관리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한 경영개선 등

<표 4-3> 일본의 어업협동조합 경영위기 극복대책

대 책	세 부 내 용
어협합병	- "합병 기본계획"에 의한 기간내에 완수 - 「1현 1어협」 또는 「복수 자립어협」 구축하여 연합회(전어련)의 전문적인 사업기능 일체화, 현 내의 인재·시설·재산 활용
경영개혁	- 흑자체질의 건전경영 실현 - 건전경영 확보를 향한 경영개혁 추진
사업개혁	- 판매사업 개혁 - 구매사업 개혁
업무집행 및 관리운영 체제 강화	- 업무집행 체제의 정비·강화(경영관리위원회) - 임원의 자격요건의 정비
경영관리위원회 제도 도입	- 전문경영인이 조합을 경영토록 함 - 2002년부터 연합회(전어련) 의무적으로 도입 - 회원조합(어업협동조합) 자율

자료 : 조용훈, 한일수산업협동조합 비교연구, 2007.12., pp.175-180에서 수정 및 보완

마. 가공·유통·소비대책,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차 10% 이내 축소방안 모색

- 현재 일본의 수산물 가공, 유통, 소비의 실태를 보면 산지시장의 약 70%는 연간 거래액이 10억 엔 미만으로 영세하며 거래상품의 양과 품질 모두 불안정하여 비용소모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6단계로 많은 편이며 선도 유지 및 전처리 등의 가공경비가 늘어나면서 유통마진이 높아지기 쉬운 실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점어항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신선한 자국산 수산물을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산지시장의 통폐합 및 산지·소비지 간의 안정공급 계약 체결 촉진 등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차를 10% 이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제3절 산지수산물시장 개혁 방향

1. 수산물 산지시장의 역할 및 문제점

가. 수산물 산지시장의 특성

- 일본에서 수산물 산지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법적인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산지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에 따르면 수산물 산지시장이란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공급거점으로 정의되고 있음. 즉, 수산물산지시장은 산지에서 어획되거나 운반된 수산물의 집하·배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은 어업협동조합(또는 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나 민간업체에 의해 개설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생산자 단체인 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 혹은 현어련)이 개설·운영 중인 시장이 전체의 약 80%(거래물량 기준 57%)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³⁾ 이러한 점 때문에 산지시장의 상당수는 어항에 위치해 있음
- 산지시장의 분포현황을 보면 총 911개 산지시장 중 758개(83%)가 어협·어련이 개설한 것으로, 기타 개설자인 시장의 감소경향을 반영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거래금액 측면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어협 등이 개설한 시장의 거래금액은 1990년대 전반까지 물량기준으로 약 40%, 금액기준으로 30% 가량이었으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한 시장의 거래규모가 감소하면서 2003년에 각각 59.2%, 54.7%까지 크게 증가하였음(<표 4-4> 참고)⁴⁾

3) 데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산지시장의 현황과 과제, 농림금융, 2007.3 참조

4) 상계서

<표 4-4> 산지도매시장의 개설자별 거래 동향

(단위 : 천 톤, 억 엔, %)

구 분	전 체	지방공공 단체	어협계통	회사 개인	비 중		
					어협계통	그 중 어협	
물 량	1983	11,091	5,108	4,796	1,187	43.2	40.8
	1988	12,588	5,042	6,262	1,284	49.7	44.8
	1993	9,869	4,398	4,447	1,024	45.1	41.9
	1998	6,103	1,927	3,346	830	54.8	52.3
	2003	4,784	1,346	2,834	604	59.2	57.1
금 액	1983	37,500	21,963	10,654	4,884	28.4	26.0
	1988	36,922	22,157	10,766	3,998	29.2	26.3
	1993	36,870	22,121	10,494	4,254	28.5	26.2
	1998	16,913	4,923	8,317	3,673	49.2	45.7
	2003	13,852	3,556	7,573	2,722	54.7	51.7

자료 : 데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산지시장의 현황과 과제, 농림금융, 2007.3. p.20

- 어협 등이 개설한 산지시장의 특징은 시장당 평균거래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임. 지방공공단체개설시장의 거래금액(1개 시장당)은 1983년 328억 엔에서 2003년에는 68억 엔까지 크게 감소한 반면, 어협개설시장의 거래금액은 동년기준 12억 엔에서 10억 엔으로 약간 감소한데 머물러 거래규모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그러나 어협개설시장의 2003년도 거래금액은 사회·개인이 개설한 시장 거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거래규모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음⁵⁾
- 그런데 생산 및 소비환경의 변화로 산지시장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면서 문제시되기에 이르렀음. 즉, 200해리체제 진행에 따른 어장 축소, 남획 등에 의한 자원 감소로 시장의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소비 변화를 배경으로 유통주체간의 주도권 양상도 바뀌게 되었으나 산지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산지시장이 증가하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산물유통체제 강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2000년)에 따르면 유통 거점으로써 산지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유통가공업자의 각각 90%,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산지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는

5) 데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산지시장의 현황과 과제, 농림금융, 2007.3

것으로 나타나 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수산물 산지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폐합 중심의 기능 강화 대책이 모색되기에 이르렀음

나. 수산물 산지시장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일본의 경우 수산자원 감소, 어선 노후화, 어선수 감소 등으로 양륙물량과 금액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소규모 산지시장이 출하물량, 상품구색 확보에 애로를 겪고, 또한 매매참가자의 영세성과 상호간의 낮은 경쟁으로 인해 가격 형성력도 저하되는 등 문제가 가시화되기에 이르렀음
- 특히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가 대형수요자를 출현·성장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유통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이룸. 기존의 유통경로에서는 상부에 위치한 생산자의 영향력이 컸으나 대형할인점과 같은 대형소비자의 등장이 기존 유통경로를 경유하지 않는 수산물의 거래(장외거래)를 꾸준히 증가시킴으로써 유통경로상의 주도권 양상에 변화를 초래하였음
- 산지시장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대형수요자의 정량, 정규격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산지시장의 고유기능인 '공정하고 안정적인 가격형성력'의 발휘·회복과 더불어 산지시장을 경유하는 수산물이 수입수산물은 물론 다른 식품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시장환경의 정비가 요청되게 되었음
- 이처럼 일본의 산지시장은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고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문제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일본 정부가 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공급체제 정비를 위해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 관련대책을 종합하여 발표하였음

2.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 합리화 방침

- 일본 정부는 '수산기본정책대강(1999년 12월 14일 공포)'에 근거하여 산지시장 기능 강화에 관련된 정부방침을 결정하고자 '산지시장기능강화대책검토회'를 개최(2000년 5월 29일 ~ 2001년 2월 14일)하여 검토한 뒤, 2001년 3월에 '수산물 산지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였음
- 일본 정부가 마련한 산지시장 개선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산지시장의 통합이나, 시장통합만이 산지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방법이 아닌 만큼 시장통합 이외의 합리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음
- 일본 정부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정부가 마련한 방침을 바탕으로 하위단위의 지자체, 개설자, 생산자단체, 도매업자, 매수인, 소매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 협의를 거쳐 재편정비계획을 책정하게 하고 재편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정비 및 마케팅능력 향상 등의 사업을 보조하기로 함
- 도도부현이 계획을 정할 때에는 정부방침을 참고해 집하량 전망, 수요 및 소비 변화(물량 및 품질), 수송조건 변화, 정보화 진행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도매시장법(제4조1항)에 기초를 둔 '도매시장정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또한 도도부현은 지자체가 관련된 수산기반 정비·이용계획, 자원회복계획, 어협합병계획 등 수산업 진흥에 관련된 시책도 함께 고려하게 하였음. 이 때 '도매시장정비계획' 내에서 수산관련 사항이 실질적으로 산지시장재편 정비 계획과 동등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산지시장재편정비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산지시장 재편의 목표기간은 2010년으로 필요에 따라 5년 뒤에 해당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통합 대상이 되는 산지시장은 공정한 가격 형성, 시장거래 효율화, 시장경영 기반 강화라는 관점에서 연간거래규모가 적은 소규모 시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큰 대규모 시장까지도 포함하였음

<표 4-5> 참고사례 : 에히메(愛媛)현 수산물 산지시장 재편정비계획(안)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본현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여 수산물 유통 비용 삭감을 도모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수요자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경영체력과 가격형성력이 있는 산지시장 형성을 목표로, 또한 어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식문화·생활문화를 지지하는 기간적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산물의 안정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정
목표 연도	2020년도
경제적/사회적 전망	산지시장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수요량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약간 감소. 유통은 교통권 정비에 수반하여 광역적인 전개가 보다 추진될 것으로 전망
규모/배치 목표	산지시장 및 관련시설의 규모·배치 목표는 어협이 개설한 산지시장에 대해 2007년도가 목표인 어협합병계획에서 제시한 6개 자립어협의 구역으로, 현재 34개 산지시장을 '지역거점형' 4개 시장, '대량광역유통권형' 2개 시장을 포함한 9개 시장으로 통합·정비
시장 통합 방침	시장통합에 대한 방침은 시장통합에 의한 거래량 결집, 경영 합리화, 담당자 양성, 신규참입자 촉진, 정보 개시, 위생관리기능 향상, 상거래 전자화 등의 기능을 확충. 또한 통합시장 간에 상품사이즈 등 규격, 거래규칙의 합리화·통일화, 공동배송을 통한 판매 계열 화 등 상호연대·제휴
정비 내용	산지시장시설의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저온매장시설, 저장·보관시설, 가공·조정 시설, 배송시설, 정보·사무처리시설, 위생시설, 재자원화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
경영/운영 합리화	<산지시장의 경영·운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 개설자 - 산지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개설자의 선정, 거래 공정성·공개제 확보, 각 시장 실태에 걸맞는 거래규칙 확립, 경매 및 입찰거래의 효율화 및 사무처리·정보제공 등의 신속화, 하역노동 생력화, 상품특성을 감안한 하역·보관, 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 ○ 도매업자 -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체질 강화, 종업원 자질 향상, 경영 비용 삭감, 판매사업고유의 결산 공개 등을 추진
산지 시장 육성	산지시장의 담당자 확보·육성에 관한 사항은 마켓의 움직임에 파악·전망할 수 있는 인재 및 상품개발·판매개척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 등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한 인재의 확보·육성
산지 시장 재편	산지시장재편정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계획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지시장의 시설정비 및 경영·판매에 대한 연수·경영지도 등 사업에 대해 어협합병을 포함한 지구협의회 설치 및 검토경과 등 지역의 산지시장 재편정비를 위한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지원

가. 산지시장 통합의 기본 방향

- 시장기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다양화·세분화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가격 설정 등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시장통합을 통해 개별시장의 수산물 거래량 확대 방침을 정하였음
- 이 때 단순히 매장 통합에 의한 물량 확보 이외에도 산지시장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 수요자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운영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구성원 참여 촉진 및 거래·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위생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적극적 도입 등을 산지시장 통합의 기본방향으로 제안하였음
- 산지시장의 통합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상정하였는데, 하드웨어적인 통합은 복수의 시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통합은 통합전의 시장은 그대로 두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기능적 통합을 의미함

나. 통합된 산지시장의 목표상

- 산지시장의 유형은 출하 및 판매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 만큼 통합된 산지시장의 목표상으로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의 3개 유형을 제안하고 거래규모, 배치, 시설 등을 설정하였음. 이 때 거래규모의 경우 최종 목표연도에는 사업운영·관리비용의 보전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종업원 1인당 거래금액 3억 엔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표 4-6> 수산물산지시장의 유형별 목표상

시 장 분 류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
시장이미지	시장특성	소비지시장화도 목표로 하는 시장	당일매매권역형, 대량광역유통권형 중계시장 시장통합도 대상	전국시장 및 도매상에 대한 수산물 배분도 목표 브랜드 지향 평균단가 1천 엔/kg이상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을 상징
	출하권규모	전국	복수시정촌~현	전국
	집하권규모	현~블럭	시정촌~현	현~블럭
	현 이외지역 출하율(기준)	50% 이상	-	50% 이상
도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수치 등은 기준)	거래금액	50억엔 이상	20억엔 이상	12억엔 이상
	거래수량	2만4천톤 이상	5천톤 이상	1천톤 이상
	시장담당직원수	15명 이상	6명 이상	4명 이상
	매수인수	80명 이상	50명 이상	26명 이상
시장사례(1998년 1월 기준 시장상황 감안)		宮古(岩手) 女川(宮城) 焼津(静岡) 浜田(鳥根) 枕崎(鹿兒島)	根室(北海道) 敦賀(福井) 宮津(京都) 香柱(兵庫) 沖繩(沖繩)	佐賀關(大分) 明石浦(兵庫) 和具(熊本) 勝本(長崎)

자료 : 데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산지시장의 현황과 과제, 농림금융, 2007.3. p.20

- 그리고 일본 정부는 산지시장재편정비계획 내에 다음 표에서 제시된 수산청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수산청 보조사업으로 우선 채택되기 위해서는 개방형 산지시장 구축에 관련된 4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함6)

6) 부록4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대한 정책'의 (3) 참조

<표 4-7> 수산물산지시장 통합 방침에 관련된 수산청의 보조사업

구 분	항	목	세부사항
산지시장통합 관련	수산기반정 비비	수산물공급기반정비 사업비보조금	어항수축비보조금
			지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금
			광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금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비보조금
	수산업 진흥비	수산업진흥종합대책 시설정비비보조금	연안어업구조개선사업비보조금 - 연안어업어촌진흥구조개선사업비 - 오키나와(沖縄)현수산물거점강화구조개선특별대책사업비 - 어항어촌활성화대책사업비
			수산업진흥시설정비비보조금 - 수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고도화대책사업비
	수산업진흥지방공공 단체사업비보조금	수산업진흥종합대책추진지도비보조금	
산지시장통합과 연계된 어협 합병 관련	-	수산업진흥지방공공 단체사업비보조금	수산업진흥종합대책추진지도비보조금 - 어협조직긴급재편대책사업
	-	수산업진흥민간단체 사업비보조금	수산업진흥종합대책추진지도비보조금 - 어협신생대책추진사업비

다. 시장통합 이외의 산지시장 경영 개선 방침

- 일본 정부는 산지시장 통합 이외에도 산지시장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경영·운영에 관련된 사항, 담당자 확보·육성에 관련된 사항,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였음(<부록 '수산물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 참조>)
- 한편 낙도나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등 입지적인 조건으로 인해 통합이 산지시장 기능 강화의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는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판매 루트의 개선 등에 의한 산지의 실수입의 향상, 경영 합리화와 고수익 상품 취급을 통한 판매사업의 수익성 향상, 공동 판매 등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브랜드 확립, 판매 안정을 위해 상대판매 병행 등을 통해 산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표 4-8> 참고사례 : 고치(高知)현 다노우라(田ノ浦)어항 산지시장 기능 강화 사례

구분	내용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협 합병 및 시장통합이 진전되지 않고 각 어협단위의 시장운영으로 거래량·종류가 감소, 출하량 변동이 확대 → 유통면에 있어 다양한 영향(어가 하락·정체, 품질관리 미구비, 제한적인 상품구색·출하형태, 한정적인 판로 등)
사업·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의 양륙기능 집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어항에서 이루어지는 양륙기능을 다노우라어항으로 일원화 - 거래금액 50억 엔 규모의 신시장을 출범 - 어협 합병·시장통합을 지원(어협수를 20개에서 3개로 통합) ○ 위생관리형 어항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노우라지구 특정어항정비사업(2000년~2011년) : 위생관리형 계류시설, 도로, 청정해수도입시설 등 정비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시장의 기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집약화, 확충으로 작업시간 단축(집약하기 이전 인근 어항과 비교할 경우 선어가 양륙 이후 출하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던 것이 절반까지 감소) - 시장통합·위생관리에 의한 생산액 향상 : 시장 집약화로 산지단가가 증가 ○ 출하형태 다양화(축양을 통한 활어출하 가능) : 선어에서 활어로의 전환을 통해 단가상승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중매인 참여로 신규 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매인 등 2개 신규 매매참여자 신규 가입 · 칸사이(關西)·칸토(關東)방면에 대한 출하 증가 - 수산물가공품 출하증가로 소비자 수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가공공장 정비로 가공품 판매 · 직판소 등 로컬푸드운동 추진 · 지역활성화, 수산진흥, 고용창출

○ 이상으로 수산물 산지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살펴보았는데, 향후 일본의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 방법으로 통합과 합리화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⁷⁾

- 산지시장 규모의 확대는 최소한의 필요조건

7) (재)어가안정기금, '수산물 산지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2005.3.

- 산지판매사업의 채산성 제고가 불가결하나 단순한 매장 통합을 통한 거래수량 확대 이상으로 산지시장의 경영 합리화에 대한 동시 고려 필요
- 효과적인 판매사업을 기획·입안하고 이를 실천하는 관계자를 조직적으로 육성하여 산지시장운영 담당자로 육성
- 경쟁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해 거래에 대한 신규진입을 촉진
- 필요한 투자를 산지시장이 설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산지시장 통합이 필요
- 보다 광역적인 공급거점으로써의 기능수행 필요

라. 수산물 산지시장 개혁에 관련 최근 논의동향

- 관련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내 산지시장의 통합 실적은 소수에 머무는 실정으로, 여전히 영세한 산지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앞서 종합방침에서 통합된 산지시장의 바람직한 목표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부방침을 바탕으로 33개 도도부현이 ‘산지시장재편정비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통합까지 이른 사례는 얼마 되지 않은 실정으로⁸⁾ 1998년 약 985개 이던 산지시장이 2007년에 3월에는 약 800여개로 목표연도인 2010년에 500개까지 통합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추진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하여 지역과 거래어종의 특성을 감안한 산지시장 재편에 나서기로 하였음
- 이러한 가운데 농림수산성이 식품 전반에 대한 유통비용 삭감을 위한 각 분야별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는데, ‘식료공급비용축소검증위원회’를 2006년에 설치하여 비용감소에 관련된 액션플랜을 종합한 것임. 수산물의 경우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산물공급비용검토전문위원회’를 통해 비용 축소에 관련된 방침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서 수산물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대응 방향으로 수산물 산지시장 개혁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였음

8) 데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산지시장의 현황과 과제, 농림금융, 2007.3 참조

- 수산물 산지시장에 관련된 내용은 이하와 같은데, 통합에 있어 산지시장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통합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산지시장 기능 강화에 관련된 기존방침을 재검토하고 거래어종의 특성을 감안한 산지시장 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고려가 필요하며,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시장 내 경쟁유발을 위한 거래참여 개방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민간기관인 (재)어가안정기금도 2005년에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방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⁹⁾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방침이 마련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한 가운데, 산지시장 기능 강화방침이 시범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설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면서 효과가 국지적·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새로운 방법 채택에 대한 기대보다도 높아 산지시장의 기능 재편이 크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산지시장통합 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범실시를 거친 뒤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걸맞는 투자, 리스크 부담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최적 방법이라고 제안하였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에도 수산물유통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 강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행정측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지유통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생산구조의 재편, 어업경영안정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였음. 즉, 산지시장 기능 강화는 통합 이외에도 유통기능의 변화에 수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지유통, 판매사업분야의 공동출하와 직판체제 정비, 지역의 산지하역장(荷捌所) 정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하는 와중에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도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문하였음

9) 상계서

<표 4-9> 수산물 유통비용 축소 방침 중 산지시장 관련 방침

시책명	시책내용	시책의 구체적 효과
수산물 산지시장 개혁	<p>‘수산물산지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동시에 도도부현의 ‘산지시장재편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지역과 거래어종의 특성에 맞는 산지시장 재편을 추진</p> <p>① ‘제3 산지시장통합 형태’에 대해 종래의 통합형태 이외에 시장을 폐지하고 거래하던 수산물을 다른 산지시장 내지는 소비지시장으로 직접 운반하여 제1단계의 거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명기</p> <p>② ‘제6 산지시장의 적정한 경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미 통폐합을 실시했거나 통폐합을 하지 않은 산지시장에 대해서도 다른 산지시장의 매수인이나 다른 업종(양관점, 외식, 중식업자 등)이 새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매참가권을 개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명기</p> <p>③ ‘제8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수산청의 지원’에 대해 2007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감안해 새로운 지원조치를 명기</p> <p>④ 전반 ‘통합’이란 용어의 경우 시장 폐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폐합’으로 개정 통달한 명칭은 ‘수산물산지시장의 통폐합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방침’으로 개정</p>	<p>산지시장개혁의 정책적인 타당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널리 알려 산지 개혁을 위한 의식양성이 기대 (현재 통합목표) 1998년 985개→2010년 500개</p>
유통거점의 정비	<p>① 산지시장 개설자 또는 도매업자가 시장통폐합 또는 매참권 개방에 나서기 위한 산지거래의 실증실험,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등의 조건을 정비하는 경우 지원</p> <p>② 유통거점인 산지시장이 선도관리를 겸한 수산물 부가가치향상시설을 정비</p> <p>③ 수산업협동조합이 통폐합시장 또한 매참권 개방시장에서 스스로 매매참가권을 보유하고 수산물을 매취·판매하는 경우에 수산물 보관·출하경비를 중점 지원</p>	<p>산지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수협이 시장을 개혁한 경우 장점조치를 마련해 대응을 가속화 특히 매매참가권 개방을 지원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소위 ‘보이지 않는 규제’의 개혁 효과를 기대 또한 산지거래의 실증실험,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개발 등은 산지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업자인 민간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종래 수협을 대신해 새로운 경영형태의 구축도 기대</p>

자료 : 수산청, 수산물공급비용 축소를 위한 사고와 대처의 방향성, 2006.12.27.

주 : 일본의 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서 전국의 어업협동조합, 어업생산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로 정의하고 있음

제4절 한·일간 비교분석

1. 일본사례 분석 요약

- 일본에서 수산물 산지시장이란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공급거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어업협동조합(또는 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나 민간업체에 의해 개설 가능함
- 산지시장은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고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 관련대책을 종합하여 발표하였음
- 일본 정부가 마련한 산지시장 개선안의 핵심사항은 시장통합 이외의 산지시장 경영 개선 방침도 병행하였다는 점임
- 통합된 산지시장의 목표상으로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의 3개 유형을 제안하고 거래규모, 배치, 시설 등을 설정하였음
- 관련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내 산지시장의 통폐합 실적은 소수에 머무는 실정으로, 여전히 영세한 산지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0> 일본의 산지시장 사례분석 결과

구분	내용
정의	-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어선이 직접 양륙한 수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육상으로 운반된 수산물을 수취하여 처음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공급거점
운영	- 어업협동조합, 민간업체에 의해 개설 가능
어협의 경영위기 극복대책	- 어업협동조합의 합병 - 경영개혁 및 사업개혁 - 업무집행 및 관리운영체제의 강화
정부의 산지시장 기능강화 관련대책	- 시장통합 이외의 산지시장 경영 개선 방침도 병행 - 통합된 산지시장의 목표상으로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 유통형의 3개 유형을 제안

2. 한·일간 비교 분석

가. 산지수산물시장 비교

- 이상의 일본의 산지시장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지수산물시장과의 비교 분석 하였음
- 산지시장의 운영 및 개설은 한국에서는 수협에서만 가능한 반면, 일본에서는 어협(전어련), 지방공공단체, 개인/회사가 모두 가능함. 또한 일본의 경우 어협/어련 상대적 위판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 산지시장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은 전국 총 911개소 중 어협 및 전어련의 산지시장은 758개소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급 물량은 전체의 약 57%가량임('03기준). 한국은 '08.10 현재 180개소의 산지위판장이 있으며, 위판물량 전량 취급함
- 일본과 한국 모두 산지시장의 여건변화는 유사하며, 거래규모 축소, 소비변화, 유통주체가 주도권 변경, 산지시장 영세성(산지시장 기능 미발휘 발생) 등임

-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산물유통체제 강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00년) 어업인/유통가공업자의 80% ~ 90%가 유통 거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일본 정부는 '수산물기본정책대강('99.12)에 근거, 자 '산지시장기능강화대책검토회('00.5 ~ '01.2), '수산물 산지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01.3)' 발표하였음, 반면, 한국은 농특위에서 논의('07.3)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추진 방안은 없음

-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01.3)'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정부가 마련한 방침을 바탕으로 협의회 설치(지자체, 개설자, 생산자단체, 도매업자, 매수인, 소매단체 등) 및 협의를 거쳐 재편정비계획을 확정, 동 계획에 포함 시장에 대해 시설 정비 및 마케팅능력 향상 등의 사업을 보조토록 하고, 산지시장 재편 목표기간은 2010년으로 설정하였음. 한국은 현재 세부내용 마련중에 있음. 통합 대상 산지시장은 공정한 가격 형성, 시장거래 효율화, 시장경영 기반 강화라는 관점에서 연간거래규모가 적은 소규모 시장 및 비교적 규모가 큰 대규모 시장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은 33개도도부현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통합에 따른 물량 확보, 경영합리화, 전문인력 양성, 신규 구성원 참여 촉진 및 거래·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위생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적극적 도입 등을 산지시장 통합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통합된 산지시장 목표상은 종사자 1인당 거래금액 3억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의 3개 유형을 제안하였음

<표 4-11> 일본과 한국의 산지 수산물시장 정책 비교분석(1)

구분	일 본	한 국	비 고
산지시장 개설 및 운영	- 어협(전어련), 지방공공단체, 개인/회사	- 수협	- 일본의 경우 어협/어련 상대적 위판물량증가
산지시장 분포	- 전국 총 911개소 - 어협/어련 758개소(83%), - 취급물량 : 전체 약 57%	- 180개소('08.10현재) - 취급물량 : 100%	- 일본 2003년 기준
산지시장 여건변화	- 거래규모 축소, 소비변화, 유통주체가 주도권 변경, 산지시장 영세성(산지시장 기능 미발휘 발생)	- 좌 등	- 일본과 거의 유사
정부정책 추진	- 일본 정부는 '수산물기본정책 대강('99.12)에 근거, 자 산지시장기능강화대책검토회('00.5~ '01.2), '수산물 산지시장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방침('01.3)' 발표	- 농특위에서 논의('07.3) - 구체적인 정책추진 방안 없음	-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산물유통체제 강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00년) : 유통 거점 필요성(어업인/유통가 공업자 80%-90%)
정부정책 세부내용	-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정부가 마련한 방침을 바탕으로 협의회 설치(지자체, 개설자, 생산자단체, 도매업자, 매수인, 소매단체 등) 및 협의를 거쳐 재편정비계획을 확정, 동 계획에 포함 시장에 대해 시설 정비 및 마케팅능력 향상 등의 사업 보조 ※ 산지시장 재편 목표기간 : 2010년(5년후 재검토)	- 마련 중	- 통합 대상 산지시장은 공정한 가격 형성, 시장거래 효율화, 시장경영 기반 강화라는 관점에서 연간거래규모가 적은 소규모 시장 및 비교적 규모가 큰 대규모 시장 포함 - 일본의 도매시장법(제4조1항) 고려
산지시장 통합의 기본방향	- 통합에 따른 물량 확보, 경영합리화, 전문인력 양성, 신규 구성원 참여 촉진 및 거래·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위생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적극적 도입 등	-	- 33개도도부현 정비계획 마련
통합된 산지시장 목표상	--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의 3개 유형 제안	-	- 종사자 1인당 거래금액 3억 엔 기준

○ 다음으로 일본은 통합방침 관련 수산청 보조사업으로 어협 통폐합 연계하여 수산기반 정비비, 수산업 진흥비, 산지시장 통합과 연계된 어협합병 지원 등을 시행하였으며, 한국은 위판장 시설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산지시장 통합정책으로 인해 통합에 이른 사례는 '98(985개소)→'07(약 800개소)로 비교적 얼마 되지 않으며, 목표년도 '10년까지 500개소로 통합할 계획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의 어려움이 상존하므로 정부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일본 현지조사결과 산지시장의 통합은 가격보장 정책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산지수산물시장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방침이 마련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둘째, 산지시장 기능 강화방침이 시범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설정비 우선(국지적·단편적), 셋째, 통폐합 불안감이 기대치보다도 높아 산지시장의 기능 재편 추진 한계 등임

<표 4-12> 일본과 한국의 산지 수산물시장 정책 비교분석(2)

구분	일 본	한 국	비 고
통합지원 보조사업 추진	- 수산기반정비비, 수산업 진흥비, 산지시장 통합과 연계된 어협합병 지원	- 위판장 시설지원	- 일본은 통합방침 관련 수산청 보조사업 - 어협 통폐합 연계
추진현황	- 통합에 이른 사례 얼마 안됨/목표년도 '10년까지 500개소 ※ '98(985개소)→'07(약 800개소)	-	- 통합의 어려움 상존 - 정부차원 재검토 - 가격보장시 가능 (일본 현지조사)
통폐합 문제점	- 정부방침이 마련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산지시장 기능 강화방침이 시범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설정비 우선(국지적·단편적) - 통폐합 불안감이 기대치보다도 높아 산지시장의 기능 재편 추진 한계	-	민간기관인 (재)어가안정 기금 분석 자료

나.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정부방침이 마련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한 가운데, 산지시장 기능 강화방침이 시범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설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면서 효과가 국지적·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새로운 방법 채택에 대한 기대보다도 높아 산지시장의 기능 재편이 크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산지시장 통폐합 정책 추진 개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산지시장 통합 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범실시를 거친 뒤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

획을 책정하고 이에 걸맞는 투자, 리스크 부담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에도 수산물유통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 강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새로운 산지유통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생산구조의 재편, 어업경영 안정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즉, 산지시장 기능 강화는 통합 이외에도 유통기능의 변화에 수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지유통, 판매사업분야의 공동출하와 직판체제 정비, 지역의 산지 하역 및 출하장 정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하는 와중에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도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것임

<표 4-13>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산지 위판장 통폐합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급격한 국내외 수산물 유통 변화 고려 필요 - 완도수협을 비롯한 일부 수협 부실에 따른 통폐합 고려 - 시도지사 시정·고시된 위판장 중 10개소 이상 문제점 나타남 - 연간 5백톤 미만 44개소(문제 위판장 29개소 제외)	- 180개소중 위판장 없음(7), 폐쇄 및 매각(3)
추진기본 방향	- 중앙정부가 마련한 방침을 바탕으로 협의회 설치(지자체, 개설자, 생산자단체, 도매업자, 매수인, 소매단체 등) 및 동 협의회 협의 거쳐 통폐합계획 확정, 동 시장에 대한 시설 정비 및 마케팅능력 향상 등의 사업 보조	- 일본사례 참조 - 시도지사 폐지 가능
통합의 기본방향	- 통합에 따른 물량 확보, 경영합리화, 전문인력 양성, 신규 구성원 참여 촉진 및 거래·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위생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적극적 도입 등	- 일본사례 참조
목표기간 및 개소	-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결정보다도 지자체 의견 수렴 결정 필요	-
사전적 시범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추진	- 시범실시를 한 이후,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맞는 투자, 리스크 부담 검토를 거쳐 결정 ※ 실패 최소화 필요	- 일본실패 참조
추진 전제조건	- 통합된 산지 위판장에서 적정어가 보장 가능해야 성공	-
사업추진 효과	- WTO·FTA 확대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대응 가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지위판장 활성화 도모 가능 - 21세기형 산지위판장 기능정립 가능 - 거대 구매자(대형마트) 상대 어업인 가격결정력 확보	-

제5장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산지위판장 시설기준 부재

- 산지위판장에 대한 개념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장 제41조의 2에 의거하여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그 외의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없어, ‘08년 5월 산지위판장 지정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각 통계자료와 수협 등에서 파악하는 위판장의 수가 상이했는데, 그 이유는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적 기준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산지위판장의 지정에 대해서는 ‘08년 5월에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도지사가 수산물 위판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표 5-1> 산지위판장의 법적 개념

구 분	내 용	근거법률
개념	-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	수산업법시행령 제5장 제41조의 2
지정	- 전국 시·도지사가 수산물 위판장을 지정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 2
시설기준	- 없음	없음

- 하지만 아직까지 위판장의 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고, 농업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제44조의 1에 의거하여 공판장의 시설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임

<표 5-2> 공판장 시설기준

구분		산지위판장 시설기준(인구기준)		
		30만미만	30만이상~100만미만	100만이상
단위		m ²	m ²	m ²
대지		1,650	3,300	6,600
건물		660	1,320	2,640
필수 시설	경매장(유개)	500	990	1,980
	주차장	170	330	660
	냉장실	17(20톤)	30(50톤)	50(60톤)
	저빙실	17(20톤)	30(50톤)	50(60톤)
	오물처리장	30	70	100
	위생시설(수세식화장)	30	70	100
	사무실	30	50	70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30	50	70
부수 시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 또한, 수협 내 수산물 집하장 설치운영 기준 제4조 2항에 의해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판장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한 필요한 실정임
 - 경매식 집하장은 산지 위판장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표 5-3> 경매식 집하장 시설기준

구분		기준
부지		400㎡ 이상
건물		150㎡ 이상
주요 시설	필수시설	경매장, 위생시설(수세식화장실), 오물처리장
	부수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및 출하상담실, 저온보관시설(동결,저빙,냉장실등), 가공처리장, 소각시설, 중도매인사무실, 주차장,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수산업에 대한 산지위판장의 법적 지위 부재는 위판장의 지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기준 없이 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산지위판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산지위판장에 대한 조사 결과, 위판장의 주요 기능인 위판장의 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으며, 위판장의 지붕이 없는 곳, 유통매개체인 중도매인 사무실 등이 없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와 같이 일정한 기준 없이 시·도지사에 의해 산지위판장이 지정 될 경우, 위판장의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위판장 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임

2. 계통출하량의 감소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산지위판장의 위판 물량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는 '97년 9월부터 시행된 임의상장제 이후 위판 물량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00년대 이후 산지 위판장 위판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일반 해면어업의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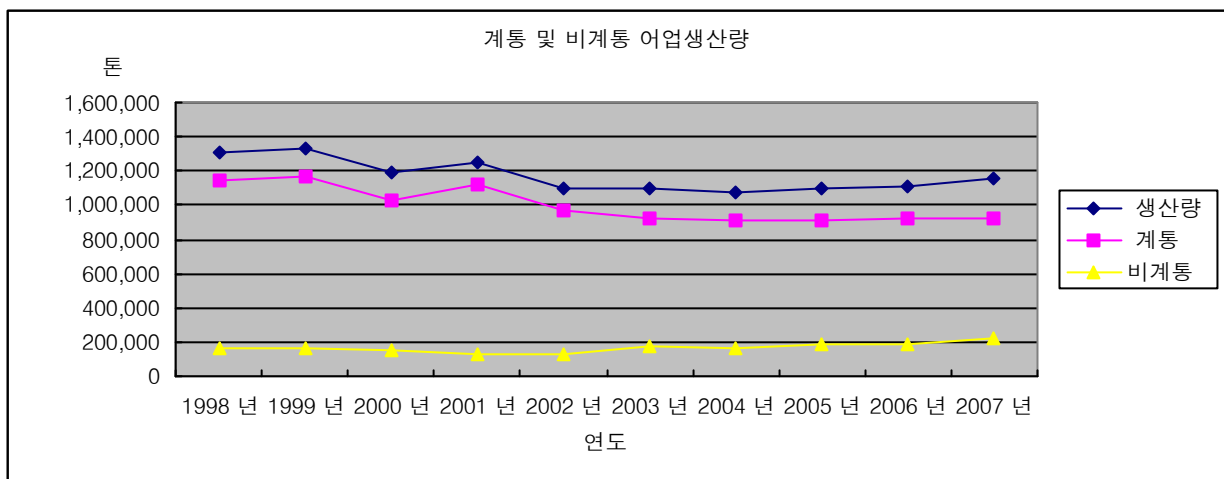
의 경우 '98년과 비교하여 '07년에는 11.9%가 감소하였으며, 계통 판매량은 18.9%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비계통 판매량은 '98년과 비교하여, '07년도에 오히려 36.9% 증가하였음

<표 5-4> 일반해면어업 계통 및 비계통 판매량('98~'07)

연도	생산량(톤)	계통 판매량(톤)	비계통 판매량(톤)
1998	1,308,336	1,144,635	163,701
1999	1,336,062	1,170,852	165,210
2000	1,189,000	1,032,297	156,703
2001	1,252,099	1,124,474	127,625
2002	1,095,812	968,972	126,840
2003	1,096,526	923,820	172,706
2004	1,076,687	912,551	164,136
2005	1,097,041	908,357	188,684
2006	1,108,815	917,314	191,501
2007	1,152,299	928,121	224,178
증감('07/'98)	▽11.9%	▽18.9%	▲36.9%

자료 :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그림 5-1> 계통 및 비계통 판매량 추이

- 생산량이 11.9% 감소한 것보다 계통판매량의 감소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통 판매량은 약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통판매량의 감소 이유는 생산량의 감소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더 큰 이유는 대형할인마트 등의 등장으로 인한 비계통 판매량의 증가일 것으로 추정됨

- 계통 판매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위판장의 물량 감소와 같은 의미로 위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판 물량의 증가가 필요할 것임. 비계통 판매 채널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 계통 판매 채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산지위판장의 유통 매체인 산지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위판물량 감소는 산지 위판장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으로 산지위판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판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위판장 규모의 협소 및 시설 부재

가. 위판장 규모의 협소

- 전국 180개소의 위판장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다수 나왔던 것이 위판장의 장소적인 협소 문제였음. 몇몇 곳은 위판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위판 당시 위판 물량을 위판장 내에서 모두 경매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음
- 실제 조사 결과, 1천㎡이하의 소규모 위판장이 전체 180개소 중 98개소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만㎡이상의 대규모 위판장은 여수수협이 선어·건어 위판장과 부산시의 공동어시장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5> 위판장의 규모 현황

구분	개소	비율(%)
대지면적 1천㎡이상	98	54.4
대지면적 1천㎡미만	82	43.6

- 위판장의 장소적인 협소 문제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선들이 접안하여 하역하고, 경매하는 과정까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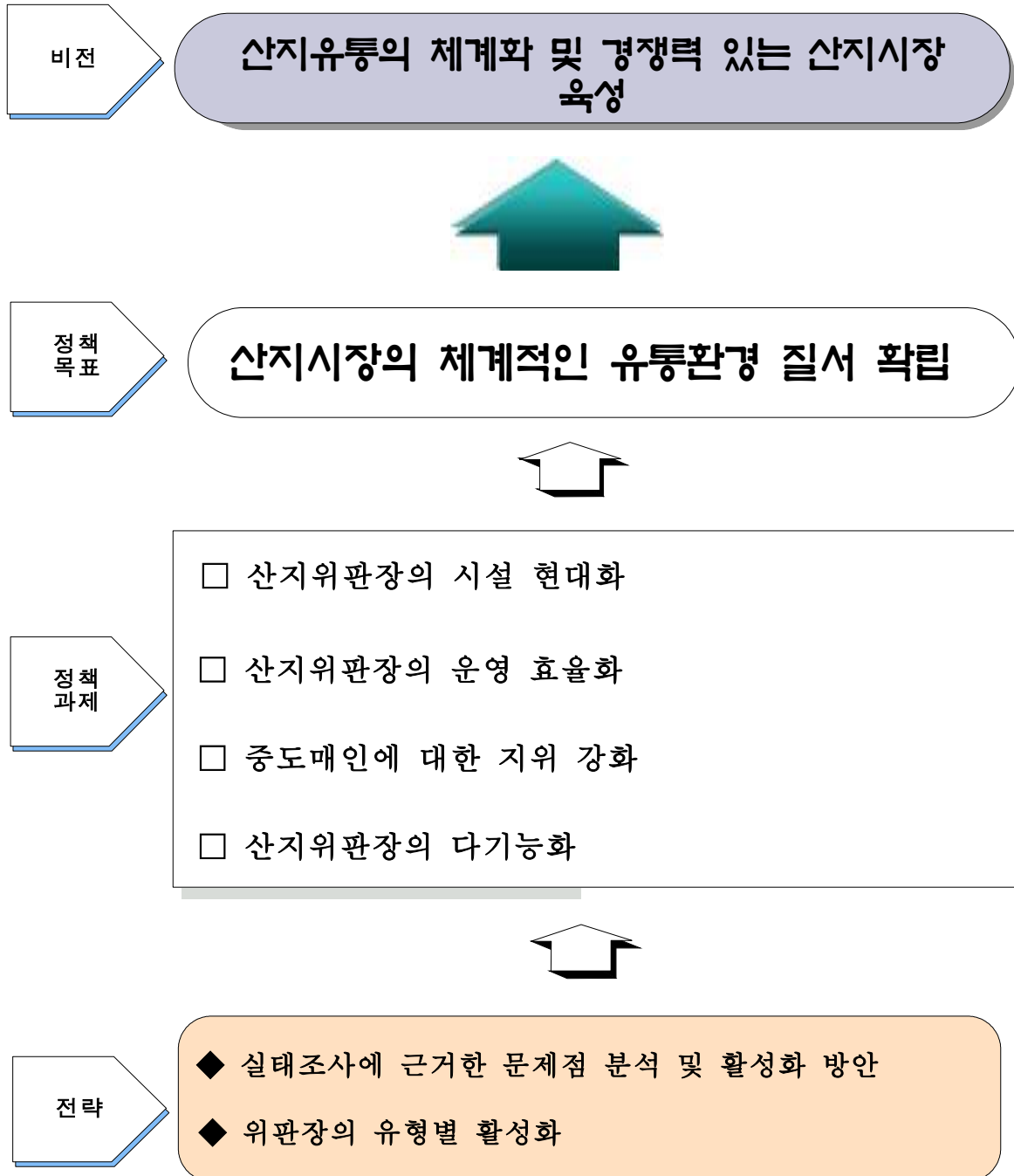
- 또한, 전국적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다기능항 건설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면, 어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판시설 및 부수 시설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를 차지할 뿐이고, 많은 내용이 위탁시설 등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위판장의 규모 확대는 위판물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과 산지 중도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 등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 등에 대한 시설확충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시설 부재

- 전국 180개소 산지위판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가 다수가 위판장 규모의 협소와 더불어 위판장 시설의 노후화 및 낙후성을 언급하였으며, 실제 위판장의 건물 구조 등을 살펴보면, 컨테이너박스 및 천막으로 된 곳도 있었음
- 또한, 위판장의 필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물처리장, 정화조,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등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판장보다 시설이 없는 위판장이 더 많았으며, 부수시설인 창고 및 중도매인 사무실, 유류공급시설 등 또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더 많았음
- 이와 같은 시설의 부재는 산지 수산물 유통의 중심에 있는 산지위판장의 기능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및 중도매인의 편의 측면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제2절 위판장 활성화 세부실천 계획(안)

1. 비전과 목표



2. 세부실천 계획

가. 위판장의 시설 현대화

1)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생산자의 생산 준비를 위한 지원시설임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어획물 판매처이며, 산지중도매인에게는 신선한 수산물을 위판장 경매대에서 경매를 통하여 매매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미비 및 노후화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협에서는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을 농안법상 공판장 시설기준에 준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필수시설로는 경매장(유개), 주차장, 냉장실, 저빙실, 오물처리장, 위생시설(수세식화장실), 사무실, 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수시설로서는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위와 같은 시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유개 경매장과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판장보다 시설을 갖추지 않은 위판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6> 산지위판장 필수시설 현황

필수시설	유	무	계
경매장 지붕	128	11	139(100.0%)
주차장	102(56.7%)	78(43.3%)	180(100.0%)
냉장실	56(31.1%)	124(68.9%)	180(100.0%)
저빙실	43(23.9%)	137(76.1%)	180(100.0%)
오물처리장	44(24.4%)	136(75.6%)	180(100.0%)
정화조	31(17.2%)	149(82.8%)	180(100.0%)
위생시설	106(58.9%)	74(41.1%)	180(100.0%)
사무실	120(66.7%)	60(33.3%)	180(100.0%)
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	43(23.9%)	137(76.1%)	180(100.0%)

- 부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지위판장의 50% 이하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규모가 큰 위판장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으나 군·읍 단위의 소규모 위판장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산지위판장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지중도매인 사무실이 있는 곳이 85개소이고, 없는 곳이 95개소로 없는 위판장이 더 많았으며, 중도매인 점포 또한 없는 곳이 162개소로 점포가 있는 위판장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5-7> 산지위판장 부수시설 현황

부수시설	유	무
상온창고	15	165
가공처리장	8	172
제빙시설	42	138
냉동시설	46	134
염장조	2	178
염장실	1	179
소각시설	4	176
용융기	1	179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5	175
오수처리시설	22	158
중도매인사무실	85	95
중도매인점포	18	162
유류공급시설	53	127
활어수조	41	139
수족관	14	166
휴게실	23	157

가) 위생시설 미비

- 앞선 필수시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6개소로 전체 산지위판장 180개소 중 5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생시설이 없는 위판장도 74개소로 41.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106개 위판장 중 다수는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근대적 시설 및 시설 노후화로 수산물의 비위생적 처리 가능성 또한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실제 위판장 조사 결과, 어체를 세척하기 위한 정수처리된 해수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52개 위판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87개 위판장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수의 위판장들이 위생 기준에 대해 민감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5-8> 위생기준별 위판장 현황

위생기준	시행	비시행	해당사항없음
취수원의 위치의 적정거리 유지 여부	99	44	37
정수처리된 해수의 사용 여부	52	87	41
위판장의 구획차단여부	60	93	27
부수시설과 위판장의 분리구획 여부	93	51	36
소각시설 및 용융기와 위판장의 적정한 거리유지	36	37	107
위판되는 수산물과 바닥사이의 적정한 거리유지 여부	96	53	31

- 특히, 선진국에서 식품공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HACCP 기준 또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산지위판장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음

나) 위판장 시설 미비

- 소비자 및 구매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하는 소분포장, 채포장, 단순가공 등 상품화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저장, 소분, 포장, 가공, 물류기능 등을 동일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산지위판장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러한 위판장의 시설미비로 인해 작업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위판장이 단순 집하 및 판매 기능만 수행하여 시설 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져 선별, 포장, 단순가공, 물류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실제 조사결과 기본적인 운반·하역에 필요한 팔레트와 지게차의 현황을 살펴봐도 보유하고 있는 위판장은 40개소로, 보유하지 않은 위판장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게차와 팔레트 외 기타 장비로 컨베이어 벨트, 카고트럭, 하륙용 굴베어, 활어상자, 크레인 등을 보유한 위판장도 16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9> 장비보유현황별 위판장 현황

장비보유	유	무
지게차	39	139
팔레트	40	140

- 산지유통의 비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손꼽았으며,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5-10> 산지유통의 비활성화 이유(설문결과)

순위	비율(%)	내 용
1	20.8	시설 등 하드웨어 문제(시설낙후, 유통가공 시설부족 등)
	20.8	위판물량 부족
	20.8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생산자 및 산지유통주체의 변화대응 노력 미흡
2	16.7	산지위판장을 포함한 산지유통의 법적 보호성
3	12.5	산지유통정책의 미흡
4	8.3	산지가공시설, 브랜드화 등 부가가치 제고 기능 미흡

자료 :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대책, 2007, pp64

2) 개선방안

가) 경쟁력 있는 산지위판장의 정비를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산지위판장의 다기능화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및 사회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 산지위판장 현대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이를 바탕으로 산지위판장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 수산물의 생산지원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상품화기능 등이 조화되도록 현대화 사업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지원근거가 모호한 산지위판장 설치기준 및 위생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조치와 병행하여 추진 필요

나) 산지위판장의 위생강화

- 산지위판장의 위생강화를 위해서는 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이 필요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위판장 주변
- 위판장 주위에 파리, 모기, 벌레 등 해충의 서식이 없도록 웅덩이, 수목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여야 하며, 쥐와 조류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폐자재 등을 제거하여야 함
 - 지하수 등의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
 - 해수를 어체 세척 등 수산물이 직접 닿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정수 처리된 해수 사용을 권장함
- 위판장 바닥, 벽, 천장
- 바닥, 벽, 천장은 내수성·내부식성 등의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며,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함
 - 천장은 빗물이 새거나 이물질·곰팡이·응결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내벽은 바닥면에서 1.5m까지 내수성·내산성·내열성 등이 있는 적절한 자재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함
 - 위판장은 외부의 먼지, 해충, 조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구획차단이 되어야 함

○ 오물처리장

- 오물처리장은 위판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및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기록 관리 하여야 함

○ 배수 및 배관

- 배수로, 배수구, 배수관 등은 퇴적물이 쌓이지 않아야 하며,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과 악취 및 폐수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함

○ 채광 및 조명

- 채광 및 조명은 원래색을 오인할 수 있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이나 이물낙하를 방지하기 보호장치를 하여야 함
- 자연채광 등을 위한 유리창은 깨어져 위판장내에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재질이나 필름 코팅 등을 하여야 함

○ 위생시설

-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내부 공기를 위판장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벽과 바닥은 내수성·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세척 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관리 계획에 의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함
- 기구 세척 및 소독실은 세제·소독제 및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 수산물에 유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청소 및 소독기구, 운반기구, 장비 등을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별도의 세척장소와 시설 설치를 권장함
- 부수시설(상온창고, 염장실, 가공처리장, 소각장)을 갖출 경우, 각 시설은 벽체 등으로 위판장과 분리구획 되어야 함. 부수시설 중 소각시설과 용융기로부터 발생하는 분진과 가스로 인하여 위판되는 수산물에 위해가 없도록 위판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함

○ 위생관리

- 위판장 청결관리 : 주기적으로 위판장 내부를 세척, 소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척

및 소독기준(세척·소독 대상, 세척·소독 방법, 세척·소독제 사용방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환기시설 관리 : 위판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환기 방식일 때는 해충과 조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개인위생관리 : 위판장 내에서 수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선별작업)는 위생모·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위판 수산물 취급관리

(1) 위판되는 수산물은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격리하여 바닥으로부터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2) 선어는 빙장을 원칙으로 어체품온이 10℃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하며, 패류는 위판 이전에 패각 표면의 갯벌 등을 세척한 후 위판하여야 함

(3) 선어(갑각류와 연체류를 포함), 활어, 패류, 건어물의 위판장소는 구분(선·줄에 의해 구별되는 경우를 말함)또는 구획(벽, 칸막이, 비닐커튼 등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함)하여 수산물간 교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4) 위판물을 운반하는 운반차량 및 운반기구의 적재함과 바퀴는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수산물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5) 위판장의 시설·설비는 관리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하여 시설·설비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6) 어상자는 규격화된 스티로폼재질(동등 이상의 위생관리가 가능한 재질 포함)을 권장하고 오염 및 이물질혼입 우려가 있는 나무상자의 사용을 제한함

- 가공처리장의 수산물 취급관리

(1) 가공처리장은 위판장과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가공작업에 적합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취급 기준에 따라 수산물을 가공 처리하여야 함

(2) 가공처리장에서 수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을 착용하여야 함

- (3) 가공처리장은 가공 전·후 수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해 적정하고 신속하게 냉장 및 냉동보관 되어야 함
- (4) 앞치마, 고무장갑, 칼, 도마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용과 완제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작업 종료시마다 세척·소독하여야 함

○ 검사관리

-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정해진 주기와 방법에 따라 선어, 패류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선어(어류, 연체류, 갑각류) : 장염비브리오, 패류 : 총 수은, 납, 카드뮴
- 위판되는 수산물 중 냉장(선어 포함), 냉동품의 어체품온이 적정하게 유지되는가를 위판 중 수시로 점검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 가공처리장의 가공수산물의 위생취급관리, 개인위생, 보관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다) 산지위판장의 시설 현대화

- 지역환경 및 경관에 조화로운 산지위판장의 정비(외관, 색상 등)
- 노후한 시설 정비 및 부족 시설 신설
 - 생산지원시설
 - 유통물류시설(저온경매시설, 저온냉장고, 냉동창고 등)
 - 작업에 비효율적인 시설의 정비, 비용절감 시설로의 정비 및 신설
- 상품화, 물류표준화 및 부가가치 제고 시설의 신설 및 정비
 - 소분포장, 재포장, 단순가공 등의 시설
 - 국가물류표준규격기준에 의한 물류표준화 체계 마련 추진
 - 생산자의 포장규격화와 상품규격화를 위한 시설 지원 추진
- 위생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의 정비와 미비시설 보완
 -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 정비

- 산지위판장 위생가이드라인 책정 및 적용
- 수산 부산물 폐기시설 정비 및 신설

○ 중도매인, 하주 등 유통인 사무실 정비

나. 산지위판장의 운영 효율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산지위판장의 영세성으로 유통비용 증가

- 연간 위판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소규모의 위판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통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현대화 등 시설지원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실태 조사결과, 상당 수의 위판장이 생산고의 감소로 인한 위판량의 감소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위판물량을 위판장별로 살펴보아도 미응답 및 위판물량이 없는 30개소를 제외한 150개소 중 연간 위판 물량이 1천톤 미만인 곳이 58개소로 전체 위판장의 3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1> 위판금액별 위판장 현황

구분	1,000억이상	500억이상 1,000억미만	100억이상 5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억이상 50억미만	1억이상 10억미만	1억미만	계
개소	1	7	51	28	41	25	27	180

<표 5-12> 위판물량별 위판장 현황

구분	5만톤이상	1만톤이상 5만톤미만	5천톤이상 1만톤미만	3천톤이상 5천톤미만	1천톤이상 3천톤미만	5백톤이상 1천톤미만	500톤미만	계
개소	1	24	23	9	35	15	43	150

나) 1개 지역 소규모 위판장의 난립으로 유통의 비효율성

- 동일 지역, 근거리에 복수의 소규모 산지위판장 설치로 유통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위판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까지 위판장의 지정을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매년 많은 소규모 위판장이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지적되고 있음
- 통영과 같이 1개 지역에 6개의 위판장이 각각 별도의 지역에 위치하여 운영의 비효율성 및 기능의 중복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다) 시대와 기능의 변화에 부조화, 비효율적 시설 난립

- 산지위판장은 교통 및 통신이 미발달한 시대에 생산지원시설 관점에서 시설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재로는 재편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시장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산지위판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재편이 불가피한 시점임
 -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1986년 366만 톤 → 2007년 327만 톤)
 - 특히, 강제상장제의 폐지로 위판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한 위판수수료 수익감소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위판장 운영주체인 수협경영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큼
- 수산물 산지위판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수협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위판장 설치의 목적인 생산 및 유통 지원의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 시급

2) 개선방안

가) 거점 산지위판장을 중심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수산물 산지유통의 중심기구인 산지위판장의 중심기능인 생산지원 및 유통지원 기능

을 합리적 조정

- 농림수산물부
 - 산지위판장 운영 효율화 실천계획 수립
 - 산지위판장의 기능별 분류기준 설정
 -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예산 확보
- 시·군 또는 수협
 - 대상 위판장 조사 및 선정
 - 대상 위판장 효율화 시행계획 수립

나) 어항어항사업과의 연계

- 산지위판장의 현대화 사업 및 다기능화 사업, 신설 또는 재개발 어항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컨소시엄 형태 등 운영방안 검토 추진
- 어항사업과의 연계는 수산물의 산지에서 양륙, 유통·가공까지의 일관된 공급시스템 구축에 해당하며, 생산코스트의 절감이나 선도유지대책, 위생관리대책에 중점적으로 관리함에 의해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소비자에 신뢰를 얻어 튼실한 산지 만들기 실현을 목표로 함
- 수산물의 유통거점이 되는 어항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중 어항어장정비사업을 통해 고도의 위생관리대책 하에서 출하되는 수산물의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산물유통거점이 되는 어항중 산지시장 전면적 양륙용의 항구 용벽을 내진화된 어항의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어항어장정비장기 계획은 어항어장정비법(쇼와 25년 법률 제137호) 제 6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5년을 1기로하여 정부가 책정·시행하고 있음
- 사업량을 살펴보면, 산지시장의 통폐합 등과 수산물유통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수산물의 안정공급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수산물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구에 있어서는 양륙시의 처리수로의 청정해수의 도입 등에 의한 위생관리의 강화와 어항시설의 내진화 등의 추진을 도모하는 지역으로써 약 150지구를 정비
 - 중핵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조업준비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는 어항 내 작업시의 안전성의 확보, 양륙 작업시간의 상실해소, 축양식수면의 정비 등 수산물의 보관기능을 강화함에 의한 선도의 유지를 도모하는 지역으로써 약 485지구를 정비
- 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아래의 점에 유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책연대의 강화에 의한 효과를 상승적으로 높이는 구조의 추진
 - (1) 생산에서 양륙, 가공,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 이르는 수산관련시책과의 연대추진
 - (2)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이나 폐기물처리 시설정비계획 등 다른 공공사업계획과 연대추진
 -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맞는 구조의 추진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집중화, 중점화를 더욱 추진
 - 기존 스톡의 유효활용과 갱신코스트의 감축대책의 추진
 -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한 구조의 추진
 - 민간자본, 능력의 활용
 - 사업평가의 엄정한 운용과 투명성의 확보
 -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코스트감축의 적절한 실시
- 또한, 이후의 경제 재정사정, 각 시책의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고, 탄력적으로 그 실시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항어장정비법의 규정에 기준하여 필요에 대응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새로운 장기계획(2007 - 2011)으로 구성하는 중점과제로서는 자국 주변수역에서 수산자원의 생산력의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와 튼실한 산지만들기 추진,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유지하기 위한 어촌의 형성 등이 있음

<표 5-13> 일본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 따른 성과 및 사업량

구분	내용
성과목표 (약5년후)	- 자급율 목표달성을 위한 수산물을 약 14.5만톤 증산 - 수산물유통거점지구에서 고도의 위생관리대책 아래에서 수산물의 출하 비율을 약 50%로 향상 양륙 어항 용벽이 내진화 되어 있는 어항의 비율을 약 40%로 향상 - 어촌의 어업집락 배수처리인구비율을 약 60%로 향상 방재기능이 강화된 어촌의 인구비율을 약 30%로 향상
사업량	- 어초나 증양식장의 정비 약 7.5만ha 어장의 효용회복을 위한 퇴적물 등의 제거 약 25만ha 해초, 간척지의 보존 등 약 5천ha - 수산물유통거점지구의 정비 약 150지구 수산물생산거점지구의 정비 약 485지구 - 집락배수시설이나 방재관련시설의 정비약 280지구

※ 에히메현, 치바현, 사이다마현 등에서 현재 산지수산물시장 통폐합이 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치바현은 20~30개 산지수산물 어협이 있으며 현재는 미정상태임)

다) 위판장 통·폐합

- 위판장의 통·폐합은 앞선 일본의 어항·어장정비 계획과 같이 추진되는 내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산지 위판장은 지역발전계획 등에 저해가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태조사 결과, 전국 180개 위판장 중에서는 실제로 위판을 하지 않고 고시로 지정만 받은 곳도 있었으며, 또는 폐장, 매각 등을 한 곳도 다수 있었음. 현재까지 파악된 위판 물량이 없는 위판장은 24개소가 있었음
-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지역 4개소, 전남, 경북지역 3개소, 충남, 제주지역 2개소, 울산 1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유에 대해서는 인근의 큰 위판장 옆에 소규모로 있는 위판장이라 전산상에 위판량이 합산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위판장이 없는 곳도 있었으며, 매각, 임시폐쇄, 폐업 한 곳도 있었음

<표 5-14> 위판물량이 없는 산지위판장 현황

지역	수협	위판장	사유
충남	보령	선어	활어위판장 합산
충남	서산	건어물	안흥위판장 합산
전남	진도	원포	진도위판장 합산
경북	축산	대진	축산위판장 합산
경북	후포	구산	후포위판장 합산
경북	후포	사동	후포위판장 합산
경남	통영	제2위판	본소위판장 합산
경남	고성	동해	우두위판장 합산
제주	한림	2위판장	1위판장 합산
제주	추자도	신양	추자위판장 합산
강원	강릉시	우암진항	위판장없음
강원	동해시	어달항	위판장없음
강원	삼척시	초곡항	위판장없음
강원	삼척시	덕산항	위판장없음
강원	원덕	호산항	위판장없음
강원	고성군	초도항	위판장없음
강원	양양군	물치항	위판장없음
강원	고성군	봉포항	위판기능없음
강원	속초시	사진항	개장준비중
경남	남해군	선소	2008개장
울산	울산	정자	신축공사예정
전남	여수	남면	임시폐쇄(07)
전남	고흥	사도	위판장매각
경남	고성	맥전포	폐장

○ 운영적인 효율화를 위한 위판장 통·폐합에 대한 수협의 사업추진 실적은 통영시의 사례로 알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개의 위판장을 도심에 가지고 있는 통영시의 경우, 위판장 면적의 협소로 위판장 기능이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시설로 지적됨
- 통영의 경우, 신어항 건설에 병행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합리화를 위해 1개 지역으로 집중화, 규모화를 추진

다. 산지 중도매인에 대한 지위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아직까지 산지위판장의 이용주체인 생산자 및 산지중도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도 등이 없는 상태이고, 중도매인의 자본력은 대형할인마트 등의 자본력과 비교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음
- 또한, 중도매인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판장별로 중도매인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응답 및 중도매인이 없다고 응답한 위판장 25개소를 제외한 155개 위판장 중 10명 이하가 50개소 였으며, 20명 이하는 100개소로 그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5-15> 위판장별 중도매인 수 현황

중도매인수	10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하	30명 이상 50명 이하	20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이상 20명 이하	10명 이하	계
개소	1	6	20	28	50	50	155

- 그리고 실제 통계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도매인협회 관계자분과의 면담에서 중도매인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인 것으로 파악되어졌으며, 중도매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새로운 인재의 유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중도매인의 경우 2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중도매인의 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결과 파악되었음

2) 개선방안

가) 산지 중도매인의 역할 확대

- 중도매인은 현재까지 산지위판장에서 실질적인 유통매체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법적으로 개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기능 및 권익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및 권익에 대한 법·제도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제도의 중도매인 기능에 현재의 산지위판장 가격결정 및 상거래 기능을 제외한 외부 수산물의 상품구색기능, 유통가공기능, 수배송 기능 등 물류적 기능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대형할인마트 등의 자본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중도매인들의 협회 등을 통한 자발적인 협력 구축이 필요함

나) 산지 중도매인 교육강화

- 아직까지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 및 중도매인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었으나, 수산물 산지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양성이 필요함
 - 산지중도매인의 사회적 경험에 교육이 더해질 경우, 산지 유통의 전문가로서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의 유입이 용이함
- 교육 등을 통한 새로운 인재유입이 가능해 질 경우, 현재의 중도매인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도매인들의 고연령화 문제 해결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산지위판장의 다기능화

1) 현황 및 문제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물의 국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위판량이 감소하고, 수입수산물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공급거점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 국내생산량의 감소로 수산물 공급거점으로서 산지위판장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음
- 정격(定格), 정질(定質), 정가(定價), 정량(定量), 정시(定時)라는 수산물 대량 수요처의 needs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대부분 원어상태의 수산물이 단순히 산지를 경유하는 형태의 수산물 산지유통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5일 근무제, 여가활용 지향, 건강지향,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와 교통통신 발달, 전국도로망 확충으로 어촌지역으로의 접근성 확보에 따라 산지위판장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지위판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어촌지역의 중심시설로서 산지위판장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혐오시설화하고 있으며, 시설의 활용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가) 산지위판장의 다기능

- 어촌 및 산지유통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산지위판장의 역할 전환을 통한 지역 경제 리드시설로 전환 추진이 필요하며, 수산물 산지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역할의 산지위판장, 새로운 가치를 지닌 다기능 산지위판장 개념 도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생산지원기능
 - 유통·가공 지원기능
 - 상품화기능
 - 도시민의 관광 및 여가공간
 -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생형 테마파크

나) 산지위판장의 공간적 활용

- 기존의 위판기능 + 부가가치제고기능 + 관광기능을 시행할 수 있는 위판장의 공간적 활용계획이 필요하며, 실제 일본에서는 마을단위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위판장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위판장 관광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산지위판장의 유형화

□ 유형화의 필요성

- 산지위판장의 조사 결과 지역별로 각기 다른 품종을 취급하고, 지역적인 특색이 있지만 산지위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각 지역별로 물량처리능력 및 유통 인프라 시설 등이 비교적 타 위판장에 비해 좋은 곳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도매인의 교육, 고차가공시설, 창고시설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분배할 수 있게 하여 산지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판장의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거점형 위판장은 지역별로 광역 유통형 위판장과의 거리가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위판장으로서 위판기능의 강화 및 저차가공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인근 지역의 유통 및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할 수 있는 위판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서지역형 위판장은 위판장의 기능 보다는 물량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육지로의 운송 비용 절약 및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곳으로, 특히 섬지역이 많은 남해 및 서해 지역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형화의 분류기준

- 산지위판량, 위판금액
- 산지위판장의 지역경제적 위상
- 위판 수산물의 주요 출하지
- 위판장 경영실태 및 유통 인프라 현황
- 어항입지 및 기능
- 사회경제 지리적 위치, 대도시, 중소도시와의 접근성

3. 유형별 산지위판장 세부실천계획

가. 광역 유통형

1)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

- 광역유통형 산지위판장은 기존의 위판 기능 보다는 유통 및 물류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전국적인 물류인프라 및 유통망을 가질 수 있게 함
-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및 유통망을 가진 위판장은 조사대상 중에서는 부산지역의 공동어시장이 예가 될 수 있음. 부산지역의 공동어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비지 시장을 가진 서울과의 물류인프라 시설 등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음
- 이와 같이 광역 유통형 산지위판장은 대규모 물량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하며,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2) 수산물 고차가공시설 구축

- 또한, 광역유통형 산지위판장은 자체 또는 인근에 수산물 고차가공시설을 두어 신선한 상태의 수산물을 고차가공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리고 산지에서 신선한 상태의 수산물을 가공함으로써 소비자는 좀 더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절약으로 가격역시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을 것임
- 고차가공을 산지에서 바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물 가공 산업의 전후방 산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3) 수산물 보관 및 유통채널 개발

- 광역유통형 산지위판장은 기존 위판장과는 틀리게 물류기능을 강화시켜, 전국적인 유통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격차이가 클 경우를 대비한 보관창고가 필요할 것이고, 기호가 각기 다른 지역의 유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채널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활어 및 선어의 경우, 즉시 유통을 시켜야 하지만, 냉동품 등의 보관이 용이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보다 나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필요함
- 또한 아무리 좋은 물류인프라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전국적인 유통채널 등을 가지지 못할 경우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인 유통망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지속적인 전국 유통채널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산지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실질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수산유통정책에 따른 계도가 필요한데 이를 광역유통형 산지위판장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됨
- 산지위판장의 유통 및 산지 수산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산지중도매인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한 젊은 인재의 유입 및 인재 양성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광역유통형 산지위판장은 대규모 물량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보관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곳으로 산지중도매인의 교육 등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수산물의 산지유통 발전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지역거점형

1) 위판기능 강화

- 지역거점형 산지위판장은 기존의 위판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산지위판장 물량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해야할 것임. 산지위판장의 물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수산물의 계통 판매비율을 높이는 것임
- 현재 양식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위판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정도가 위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위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에 대한 수산물 가격보존이 가장 큰 문제임
- 1997년 임의상장제 이후, 위판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위판금액보다는 비계통판매에 따른 생산자의 수입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계통판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판금액을 일전 수준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위판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위판물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판과 관련된 생산자의 편의시설 확보 및 위판과 관련된 투명성, 위판판매 시의 혜택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수산물 저차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지역거점형 산지위판장은 위판물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가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련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해야할 것임
- 위판되는 수산물을 위판하여 바로 유통시키는 것 보다는 수산물의 기본적인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변 가공업체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공공장까지의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브랜드화를 시켜 인지도를 높이고, 최근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을 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미 농산물에서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브랜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었음.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정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생산자들은 보다 고가의 수입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브랜드화를 통해 산지위판장은 보다 많은 위판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판매처의 확보로 생산자, 소비자, 산지 유통인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인터넷을 통한 유통채널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은 유통채널 다양화의 일환으로 산지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유통채널을 다양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에도 일부 산지중도매인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 양이 미미한 상태이고,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연계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도서지역형

1) 물량장 기능 강화

- 도서지역의 산지위판장은 조사결과, 위판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지의 산지위판장으로 옮겨와 다시 위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도서지역의 산지위판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폐쇄할 경우,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위판장은 위판장 기능 보다는 물량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도서지역 위판장은 보다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육지로 옮길 수 있도록 물량장 기능을 강화하여, 육지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등 물류비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2) 지역 어업인 편의 시설 확충

- 도서지역의 산지위판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위판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으로, 실제 조사결과, 위판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위판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도서지역 위판장은 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며, 이는 산지위판장의 물량 증대에도 연결될 것으로 판단됨

<표 5-16> 산지위판장 유형별 현황

구분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도서지역형
특징	대규모 소비지시장을 지향, 고차가 공업체등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시장브랜드화 도입 및 개발	위판장 기능의 강화, 기본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관광 등을 통한 부수적인 가치창출	유통 보다는 물량장의 기능을 강화, 어업인들의 편의 도모
출하권 규모	전국 또는 대규모 소비지시장	지역내 (시·도 단위)	권역내(군 단위)
유통	소비지시장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직거래 및 다양한 루트 개발 필요	일정부분 소비지 시장으로 유통되지만 지역내 가공업체 등을 통해 부가가치창출	수집을 통한 다량 물량확보로 인한 육지로의 유통비용절감

4. 지역별 · 유형별 산지위판장 분류 및 통 · 폐합

가. 분류기준

- 조사된 180개소의 산지위판장을 위의 내용과 같이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도서지역형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구분됨
 - 우선 위판장을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별 위판장을 제시함
 - 위와 같이 지역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선 지역별로 물량 및 사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구분할 경우, 지역적 편중 현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또한, 도서지역의 특별한 지역의 경우에는 도서지역형으로 구분함
 - 광역유통형 위판장의 경우에는 위의 대지면적, 위판물량, 위판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였음
 - 위판장의 유형별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은 대지면적 및 2007년 기준의 위판물량, 위판금액임

- 또한, 유형별 위판장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 우선순위에 대해 제시하였음

- 새로운 시설기준을 정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기존에 있던 농안법의 공판장 시설규정과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5-17> 위판장 유형화 분류 및 지원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역	- 지역적 편중 현상을 제거 - 광역유통형 위판장의 경우, 지역당 1개소로 한정함 -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도서지역형으로 구분	
대지면적	- 위판장의 대지면적, 위판물량, 위판금액을 고려하여, 위판장 유형을 분류하였음	
위판물량		
위판금액		
시설기준	- 광역유통형 위판장의 경우 공판장 시설기준을 적용 - 지역거점형 위판장의 경우 경매식 집하장 시설기준 적용	

나. 지역별 분류 및 통·폐합

1) 인천지역

- 인천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6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인천 위판장임. 따라서 인천지역의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는 인천 위판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의 외포, 소래, 웅진연안, 인천연안, 영흥 위판장의 5개소는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서 어업인들의 편의 및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표 5-18> 인천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인천	선어	29,282	7,508	19,624	광역유통형	-
용진연안	활어	3,798	3,962	31,256	지역거점형	-
인천연안	선어,활어	2,185	3,574	29,117	지역거점형	-
외포	기타	4,013	2,730	4,302	지역거점형	-
소래	선어,활어	4,007	2,605	22,115	지역거점형	-
영흥	활어,패류	1,653	1,517	5,662	지역거점형	-

※ 통·폐합 고려대상 위판장 없음

2) 강원지역

- 강원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30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강릉에 위치한 주문진항 위판장임. 따라서 강원지역의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는 주문진항 위판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의 29개 위판 중에서 덕산항, 우암진항, 어달항 위판장 등의 8개 위판장은 실태조사 결과, 위판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성군에 위치한 봉포항 위판장은 아야진항 위판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위판물량 및 정산 등을 고성군 수협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 위판장이 존재치 않은 8개소 위판장과 봉포항 위판장은 위판장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의 20개소 위판장은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서 이용자의 편의 및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19> 강원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 (㎡)	위판량 (톤)	금액 (백만원)	유형	비고
주문진항	선어,활어,패류	12,509	9,327	28,290	광역유통형	-
목호항	선어,활어	3,594	11,223	22,409	지역거점형	-
속초항	선어	1,257	8,789	22,044	지역거점형	-
삼척항	선어,활어	1,336	6,816	11,511	지역거점형	-
거진항	선어,활어	7,379	2,871	8,623	지역거점형	-
남해항	선어,활어,패류	9,706	1,768	8,515	지역거점형	-
대진항	선어,활어	4,390	821	6,103	지역거점형	-
대포항	선어,활어	1,289	962	5,510	지역거점형	-
임원항	선어	694	1,497	4,961	지역거점형	-
동명항	활어	653	507	4,627	지역거점형	-
아야진항	선어,활어	10,010	1,661	4,088	지역거점형	-
가진항	활어	496	1,203	2,332	지역거점형	-
장호항	선어,활어	1,607	1,151	1,951	지역거점형	-
기사문항	선어,활어	5,091	495	1,825	지역거점형	-
공현진항	활어	물량장	356	1,373	지역거점형	-
오호항	활어	165	226	1,060	지역거점형	-
사천진항	선어,활어,패류	545	481	1,020	지역거점형	-
동산항	선어,활어	132	230	777	지역거점형	-
문암1항	활어	106	140	529	지역거점형	-
문암2항	활어	물량장	109	467	지역거점형	-
금진항	선어,활어	1,500	20	293	지역거점형	-
봉포항	선어,활어,패류	1,652			통·폐합 고려	아야진항과 통합관리
덕산항		658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우암진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어달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사진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초곡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호산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초도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물치항					통·폐합 고려	위판장 없음

3) 충남지역

- 충남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15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보령에 위치한 활어 위판장임. 그리고 보령의 활어 위판장의 경우, 보령수협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어 위판장과 통·폐합이 가능할 경우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의 13개 위판장 중, 서산의 건어물 위판장은 안홍위판장과 통합 관리되고 있는 위판장으로 위판장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남은 12개 위판장은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서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할 것임

<표 5-20> 충남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보령 활어	활어	2,854	13,713	43,044	광역유통형	
안홍	선어, 활어, 건어	1,488	11,553	35,700	지역거점형	
마량	선어, 활어, 패류,해조	979	7,904	7,751	지역거점형	
장항	선어, 건어, 해조류	1,461	2,600	16,462	지역거점형	
대천항	활어,패류, 건어	4,225	1,960	7,722	지역거점형	
홍원	선어, 활어, 패류	1,415	1,445	10,568	지역거점형	
백사장	선어,활어	917	714	7,214	지역거점형	
영목	활어	350	283	1,390	지역거점형	
몽산포	활어	420	216	1,986	지역거점형	
활어	모두취급	643	170	1,825	지역거점형	
드르니	활어	995	164	1,579	지역거점형	
마검포	활어	물량장	102	909	지역거점형	
연포	선어, 활어	756		1,527	지역거점형	
서산 건어물	선어, 활어	1,282			통·폐합고려	안홍위판장과 통합관리
보령 선어	선어, 패류, 건어	3,300			통·폐합고려	활어위판장과 통합관리필요

4) 전북지역

○ 전북지역의 위판장은 총 2개소로서 해망도, 비응도 위판장이 있는데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규모가 큰 위판장이 군산에 위치한 해망도 위판장이고, 비응도 위판장은 해망도 위판장에 비해 물량 및 금액이 적음

- 전북의 2개 위판장을 유형화 한다면, 해망도 위판장은 광역유통형으로, 비응도 위판장은 지역거점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1> 전북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해망동	선어	5,897	12,639	34,318	광역유통형	-
비응도	활어	163	703	5,324	지역거점형	-

※ 통·폐합 고려대상 위판장 없음

5) 전남지역

- 전남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35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여수에 위치한 선어 위판장임. 따라서 전남지역의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서 여수의 선어위판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의 34개 위판장 중 진도 본소위판장과 통합 관리되고 있는 원포위판장과 임시 폐쇄된 여수 남면 위판장, 2007년 이후 위판을 하지 않는 영광 건어 위판장, 그리고 매각된 고흥의 사도위판장 등은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어종의 어기에만 위판을 하는 진도의 2개 위판장(접도, 회동)과 고흥의 2개 위판장(발포물김, 구암물김), 해남의 어란물김 위판장, 신안의 송공 위판장, 해남의 마른김 위판장 등도 위판장 통·폐합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거문도, 진도, 흑산도에 위치한 위판장의 경우 도서지역으로서 그에 맞는 위판장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의 20개소 위판장은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임

<표 5-22> 전남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 (㎡)	위판량(톤)	금액 (백만원)	유형	비고
여수선어	선어,건어	78,362	40,063	72,167	광역유통형	
목포동부	선어	2,582	21,252	69,029	지역거점형	
송도	선어,활어,기타	2,838	14,468	44,782	지역거점형	
여수건어	건어	78,362	7,800	34,840	지역거점형	
독대김	활어	125		1,077	지역거점형	
완도건어물	건어	3,980		14,363	지역거점형	
법성	선어	970	2,955	13,496	지역거점형	
목포서부	선어	4,156	2,852	6,816	지역거점형	
진도본소	해조류	1,409	2,585	2,385	지역거점형	
금일	해조류	2,529	2,344	8,478	지역거점형	
국동	패류	4,072	1,455	7,193	지역거점형	
완도활선어	선어,활어	7,177	1,394	12,554	지역거점형	
군내	활어	5,210	1,169	9,540	지역거점형	
강진활선어	선어,활어	1,162	989	9,891	지역거점형	
나로도 수산물	선어,활어	2,646	935	5,777	지역거점형	
서망	선어	1,990	867	8,307	지역거점형	
녹동	선어,활어,패류	3,031		24,869	지역거점형	
사초	활어	330	193	1,938	지역거점형	
송림	활어	132	38	343	지역거점형	
계마	선어	544	21	458	지역거점형	
소안수산물	활어	378	4	300	지역거점형	
조도	해조류	166	845	2,449	도서지역형	
거문도	선어,활어	1,260	6,702	12,562	도서지역형	
흑산도	선어	660	1,318	14,023	도서지역형	
영광	건어	695	661	747	통·폐합고려	'07년 이후 위판없음
해남마른김	해조류	6,194	349	4,154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남면	해조류	684			통·폐합고려	임시폐쇄
사도					통·폐합고려	위판장 매각
발포물김	해조류	990	5,404	6,143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송공	해조류	800	3,720	3,184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접도	해조류	128	9,663	13,728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어란물김	해조류	231	9,636	10,290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구암물김	해조류	497	9,119	1,130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회동	해조류	226	6,965	7,772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원포	해조류	348			통·폐합고려	진도본소위판 장과통합관리

6) 경북지역

- 경북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22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구룡포에 위치한 6개 위판장들로서 활어, 잡어, 트롤, 장기, 선동, 대보 위판장임. 따라서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구룡포에서 위판장 면적이 가장 넓은 활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위판장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의 16개 위판 중에서 후포의 사동과 구산 위판장은 후포위판장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었으며, 축산의 대진 위판장 또한 축산 위판장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었음. 이들 3개 위판장의 경우에는 위판장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위의 3개소를 제외한 13개소 위판장 중 울릉도에 위치한 4개 위판장(태하, 천부, 저동, 현포)은 도서지역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남은 8개소의 위판장은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위판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5-23> 경북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구룡포활어	선어,활어	17,250	2,744	7,656	광역유통형	
감포	선어	1,370	20,147	29,825	지역거점형	
후포	선어,활어	1,419	13,577	30,206	지역거점형	
죽변	선어,활어	1,054	12,886	3,290	지역거점형	
강구	선어,활어	1,359	11,332	20,204	지역거점형	
죽도	선어	1,234	11,294	36,990	지역거점형	
축산	선어	2,073	10,757	14,860	지역거점형	
원남	선어,활어	400	2,756	2,908	지역거점형	
동빈활어	활어	1,744	1,011	10,835	지역거점형	
창포	선어	43	48	268	지역거점형	
저동	선어	669	6,049	10,364	도서지역형	
현포	선어	118	287	553	도서지역형	
태하	선어	920	218	470	도서지역형	
천부	선어	313	38	139	도서지역형	

제5장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 (백만원)	유형	비고
장기	선어,활어	3,315	1,505	6,908	통·폐합고려	구룡포활어 위판장과의 통합필요
트롤	선어	5,134	15,483	14,551	통·폐합고려	구룡포활어 위판장과의 통합필요
구룡포잡어	선어,활어	5,428	7,024	24,172	통·폐합고려	구룡포활어 위판장과의 통합필요
선동	선어	1,465	3,662	6,012	통·폐합고려	구룡포활어 위판장과의 통합필요
대보	선어,활어	150	1,020	1,211	통·폐합고려	구룡포활어 위판장과의 통합필요
대진	활어	2,850			통·폐합고려	축산 위판장과 통합관리
사동	활어	263			통·폐합고려	후포 위판장과 통합관리
구산	활어	99			통·폐합고려	후포 위판장과 통합관리

7) 경남지역

- 경남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52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통영수협에서 관리하는 4개위판장(본소, 제2위판장, 도천동, 견유)임. 따라서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통영에서 위판장 면적이 가장 넓은 본소 위판장을 중심으로 위판장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육지와 사량 위판장은 섬 지역으로 도서지역형 위판장으로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물량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성외 동해 위판장은 우두위판장과 통합 관리되고 있었으며, 고성의 맥전포 위판장은 실태조사 결과 폐장된 곳으로 위판장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하동군에 위치한 갈사지점 위판장은 위판되는 주요어종이 도다리으로써 도다리 여기에만 위판이 되는 곳으로, 이 또한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의 43개 위판장은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판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해야할 것임

<표 5-24> 경남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통영본소	선어	4,411	39,084	29,335	광역유통형	
삼천포활어	활어	3,437	2,538	22,484	지역거점형	
서남해	활어	2,000	1,168	6,300	지역거점형	
기선권형망 마산	건어	1,980	4,353	18,298	지역거점형	
마산본소	선어	1,750	20,810	35,405	지역거점형	
고현	선어,활어	1,699	305	784	지역거점형	
단항	활어,패류	1,650	1,086	8,068	지역거점형	
용원	활어	1,584	6,724	15,012	지역거점형	
구조라	활어	1,482	185	1,075	지역거점형	
기선권현망 본소	건어	1,308	16,501	70,843	지역거점형	
안골	선어,활어	1,300	124	925	지역거점형	
대포	활어	1,147	238	889	지역거점형	
근해통발	활어	1,124	1,095	5,831	지역거점형	
속천	선어,활어	1,043	535	4,112	지역거점형	
장승포	선어,활어	985	6,201	3,860	지역거점형	
삼천포선어	선어	885	33,088	36,088	지역거점형	
사천활어	활어	713	827	4,013	지역거점형	
잠수기마산	패류	667	2,026	3,426	지역거점형	
삼천포건어	건어	654	4,451	26,144	지역거점형	
삼천포패류	패류	513	1,860	7,163	지역거점형	
잠수기통영	패류	498	835	4,022	지역거점형	
잠수기거제	패류	403	409	1,334	지역거점형	
외포	활어	398	3,722	4,824	지역거점형	
남해군활어	활어	385	2,410	18,200	지역거점형	
재첩	패류	311	168	419	지역거점형	
굴수하본소	패류	309	13,870	55,348	지역거점형	
남포항	패류	300	2,250	10,092	지역거점형	
성포	활어	283	227	1,614	지역거점형	
명계	패류	237	3,516	5,902	지역거점형	
평산	활어,패류	227	233	1,371	지역거점형	
옥포	활어	218	123	250	지역거점형	
남해군선어	선어	206	10,841	7,838	지역거점형	
잠수기남해	패류	204	199	821	지역거점형	
노량	활어	182	2,671	14,651	지역거점형	
감암	활어,패류	180	2,680	12,836	지역거점형	
제덕	활어	175	388	3,856	지역거점형	
원천	활어	144	65	771	지역거점형	
능포	활어	122	284	622	지역거점형	
광암	선어	120	87	330	지역거점형	

제5장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삼산	활어	100	36	285	지역거점형	
하일	활어	100	311	2,243	지역거점형	
우두	활어	81	162	1,150	지역거점형	
당항	활어	60	96	301	지역거점형	
선소	활어	50			지역거점형	
사량	패류	245	117	1,210	도서지역형	
육지	활어	607	1,190	6,684	도서지역형	
통영2위판	선어	1,773			통·폐합고려	본소위판장과 통합관리필요
도천동	활어,패류	990	2,440	13,098	통·폐합고려	본소위판장과 통합관리필요
견유	활어	330	790	4,907	통·폐합고려	본소위판장과 통합관리필요
맥전포		200			통·폐합고려	폐장
하동갈사	활어	181	133	763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만 위판
동해	활어	198			통·폐합고려	우두위판장과 통합관리

8) 울산지역

- 울산지역의 위판장은 총 2개소로서 방어진, 정자 위판장이 있는데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규모가 큰 위판장이 방어진 위판장이고, 정자 위판장은 현재 신축공사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울산의 2개 위판장을 유형화 한다면, 방어진 위판장은 절대적인 개념의 위판량 및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광역유통형으로서는 부적합하고, 정자 위판장은 위판장 신축공사예정으로 둘 다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 울산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위판장 이용자들의 현의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임

<표 5-25> 울산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주요위판어종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방어진	선어,활어	가자미,오징어	20,696	8,271	17,724	지역거점형
정자	활어	대게				지역거점형

※ 통·폐합 고려대상 위판장 없음

9) 부산지역

- 부산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8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부산공동어시장임. 따라서 부산지역의 광역유통형 위판장 으로서는 부산공동어시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지역의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 중의 하나로서 울산 지역에는 광역유통형 위판장이 없기 때문에 부산공동어시장이 울산지역의 광역유통 까지 맡아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부산의 위판장 중에서 연중위판이 되지 않는 위판장은 대변 위판장과 학리 위판장으로써 그 중 학리 위판장은 위판물량 및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학리위판장의 경우에는 위판장 통·폐합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의 6개 위판장은 지역거점형 위판장으로서 부산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고, 위판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26> 부산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공동어시장	선어, 활어	64,257	299,000	272,857	광역유통형	
자갈치	선어	2,788	31,868	38,096	지역거점형	
다대	선어, 활어, 해조	15,020	25,058	25,351	지역거점형	
부산	패류	840	8,266	11,881	지역거점형	
대변	선어	909	6,257	6,457	지역거점형	
남포동	건어	656	5,710	30,145	지역거점형	
민락	활어	8,990	527	2,134	지역거점형	
학리	활어	132	7	57	통·폐합고려	해당어기에 만위판

10) 제주지역

- 제주지역의 경우 산지위판장이 총 8개소로 그 중 면적 및 물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위판장이 한림지역의 제1위판장임. 따라서 제주지역의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서의 한림 제1위판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 지역의 위판장 중 한림 제2위판장은 제1위판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제1위판장이 처리할 수 있는 포화물량을 넘어설 경우에 사용되는 위판장으로 제1위판장과의 통·폐합이 고려됨
- 그리고 추자도의 2개 위판장(추자, 신양)의 경우에는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서지역형 위판장으로서 물량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5-27> 제주지역 위판장 유형 및 통·폐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유형	비고
한림1위판	선어	3,389	18,357	71,414	광역유통형	
성산포	선어,활어	2,402	12,322	72,022	지역거점형	
서귀포	선어	2,267	8,252	58,000	지역거점형	
모슬포	선어,활어	3,197	6,498	14,471	지역거점형	
제주시	선어,패류	1,755	5,288	25,236	지역거점형	
추자	선어	330	3,480	17,000	도서지역형	
신양	선어	100			도서지역형	
한림2위판	선어	1,026			통·폐합고려	1위판장과의 통합관리필요

다. 위판장 시설 기준에 따른 지원순위

- 우선, 위판장 시설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 않아, 광역유통형의 경우에는 농안법상의 공판장 시설 기준을 적용하였고, 지역거점형 위판장에 대해서는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였음

-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지위판장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위판장들의 시설 현황들에 대해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았음

1) 광역유통형

- 조사된 위판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광역유통형은 9개소로 동 위판장에 대해서는 공판장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농안법상의 공판장 시설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공판장 시설 기준 중 인구 30만~100만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 시설 기준 중에서 필수시설에 대해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광역유통형 위판장들을 살펴보면, 필수시설 중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오물처리장 및 사무실, 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 시설에 대해 미비한 위판장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충남지역의 광역유통형 위판장으로 분석된 보령의 활어 위판장이 광역유통형 위판장 중 시설면에서 가장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표 5-28> 광역유통형 위판장 시설기준

구분	기준(m ²)	해당	비해당	비해당위판장명	
대지	3,300	8	1	보령활어	
건물	1,320	7	2	여수선어(미기재),구룡포활어(미기재)	
필수 시설	경매장(유개)	990	7	2	보령활어,구룡포활어(미기재)
	주차장	330	7	2	여수선어,보령활어
	냉장실	30(50톤)	7	2	해망동,여수선어
	저빙실	30(50톤)	7	2	해망동,여수선어
	오물처리장	70	5	4	해망동,공동어시장,보령활어,구룡포활어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	70	8	1	통영,한림,주문진,보령활어,인천,여수선어,공동어시장,구룡포활어
	사무실	50	6	3	구룡포활어,보령활어,인천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50	1	8	여수선어,한림,해망동,통영,주문진,구룡포활어,보령활어,인천
부수 시설	상온창고,가공처리장,제빙시설,염장조,염장실,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소각시설,용융기				

2) 지역거점형

- 지역거점형 위판장은 전국 122개소로서 동 위판장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기준은 공판장의 시설기준보다는 간단하고, 축소된 것으로 광역유통형과 마찬가지로 공판장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대해 차등하여 살펴봄
 - 광역유통형 위판장과 마찬가지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분석함
- 경매식 집하장 시설기준과 비교하여, 조사된 위판장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지역과 경남지역의 위판장들이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필수시설 중에서 오물처리장이 122개 지역거점형 위판장 중에서 73.0%인 89개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강원지역과 경남지역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수시설 중에서는 오물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29> 지역거점형 시설기준

구분	기준(m ²)	해당	비해당	지역별비해당개소
부지	400	89 (73.0%)	33 (27.0%)	강원3,충남1,전북1,전남4,경북1, 경남22,울산1
건물	150	69 (56.6%)	53 (43.4%)	인천1,강원7,충남4,전북1,전남3,경북4, 경남32,제주1
필수 시설	경매장	유 103 (84.4%)	19 (15.6%)	강원6,충남3,경북1 경남5,울산1,부산3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	유 83 (68.0%)	39 (32.0%)	인천1,강원16,충남3,전북1,전남3,경북3, 경남11,울산1
	오물처리장	유 33 (27.0%)	89 (73.0%)	인천1,강원18,충남8,전북1,전남11,경북7, 경남38,울산2,부산3
부수 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및 출하상담실, 저온보관시설(동결, 저빙, 냉장실 등), 가공처리장, 소각시설, 중도매인사무실, 주차장,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소결

- 이상에서 전국 180개소 위판장에 대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광역유통형 위판장과 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거점형 위판장, 그리고 특수지역인 도서지역에 대한 도서지역형 위판장, 마지막으로 위판장 통·폐합을 고려할 수 있는 위판장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였음

<표 5-30> 전국 위판장 지역별·유형별 분류 및 통·폐합(안)

(단위 : 개소)

지역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도서지역형	통폐합고려	계
인천	1	5	-	-	6
강원	1	20	-	9	30
충남	1	12	-	2	15
전북	1	1	-	-	2
전남	1	20	3	11	35
경북	1	9	4	8	22
경남	1	43	2	6	52
울산	-	2	-	-	2
부산	1	6	-	1	8
제주	1	4	2	1	8
합계	9	122	11	38	180

- 그 결과,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전국에 9개소, 지역거점형 위판장은 122개소, 도서지역형은 11개소, 통폐합 고려를 해야 할 위판장은 3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31> 전국 광역유통형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인천	인천	선어	29,282	7,508	19,624
강원	주문진항	선어,활어,패류	12,509	9,327	28,290
충남	보령활어	활어	2,854	13,713	43,044
전북	해망동	선어	5,897	12,639	34,318
전남	여수선어	선어,건어	78,362	40,063	72,167
경북	구룡포활어	선어,활어	17,250	2,744	7,656
경남	통영본소	선어	4,411	39,084	29,335
부산	공동어시장	선어,활어	64,257	299,000	272,857
제주	한림1위판	선어	3,389	18,357	71,414

<표 5-32> 전국 지역거점형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인천	옹진연안	활어	3,798	3,962	31,256
	인천연안	선어,활어	2,185	3,574	29,117
	외포	기타	4,013	2,730	4,302
	소래	선어,활어	4,007	2,605	22,115
	영흥	활어,패류	1,653	1,517	5,662
강원	주문진항	선어,활어,패류	12,509	9,327	28,290
	목호항	선어,활어	3,594	11,223	22,409
	속초항	선어	1,257	8,789	22,044
	삼척항	선어,활어	1,336	6,816	11,511
	거진항	선어,활어	7,379	2,871	8,623
	남해항	선어,활어,패류	9,706	1,768	8,515
	대진항	선어,활어	4,390	821	6,103
	대포항	선어,활어	1,289	962	5,510
	임원항	선어	694	1,497	4,961
	동명항	활어	653	507	4,627
	아야진항	선어,활어	10,010	1,661	4,088
	가진항	활어	496	1,203	2,332
	장호항	선어,활어	1,607	1,151	1,951
	기사문항	선어,활어	5,091	495	1,825
	공현진항	활어	물량장	356	1,373
	오호항	활어	165	226	1,060
	사천진항	선어,활어,패류	545	481	1,020
	동산항	선어,활어	132	230	777
	문암1항	활어	106	140	529
	문암2항	활어	물량장	109	467
금진항	선어,활어	1,500	20	293	
충남	안흥	선어,활어,건어	1,488	11,553	35,700
	마량	선어,활어, 패류,해조	979	7,904	7,751
	장항	선어,건어,해조류	1,461	2,600	16,462
	대천항	활어,패류,건어	4,225	1,960	7,722
	홍원	선어,활어,패류	1,415	1,445	10,568
	백사장	선어,활어	917	714	7,214
	영목	활어	350	283	1,390
	몽산포	활어	420	216	1,986
	무창포	모두취급	643	170	1,825
	드르니	활어	995	164	1,579
마검포	활어	물량장	102	909	
연포	선어, 활어	756		1,527	
전북	비응도	활어	163	703	5,324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전남	목포동부	선어	2,582	21,252	69,029
	송도	선어,활어,기타	2,838	14,468	44,782
	여수건어	건어	78,362	7,800	34,840
	독대김	활어	125		1,077
	완도건어물	건어	3,980		14,363
	법성	선어	970	2,955	13,496
	목포서부	선어	4,156	2,852	6,816
	진도본소	해조류	1,409	2,585	2,385
	금일	해조류	2,529	2,344	8,478
	국동	패류	4,072	1,455	7,193
	완도활선어	선어,활어	7,177	1,394	12,554
	군내	활어	5,210	1,169	9,540
	강진활선어	선어,활어	1,162	989	9,891
	나로도 수산물	선어,활어	2,646	935	5,777
	서망	선어	1,990	867	8,307
	녹동	선어,활어,패류	3,031		24,869
	사초	활어	330	193	1,938
	송림	활어	132	38	343
	계마	선어	544	21	458
	소안수산물	활어	378	4	300
경북	감포	선어	1,370	20,147	29,825
	후포	선어,활어	1,419	13,577	30,206
	죽변	선어,활어	1,054	12,886	3,290
	강구	선어,활어	1,359	11,332	20,204
	죽도	선어	1,234	11,294	36,990
	축산	선어	2,073	10,757	14,860
	원남	선어,활어	400	2,756	2,908
	동빈활어	활어	1,744	1,011	10,835
	창포	선어	43	48	268
경남	삼천포활어	활어	3,437	2,538	22,484
	서남해	활어	2,000	1,168	6,300
	기선권형망 마산	건어	1,980	4,353	18,298
	마산본소	선어	1,750	20,810	35,405
	고현	선어,활어	1,699	305	784
	단항	활어,패류	1,650	1,086	8,068
	용원	활어	1,584	6,724	15,012
	구조라	활어	1,482	185	1,075
	기선권현망 본소	건어	1,308	16,501	70,843

제5장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경남	안골	선어,활어	1,300	124	925
	대포	활어	1,147	238	889
	근해통발	활어	1,124	1,095	5,831
	속천	선어,활어	1,043	535	4,112
	장승포	선어,활어	985	6,201	3,860
	삼천포선어	선어	885	33,088	36,088
	사천활어	활어	713	827	4,013
	잠수기마산	패류	667	2,026	3,426
	삼천포건어	건어	654	4,451	26,144
	삼천포패류	패류	513	1,860	7,163
	잠수기통영	패류	498	835	4,022
	잠수기거제	패류	403	409	1,334
	외포	활어	398	3,722	4,824
	남해군활어	활어	385	2,410	18,200
	재첩	패류	311	168	419
	굴수하본소	패류	309	13,870	55,348
	남포항	패류	300	2,250	10,092
	성포	활어	283	227	1,614
	명계	패류	237	3,516	5,902
	평산	활어,패류	227	233	1,371
	옥포	활어	218	123	250
	남해군선어	선어	206	10,841	7,838
	잠수기남해	패류	204	199	821
	노량	활어	182	2,671	14,651
	감암	활어,패류	180	2,680	12,836
	제덕	활어	175	388	3,856
	원천	활어	144	65	771
	능포	활어	122	284	622
	광암	선어	120	87	330
	삼산	활어	100	36	285
하일	활어	100	311	2,243	
우두	활어	81	162	1,150	
당항	활어	60	96	301	
선소	활어	50			
울산	방어진	선어,활어	20,696	8,271	17,724
	정자	활어			
부산	차갈치	선어	2,788	31,868	38,096
	다대	선어,활어,해조	15,020	25,058	25,351
	부산	패류	840	8,266	11,881
	대변	선어	909	6,257	6,457
	남포동	건어	656	5,710	30,145
	민락	활어	8,990	527	2,134
제주	성산포	선어,활어	2,402	12,322	72,022
	서귀포	선어	2,267	8,252	58,000
	모슬포	선어,활어	3,197	6,498	14,471
	제주시	선어,패류	1,755	5,288	25,236

<표 5-33> 도서지역형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전남	조도	해조류	166	845	2,449
	거문도	선어,활어	1,260	6,702	12,562
	흑산도	선어	660	1,318	14,023
경북	저동	선어	669	6,049	10,364
	현포	선어	118	287	553
	태하	선어	920	218	470
	천부	선어	313	38	139
경남	사랑	패류	245	117	1,210
	육지	활어	607	1,190	6,684
제주	추자	선어	330	3,480	17,000
	신양	선어	100		

<표 5-34> 전국 통·폐합고려 위판장(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강원	봉포항	선어,활어,패류	1,652		
	덕산항		658		
	우암진항				
	어달항				
	사진항				
	초곡항				
	호산항				
	초도항				
	물치항				
충남	서산건어물	선어, 활어	1,282		
	보령선어	선어,패류,건어	3,300		
전남	영광	건어	695	661	747
	해남마른김	해조류	6,194	349	4,154
	남면	해조류	684		
	사도				
	발포물김	해조류	990	5,404	6,143
	송공	해조류	800	3,720	3,184
	접도	해조류	128	9,663	13,728
	어란물김	해조류	231	9,636	10,290
	구암물김	해조류	497	9,119	1,130
	회동	해조류	226	6,965	7,772
	원포	해조류	348		

제5장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발전방안

지역	위판장명	주요취급부류	대지(m ²)	위판량(톤)	금액(백만원)
경북	장기	선어,활어	3,315	1,505	6,908
	트롤	선어	5,134	15,483	14,551
	구룡포잡어	선어,활어	5,428	7,024	24,172
	선동	선어	1,465	3,662	6,012
	대보	선어,활어	150	1,020	1,211
	대진	활어	2,850		
	사동	활어	263		
	구산	활어	99		
경남	통영2위판	선어	1,773		
	도천동	활어,패류	990	2,440	13,098
	견유	활어	330	790	4,907
	맥전포		200		
	하동갈사	활어	181	133	763
	동해	활어	198		
부산	학리	활어	132	7	57
제주	한림2위판	선어	1,026		

-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산지위판장 시설지원시에는, 산지위판장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광역유통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9개소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임
 - 농안법상의 공판장 시설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충남 보령의 활어 위판장에 대한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지역별 거점이 되어 주위의 위판장에 대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으로도 위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는 지역거점형 위판장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거점형 위판장들은 광역위판장과 지리적인 문제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물량 처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 경매식 집하장의 시설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 및 강원지역의 위판장들에 대한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5-35> 산지위판장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안)

구분	광역유통형	지역거점형
개소	9	122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유형 내 우선순위	보령 활어위판장	경남지역, 강원지역
유형내 우선순위 사유	- 보령 활어 위판장이 타 8개 위판장에 비해 시설기준에 부적합함	- 경남지역과 강원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시설기준에 미달한 위판장이 다수

제6장 산지위판장 중장기 위판율 전망

제1절 분석 필요성 및 현황

1. 위판율 전망의 필요성

- 07년 수산발전기금운영의 평가와 관련된 회의¹⁰⁾에서 수산발전기금 중 용자사업의 한 부분인 ‘공판장출하촉진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일률적인 80%에서 매년 소폭 낮추어 연도별로 변동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

<당초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 일반해면 위판율(%)							
○ 계획	80	80	80	80	80	80	80
○ 달성	84	85	83	83	81		

<변경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 일반해면 위판율(%)							
○ 계획	85	85	83	82	81	80	79
○ 달성	84	85	83	83	81		

- 이에 대하여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위판율 전망 추이가 먼저 설명되어야 함이 지적됨
-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사업비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판장출하촉진 사업비 (수협에서 경매 후 어업인에게 즉시 지급하는 어대금)”이며, 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지

10) 2008년 4월 4일

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생산자는 사매매보다 대금결제가 안전한 위판장을 통한 판매를 선호하게 될 것임

- 동 자금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는 일반해면 위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일반해면 위판율 성과지표를 최근 3년 평균 실적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의한 직거래 확대 등 위판율 감소추세를 감안, 위판율 계획을 매년 소폭 낮추어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함. 성과지표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해면의 장기 위판율 전망 추이가 필요함

2. 공판장 출하촉진 사업

- 공판장 출하촉진사업은 수산발전기금사업 중 용자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어업인 수취가 제고, 계통출하 확대로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며,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표 6-1> 공판장출하촉진사업 개념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가격안정 및 어업인 수취가 제고 • 계통출하 확대로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비용 절감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사업실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중앙회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중앙회 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구별·업종별 조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 84,000백만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 3.0~4.0% - 용자기간 :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 - 용자한도 :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50억원 - 사업의무부담 : 대출금액의 연간 24회전

- 지원내용을 보면 총 지원액은 2008년 예산기준 84,000백만원, 지원조건은 연 3.0~4.0%의 금리를 적용하며, 융자기간은 1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
- 공판장출하촉진사업의 예산은 수산발전기금 전체의 약 15.3%를 차지하며,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사업비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표 6-2> 공판장출하촉진사업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산발전기금(A)	공판장출하촉진(B)	예산 비율(B/A)
2005	550,693	86,325	15.7%
2006	551,064	92,000	16.7%
2007	525,354	85,300	16.2%
2008	547,909	84,000	15.3%

3. 위판율 현황

가. 주요업종의 위판율 추이

- 1997~2007년까지 일반해면어업의 업종별 연간 생산량 순위는 아래 <표 6-3>와 같으며, 상위 10위 중 연안자망과 연안개량안강망, 정치망 등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근해어업이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 1997~2007년까지의 연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대형선망으로 연평균 191,528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순으로 나타남

<표 6-3> 주요업종의 생산량순위

(단위 : MT)

순위	업종	평균생산량(1997~2007)
1	대형선망	191,528
2	기선권현망	111,442
3	대형트롤	106,201
4	대형기저(쌍)	84,473
5	연안자망	77,202
6	근해채낚기	74,762
7	근해안강망	67,841
8	정 치 망	55,488
9	근해자망	41,533
10	연안개량안강망	29,045
상위10개업종 평균생산량 합계		856,794
기타어업 ¹¹⁾		332,298
일반해면어업 평균생산량		1,189,093

자료: 어업생산통계자료 재작성

-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1997년 1,367,342톤, 2007년 1,152,299톤으로 약 15% 이상이 하락하였으며, 상위 10개 업종의 생산량은 약 30%이상이 하락하여 일반해면어업전체 생산량의 하락 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은 의무상장제가 폐지된 1997년 84.7%에서 2007년 80.5% 약 4.2%정도 하락하였으며, 2001년 89.8%와 비교하면 9.3%의 차이를 보임. 그러나 상위 10위의 업종별 위판율을 살펴보면 1997년 94.4%에서 2007년 93.7%로 약 0.7%의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 하락폭보다 현저하게 낮음
- 상위 10개 업종전체의 위판율 하락폭이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 하락폭보다 작은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생산량 기준 상위 10개 업종의 대부분이 근해어업에

11) 여기서 기타어업은 1997~2007년의 연간평균생산량 상위 10개의 업종을 제외한 일반해면어업의 업종을 칭함

포함되며, 생산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가지는 계통판매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 아래 <표 6-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자망 및 연안개발 안강망의 위판율은 하락추세를 보이며, 이를 제외한 업종에서는 약 100%에 가까운 위판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표 6-4> 상위 10개업종의 생산량 및 위판율 추이

(단위 :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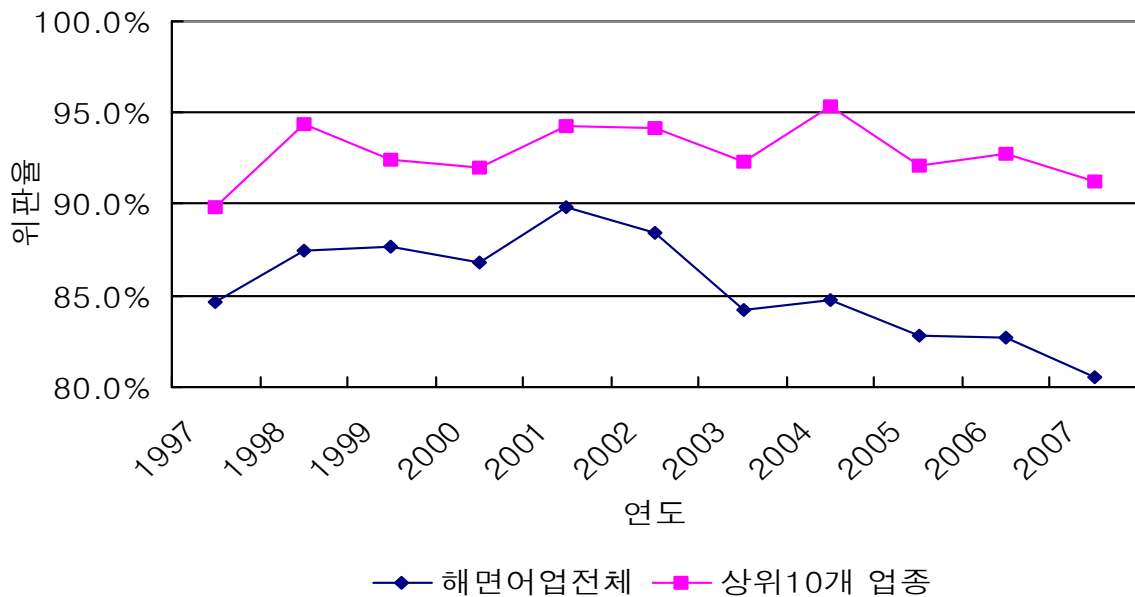
연도	일반해면어업 생산량(A)	상위10개업종 생산량(B)	생산량비율 (B/A)	일반해면어업 위판율	상위10개업종 위판율
1997년	1,367,342	993,896	72.7%	84.7%	94.4%
1998년	1,308,336	949,398	72.6%	87.5%	95.4%
1999년	1,336,062	1,010,042	75.6%	87.6%	93.1%
2000년	1,189,000	870,362	73.2%	86.8%	93.1%
2001년	1,252,099	933,155	74.5%	89.8%	96.0%
2002년	1,095,812	807,489	73.7%	88.4%	95.3%
2003년	1,096,526	756,624	69.0%	84.2%	96.8%
2004년	1,076,687	728,339	67.6%	84.8%	97.2%
2005년	1,097,041	730,153	66.6%	82.8%	95.0%
2006년	1,108,815	738,349	66.6%	82.7%	95.1%
2007년	1,152,299	716,862	62.2%	80.5%	93.7%

자료: 어업생산통계자료 제작성

<표 6-5> 상위 10개업종별 위판율

연도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대형기저(쌍)	연안자망	근해 채낚기	근해 안강망	정 치 망	연안개량 안강망	근해자망
1997년	100.0%	85.2%	99.9%	99.7%	54.1%	75.5%	100.0%
1998년	100.0%	83.4%	100.0%	99.8%	78.1%	62.2%	97.6%
1999년	100.0%	76.4%	99.9%	100.0%	66.4%	44.4%	98.5%
2000년	100.0%	82.4%	100.0%	100.0%	71.7%	34.3%	100.0%
2001년	100.0%	80.5%	99.8%	100.0%	87.8%	58.9%	100.0%
2002년	100.0%	77.8%	100.0%	100.0%	85.6%	44.7%	99.4%
2003년	100.0%	76.3%	100.0%	100.0%	98.7%	69.2%	100.0%
2004년	100.0%	75.8%	100.0%	100.0%	96.9%	66.9%	100.0%
2005년	100.0%	61.8%	99.0%	100.0%	90.8%	72.6%	99.1%
2006년	100.0%	65.8%	99.3%	100.0%	93.9%	68.1%	94.4%
2007년	100.0%	59.4%	99.4%	100.0%	91.4%	69.5%	95.5%

자료: 어업생산통계자료 재작성



<그림 6-1> 상위 10개업종 위판율 추이

나. 주요어종의 위판을 주이

- 1997~2007년까지 일반해면어업의 어종별 연간 평균생산량 중 상위15개 어종을 주요어종으로 선정하여 주요어종의 위판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순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상위 15위 중 저서어종인 가자미, 아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1개년의 평균연간생산량은 멸치류가 237,546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어류 갈치 순으로 조사됨

<표 6-6> 주요 15개 어종의 생산량순위

(단위 : MT)

순위	어법	평균생산량(1997~2007)
1	멸치류	237,546
2	고등어류	153,582
3	갈치	67,871
4	강달이	30,385
5	삼치류	26,573
6	전갱이류	22,948
7	가자미류	16,920
8	참조기	16,761
9	붕장어	14,340
10	병어	10,150
11	청어	11,593
12	송어류	8,493
13	아귀	8,466
14	전어	8,107
15	꽁치	7,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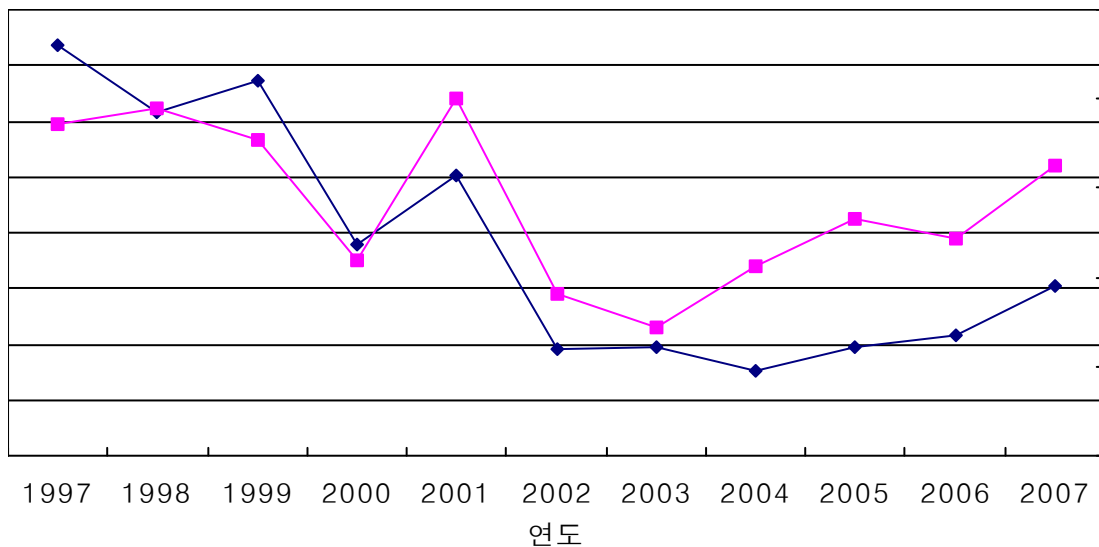
- 15개 주요어종 생산량은 1997년 686,311톤에서 2007년 662,091톤으로 약 3.5%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감소폭인 약 15.7%와 비교하여 볼 때 주요 15개 어종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므로 일반해면어업생산량에 대한 주요 15개 어종의 생산량 비율 1997년 50.2%에서 2007년 57.5%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6-7> 주요 15개 어종의 생산량변동 추이

(단위 : MT)

연도	일반해면어업	주요 15개 어종 생산량	주요15개어종 생산량 비율
1997	1,367,342	686,311	50.2%
1998	1,308,336	694,733	53.1%
1999	1,336,062	676,915	50.7%
2000	1,189,000	609,222	51.2%
2001	1,252,099	700,574	56.0%
2002	1,095,812	590,326	53.9%
2003	1,096,526	571,891	52.2%
2004	1,076,687	605,767	56.3%
2005	1,097,041	632,755	57.7%
2006	1,108,815	621,589	56.1%
2007	1,152,299	662,091	57.5%



—◆— 일반해면어업생산량 —■— 주요15개어종생산량

<그림 6-2> 연도별 주요어종 및 일반해면전체 비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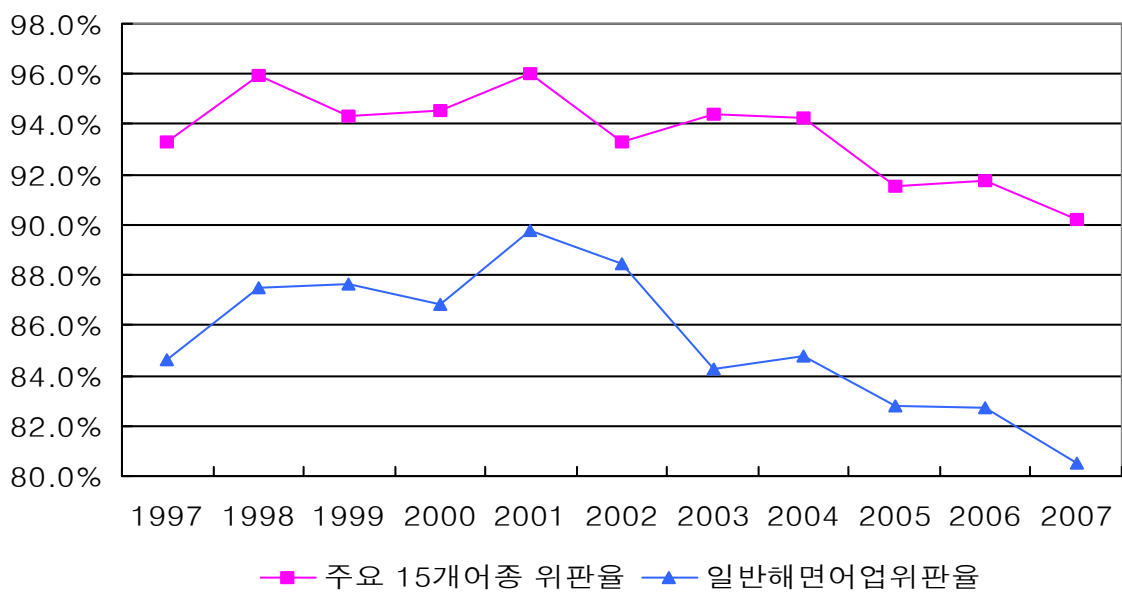
○ 주요 15개 어종의 위판량은 1997년 640,231톤으로 전체 일반해면어업의 93.3%에서 2007년 597,492톤, 위판율 90.2%로 위판량과 위판율 모두 하락하였음. 그러나 일반해면

어업전체의 위판율과 비교하여보면 주요 15개 어종의 위판율 변동폭이 일반해면 전체 위판율 변동폭보다 작아 일반해면 전체보다 위판율 변동에 있어서 안정적이라 볼 수 있음

<표 6-8> 주요 15개 어종의 위판율 변동 추이

(단위 : MT)

연도	주요 15개 어종 생산량(A)	주요 15개 어종 위판량(B)	주요 15개 어종 위판율(B/A)	일반해면어업 위판율
1997	686,311	640,231	93.3%	84.7%
1998	694,733	666,707	96.0%	87.5%
1999	676,915	638,751	94.4%	87.6%
2000	609,222	575,901	94.5%	86.8%
2001	700,574	672,725	96.0%	89.8%
2002	590,326	550,958	93.3%	88.4%
2003	571,891	539,888	94.4%	84.2%
2004	605,767	571,024	94.3%	84.8%
2005	632,755	579,069	91.5%	82.8%
2006	621,589	570,315	91.8%	82.7%
2007	662,091	597,492	90.2%	80.5%



<그림 6-3> 주요 15개 어종 위판율 추이

○ 주요 15개 어종의 어종별 위판율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어종에서 위판율은 안정화를 보이며, 전어, 송어, 붕장어, 가자미류와 같이 횡감용 생선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어종에서 위판율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6-9> 주요 15개 어종의 어종별 위판율 변동 추이

연도	일반해면	멸치류	고등어류	갈치	강달이	삼치류	전갱이류	가자미류
1997	84.7%	88.1%	100.0%	99.8%	100.0%	98.7%	96.4%	82.9%
1998	87.5%	94.5%	99.9%	98.6%	100.0%	98.7%	97.9%	84.0%
1999	87.6%	93.6%	99.7%	97.5%	99.8%	97.6%	91.1%	89.6%
2000	86.8%	95.9%	98.0%	94.4%	99.8%	98.5%	99.6%	88.3%
2001	89.8%	97.1%	99.6%	99.5%	99.5%	99.3%	88.1%	87.9%
2002	88.4%	94.2%	100.0%	99.6%	99.5%	99.1%	93.2%	88.3%
2003	84.2%	98.1%	100.0%	99.9%	100.0%	98.5%	95.3%	83.0%
2004	84.8%	95.6%	100.0%	99.6%	99.8%	97.2%	97.7%	80.5%
2005	82.8%	94.1%	100.0%	99.7%	99.8%	98.2%	84.2%	73.7%
2006	82.7%	94.8%	99.9%	99.1%	99.2%	98.1%	92.8%	71.1%
2007	80.5%	95.1%	99.9%	98.2%	99.1%	98.1%	84.0%	68.1%

연도	참조기	붕장어	병어	청어	송어류	전어	아귀	꽂치
1997	99.9%	57.3%	99.0%	95.6%	34.8%	89.9%	97.6%	98.1%
1998	100.0%	72.4%	98.3%	98.8%	41.2%	77.4%	98.5%	98.1%
1999	96.3%	65.0%	97.8%	79.2%	30.0%	85.5%	97.6%	98.0%
2000	99.6%	62.4%	98.4%	60.2%	41.2%	81.6%	98.8%	98.6%
2001	99.9%	61.1%	96.5%	60.2%	35.8%	85.5%	96.3%	98.6%
2002	99.9%	20.9%	94.2%	99.7%	37.8%	64.5%	97.4%	97.7%
2003	99.8%	20.4%	99.5%	94.7%	35.5%	47.9%	90.8%	97.5%
2004	100.0%	21.3%	99.1%	95.1%	33.2%	36.6%	94.3%	99.5%
2005	99.8%	20.0%	93.6%	85.2%	21.6%	32.5%	89.8%	88.9%
2006	99.1%	21.6%	86.2%	93.2%	22.1%	27.2%	89.3%	95.8%
2007	99.8%	18.7%	90.4%	86.8%	17.7%	22.7%	83.4%	79.8%

제2절 증장기 위판을 추정

1. 수산부문 예측관련 선행연구 검토

- 수산물 예측관련 주요연구는 수급과 공급, 개별 어종에 대한 어획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홍현표 등(2004)은 수산부문에 대한 전체적 총량모형의 구축을 통해 수산부문의 전망을 시도하였음
 - 수산부문의 총량지표모형을 개발하여 류별 수급모형, 어가경제모형, 수산업 총량지표모형 등을 개별방정식과 항등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고, 개별방정식의 모형은 OLS와 2SLS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 또한, 각 모형을 통합하는 구조방정식 체계의 설정으로 각 부문간 연결관계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고, 이는 수산부문 총량모형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으며 수산부문에서 이론적 정합성, 현실적 적합성, 그리고 정책적 유용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최초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하지만 어업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자연적인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었으며, 통계자료의 시계열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구조방정식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1970년 이후의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의 레코드 수가 34개에 부족하여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단기적 경제상황의 진단과 전망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월별 데이터를 통해 자료의 수를 확대시켜 보다 더 정교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박성쾌, 옥영수(1987)는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회귀함수를 이용한 추정을 연구하였으며,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에 대한 어획함수를 추정하였음
 - 자기상관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음

- 홍성걸 등(1997)은 수산물의 장기수급전망을 위하여 수요함수를 통한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물의 소비량을 추정하였음
- 박성쾌, 정명생(1994)은 수산물의 소비습관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13개 품목에 대하여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OLS방법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리지(Ridge)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각 함수에서의 계수를 추정하였음
- 박해훈, 윤갑동(1996)은 어획량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변동 상태 및 예측할 수 있는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기법을 이용하여 명태어업의 어획량 분석과 예측을 시도하였음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계절형 ARIMA 모형을 적합하였고, AIC(Akaike(1976) Information Criterion)을 통해 모형을 식별하였음 - 24년간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모형을 통해 향후 24개월간의 명태 어획량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였음

<표 6-10> 수산물 생산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구 분	선 행 연 구	세 부 내 용
수산물의 시계열적 특성을 미반영한 연구	홍현표 등('04)	- 수산부문에 대한 전체적 총량모형의 구축을 통해 수산부문의 전망을 시도
	박영철, 히야마 요시아끼('02)	- 일본의 창끝뚜기어업의 2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자료의 자기상관에 대한 연구
	박성쾌, 옥영수('87)	-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에 대한 어획함수를 추정
	홍성걸 등('97)	- 수산물의 장기수급전망을 위하여 수산물의 소비량을 추정
	박성쾌, 정명생('94)	- 수산물 13개 품목에 대하여 수요함수모형을 추정
수산물의 시계열적 특성을 미반영한 연구	박해훈, 윤갑동('96)	- 명태어업의 어획량 분석과 예측을 시도
	유신재, 장창익('93)	- 한국 근해산 갈치에 대한 어획량을 예측
	박철형, 이광남('97)	- VAR모형을 이용하여 연근해산 수산물의 어종별 연관 예측 모형 개발을 제시
	이광남('99)	- 근해어업의 상호 영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

2. 분석의 개요

- 어업인의 생산관로의 다양화 및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97년부터 도입된 임의상장제도 하에서의 계통판매고 위판율 변동 추이를 분석함
- 주요 분석대상은 강제상장제가 폐지된 '97년도부터 '07년도 말까지의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 계통판매 단위당 가격 등의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전체 생산량을 기준함
- 분석은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STATA 9.1 및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 회귀분석(OLS)을 통해 위판율과 물량변수, 가격변수와의 관계를 도출하고 위판율의 미래변화를 예측함

3. 분석 모형

가. 변수선정 및 분석모형

1) 기본가정 및 변수선정

- 전통적 계량분석방법인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위판율의 향후 변화를 추정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해, 위판율은 물량변수와 가격변수간의 인과관계 또는 함수관계로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위판율과 물량변수, 가격변수간의 관계를 도출함. 이전의 연구에서는 생산량이나 수요량에 대한 추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위판율과 같은 비율에 대한 추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음. 이에 위판율에 영향을 주는 유효변수의 도출이 필요함. 이전의 연구에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어선세력, 어획노력량, 자원량, 어업인구, 면세유가격 등 요인들은 위판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비율변수인 위판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6-11>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정

구분		내용
독립변수의 선정	어선세력	생산량이나 위판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비율변수인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어획노력량	생산량이나 위판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비율변수인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자원량	자원량은 정확한 측정이 힘들며, 위판율과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
	어업인구	위판율과 영향을 미치지 못함
	면세유가격	생산량이나 위판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비율변수인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생산량	생산량은 물량변수로써 근해어업생산량과 연안어업생산량은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생산금액	생산금액은 생산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변수 선정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외됨
	대체재가격	여기서 대체재로 양식수산물 가격
	대체재생산량	여기서 대체재로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가격변수에는 영향을 미치나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계통판매단가	위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앞서 주요 10개 업종별 위판율 및 주요 15개 어종별 위판율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위판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물량변수로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생산량이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가격변수로는 계통판매 가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됨
 - 물량관련 변수로는 국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중 근해어업의 생산량¹²⁾과 연안어업의 생산량의 가격변수는 계통판매단가를 사용함
- 함수관계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일반해면어업의 월별 생산고 실적을 사용함

2) 분석모형

- 회귀분석이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식을 도출하고 독립변수의 변동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통계기법이라 할 수 있음. 최근 시계열자료의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Box-jenkins의 ARIMA모형은 시계열의 구성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동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주로 단기예측에 중점을 맞추고

12) 일반해면어업의 업종별 생산량 자료를 이용하여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생산량을 도출.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과거의 데이터수가 한정적이고 증장기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에 중심이 맞추어진 회귀분석모형이 예측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회귀분석의 예측의 장점은 의사결정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원인 및 영향관계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음¹³⁾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epsilon \quad (1)$$

α : 상수

$\beta_1, \beta_2, \beta_n$: 회귀계수

ϵ : 오차항(기대값 0, 분산 σ^2 인 확률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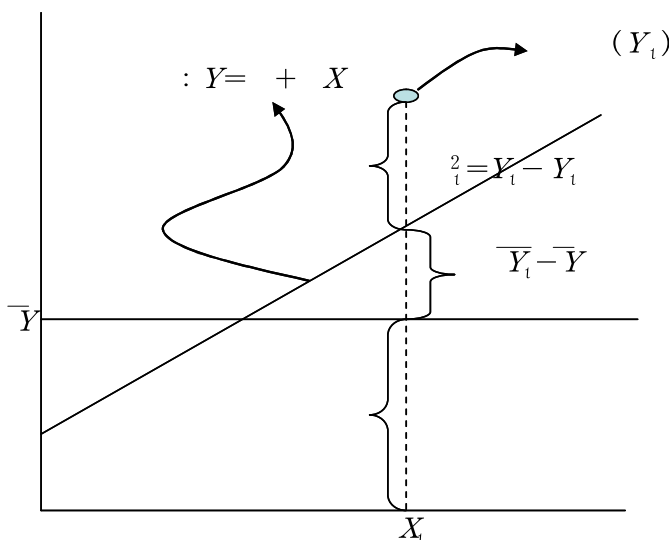
○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은 결국 회귀계수(페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¹⁴⁾에 의해 추정함

○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13) Cranage and Andrew, 1992

14) 최소자승법(LSM):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는 회귀식을 구하는 방법

$$\min \sum_{i=1}^n [Y_i - (\alpha + \beta X_i)]^2 \quad (\text{단, 여기서 } \epsilon^2 = Y_i - Y_i)$$



$\sum_{i=1}^n (Y_i - \hat{Y}_i)^2$: 회귀식에 의해 설명 안 된 분산

$\sum_{i=1}^n (Y_i - \bar{Y})^2$: 회귀식에 의해 설명된 분산

<분석 절차>

① 회귀모형 설정	위판율은 물량변수 및 가격변수와 인과관계 가정 $y_i = \alpha + \ln \beta_1 x_{i1} + \dots + \ln \beta_k x_{ik} + \epsilon_i \sim Normal(0, \sigma^2)$
② OLS 추정치 검증	잔차분석을 통해 선형성, 등분산성의 기본가정 충족여부 검증 ⇒ 잔차와 예측치 산점도 활용
③ 이상치 제거	이상치 제거 및 영향치 진단
④ 결과 도출	최종 회귀모형 도출 도출결과에 대한 해석 및 예측

- 분석에는 종속변수를 위판율, 독립변수로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계통판매단가를 사용하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위판율과 독립변수들 간의 단위의 차이문제 및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대수모형(선형-대수)을 사용하였음
- 또한, 자료가 시계열 자료임을 감안할 때 시간에 따라 배열된 일련의 관찰치들간의 상관관계인 자기상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계열상관이 존재할 때 OLS추정량은 비효율적이므로 교정수단이 필요하며 보통 오차항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속성에 대한 정보에 의존함
- 교정수단에는 자기상관구조의 파악에 따라 틀려짐. 그러나 보통 자기상관구조를 알고 있기는 힘들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분산 계수 를 모르는 경우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Corchran-Orcutt 반복절차¹⁵⁾를 통하여 자기상관효과를 교정하였으며, Corchran-Orcutt 반복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용됨

15) D. Corchran and G.H.Orcutt."Application of Least Squares Regressions to Relationships Containing Autocorrelated Error Terms." jurnal og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44

○ 자기상관구조를 모르는 경우 즉, 자기공분산 계수 ρ 를 모르는 경우에 더빈-왓슨 d로부터 ρ 를 추정하는 방법 외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Corchrn-Orcutt 반복절차로 이것은 미지의 ρ 에 대한 정보를 추정된 잔차 e_t 를 이용하여 얻어내는 것임

○ 설명을 위한 예로 2변수모형 $Y_t = \beta_0 + \beta_1 t + e_t$ 에서 e_t 는 AR(1)구조로부터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즉, $e_t = \rho e_{t-1} + \epsilon_t$ 이라 할 수 있으며, 코크란과 오커트는 ρ 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하고 있음

(i) 2변수 모형을 표준적인 OLS방법에 의해 추정하고 잔차 \hat{e}_t 를 구한다.

(ii) 추정된 잔차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회귀한다.

$$\hat{e}_t = \rho \hat{e}_{t-1} + \epsilon_t \quad (2)$$

이 식은 위의 AR(1)구조를 실증적으로 대체한 것임

(iii) 위의 식(2)에서 구한 \hat{e}_t 을 이용하여 일반화 차분방정식을 회귀한다.

$$(Y_t - Y_{t-1}) = \beta_1(1 - \rho) + \beta_1(\hat{e}_t - \rho \hat{e}_{t-1}) + (\hat{e}_t - \rho \hat{e}_{t-1})$$

또는

$$(3)$$

(주: 이제 ρ 를 알기 때문에 이 식을 회귀할 수 있음. 또한 $\beta_1^* = \beta_1(1 - \rho)$ 임

(iv) 식(2)으로부터 구한 \hat{e}_t 이 의 “최량” 추정치인지 선형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식

(3) 로부터 구한 $\beta_1^* = \beta_1(1 - \rho)$ 와 β_1^* 의 값을 원래의 회귀식에 대입하여 새로운

잔차 \hat{e}_t^*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Y_t^{**} = Y_t - \frac{1}{2} + \frac{1}{2} Y_{t-1} \quad (4)$$

$$(v) \quad Y_t^{**} = Y_{t-1}^{**} + \epsilon_t \quad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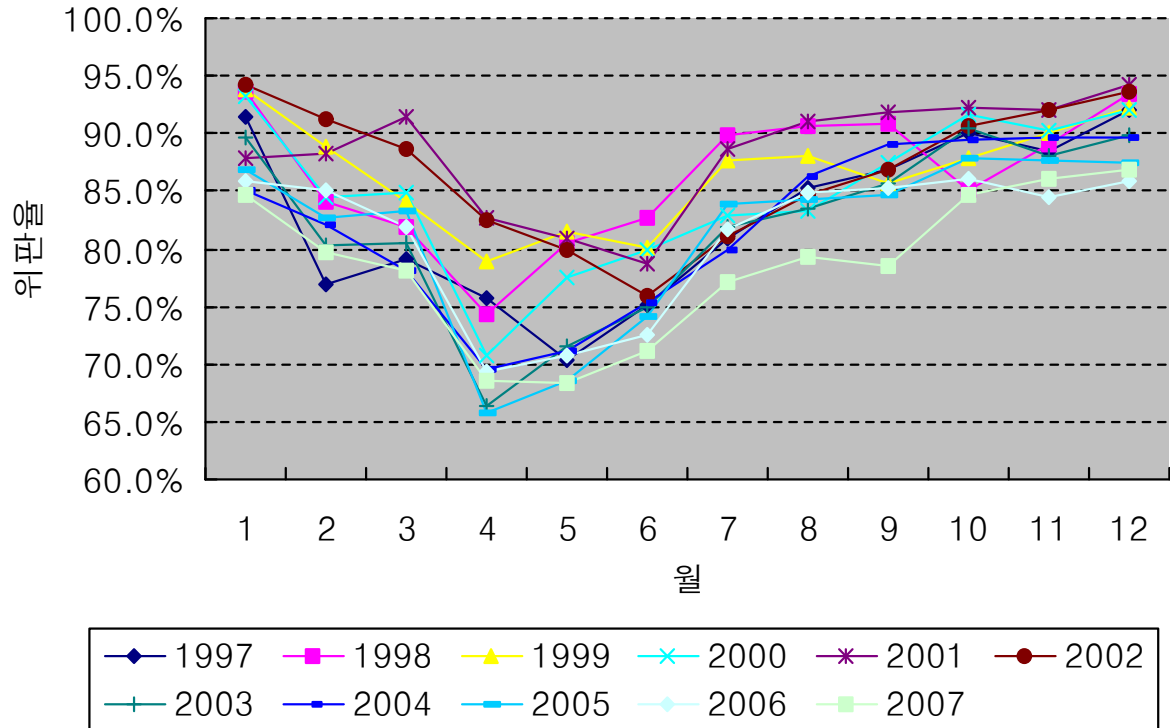
식(5)는 식(2)와 유사한데 ϵ_t 은 ϵ_t 의 2단계 추정치이다.

ϵ_t 의 2단계 추정치가 ϵ_t 의 최량추정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단계 또는 그 이상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여러 단계가 암시하듯 코크란-오커트 방법은 반복적이며, 보편적으로 ϵ_t 의 다음 단계 추정치와의 차이가 아주 작을 때, 예를 들면 0.01이나 0.005 이하일 때, 반복을 멈추는 것임. 실제로는 종종 3~4회 반복으로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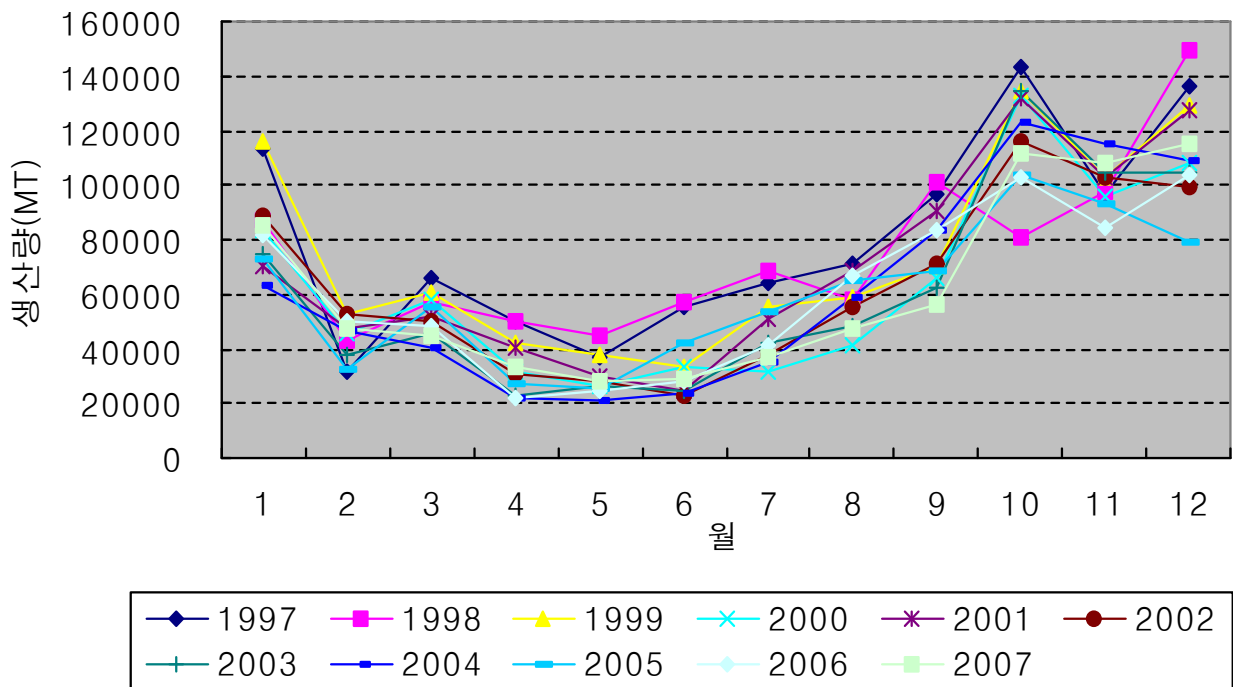
- 코크란-오커트 2단계 절차는 반복절차를 축소시킨 것으로 1단계에서는 첫 번째 반복 즉 식(2)의 회귀로부터 ϵ_t 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이 추정된 ϵ_t 를 이용하여 일반화 차분 방정식을 회귀함. 실제로 이 2단계 방법의 결과와 보다 정교한 반복절차의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음

3) 기초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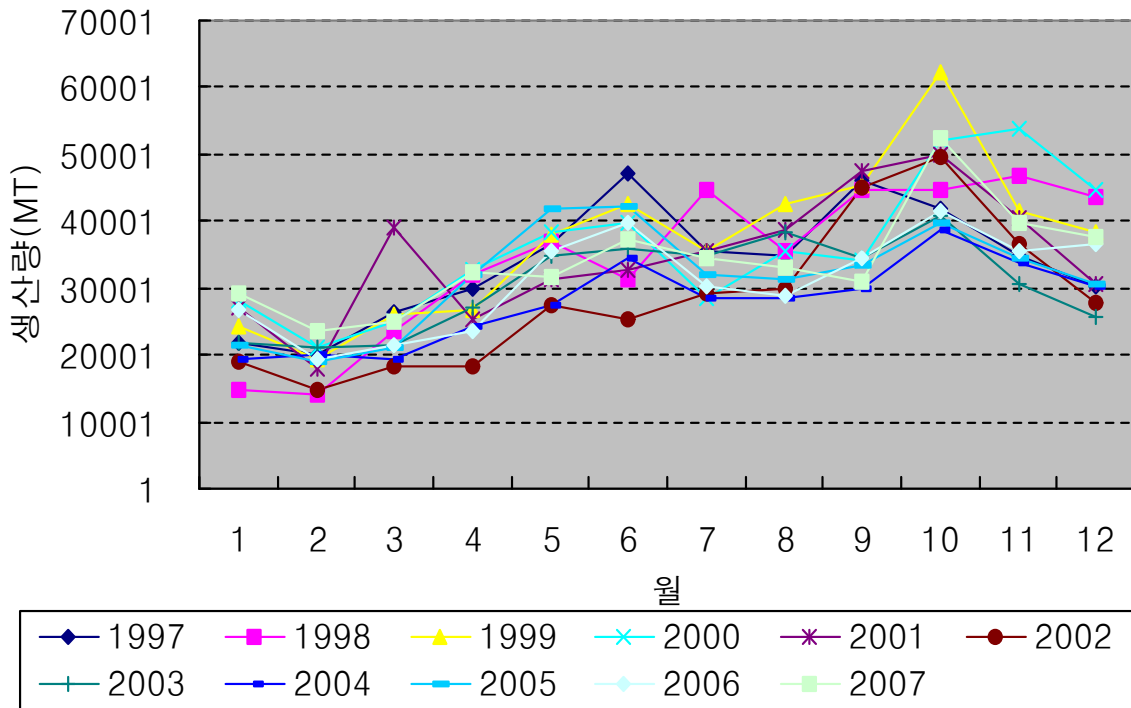
- 본 분석에 앞서,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에 대한 실적치의 변동추세를 회귀모형의 극선추정을 통해 분석기간 중의 변동 방향을 계략적으로 살펴봄
- 자료의 특성상 월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계절성 부분으로 인하여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동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함
- 아래 <그림 6-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될 변수인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 근해어업의 생산량, 연안어업의 생산량, 계통판매단가는 각 연도에 따라 월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상품의 특성상 계절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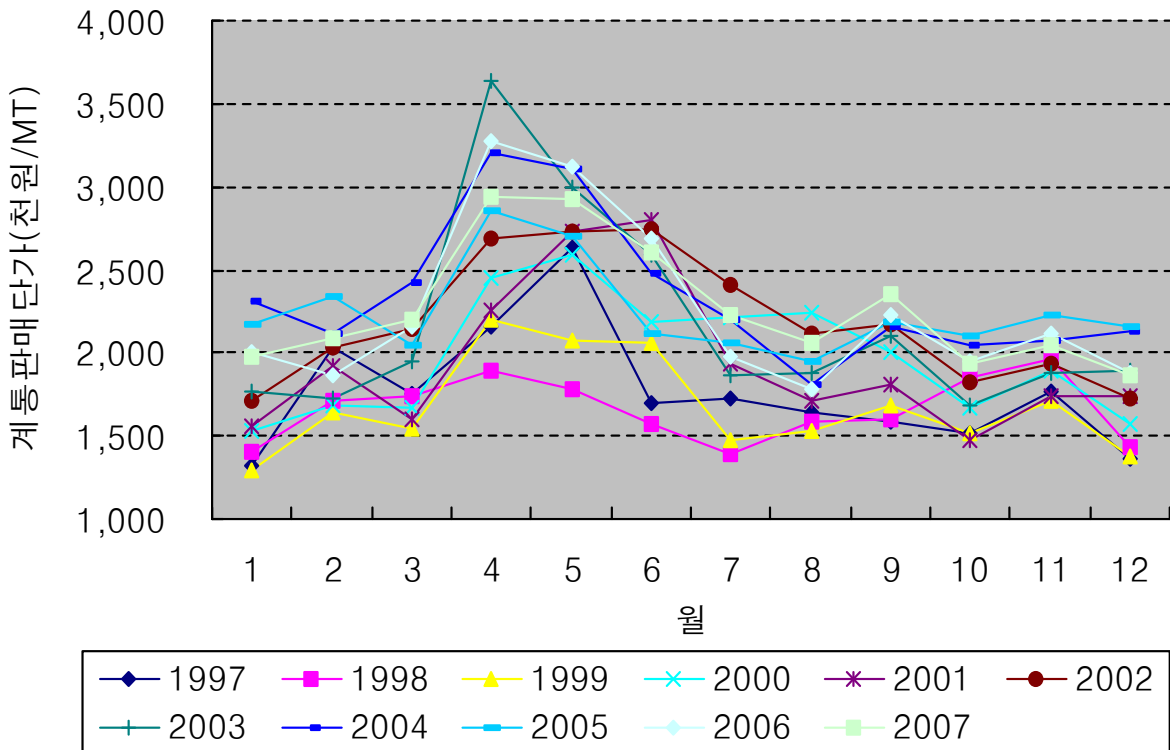
<그림 6-4>일반해면어업 월별 위판율 변동 추이



<그림 6-5>근해어업 월별 위판율 변동 추이



<그림 6-6>연안어업 월별 생산량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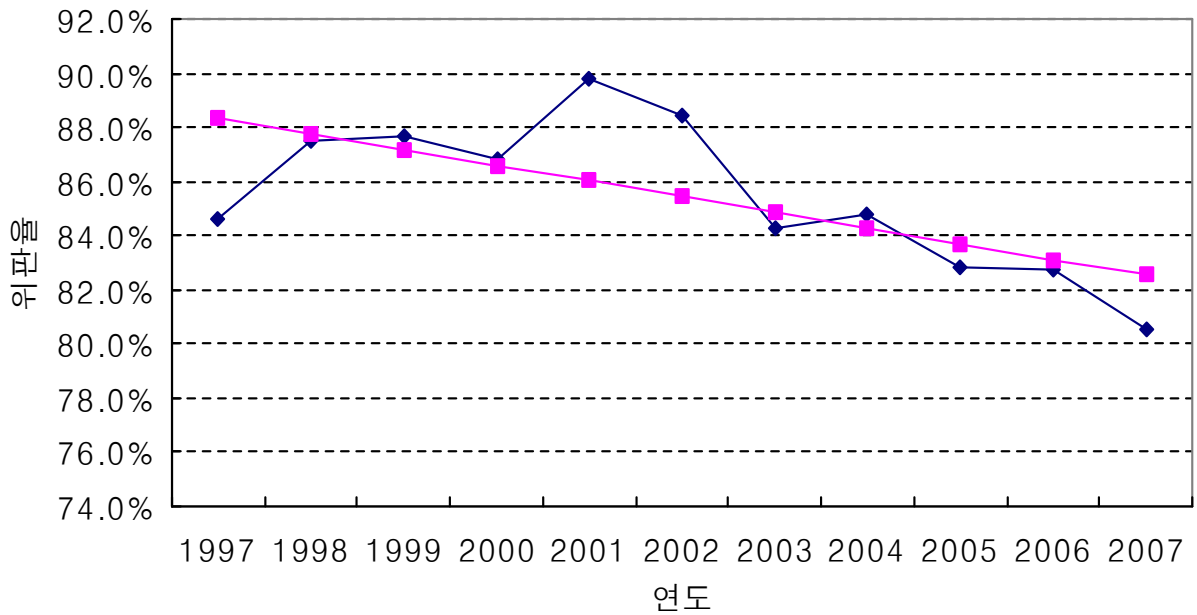
<그림 6-7>일반해면어업 계통판매단가 변동 추이

- 첫째,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은 전체적으로 임의상장제도가 실시된 97년도의 84.7%수준에서 현재(2007년 기준) 80.5%수준으로 약 4.1% 정도 하향하였으며, 추정된 추세를 보면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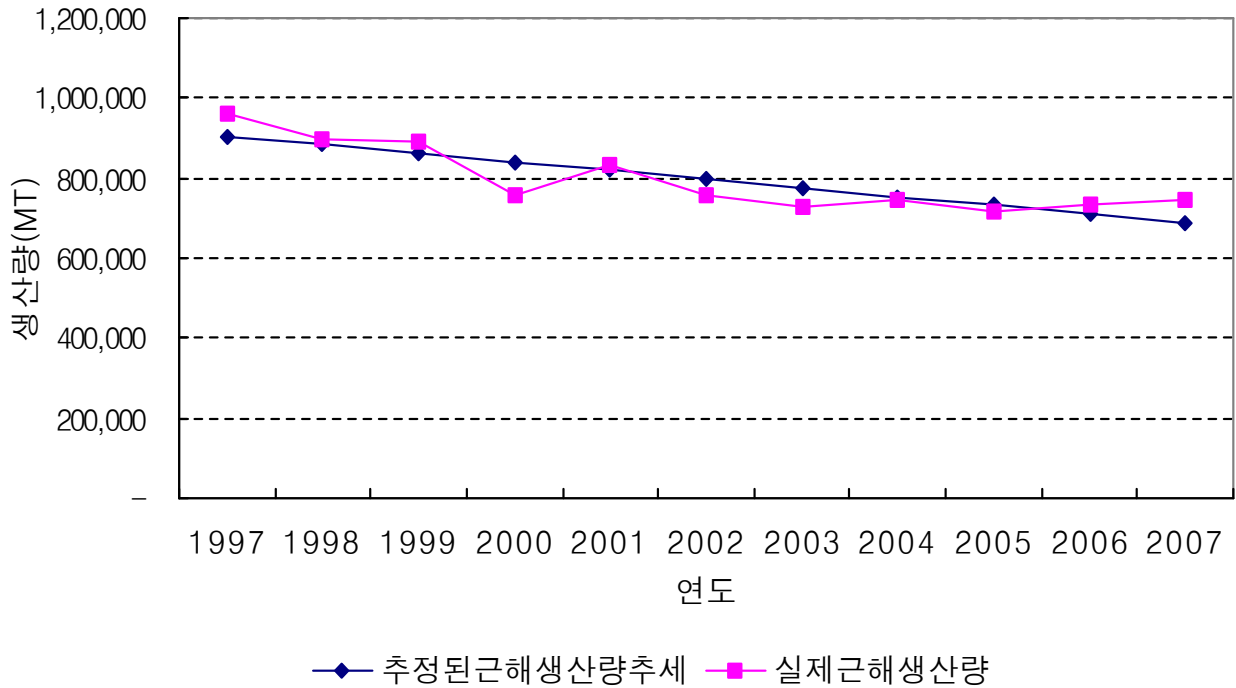
- (추세식) : $Y_{\text{위판율}} = 0.889233 - 0.005796T_{\text{기간}}$ <F비 7.78, Sigf 0.0211>

- 둘째, 일반해면어업 중 근해어업 생산고 또한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추세식) : $Y_{\text{생산량}} = 910241 - 23770T_{\text{기간}}$ <F비 26.23, Sigf .001>



◆ 실제위판율 ■ 추정된위판율추세
 <그림 6-8>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위판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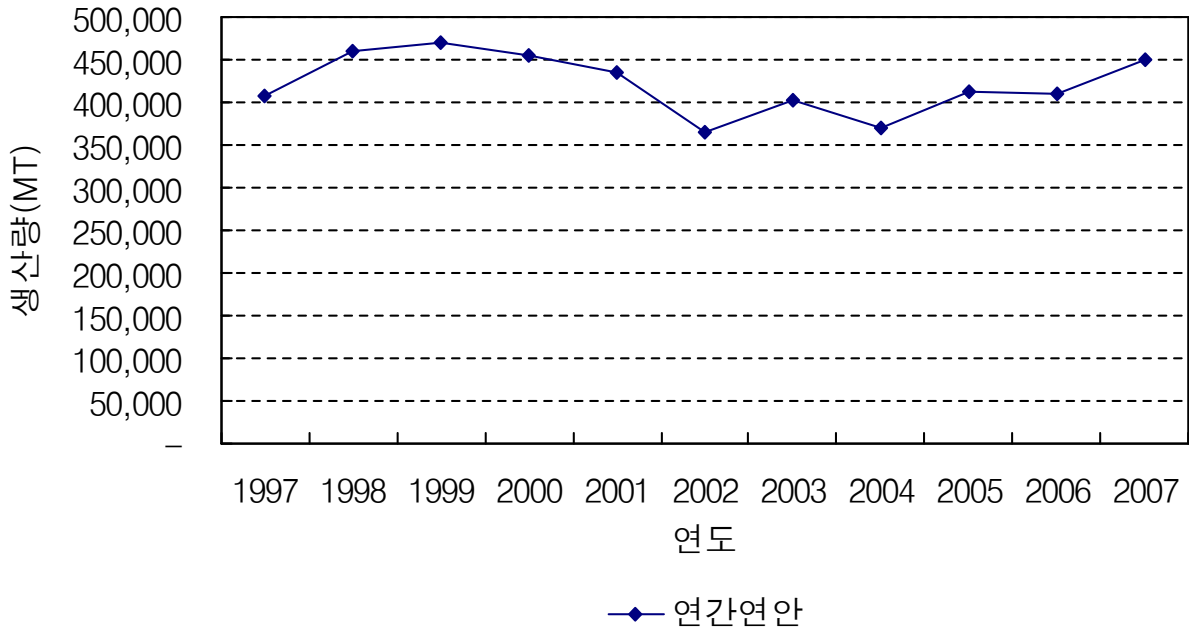
<그림 6-9> 근해어업 연도별 생산량 추세

- 셋째, 연안어업생산량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추세추정은 10%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세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아래 <그림 6-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임의상장제가 시작된 97년 406,487톤을 중심으로 증가나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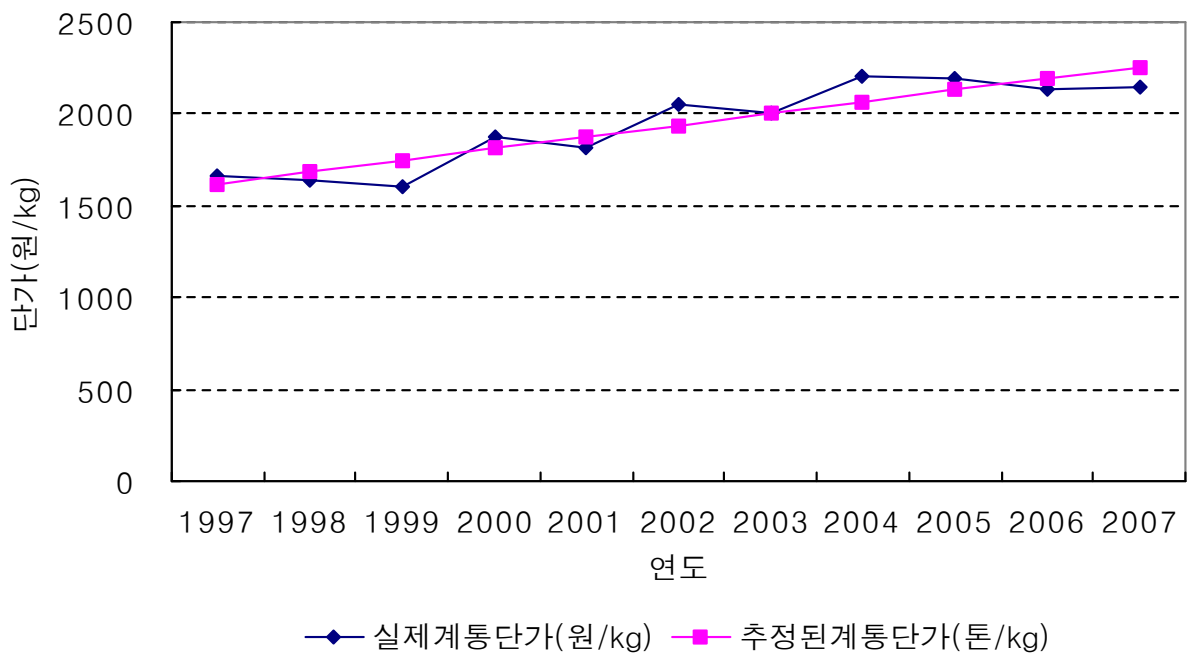
- (추세식) : $Y_{\text{연안어업생산량}} = 440882 + -3235T_{\text{기간}}$ <F비 0.90, Sigf 0.366>

- 넷째,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에 대한 계통판매 단가를 보면, 분석기간 중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물가상승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을 위해서는 명목적 증가분을 감안한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추세식) : $Y_{\text{계통생산단가}} = 1,556 + 63.8399T_{\text{기간}}$ <F비 48.356, Sigf 0.0001>



<그림 6-10>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비계통판매 평균단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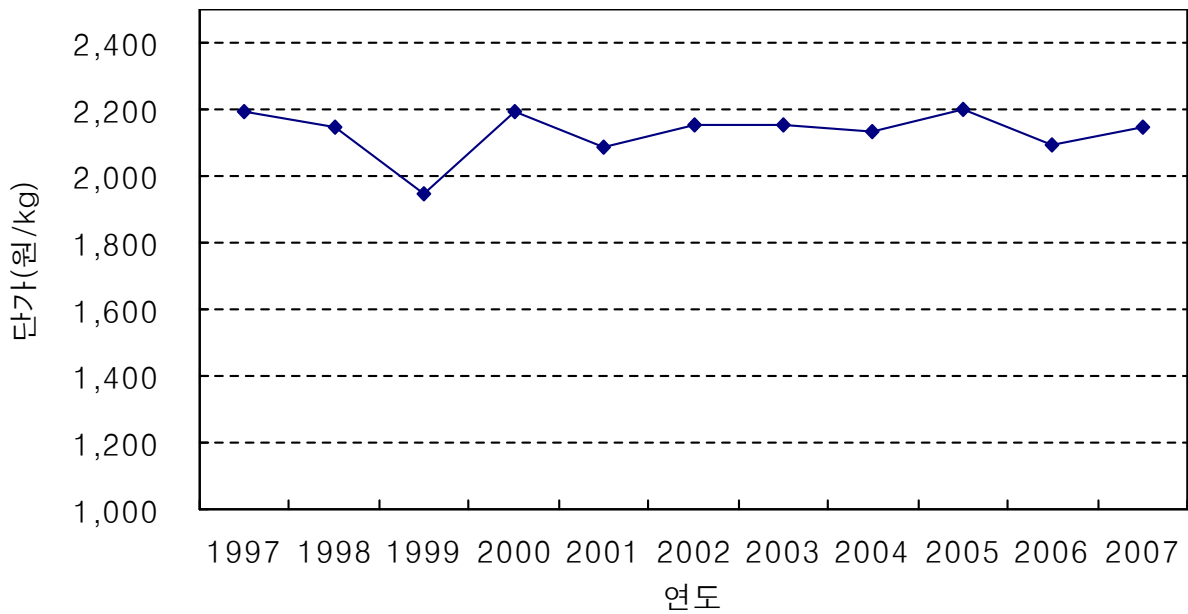


<그림 6-11>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계통판매단가 변동 추세

-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적 증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디플레이트한 추세를 살펴보면, 추정된 추세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통단가는 1997년부터 약 2,000 ~ 2200원의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추세식) : $Y_{\text{디스플레이트된 계통생산단가}} = 2118.21 + 2.4609T_{\text{기간}}$

<F비 0.12, Sigf 0.739>



—◆— 디스플레이트후 계통단가(원/kg)

<그림 6-12> 일반해면어업 연도별 디스플레이트 계통판매단가 변동 추세

- 이상의 각종 변수들에 대한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분석 기간 중 위판율과 근해 어업의 생산량은 시간에 따라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어업 생산량과 디스플레이트된 계통단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결과적으로, 독립변수 중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종속변수인 위판율의 향후 변동 방향을 회귀분석(본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고자 함

<표 6-12> 변수별 추세분석 결과 종합

구분	종속변수 (위판율)	독립변수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계통판매단가	디스플레이트 계통판매단가
추세	감소	감소	추세없음	증가	추세없음 (일정)

나. 회귀분석 결과

1) 분석결과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에 대한 계통판매 위판율에 미치는 요인을 근해어업의 생산량, 연안어업의 생산량,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에 대한 계통판매 단위당 가격(이하 계통판매단가라 함)과의 관계로 가정하여 분석함
-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계통판매단가 및 비계통판매단가의 경우 자료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통계량에서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적 증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디플레이트를 하였음¹⁶⁾

$$Y = \beta_0 + \beta_1 \ln X_1 + \beta_2 \ln X_2 + \beta_3 \ln X_3 + \epsilon \quad (6)$$

여기서, Y =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

X1 = 근해어업생산량

X2 = 연안어업생산량

X3 = 디플레이트된 계통판매단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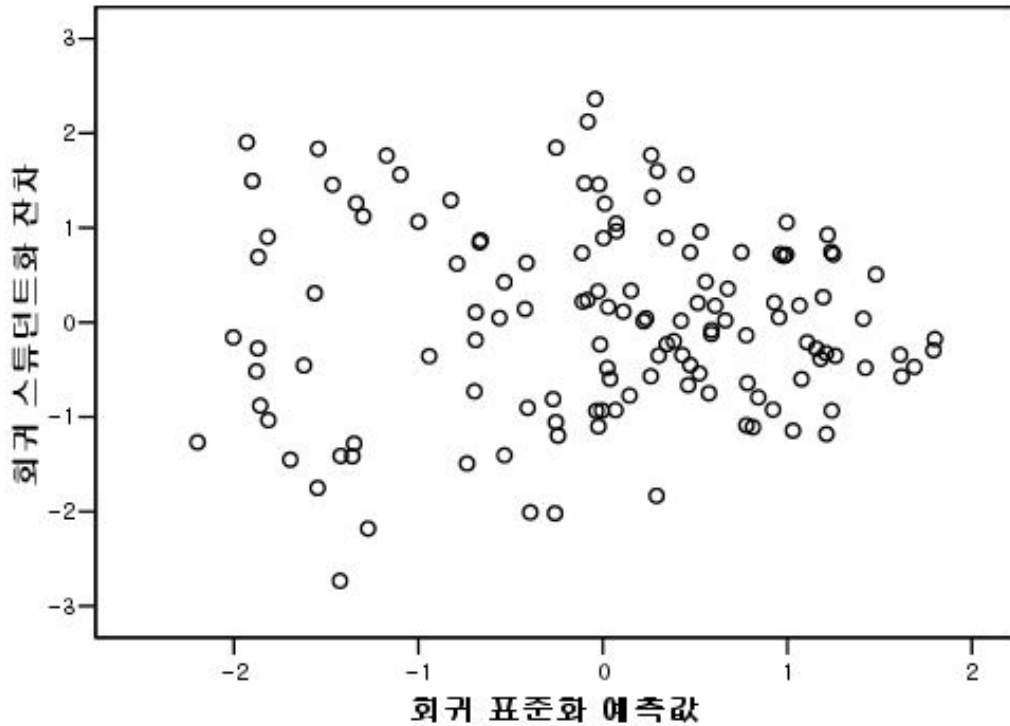
- 1단계로,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 등분산성 등을 검증함¹⁷⁾
 - 잔차와 그 예측치 산점도의 그래프 형태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선형성 및 등분산성 가정 만족

16) 통계청 수산식품 생산자 가격지수를 사용하여, 2007년을 기준으로 디플레이트 함

17) ① 선형성 검증: 그래프 형태가 랜덤하게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에 따라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1차 선형관계 존재함을 의미하고(모형 적합), 포물선이나 3차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설명변수를 이차항이나 3차항으로 회귀모형을 수정

② 등분산성 검증: 그래프 모양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 등분산 만족, 그래프 모양이 특정 방향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나팔모양 형태)에는 종속변수를 변화하거나 가중 회귀모형을 이용하여야 함

종속 변수 W: 위판율



<그림 6-13> 잔차와 그 예측치 산점도

- 다음단계로, 잔차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음에 따라, 회귀모형을 도출하고 적합도 검증 및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배 여부를 확인함

<표 6-13> 모형의 적합도 검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준오차
0.864595	0.7475245	0.7416071	0.0351204

- 모형의 적합도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인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계통판매단가는 종속변수인 위판율을 74.16%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회귀식의 설명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래 <표 6-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출된 모형의 F값이 126.3266, 유의확률은 0.000으로 추정된 모형은 1%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표 6-14> 모형의 유의성 검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0.46745	3	0.15582	126.3266	.000
잔차	0.15788	128	0.00123		
합계	0.62533	131			

<표 6-15> 독립변수의 계수검증

	비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한계	VIF
(상수)	0.85537	.276	3.105	.002		
ln근해생산량	0.09443	.010	9.915	.000	.381	2.625
ln연안생산량	-0.03227	.012	-2.719	.007	.767	1.304
ln계통판매단가	-0.09355	.029	-3.278	.001	.421	2.378

- 위 <표 6-15>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독립변수는 1%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독립변수의 계수 부호를 살펴보면, 자연대수를 취한 근해어업 생산량은 양수로 나타났으며, 자연대수를 취한 연안생산량과 계통판매단가는 음수로 나타났음. 이는 일반 해면어업의 위판율은 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연안어업의 생산량 증가 및 계통판매단가의 증가는 위판율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분석됨

2)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¹⁸⁾ 검증

- 추정결과에서 각 독립변수의 VIF값은 1에 근사한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오차의 자기상관 관계¹⁹⁾는 이전에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Durbin-Watson계수²⁰⁾가 0.625로 나타나 시계열 특성에 따른 자기상관 문제가 나타났음

18)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갖는 현상으로서 추정된 회귀계수의 분산이 매우 커짐에 따라 회귀계수의 정확한 추정 및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의 검증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이외에도 상대지표에 의해 검증할 수도 있음)

$$VIF_j = \frac{1}{1 - R_j^2}, \quad j=1, 2, \dots, k$$

여기서, R_j 는 X_j 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의 결정계수를 말하며, VIF_j 는 독립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k개의 VIF_j 중 가장 큰 값이 5~10을 넘으면(가장 큰 R_j 이 0.8~0.9를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19)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오차항간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계수 추정량은 여전히 불편추정량으로 최수분산 추정량이 아니며, 평균잔차제곱(MSE)이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어 실제 유의하지 않은 회귀계수가 유의하다고 판정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20) 오차의 자기상관 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통계량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 통계량의 값은 0~4의 값을 가진다.(0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상관을,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자기상관을,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없을음 의미)

$$DW = \frac{\sum_{i=2}^n (e_i - e_{i-1})^2}{\sum_{i=1}^n e_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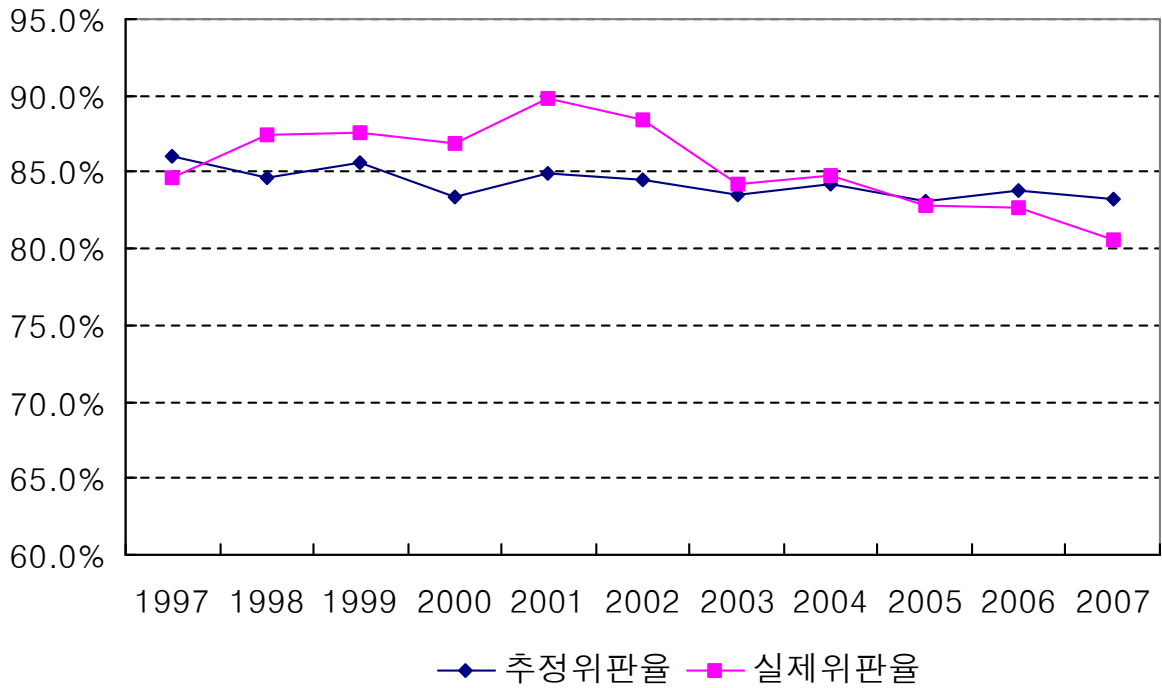
<표 6-16>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 검증

독립변수	VIF	Durbin-Watson
ln근해생산량	2.625	0.625
ln연안생산량	1.304	
ln계통판매단가	2.378	

- 분석에서 자기상관이 탐지가 되었으므로 자기상관효과의 제거가 필요하므로, 그 교정 수단으로 Corchrn-Orcutt 반복절차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 <표 6-17>와 같이 나타남 Durbin-Watson 값이 이전의 0.625에서 수정후 2.143로 자기상관 문제는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음
- 최종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독립변수의 계수 부호를 살펴보면 자연대수를 취한 근해어업 생산량은 양수로 나타났으며, 자연대수를 취한 연안생산량과 계통판매단가는 음수로 나타남. 이는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은 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연안어업의 생산량 증가 및 계통판매단가의 증가는 위판율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도출된 회귀식을 통하여 각 연도별 일반해면어업 추정위판율과 실제 일반해면어업위판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6-14>과 같음

<표 6-17> Corchrn-Orcutt 반복모형 최종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CONSTANT	1.1494045	.22848661	5.0305112	.00000164
ln근해생산량	.0811732	.00907580	8.9439146	.00000000
ln연안생산량	-.0435574	.01085961	-4.0109527	.00000789
ln계통판매단가	-.0976956	.02096062	-4.6609099	0.00000000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준오차	Durbin-Watson	
.71340069	.7043023	.02509149	2.1430268	



<그림 6-14> 잔차와 그 예측치 산점도

3) 위판율 변동성 추정

○ 분석의 결과에서 위판율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하면 아래 (7)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text{위판율} = 1.1494045 + .0811732 \ln X_1 - .0435574 \ln X_2 - .0976956 \ln X_3 \quad (7)$$

여기서, $X_1 = \ln$ 근해어업생산량

$X_2 = \ln$ 연안어업생산량

$X_3 = \ln$ 디스플레이된 계통판매단가

○ 상기의 도출된 회귀모형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의 변동에 따라, 위판율의 변동 범위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위판율의 변동정도 즉 그 영향을 추정함

○ 2007년의 월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변수의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위판율의 변동 추정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

<표 6-18> 시나리오별 위판율 변동성 추정

구분	시나리오내용		위판율 변동범위 추정 (%)
	가정	변동범위	
시나리오1	월별 근해어업생산량만 변동	±10%	±8.91%
시나리오2	월별 연안어업생산량만 변동		±4.59%
시나리오3	월별 계통판매단가만 변동		±7.50%

- 위판율의 변동성 추정의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월별 근해어업생산량변화에 따른 위판율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위판율은 월별 근해어업생산량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4) 증장기 위판율 추정

- 추정된 회귀식의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10년간의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을 추정하였음.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의 장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원인 및 영향관계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음. 그러나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의 값을 예측해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예측력이 떨어짐
- 미래예측을 위해 필요한 장래독립변수 값들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에 의한 미래예측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가정을 통한 장래독립변수의 값을 예측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 장래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을 추정하기 위한가정은 아래와 같음
 - 앞의 각 독립변수의 추세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추세식에 따른다고 가정
 - 근해어업생산량(MT) = 910241 -23770T_기간
 - 연안어업생산량과 디스플레이된 계통판매단가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장래에도 크게 변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함
 - 1997년~2007년까지 연도별 평균치를 사용하였음

- 2007년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 80.5%에서 장래에 위판율의 변동은 모형에서 추정된 위판율의 변동과 동일한 변동폭으로 변화한다고 가정

○ 위의 가정을 토대로 위판율의 장기변화를 예측해보면 아래 <표 6-19>과 같음.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은 2007년 80.5%에서 5년후 2012년 79.20%, 10년후에는 77.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6-19> 중장기 일반해면어업 위판율 변화

연 도	근해어업생산량 예측치(MT)	일반해면어업생산량 예측치(MT)	일반해면어업위판율 예측치
2008	666,889	1,088,361	80.29%
2009	645,185	1,066,657	80.03%
2010	623,481	1,044,953	79.77%
2011	601,777	1,023,249	79.49%
2012	580,073	1,001,545	79.20%
2013	558,369	979,841	78.90%
2014	536,665	958,137	78.59%
2015	514,961	936,433	78.27%
2016	493,257	914,729	77.93%
2017	471,553	893,025	77.58%

5) 기금지원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위판율과의 관계

가) 기금지원의 위판율과의 관계

- 모형에서 추정된 위판율의 변화는 2008년 80.29%에서 2017년 77.58%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위판율의 하락은 수산발전기금지원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
- 사업이나 정책의 수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무검증이 필요하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야만 진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과 사업 시행 후의 차이를 비교해서는 안 됨

- 예를 들어, 아래 <표 6-2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금지원전 위판율은 80%에서 기금지원후의 위판율이 70%로 하락했다고 가정하고, 기금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을때는 50%로 하락한다고 하면, 기금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위판율 감소폭의 축소효과는 20% 정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지원중인 기금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모형에서 추정된 10년 후의 위판율 77.58%보다 더 낮은 위판율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지원은 위판율의 하락을 막는 하나의 지지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6-20> 기금으로 인한 위판율의 지지와 전망

구 분	내 용			비고
전후검정	가정	기금지원전 위판율(A)	기금지원후 위판율(B)	(B)-(A)
	실시 전 : 80% 실시 후 : 70%	80%	70%	10% 위판율 하락
유무검정	가정	사업시행시	시행하지 않는 경우	위판율 감소폭 축소효과
	시행 유 : 80% 시행 무 : 50%	80%	70% → 5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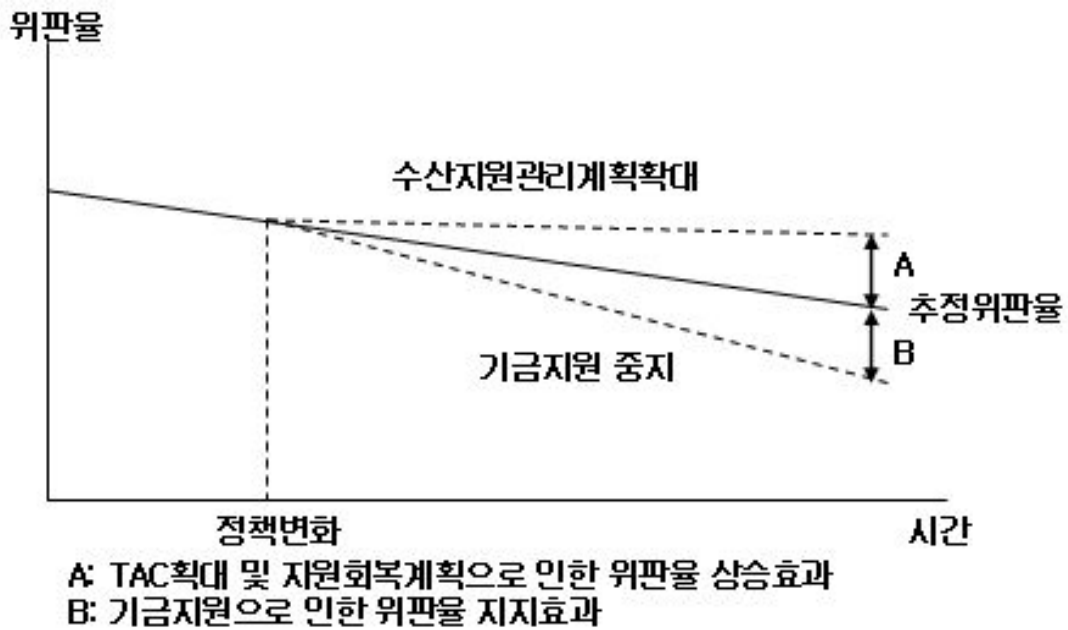
나)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위판율과의 관계

- 앞에서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의 감소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를 들 수 있음
- 정부적 차원의 TAC확대와 수산자원회복 계획 등의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은 중장기 위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서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 추정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정책에 따른 위판율의 변화효과는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TAC는 '99년부터 4개어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대상어종 및 어종이 확대되고 있음

- '99년(2업종/4어종) → '02년(5업종/8어종) → '06년(7업종/9어종) → '07년(10업종/10어종)
- TAC대상 어종의 선종은 자원감소로 보존이 필요한 어종(개조개, 꽃게, 소라, 정어리),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가치가 큰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지속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키조개, 대게, 붉은대게)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업종을 보자면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마을어업(소라),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연·근해자망·통발(꽃게) 등
- 최근 TAC제도의 방향을 보자면 실시어종 및 업종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며, 지역적, 업종별로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어종에 대하여는 전국적, 전 업종으로 확대실시('11까지).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의 꽃게, 선망의 고등어·전갱이는 실시지역과 업종 확대가 예상된다
- 실제적으로 TAC 대상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어획량 보고는 어업자가 어획물을 위판할 때마다 판매장소의 장에게 실적을 제출하여 시·도를 통해 보고하기 때문에 TAC제도의 실시어종 및 업종의 확대는 앞서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의 하락폭을 줄이거나 그 범위에 따라 위판율의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음
- 수산자원회복 계획은 2005년 12월 실천계획 수립되어 및 2006년 수산자원회복 이행 원년 대상어종 중 회복대상어종 40종, 관리대상어종 40종, 기타어종 13종으로 회복대상어종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회복계획과 관련된 어업대상 자원량의 변동추이는 '0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최근 '05년부터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원회복계획과 관련된 어종을 살펴보면 근해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종의 비중이 높음. 이는 자원회복계획으로 인한 대상어종의 자원량 증가는 근해어업의 어획량 증가를 가지고 올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해면어업 중장기 위판율의 하락추세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영향을 미침

<표 6-21> 정부정책과 위판율과의 관계

구분	내 용	효과포함여부	위판율과의 관계	
			지원사업중지	지원사업유지
기금지원	수산발전기금 '공판장출하촉진 사업'으로 위판율 상승 효과	추정위판율에 효과포함	지원사업중지	지원사업유지
			추정위판율에서 하락	추정위판율과 동일
수산자원관리정책	TAC확대 및 수산자원회복 계획확대로 위판율 상승 효과	추정위판율에 효과 일부포함	계획유지	계획확대
			추정위판율과 동일	추정위판율에서 상승



<그림 6-15> 정부정책과 위판율과의 관계

6)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위판율과 독립변수인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디스플레이트된 계통판매단가와와의 관계를 도출하였음. 그리고 추정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일반해면어업의 중장기적 위판율의 변화를 예측하였음

- 최근 시계열분석 및 예측에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ARIMA모형이나 SARIMA모형은 단기적 예측에는 전통적인 회귀분석보다 정확하지만 수산자원의 특성 및 과거자료의 한정성, 예측이 중장기적인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인 점을 고려하여 Corchran-Orcutt 반복절차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함수관계를 통하여 중장기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회귀분석의 예측은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의 값을 예측해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미래예측을 위해 필요한 장래독립변수 값들은 현재로서는 전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장래독립변수의 값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실제 예측된 독립변수의 값이 실제와 다를시 예측된 종속변수의 값은 차이가 생김
- 또한, 예측에 사용된 독립변수인 물량변수가 수산자원의 특성상 생산량의 장기적 변화는 모형에 따른 예측이 힘들. 근해어업에서 공급량 즉, 생산량은 타산업과 같이 전략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어획량이 공급량이 되는 특성을 가지며, 자연환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음.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생산량의 예측을 시도하였으나 연구의 한계점으로 자연적인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음
- 장래 위판율 예측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계통판매단가와 연안어업생산량은 추세성이 나타나지 않아 1997~2007년의 연평균 값을 사용하였음. 비록 계통판매단가에서 명목적 물가상승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디플레이트 시켰으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음
- 또한, 정부적 차원의 TAC확대와 수산자원회복 계획 등은 수산자원관리정책들은 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연안어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위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정책 변화에 따른 위판율의 변화효과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 이와 같이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정확한 예측 불가능 및 과거자료의 제약 등도 분석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침

제3절 소결

- 일반해면어업에서 생산되는 연근해 어획물의 판매는 약 1996년 이후 약 30년 이상 이루어지던 의무상장제 폐지 이후 자율적인 임의상장제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수산물 가격안정 및 어업인 수취가 제고, 계통출하 확대로 수산물출하자(생산어업인)에게는 어대금을 즉시지급하고, 중도매인에게는 일정기간동안 대금결제납입을 유예해 주는데 소요되는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공판장 출하촉진사업이 진행 중임
- 업종별 위판율의 현황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상위 10개 업종의 위판율 하락폭이 전체해면어업의 위판율 하락폭보다 작으며, 이유는 생산량 기준 상위 10개 업종의 대부분이 근해어업에 포함되며, 생산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가지는 계통판매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자망 및 패·조류채취의 위판율은 하락추세를 보임
- 어종별 위판율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15개어종의 어종별 위판율은 대부분의 어종에서 위판율은 안정화를 보이며, 주요 15개어종의 위판율 감소는 전어, 송어, 봉장어, 가자미류와 같이 횡감용 생선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어종에서 위판율의 지속적 감소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됨
-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OLS)을 통해 종속변수인 위판율과 물량변수인 근해어업생산량 및 연안어업생산량 가격변수인 계통판매와의 관계를 도출
- 모형에서 시계열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상관이 탐지가 되어 Corchran-Orcutt procedure를 통한 자기상관문제를 교정하였으며, 최종 분석된 결과를 보면 모형에 대

한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독립변수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독립변수의 계수 부호를 살펴보면 자연대수를 취한 근해어업 생산량은 양수로 나타났으며, 자연대수를 취한 연안생산량과 계통판매단가는 음수로 나타남. 이는 일반 해면어업의 위판율은 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연안어업의 생산량 증가 및 계통판매단가의 증가는 위판율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판율의 변동성 추정의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월별 근해어업생산량변화에 따른 위판율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위판율은 월별 근해어업생산량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위판율의 장기변화를 예측해보면 일반해면어업의 위판율은 2007년 80.5%에서 5년후 2012년 79.20%, 10년후에는 77.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위판율과 관련하여 TAC제도의 확대와 자원회복계획으로 인한 자원량의 증가 등의 효과는 추정된 모형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의 하락추세를 약화 또는 그 영향에 따라서는 위판율의 증가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22> 위판율 추정결과 요약

	내 용	비 고
분석배경	수산업발전기금중 '공판장출하촉진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일반해면어업의 중장기 위판율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의 객관적 도출필요	수산업발전기금운영의 평가와 관련된 회의에서 논의 (2008.4.4)
분석사용자료	1997년 ~ 2007년도까지의 월별 자료 ²¹⁾ 이용 종속변수 : 일반해면어업위판율 독립변수 : 근해어업생산량, 연안어업생산량, 계통판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단위차이 및 변수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대수취함
분석모형	Corchran- Orcutt 반복절차를 이용한 자기상관효과를 교정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	
모형추정결과	$\text{위판율} = 1.1494045 + 0.0811732 \ln X1 - 0.0435574 \ln X2 - 0.0976956 \ln X3$ $X1 = \ln \text{근해어업생산량}$ $X2 = \ln \text{연안어업생산량}$ $X3 = \ln \text{디스플레이트된 계통판매단가}$	수정된 R2 = 0.704 DW = 0.625
중장기 위판율 추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80.5% - 2012년(5년후) 79.20%, - 2017년(10년후) 77.58%로 하락 	추정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업생산량은 연도 별추세식을 따름 - 연안어업생산량 및 계통 판매단가는 현재와 동일
기금지원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은 위판율 지지효과를 가짐 - TAC확대 및 수산자원회복계획확대 등의 정책은 추정된 위판율하락을 감소시키는 효과 	추정된 중장기 위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효과 포함 - 수산자원관리 정책효과 미포함
분석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된 독립변수의 미래값을 이용하여 중장기 위판율을 예측하므로 예측력이 떨어짐 - 독립변수인 수산업에서 생산량의 장기적 변화는 수산 자원의 특성상 모형에 따른 예측 어려움 - 수산자원관리정책등 외부적 효과 반영못함 	

21) 어업생산통계 월별생산량자료

제7장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 실태

제1절 수산물 유통시장 구조

- 수산물 유통은 상품의 계절성, 계획생산의 한계, 부패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생산단계가 복잡하고, 일반 산업에 비해 유통마진이 높은 특징을 가짐
 - 공산품과 같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유통과정 중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많고, 전체 유통마진 중 유통이윤의 비중이 높음
 - 특히, 소매단계 유통참여자들의 유통물량이 매우 영세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여 소매단계 유통마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수산물 유통경로는 제품의 부류별 특성(선어, 패류, 건어류, 활어, 냉동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분류를 하면 생산자 → 산지시장 → 소비지시장 → 소비자의 일반적 흐름으로 이루어짐
 - 산지시장 : 산지 수협위판장, 수집상을 통해 유통되거나 영어법인과 같은 생산자 단체의 공동판매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소비지시장 : 대도시 중심의 도매법입(공영/법정 도매시장)을 통해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들 소비지 중도매상을 거쳐 지역내 재래시장 등의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됨. 한편, 최근 들어 이러한 도매법인소비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수산물 유통시장을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 발생하고 있는 유통마진의 구성항목을 중심으로 유통단계별 유통경로와 유통마진²²⁾의 부담주체별로 어떠한 명목으로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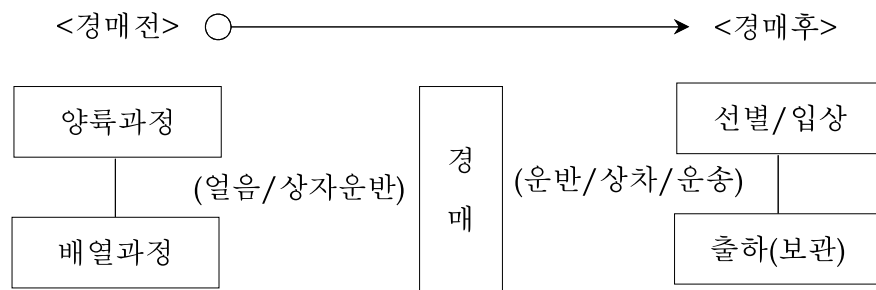
22) 유통마진이란 동종 및 동량의 물품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에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을 뺀 차액임

[유통마진 = 소비자 지불가격 - 생산자 수취가격 = 유통비(물류비) + 유통단계별 이윤]

※ 유통비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하역비, 각종 수수료 등을 말함

1. 산지시장

- 산지시장에 있어서는 계통판매(수협 위판장 계통출하)와 사매(산지 수집상 수집, 어업 경영 단체 공동판매 등)가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수협 위판장의 계통판매를 중심으로 살펴봄
- 산지시장(출하단계)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수협 → 산지중도매인이라는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로 생산자는 양륙과 배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협 위판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이후 비용은 산지중도매인이 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림 7-1> 산지시장(수협위판장) 유통과정

- 즉, 산지단계에서는 주로 운송비와 산지위판장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대부분으로 이를 생산자부담과 중도매인 부담으로 단계별로 구분하면, 생산자는 경매를 하기위해 발생하는 양륙 및 배열비, 위탁 및 위판수수료 등의 비용을, 중도매인은 경매가 완료된 수산물을 산지소비시장(특히, 도매법인)으로 출하하기 위해 소요되는 선별,운반,상차비, 포장비, 저장 및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됨

가. 생산자 비용

1) 양륙비 및 배열비

- 양륙비는 어획한 수산물을 어선에서 수협 위판장으로 양륙 및 반입하는 비용으로서

경매전까지의 양륙과 운반비를 포함하고, 배열비는 위판장내에서 경매를 하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비용을 함

- 이들 비용은 산지의 항운관련 노동조합의 작업반별 노임협정 가격으로 형성되고 주로 상자당 비용으로 부과됨

<표 7-1> 양륙 및 배열비 노임협정가격 사례

(단위: 원/상자당)

양 륫 비			배 열 비		
선망 5호	선망 4호	저인망 4호	선망 5호	선망 4호	저인망 4호
288	261	295	126	117	164

자료: 부산공동어시장 각종이용료 (2008년. 4월)

2) 위판수수료

- 현재 수협에서 징수하고 있는 위판수수료는 전년도 출하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7-2> 산지시장 수협위판 수수료 내역

전년도 매상액	수수료
100억 미만	4.8%
100-300억	4.5%
300-500억	4.0%
500-1,000억	3.8%
1,000억 이상	3.5%

자료: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2008년 4월 현재)

나. 중도매인 비용

1) 선별, 운반, 상차비 및 운송료

- 일반적으로 선별, 상차비는 수협위판장내에서 경매가 완료된 이후 위판장내의 항운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중도매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 위판장내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입출고 비용이 발생함
 - 2008년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우, 상자당 기준으로 선별비 253원, 상차비 124원으로 협약되어 있음
 - 한편, 패류는 위판장에서 선별, 운반, 상차비가 발생하지 않음. 즉, 굴의 경우 다른 부류의 품목과는 달리 경매가 끝난 후 산지도매인은 각자의 작업장에게서 선별작업 등을 함에 따라, 항운노조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2) 포장비(어상자대)

-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된 수산물은 제품별로 골판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목상자 등 일반적 4가지의 종류로 포장이 되는데, 이는 산지에서 포장된 제품 상태 그대로 소비지 경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 및 제품보존을 그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3) 저장 및 보관비용

- 중도매인이 경락받은 수산물(선어 및 냉동)을 당일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후 일부를 상품의 보존을 위해 산지 수산물 냉동창고에 입고시켜 일시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저장 및 보관비용이 발생함

4) 운송비

- 운송료는 산지 위판장에서 경락받은 수산물을 소비지의 도매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음. 일부 냉동탑차와 같은

전용 특장차로 운송하기도 하나, 아직은 그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음

- 1998년 2월 17일 이전에는 건설교통부 공표운임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공표운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화주와 운송업체 양자간에 운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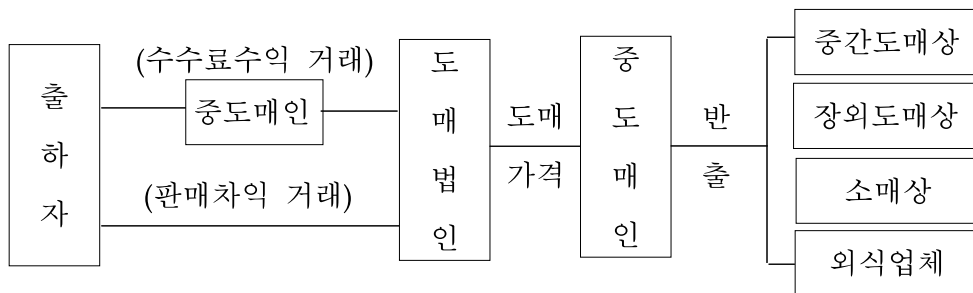
다. 중도매인 상업이윤

- 중도매인의 상업이윤은 일반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중도매인이 자기계산하에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지 중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수료만을 받고 물류비용은 실구매자가 부담하는 형태임
- 첫째, 중도매인이 자기계산 하에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로 중도매인이 운송비, 상장수수료, 하차비는 물론이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위탁하였다면 위탁수수료도 부담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유통이윤은 약 10%내외 정도의 수준임
- 둘째, 수수료만 받고 물류비용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산지시장 중도매인은 수수료 수입만이 있으므로 자기계산 하의 경우에 비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입가격과 물량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음. 대개 산지의 중도매인이 상업수수료가 약 3-5%정도가 가장 일반적임

2. 소비지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흐름은 산지 출하자(생산자, 산지중도매인, 출하법인, 수집상 등)들에 의한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에 위탁상장으로 시작됨
 - 일반적으로, 출하자는 도매법인에 직접 위탁상장을 시키거나 혹은 소비지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다시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실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와 중도매인, 실수요자(도매상 등) 사이에 사전에 거래를 한 후 도매법인에 통보하는 경우로 실지 도매시장은 아무런 역할과 기능이 없는 경우임

- 둘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산지도매시장에 이어 제2차 경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산물의 경락자가 상장을 시킨 중도매인일 수도 있고 다른 중도매인일 수도 있음
- 한편, 경매이후 소비지 중도매인의 거래유형은 산지 중도매인의 거래와 같이, 자기계산하에 판매차익목적의 거래와 단지 수수료 수익거래유형으로 대별됨



<그림 7-2>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경로

가. 출하자 비용

1) 상장수수료

- 소비지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위탁한 출하자는 경매가격의 3-4%의 상장 수수료를 도매법인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 상장수수료에는 도매시장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2) 위탁수수료²³⁾

- 위탁수수료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상장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단순히 상장업무 대행이외에도 적정가격보장을 위한 판매대행의 측면도 있음

23) 산시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탁판매수수료와는 달리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수수료적 성격으로서, 주재해주라고 하는 비상업적 기구에 지불하는 수수료임. 주재해주란 출하자를 대신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출하자의 위탁대행 이외에도 경매 지연 혹은 경매에서 탈락된 상품을 도매시장 밖의 유사도매시장이나 장외도매시장 등에 판매하는 역할도 함

- 즉, 수산물 시장의 가격구조 특성상 경매당일 소비지도매시장 경매가가 산지 경매가보다 하락할 위험성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출하자가 적정 가격을 요구하고 이 가격에 소비지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조건하에 지불하는 수수료적 성격임

3) 하차비

- 소비지 도매시장에 도착한 수산물을 경매장으로 하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매장내 하역노조와의 협정방식을 통해 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산지위판장의 양륙비 및 배열비, 선별비 등과 유사한 성격으로 상자당 비용으로 체결되며, 산지에서 포장된 상태로 경매되는 경우에는 선별비는 발생하지 않음

나. 중도매인 비용

1) 운송비

- 경매가 이루어진 수산물을 판매장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로 패류의 경우에 있어 발생되고 있음. 즉, 패류의 경우에는 경매장과 판매장과의 차이로 인해 발행하고 있으나, 선어의 경우는 경매와 동시에 바로 경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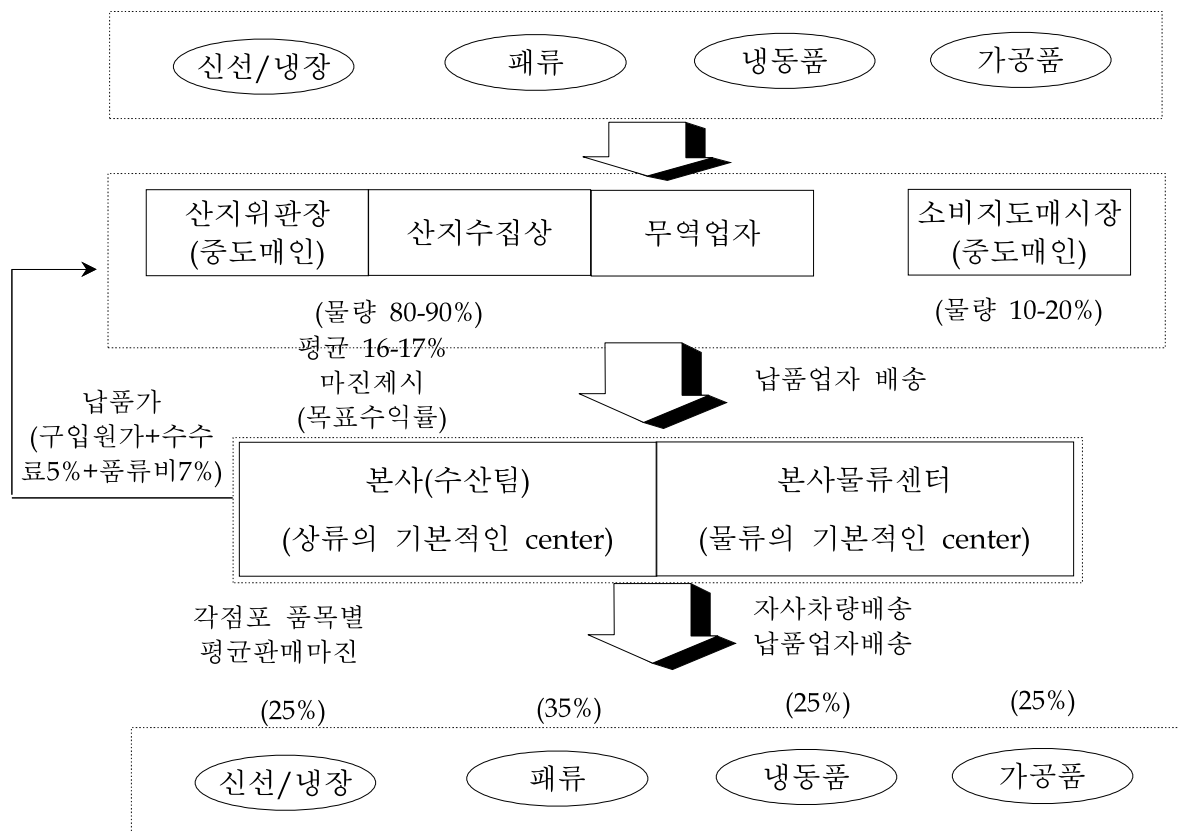
다. 중도매인 상업이윤

- 산지시장이 수협위판장과 마찬가지로 단순 수수료 수익만을 통한 이윤과 자기계산하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상업이윤으로 구분됨

3. 대형할인점 유통

-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구조 중 가장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경우는 생산자→산지수협→산지중도매인→소비지도매시장→소비지중도매인→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7내지 8단계를 거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대형할인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경로상에서 중간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경로 단축시킴으로 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래단계가 단순화되는 효과 기대됨
- 아래의 그림은 대형할인점의 유통경로의 사례로서 대부분의 할인점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수산물을 구입하여 유통시키고 있음



<그림 7-3> 대형유통할인점(A사) 수산물 구입 및 판매 경로와 마진

자료: 박수환, 수산물 유통경로 효율성에 관한 연구, 2002, p38

- 대형할인점의 물량구입은 할인점마다 다소 상이하나(A사의 경우 약 80%이상을 산지 시장에서 구입), 전반적으로 50%이상을 산지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음
- 일부 소비지 시장에서 산지시장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구입하는 이유는 소비지도매시장의 상품이 산지보다 구색이 다양하고, 소포장 판매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됨

- 수산물 구입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산지 혹은 소비지 중도매인이 다음날의 예정물량과 가격을 본사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는 구입물량과 가격을 설정하여 중도매인에게 통보함. 이때, 할인점은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내 물류비용, 본사까지의 운송비, 중도매 수수료를 부담함
- 대형할인점에서의 수산물 취급은 수산물 구매팀과 물류센터라고 하는 상적/물적 유통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본사의 구매팀에서 담당하며, 구입원가에 각 지점에 대한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하여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각 지점에 통보함. 각 지점에서는 이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가격을 책정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 본사의 목표이익률을 약 16-17%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지점은 판매과정에서 발생될 감모 등을 감안하여 약 25%수준(패류는 35% 수준)의 이익률을 목표로 판매하고 있음
- 즉, 실제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각 지점은 본사 지정 목표이익률에 평균적으로 약 8-18%정도 추가적으로 마진을 설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제2절 유통마진 분석

1. 분석방법

가. 조사대상 품목 및 기간 설정

1) 조사대상 품목 선정

- 조사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월별 도매 및 소비자 가격조사에 의해 조사자료가 모두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현재 도매시장물가는 14품종에 20종류, 소비자물가는 10품종에 15종류를 조사
- 두가지 물가정보가 모두 있는 품목을 1차적으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해조류 품목은 제외하였음. 또한 이들 두가지 물가정보 중 소매물가 정보가 없는 품목 중에서 양식산 활어인 넙치와 우럭은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하여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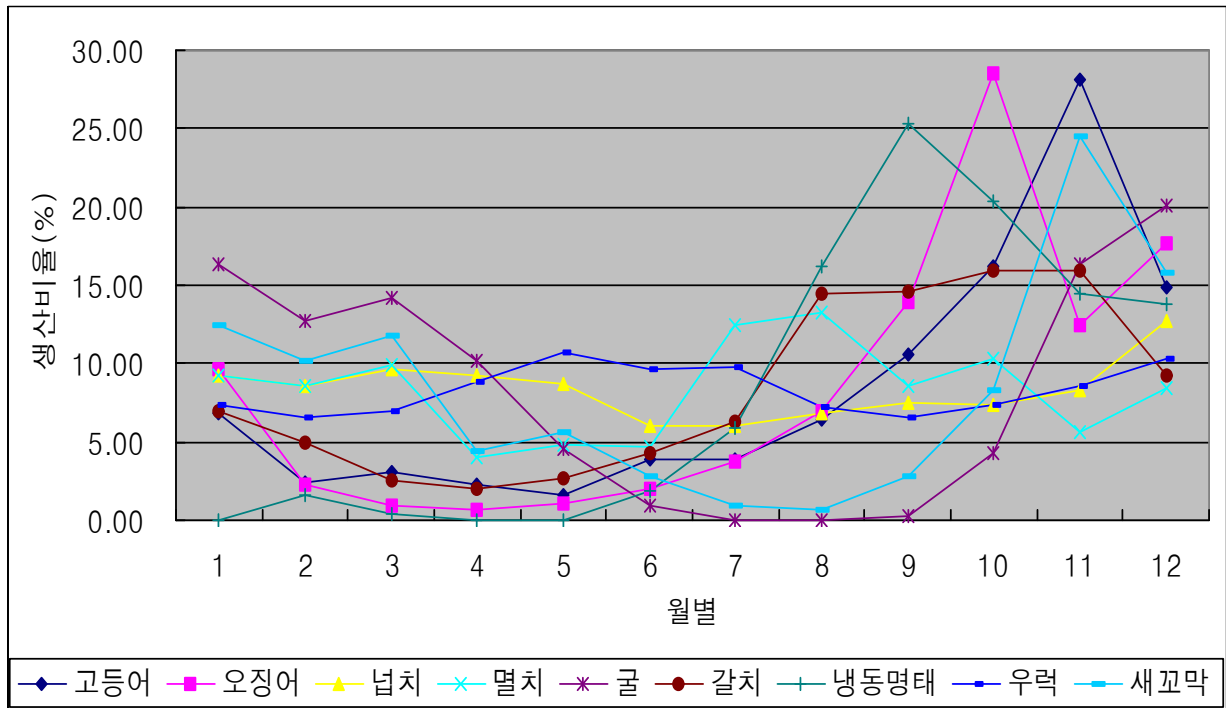
<표 7-3>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산물 월별 도매 및 소비자가격조사 품목

품목	도매물가	소매물가	분석대상
고등어(생선,냉동)	●	●	선택
갈치(생선,냉동)	●	●	선택
명태(생선,냉동)	●	●	선택
복어(황태,떡태)	●		기각*
물오징어(생선,냉동)	●	●	선택
건멸치	●	●	선택
건오징어	●	●	선택
김	●	●	기각**
건미역	●	●	기각**
염장미역	●		기각*
굴	●	●	선택
넙치(활어)	●		선택***
우럭(활어)	●		선택***
수입조기	●	●	기각****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 가격정보 조사요령(2008년 현재)
 기각사유: *) 소매물가정보가 없는 경우, **) 해조류, ****) 수입어류인 경우
 선택사유: ***) 활어로 현장시장조사를 통하여 포함시킴

2) 조사대상 기간 결정

- 1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종에 대해 산지위판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생산시기를 반영하였는데, 그 방법은 5개(2003-2007년)년도의 월별 생산량 추이를 반영하여 결정함
- 즉,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의 월별 생산량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주어를 선정하되, 1개월간의 평균거래 실적으로 이용함



<그림 7-4> 분석대상 주요 품종별 월별(2003년-2007년 평균) 생산비중 추이

- 분석결과, 대상품목 모두 동절기가 주 어기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유통마진을 연중 평균하게 되면, 산지가격이 없는 비성어기와 소비지의 가격이 비교되는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성어기를 중심으로 유통마진율을 분석함
- 그 결과, 전반적으로 동절기가 성어기임을 감안하여 2007년도 12월 1개월간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함

3) 조사가격 및 방법

- 조사가격은 수산물 유통단계에 따라,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으로 구분하여 조사
 - 산지가격: 품목별로 주요 산지(출하지)의 수협위판실적의 위판단가를 적용하였음
 -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가격정보

<표 7-4> 농수산물 유통공사 가격정보 조사방법

항목	내용
조사방식	- 가격조사 대상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면접청취 조사
조사단위	- 실거래 단위(상자, 톤, 관)를 조사하여 조사단위(kg, g)로 환산하여 입력하되, 실거래 단위별 중량은 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측정 한 후 조사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도매가격	- 조사지역 관내에서 조사품목의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1개의 도매시장을 선정 - 조사시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서 조사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상회를 3개 이상 지정하여 평균가격을 조사 - 품목별로 주 거래시장이 없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거래가격조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사지역 관내에서 조사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상회 중 3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평균가격을 조사 - 지정상회의 주변부터 당일 거래가격의 등락경향을 파악한 다음, 지정상회의 실거래가격을 확인 조사하며 경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중도매인 판매가격으로 조사
소매가격	- 조사지역 관내에서 소비자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1~5개소, 일반 소매시장 1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조사 - 일반소매시장은 조사 품목의 거래비중이 큰 3개 이상 소매상회를 지정하여 조사한 후 평균가격을 산출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홈페이지, 유통정보, 가격정보 조사요령

- 상기의 조사가격을 근거로 가락시장을 경유하는 품목으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흐름이 파악되는 품종을 대상으로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유통주체를 상대로 시점조사²⁴⁾

24) 유통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조사방법에는 추적조사와 시점조사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추적조사: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산지에서 선정된 특정상품에 대해 추적하면서 조사
 - 장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각 유통 단계별로 상세히 조사
 - 단점: 일반성 결여에 따른 사례조사 위험성 내재

2. 분석결과

가. 품목별 유통마진

- 품목별 유통마진은 <표 7-5>와 같이 전체적으로 43~63%로 전반적으로 생산자 수취율보다 유통마진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타 공산품에 비해서, 수산물의 특성상 저장, 가공 등의 유통비용의 발생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표 7-5> 품목별 유통마진을

(단위 : 원/kg, %)

품목	생 산 자 수취가격	소 비 자 지불가격	생 산 자 수 취 율	유통마진율
고등어	2,704	6,331	42.7	57.3
갈치	10,604	25,306	41.9	58.1
물오징어	2,251	5,150	43.7	56.3
냉동명태	1,007	2,500	40.3	59.7
활넙치	9,792	18,000	54.4	45.6
활우럭	4,986	10,200	48.0	52.0
건오징어	9,215	21,282	43.3	56.7
건멸치	4,803	9,116	52.7	47.3
굴	5,988	15,890	37.7	62.3
새꼬막	1,530	3,235	47.3	52.7
선어류소계(냉동명태포함)			42.1	57.9
활어류소계			51.2	48.8
건어류소계			48.0	52.0
패류소계			42.5	57.5
전체 평균			45.2	54.8

주 : 생산자 수취율 = (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지불가격) * 100

유통마진 = 소비자지불가격-생산자수취가격 = 유통비용+상업이윤

유통마진율 = (유통마진/소비자지불가격) * 100

참고: 건오징어만 1축(20마리) 기준 가격임

- ② 시점조사: 동일한 시점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각 유통단계별 가격차이와 예상되는 유통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마진을 역산하여 추정하는 방법

- 장점: 상품이 유통되는 동안의 비용을 항목별로 측정하여 비용과 마진에 대한 일반성을 확보하여 주기적인 조사 가능
- 단점: 상이한 기간에 대한 비교시 품목의 상품성이 상이함에 따른 비용산출의 한계

- 품목별 유통마진율은 굴, 냉동명태, 갈치, 고등어, 건오징어, 물오징어, 새꼬막, 활우럭, 건멸치, 활넙치 순으로 높았음
 - 그러나, 유통형태가 유사하고 단계별 판매비용 차이가 적어 전반적으로 유통마진율은 40%중반에서 50%중반으로 품목별 편차는 크지 않았음

- 부류별로는 선어류와 패류가 53~62%로 가장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건어류와 활어 순임
 - 그 결과 생산자수취율은 활어, 건어류, 패류, 선어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선어류에 대한 유통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 축소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

나.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 분석의 편의상 전체 유통단계를 출하·수집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하여 유통마진을 분석해 보면 <표 7-6>과 같음

<표 7-6> 품목별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구성내역

(단위 : %)

품 목	생산자 수취	유통 단계				소비자 지불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계	
고등어	42.7	14.1	9.0	34.2	57.3	-
갈치	41.9	9.5	6.7	41.9	58.1	-
물오징어	43.7	21.1	6.4	28.7	56.3	-
냉동명태	40.3	13.7	16.3	29.7	59.7	-
활넙치	54.4	7.9	16.0	21.8	45.6	-
활우럭	48.0	5.9	14.1	31.9	52.0	-
건오징어	43.3	10.7	17.8	28.1	56.7	-
건멸치	52.7	12.0	16.7	18.6	47.3	-
굴	37.7	21.8	6.6	33.9	62.3	-
새꼬막	47.3	10.9	5.5	36.4	52.7	-
평균	45.2	12.8	11.5	31.5	54.8	

- 단계별로 보면, 소매단계에서 가장 높은 유통마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출하 단계와 도매단계에서 유사한 마진율을 갖는 것으로 조사됨
 - 소매단계는 유통단계가 길어 선도하락에 따른 감모 발생이 많고 제세공과금, 관리비, 임대료 등 간접비 지출이 많았음
 - 도매단계는 부류별로 활어 및 건어류가 높은 균을 차이하고, 선어류와 패류가 낮은 균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하단계는 품목별로 굴, 물오징어, 고등어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산지재작업비와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비 등의 비중이 높았음

- 즉, 소매단계의 마진율이 높은 것은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부패 위험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이윤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실은 선어류 등이 건어물에 비해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은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음

다. 유통기능별 유통마진

- 유통마진을 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 비용과 이윤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유통비용의 항목은 선별·포장·재료비, 상하차 및 운송 등의 수송비, 저장 및 냉장(얼음)비, 각종 수수료 및 감모등의 기타비용으로 분류

- 분석결과, 유통비용은 총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2%에 비해 상업이윤이 39.9%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산물에 있어 상업이윤이 높은 것은 다단계유통을 거치면서 유통비용도 많지만 어항의 풍흉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고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이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항목별로는 기타비용, 선별/포장/재료비, 상하차 및 운송비, 저장 및 내장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기타비용은 굴, 새꼬막 등 패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어, 물오

징어 등 선어류, 활어 및 넙치 등 활어, 건어류 수입. 이는 기타비용 중 감모 발생비용이 높아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패류의 부패속도가 빠르고 판매기간이 긴 선어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7-7> 품목별 유통마진의 유통기능별 구성내역

(단위 : 원, %)

품목	유통비용(A)					상업이윤(B)	유통마진(A+B)
	선별·포장 재료비	상하차 운송비	저장·냉장	기타 비용	소계		
고등어	2.9	3.0	0.2	8.8	14.8	42.5	57.3
갈치	1.7	1.9	-	8.4	12.1	46.0	58.1
물오징어	6.5	4.0	0.7	8.2	19.4	36.9	56.3
냉동명태	2.8	6.8	2.0	5.9	17.4	42.3	59.7
활넙치	-	6.9	-	4.8	11.7	33.9	45.6
활우럭	-	12.3	-	4.2	16.4	35.6	52.0
건오징어	-	0.8	-	3.5	4.3	52.4	56.7
건멸치	0.3	4.2	-	3.6	8.2	39.1	47.3
굴	7.1	6.9	1.8	13.3	29.1	33.3	62.3
새꼬막	0.9	4.9	1.7	11.6	19.2	33.5	52.7
평균	2.2	5.2	0.6	7.23	15.26	39.55	49.82

제3절 소결

- 주요 품목별 유통마진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유통마진을 품종별로 선어류(갈치, 고등어 등) 및 패류(굴)가 건어류(건오징어) 및 활어류(넙치)보다 높았는데, 이는 건어류나 활어에 비해 선어류 및 패류의 유통단계 효율성 제고 혹은 단계축소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유통단계별로 보면, 소매단계에가 가장 많은 유통마진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도매단계와 소매단계가 유사한 유통마진 비율을 가지면서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즉, 소매단계의 마진율이 높은 것은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부패 위험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이윤을 취하고 있기 때문
 - 셋째, 유통기능별로는 유통비용이 총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2%에 비해 상업이윤이 39.9%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격 등락이 심하며 저장성이 부족하고 감모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편, 품종별 유통마진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산어가의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지에서의 물류비용을 줄여나가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지수협의 집하능력 강화(즉, 수협위판 기능 강화)와 저차가공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수협의 산지어가 조절기능을 강화가 필요함
 - 둘째, 수산물의 경우 타산업에 비해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은 점을 볼 때, 소비지에서의 유통마진 절감함으로써 이 절감분이 생산자인 어가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면, 수산물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는 수협을 통해 직판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표 7-8> 품목별·유통단계별 유통비용과 상업이윤내역

□ 고등어

(2007년 12월, 부산→가락시장)

(중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2,704	42.7	산지경락가-하역비-위탁수수료
	하역비	17	0.3	10kg 상자당 양육비(288원)+배열비(126원)
	위탁수수료	96	1.5	산지 경락가의 3.4%
	산지 경락가	2,817	44.5	부산공동어시장 어종별 위판실적('07.12)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제작업비	83	1.3	재포장 인건비 상자당 총인건비: 834원 (남자257, 여자315, 상하차노임128, 얼음포장비134원)
	포장비	100	1.6	스티로폴 상자(10kg): 957원
	냉장비(얼음)	10	0.2	10kg 상자당 100원
	운송비	95	1.5	10kg 상자당 950원(부산→가락시장)
	위탁수수료	158	2.5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14)	(0.2)	하역노임 협정
	- 순수위탁수수료	(144)	(2.3)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337	5.3	
경매가격		3,600	56.9	가락시장 경매실적('07.12)
중도매인	배송료	13	0.2	하역노임 협정
	감모	108	1.7	경매가격의 3%
	간접비 및 이윤	447	7.1	
	도매가격	4,168	65.8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50	0.8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208	3.3	도매가격의 5%(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1,905	30.1	
소비자 지불가격		6,331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3,627	57.3	

□ 갈치

(2007년 12월, 제주→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10,604	41.9	산지경락가-하역비-위탁수수료
	하역비	15	0.1	수협경매장 하역노임(10kg 상자당 150원)
	위탁수수료	477	1.9	산지 경락가의 4.3%
	산지 경락가	11,096	43.8	제주지역 수협 위판고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제작업비	40	0.2	분류 및 포장비용 (1인당 50,000원 250상자 기준)
	포장비	400	1.6	스티로폴 상자(종류다양 350-400원)
	냉장비(얼음)	10	0.1	10kg 상자당 100원
	운송비	350	1.4	비행기운송 1kg 350원(제주→가락시장)
	위탁수수료	527	2.3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52)	(0.2)	하역노임 협정
	- 순수위탁수수료	(520)	(2.1)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532	2.1	
	경매가격	13,000	51.4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4	0.1	하역노임 협정
	감모	390	1.5	경매가격의 3%
	간접비 및 이윤	1,298	5.1	
	도매가격	14,692	58.1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51	0.2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735	2.9	도매가격의 5%(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9,828	38.8	
소비자 지불가격		25,306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14,702	58.1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 굴

(2007년 12월, 통영→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5,988	37.7	산지경락가-위탁수수료
	하역비	-	-	
	위탁수수료	217	1.4	산지 경락가의 3.5%
	산지 경락가	6,200	39.0	통영수협 위판고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재작업비	200	1.3	1일 1인 인건비 100,000원 작업량500EA
	포장비	930	5.9	상자480원, 얼음400원, 노끈20원, 비닐30원
	주재하주수수료	284	1.8	경매가의 3%
	운송비	500	3.1	1kg 상자당 500원(통영→가락시장)
	위탁수수료	617	3.9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239)	(1.5)	하역노임 협정
	- 순수위탁수수료	(378)	(2.4)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720	4.5	
	경매가격	9,450	59.5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01	0.6	하역노임 협정
	감모	473	3.0	경매가격의 3%
	간접비 및 이윤	477	3.0	
	도매가격	10,500	66.1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250	1.6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1,050	6.6	도매가격의 5%(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4,090	25.7	
소비자 지불가격		15,890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9,907	62.3	

□ 새꼬막

(2007년 12월, 여수→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1,530	47.3	산지경락가-위탁수수료
	하역비	-	-	
	위탁수수료	-	-	
	산지 거래가격	1,530	47.3	산지거래가격 20kg 기준 30,600원 (전화조사: 자율관리공동체: 월평균가격)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제작업비	24	0.7	1일 4인 인건비 160,000원 400망작업
	포장비	6	0.2	망 95원, 끈5원(17kg기준)
	주재하주 수수료	56	1.7	경매가격의 3%
	운송비	71	2.2	17kg망 1,200, 7kg망 600원
	위탁수수료	94	2.9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19)	(0.6)	하역노임 협정(17kg망 323원)
	- 순수위탁수수료	(75)	(2.3)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100	3.1	
	경매가격	1,882	58.2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0	0.3	하역노임 협정
	감모	94	2.9	경매가격의 5%
	간접비 및 이윤	73	2.3	
	도매가격	2,059	63.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가격월보
소매인	운송비	59	1.8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206	6.4	도매가격의 10%(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911	28.2	
소비자 지불가격		3,235	100.0	전화조사(재래시장: 영등포)
총 유통마진(율)		1,705	52.7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 물오징어

(2007년 12월, 울진→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2,251	43.7	산지경락가-상장수수료
	하역비	-	-	10kg 상자당 양육비(288원)+배열비(126원)
	상장수수료	79	1.5	산지 경락가의 3.4%
	산지 경락가	2,330	45.2	후포수협 위판실적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재작업비	100	1.9	6kg 상자당 20미씩 선별 작업 및 포장
	포장비	233	4.5	상자(6kg)1,000원, 테입100원, 얼음300원
	상차비	38	0.7	산지 하역노임 협정
	운송비	100	1.9	500,000원/5톤(울진→가락시장)
	위탁수수료	156	3.0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22)	(0.4)	하역노임 협정
	- 순수위탁수수료	(134)	(2.6)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383	7.4	
	경매가격	3,340	64.9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21	0.4	하역노임 협정
	감모	100	1.9	경매가격의 3%
	간접비 및 이윤	209	4.1	
	도매가격	3,670	71.3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61	1.2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110	2.1	도매가격의 3%(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1,309	25.4	
	소비자 지불가격	5,150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2,899	56.3	

□ 건멸치(중멸)

(2007년 12월, 부산→가락시장)

(중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4,803	52.7	산지경락가-하역비-위탁수수료
	하역비	144	1.6	2kg상자당양육비(288원)
	위탁수수료	153	1.7	산지 경락가의 3%
	산지 경락가	5,100	55.9	부산지역 수협 어종별 위판실적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재작업비			
	포장비	30	0.3	스티로폴 상자(10kg): 957원
	냉장비(얼음)			
	운송비	150	1.6	부산→가락시장
	위탁수수료	196	2.2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19)	(0.2)	하역노임 협정
	- 순수위탁수수료	(177)	(1.9)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424	4.7	
	경매가격	5,900	64.7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8	0.2	하역노임 협정
	감모			
	간접비 및 이윤	1,503	16.5	
	도매가격	7,421	81.4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55	0.6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간접비 및 이윤	1,640	18.0	
	소비자 지불가격	9,116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4,313	47.3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 견오징어

(2007년 12월, 울진→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축)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9,215	43.3	산지경락가-위탁수수료
	하역비			
	위탁수수료	285	1.3	산지 경락가의 3%
	산지 경락가	9,500	44.6	현지 실거래가 월간 평균가격 (전화조사: 자율관리공동체)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제작업비			
	포장비			
	냉장비(얼음)			
	운송비	95	0.4	울진→가락시장
	위탁수수료	460	2.2	
	- 하역비	0	0	
	- 순수위탁수수료	(460)	(2.2)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1,445	6.8	
	경매가격	11,500	54.0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9	0.1	하역노임 협정
	감모			
	간접비 및 이윤	3,773	17.7	
	도매가격	15,292	71.9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56	0.3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간접비 및 이윤	5,934	27.9	
	소비자 지불가격	21,282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12,067	56.7	

□ 냉동명태(원양산)

(2007년 12월, 원양선사→가락시장)

(중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1,007	40.3	원양선사 선상경매 수취가격
	하역비			
	위탁수수료			
	산지 경락가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재작업비			
	포장비	70	2.8	콜판지 상자
	입출고비	50	2.0	4*2박스기준
	운송비	100	4.0	(원양선사→가락시장)
	위탁수수료	54	2.2	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0	0	
	- 순수위탁수수료	(54)	(2.0)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69	2.8	
경매가격		1,350	54.0	가락시장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6	0.6	하역노임 협정
	감모	41	1.6	경매가격의 3%
	간접비 및 이윤	352	14.1	
	도매가격	1,758	70.3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53	2.1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53	2.1	도매가격의 5%(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636	25.5	
소비자 지불가격		2,500	1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1,493	59.7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 우럭(활어)

(2007년 12월, 남해→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4,986	48.0	산지경락가-하역비-위탁수수료
	하역비			10kg 상자당 양육비(288원)+배열비(126원)
	위탁수수료	204	2.0	산지 경락가의 3.4%
	산지 경락가	5,100	50.0	남해지역 수협 어종별 위판실적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제작업비			재포장 인건비 상자당 총인건비: 834원 (남자257, 여자315, 상하차노임128, 얼음포장비134원)
	포장비			스티로폴 상자(10kg): 957원
	냉장비(얼음)			10kg 상자당 100원
	운송비	150	1.5	10kg 상자당 950원(남해→가락시장)
	위탁수수료	220	2.2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0	0	하역노임 협정
	- 순수위탁수수료	(220)	(2.2)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30	0.3	
	경매가격	5,500	53.9	가락동 경매실적
중도매인	배송료	1,000	9.8	하역노임 협정
	감모			
	간접비 및 이윤	442	4.3	
	도매가격	6,942	68.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100	1.0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도매가격의 5%(자연감모율)
	간접비 및 이윤	3,158	31.0	
소비자 지불가격		10,200	100.0	
총 유통마진(율)		5,304	52.0	서울지역 횃집 등 전화조사 가격

□ 넙치(활어)

(2007년 12월, 부산→가락시장)

(상품기준)

구분	내역	금액 (원/kg)	비율 (%)	산출내역
	생산자수취가격	9,792	54.4	산지경락가-하역비-위탁수수료
	하역비			
	위탁수수료	408	2.3	산지 경락가의 4%
	산지 경락가	10,200	56.7	부산공동어시장 경락가격
출하자 (산지유통)	선별재작업비			
	포장비			
	냉장비(얼음)			
	운송비	150	0.8	(부산→가락시장)
	위탁수수료	448	2.5	하역비+순수위탁수수료
	- 하역비	0	0	
	- 순수위탁수수료	(448)	(2.5)	경매가의 4%
	간접비 및 이윤	408	2.3	
	경매가격	11,206	62.3	가락시장 경매가격
중도매인	배송료	1,000	5.6	하역노임 협정
	감모			
	간접비 및 이윤	1,873	10.4	
	도매가격	14,079	78.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조사가격
소매인	운송비	100	0.6	50,000원(1톤): 10km이상
	감모			
	간접비 및 이윤	3,821	21.2	
	소비자 지불가격	18,000	100.0	서울지역 횡집 전화조사가격
	총 유통마진(율)	8,208	45.6	

제8장 수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제1절 개념 및 현황

1. 개념 및 특성

가. 전자상거래의 개념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웹을 경유하는 전자 정보의 전송을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사는 프로세스라고 정의 할 수 있음(Grand and Pearson. 2004)
- 환언하자면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여러 과정 중에서 입찰/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거래란 정부, 기업 및 개인 등 각 경제주체 간에 상품 및 서비스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제주체간의 거래임
-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
- 이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쇼핑몰(cyber shopping mall,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이라고도 함)은 컴퓨터 통신망의 가상 세계를 뜻하는 사이버 공간과 보행자 전용 상가를 뜻하는 쇼핑몰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가를 말하며,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나. 전자상거래의 특징

-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극복
- 표적 집단에의 접근 용이성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고객과 기업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저렴한 비용과 고객의 요구의 신속한 대응

<표 8-1> 전자상거래의 장점 및 단점

장점	단점
○ 유통비용의 축소와 판매기능의 고객으로의 이전	○ 불완전한 배송과정에서의 문제점
○ 고객의 특성과 반응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	○ 불완전한 지불과정상의 문제점
○ 지역적 제약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의 용이성	○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 소비자의 제품정보에 대한 용이성 및 비교쇼핑. 구매 전 테스트 등을 통한 효과적인 쇼핑	○ 비인간적인 대응에 대한 거부감
○ 공동구매 등을 통한 구매비용의 절감	○ 저관여 제품중심의 구색

다. 전자상거래 분류

- 거래주체에 따라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기업-정부간(B2G), 소비자-소비자간(C2C 등) 등으로 분류되며, 세부분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표 8-2>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짐

<표 8-2> 전자상거래의 세부분류

분류기준	분류	내용
B2B 전자상거래의 주도형태	구매자 중심형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판매자 중심형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중개자 중심형	중개용 B2B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B2B 경쟁성 유무	경쟁성(개방형) 거래	공개성 또는 경쟁성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거래파트너로 하여 주로 입찰거래 또는 공개거래의 형태
	비경쟁성(협력형) 거래	일반적으로 기존 offline 상에서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간 거래가 전자 상거래 기반으로 전환된 형태
사이버쇼핑몰 취급상품 범위	종합몰	각종 상품군의 카테고리에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쇼핑몰
	전문몰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작성

2. 현황

-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01년 119조에서 2007년 517조 약 4배이상의 성장을 해왔으며, 국내전자상거래의 약 90%정도는 기업간(B2B)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제 사이버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기업-소비자간(B2C)형태는 전체의 전자상거래 중 약 2%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소비자간(B2C)형태의 거래비율이 높은 사이버쇼핑몰의 운영형태를 보면 Online몰과 On/Offline몰 중 2000년에는 초반에는 On/Offline을 병행하는 형태의 거래액은 58.5%로 Online몰 보다 더 높았으나 2005년부터는 Online몰만을 운영하는 형태의 거래액규모가 On/Offline을 병행하는 몰을 앞지르기 시작하며, 2007년에는 약 2배정도의 거래액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의 확산 및 사이버쇼핑몰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8-3>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10억원)

연도	합계	기업간 (B2B)	기업·정부간 (B2G)	기업·소비자간 (B2C)	기타
2001	118,976	108,941	7,037	2,580	418
2002	177,810	155,707	16,632	5,043	427
2003	235,026	206,853	21,633	6,094	442
2004	314,079	279,399	27,350	6,443	889
2005	358,451	319,201	29,037	7,921	2,293
2006	413,585	366,191	34,435	9,132	3,826
2007	516,514	464,456	36,801	10,226	5,032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재작성

<표 8-4> 사이버쇼핑몰 운영형태별 거래액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Online 물		On/Offline물	
	거래액	거래액	비율	거래액	비율
2001	3,347,067	1,390,662	41.5%	1,956,405	58.5%
2002	6,029,876	1,973,686	32.7%	4,056,191	67.3%
2003	7,054,817	2,401,107	34.0%	4,653,711	66.0%
2004	7,768,105	3,824,930	49.2%	3,943,175	50.8%
2005	10,675,595	5,913,345	55.4%	4,762,250	44.6%
2006	13,459,595	8,285,365	61.6%	5,174,229	38.4%
2007	15,765,573	10,006,876	63.5%	5,758,697	36.5%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재작성

- 농수산물의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2000년 1,010억원에서 2007년 3,930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사이버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총17개 상품군별 중 농수산물의 비율은 2002년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순위 역시 2000년 8위에서 2007년 12위로 하락하였음

<표 8-5> 사이버쇼핑몰 농수산물 거래액 및 순위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이버쇼핑몰 전체	농수산물	비율	순위
2001	3,347,067	101,357	3.03%	8
2002	6,029,876	307,462	5.10%	7
2003	7,054,817	294,506	4.17%	9
2004	7,768,105	280,273	3.61%	11
2005	10,675,595	284,659	2.67%	12
2006	13,459,595	312,430	2.32%	12
2007	15,765,573	393,058	2.49%	12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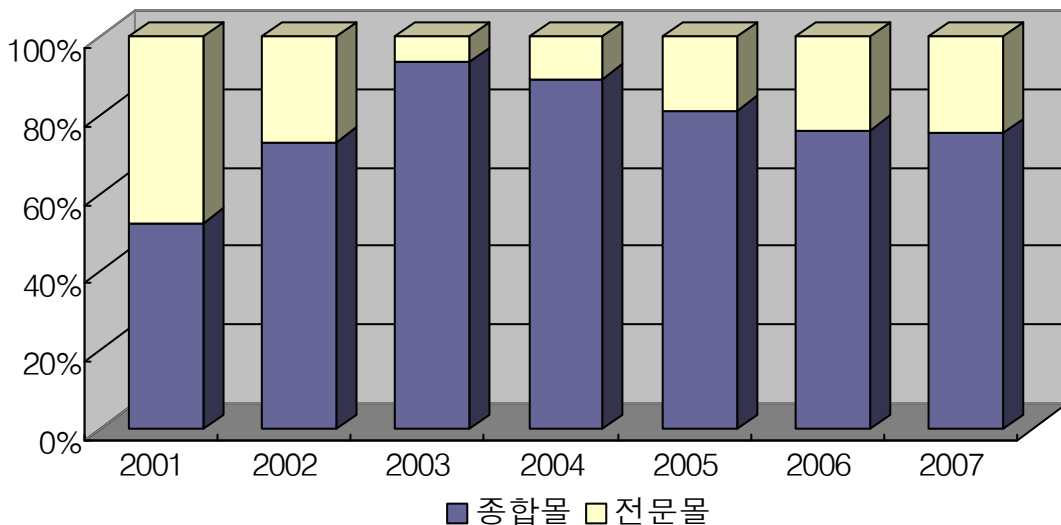
- 사이버쇼핑몰은 취급범위에 따라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로 나눌수 있음. 국내의 대표적인 종합쇼핑몰로는 LGshop, 삼성몰, 인터파크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문쇼핑몰은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Fishsale 및 수협e쇼핑, 화장품류를 취급하는 여인닷컴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사이버쇼핑몰의 농수산물거래액 중 종합몰과 전문몰의 거래액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종합몰이 52.6%, 전문몰이 47.4%로 종합몰과 전문몰의 거래액 비율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2002~2003년 종합몰에서 농수산물 및 식품분야의 취급이 늘어나고 종합몰에대한 소비자 신뢰도의 증가에 힘입어 종합몰의 농수산물 거래액은 93.4%로 압도적으로 늘어났음
- 그러나 2003년이후 전문몰의 거래액비율은 6.6%에서 2007년 24.6%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의 전문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좋아지며, 농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종합몰에서 전문몰로의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8-6> 사이버쇼핑물 농수산물 취급범위

(단위 : 백만원)

연도	농수산물 전체	종합물		전문물	
		거래액	비율	거래액	비율
2001	101,357	53,300	52.6%	48,059	47.4%
2002	307,462	224,532	73.0%	82,930	27.0%
2003	294,506	275,089	93.4%	19,418	6.6%
2004	280,273	250,016	89.2%	30,257	10.8%
2005	284,659	231,072	81.2%	53,587	18.8%
2006	312,430	238,083	76.2%	74,346	23.8%
2007	393,058	296,219	75.4%	96,839	24.6%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8-1> 사이버쇼핑물 농수산물 전문물 거래비중 추이

- 사이버쇼핑물의 한 형태로서 오픈마켓은 2003년부터 새로운 쇼핑패턴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2005년 사이버쇼핑물 거래액 중 29%를 차지 1996년도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사이트를 오픈했고 1997년에는 신세계백화점 쇼핑몰, e 현대, 한솔CS클럽, 1998년에는 삼성몰, 옥션, 온라인서점 예스24와 알라딘 등이 오픈마켓 시장에 참여하였으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인터넷쇼핑물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이 급속화 2000년대에는 인터파크 사내 벤처였던 G마켓(구 인터파크구스닥)이 출범하면서 현재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에서 옥션과 함께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

제2절 사례분석

1.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례

가. 농산물 전자상거래 현황

- 국내 농산물의 유통은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의 시장점유율 증가 및 까르푸, 월마트, 코스트코, 홀세일 등 외국계 유통업체의 국내시장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같이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경로가 기존 도매 시장 외에도 물류센터, 직거래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경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음. 이러한 제문제들은 결국 유통업체들의 정보통신 유통망(Network)을 전자상거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가 측면에서는 인터넷사용의 확대로 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B2C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증가
- B2C 방식의 전자상거래는 개별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적인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관계로 참여하는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가의 홈페이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컴퓨터 보유농가를 살펴보면 2000년 332,789가구에서 2005년 470,379가구로 약 41.3% 가량 증가를 하였으며, 전자상거래의 이용은 2000년 1,503가구에서 2005년 7,100가구로 약 3.7배가량 증가 하였음. 이중 부류별 전자상거래이용은 일반밭작물과 과수로 각 약 5.4배, 5.1배가 증가 하였음

<표 8-7> 농가의 전자상거래 이용현황

(단위:가구)

구 분	컴퓨터보유농가			전자상거래		
	2000년	2005년	증가	2000년	2005년	증가
논 벼	166,700	215,254	29.10%	430	1,212	181.90%
과 수	45,041	65,688	45.80%	310	1,886	508.40%
특용작물	9,594	12,175	26.90%	82	455	454.90%
채 소	57,904	88,586	53.00%	262	1,331	408.00%
화 훼	4,687	7,267	55.00%	68	286	320.60%
일반밭작물	16,557	38,353	131.60%	49	313	538.80%
축 산	30,861	41,626	34.90%	286	1,568	448.30%
기 타	1,445	1,430	-1.00%	16	49	206.30%
합계	332,789	470,379	41.30%	1,503	7,100	372.40%

- 농산물의 B2C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도입 초기의 단일 농산물 집단 전자상거래인 도홍참외 및 헤드림쌀 등을 들 수 있음. 도홍참외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단일 농산물의 집단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델이며,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약 20농가 참여하여 매출액 4.4억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체생산량의 30%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임. 참여농가수는 150여 인근마을의 농가가 참여함
- 헤드림쌀 농가는 개별적으로 쌀의 차별화 판매에 성공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로 확대가 이루어짐. 또한 판매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 규모는 재배면적 40만평, 판매금액이 25억원 정도의 물량이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음
- 농가단위 또는 단일 농산물 집단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아래같은 요인을 들 수 있음
 - 농업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유통기반의 열악
 - 농산물의 규격, 포장, 코드 등의 표준 규격화의 미비
 - 대금결제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미비
 - 배송체계의 미비
 - 인터넷 홈페이지의 홍보부족 등임

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례

-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중 수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매출액 증가 및 운영에 있어 성공적이라 사료되는 '농사랑'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음

1) 농사랑 현황

- 농사랑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RIS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운영이 시작되었음. 2008년부터 농산물의 판매증대를 위해 충청남도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주)농사랑이 비영리로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전자상거래상의 분류에 따르면 B2C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마켓이라 할 수 있으며, 주 거래품목은 농산품을 취급하는 전문몰임
-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충남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 또는 공장을 보유한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 (1차 생산자 및 가공 업체)의 200여개의 회원농가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열린 공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사랑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생산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를 찾지못하는 생산자에게는 신규판로의 개척, 소비자에게는 낮은가격확보 및 안전 먹거리,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의 구매라는 장점을 토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이익적 거래를 지향함
- 농사랑의 매출액은 사업의 시작년도인 2005년에는 약 10억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2006년에 약20억원, 2008년도의 7개월간(1월~7월기준) 매출액은 18억원, 주문건수는 약 5,700건에 달하며, 2008년에는 매출액이 약 30억에 이를 것이라 전망되어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2) 농사랑 판매자 지원 서비스

- 농사랑은 회원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지원, 전문 농산품 직거래 장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지원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판매 지원 서비스
 - 지역 우수 농산품 또는 가공식품의 홍보를 위한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국내 대형 마켓 플레이스(옥션, 지마켓 등)를 통한 판매 활동 지원
 - 월별, 계절별 마케팅 수립 계획에 따른 판매 대행 서비스 지원

- 전문 농산품 직거래 장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농사랑(<http://www.nongsarang.co.kr>) 입점 등록 및 판매 지원
 - 선별된 우수 농가 및 농기업 홍보 및 온라인 간접 마케팅 지원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지원 및 컨설팅
 -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관리(유상 지원)
 - 전자상거래 관리 및 고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 교육 제공

3) 농사랑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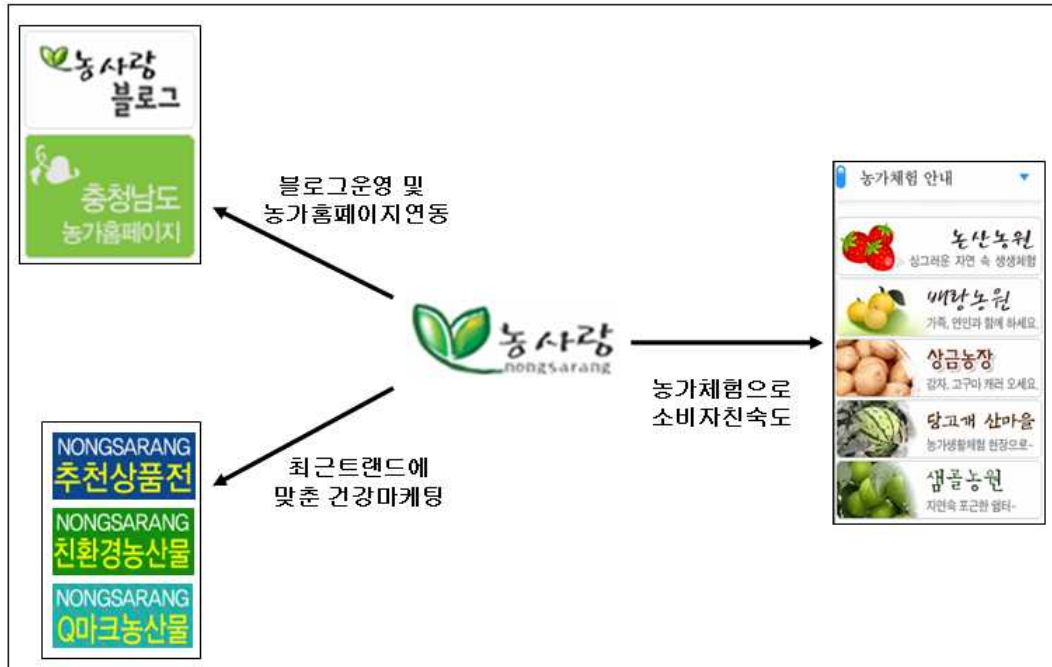
- 농사랑의 판매형태는 크게 자체 사이트 판매와 신뢰도나 인지도가 높은 대형종합쇼핑몰의 입점판매로 구분되며, 현재 자체 사이트 판매보다는 외부 입점몰 판매에 주력을 맞추고 있음

- 옥션, 지마켓, 체로마켓, 우체국장터, 에브리마켓 등의 외부 쇼핑몰에 입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07년 충청남도과 옥션이 MOU를 체결 하였으며, G마켓 충청남도 우수브랜드관 운영을 하고 있음. 옥션 판매만족도 97%이상



<그림 8-2> 대형종합쇼핑몰과의 연계

- 농사량은 판매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농사량에 농가나 업체가 입점만으로 상품 사진 촬영, 전자카탈로그제작, 주요 쇼핑몰 상품등록, 주문/배송 관리, 고객 관리(전화상담)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든 업무 대행하는 것을 칭하며, 농가에서는 제품 생산 및 택배부분만 담당함
- 이와 같은 One-Stop 서비스는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판매자의 편리로 인한 많은 농가와 업체의 농사량 입점을 유입함으로써 제품공급의 안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농사량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강을 강조한 친환경농산물 및 Q마트농산물, 유기농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농가체험을 쇼핑과 접목시켜 체험을 통한 농가와 소비자간의 신뢰도의 향상 및 농가수입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농사량의 마케팅전략은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 재구매 및 장기수요자의 확보를 이루고 있음



<그림 8-3> 농사랑의 차별화된 마케팅 현황

2. 수산물 전자상거래 사례

-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중 대표적인 ‘피쉬세일’을 사례로 하여, 전반적인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개장 초에는 전문운영회사인 (주)이지팜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05.1월부터 EC사업부를 개설하여 (사)한국수산회가 직접 운영
- ‘피쉬세일’은 B2C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쇼핑몰로 오픈마켓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수산부문의 509개 업체 및 어가로 이루어짐

<표 8-8> 참여업체 및 어가 유형별 현황

계	어선어업	양식어업	영어법인	어촌계	가공업체	기 타
509	36	62	63	12	281	55

<표 8-9> 참여업체 및 어가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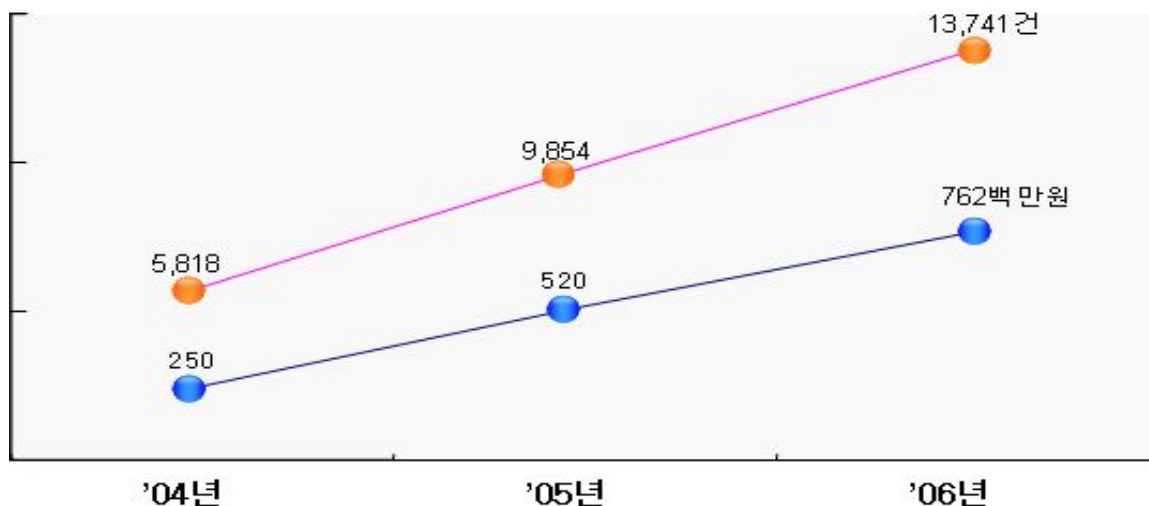
계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509	36	62	63	56	109	120	23	55

- '04년부터 시작된 피쉬세일은 '04년 250백만원, '05년 520백만원, '06년 762백만원, '07년에는 942백만원으로 '04년 대비 '07년에는 377% 증가하였음
- 주문건수 역시, '04년 5,818건에서 '07년 13,485건으로 232% 증가하였음

<표 8-10> 피쉬세일 운영실적

구 분	'04	'05	'06	'07
매출액(백만원)	250	520	762	942
주문수(건)	5,818	9,854	13,741	13,485
회원수(명)	2,638	2,214	5,551	2,776
방문자(천명)	129	220	160	186

자료 : 피쉬세일 내부자료



<그림 8-4> 피쉬세일 매출액 및 주문건수 추이

- 피쉬세일의 구매현황을 살펴보면(2006년 상반기), 전체 주문건수 2,368건 중에서 회원의 구매건수가 1,972건, 비회원 396건으로 회원의 구매 비율이 비회원 구매 비율에 비해 약 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8-11> 피쉬세일 회원 구매현황

구 분	주 문(건)	비 율(%)
회 원	1,972	83.3
비 회 원	396	16.7
계	2,368	100

- 성별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구매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외로 남·여 구매비율이 각각 51.2%, 48.8%로 거의 5:5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인터넷 및 컴퓨터의 사용에 대한 친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8-12> 피쉬세일 성별 구매현황

구 분	주 문(건)	비 율(%)
남	1,010	51.2
여	962	48.8
계	1,972	100

- 연령별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30대 44.5%, 40대 34.5%로 총 구매 고객 중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의 50대 이상, 20대 이하의 구매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연령별 주요 고객은 남성의 경우 40대(40.1%)였고, 여성은 30대(50.6%)인 것으로 조사됨

<표 8-13> 피쉬세일 연령별 구매현황

구 분	주 문(건)	비 율(%)
80대	2	0.1
70대	9	0.5
60대	59	3.0
50대	203	10.3
40대	679	34.5
30대	878	44.5
20대	139	7.0
10대	1	0.05
10대 이하	2	0.1
계	1,9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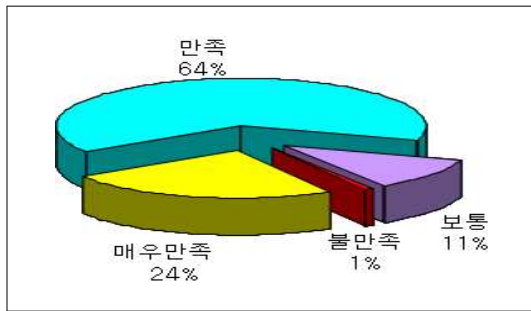
- 현재 구입이 가능한 키워드 중 이용자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상위 키워드 광고를 대표 포털사이트 검색키워드 광고로 진행하고 있음

<표 8-14> 포털사이트 검색키워드 광고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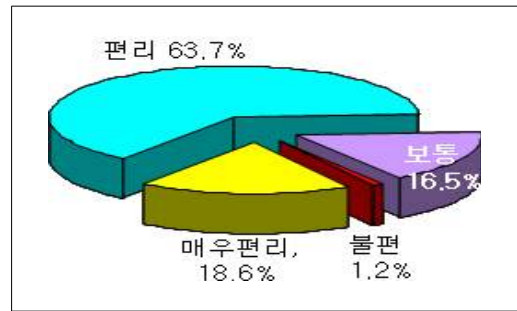
구 분	키워드	2006년 피쉬세일		2007. 5월 (최근조회수)	광고종류
		주문순위	조회순위		
네이버	수산물	-	-	3,443건	플러스프로
	갈 치	1	8	3,200건	
	바지락	7	9	3,387건	
	멸 치	4	1	5,941건	
다 음	수산물	-	-	3,594건	프리미엄 링크
	조 개	5	4	13,506건	
	미 역	8	5	6,503건	
	바지락	7	9	3,387건	

- 인터넷수산물시장(fishsale) 회원 및 이용고객을 조사대상 피쉬세일의 만족도를 조사를 자체로 시행하고 있음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용의 편리성 인터넷수산시장의 접속(로딩)속도와 이용상 편리성 부분은 응답자의 82%이상이 만족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 가격비교, 상품 가격대 검색기능 및 동영상의 상품설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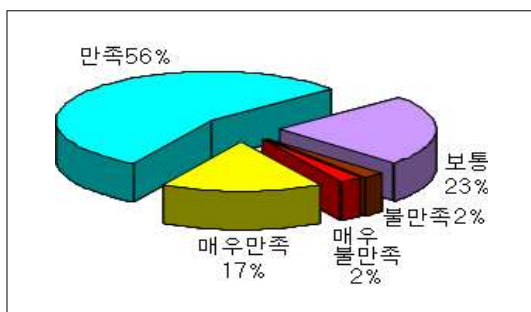


<접속(로딩)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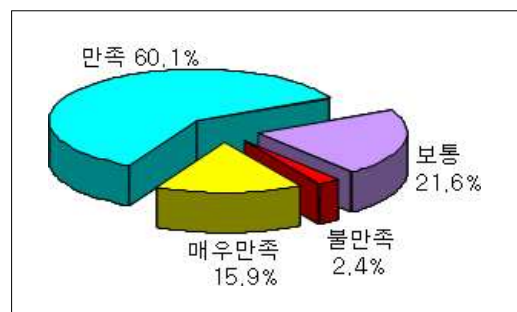


<쇼핑몰 이용구조>

- 인터넷수산시장(fishsale) 상품의 다양성 및 정보제공면에서는 상품이 다양하다는 의견이 73%로 긍정적이나, 소포장이 없어 구입을 포기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27%, 한 상품 정보도 자세하게 제공(76%)하고 주문절차도 편리하다는 의견이나 상품에 맞는 수산물 손질법, 요리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는 등 서비스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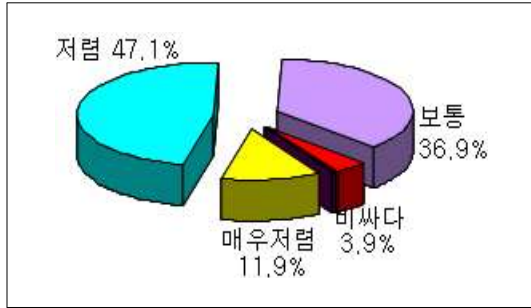


<상품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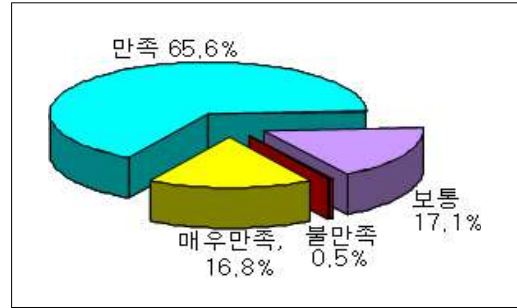


<상품의 정보제공>

- 상품의 가격·품질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부분(59%)은 상품 가격이 시중과 비슷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품질에 대하여는 82.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품가격>



<상품의 품질>

- 인터넷수산물시장 고객센터 및 판매어가에 대해 51%가 친절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고객서비스 제고가 필요

제3절 활성화 방안

1. 소비자 구매결정요인 검토

가. 선행연구

- 소비자는 상품구색이 잘된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며 아울러 그러한 쇼핑몰에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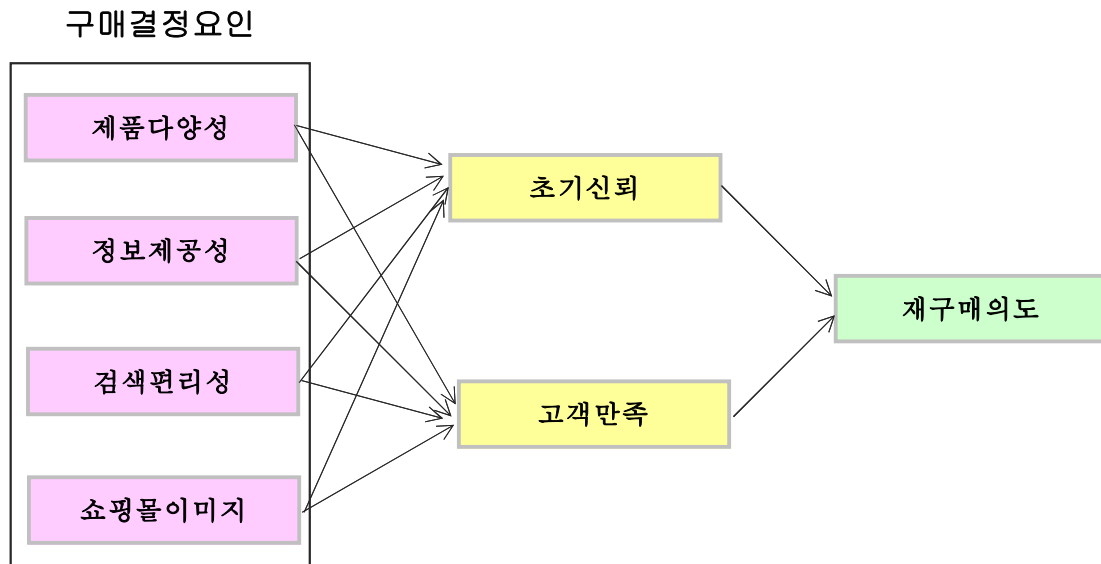
- Spiller and Loshe(1998)는 44개 인터넷 쇼핑몰 속성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가장 큰 아이젠 값(Eigen Value)을 가지는 요인은 쇼핑몰의 크기인 것으로 도출되었음
 - 구성변수로는 제품의 수, 제품분류의 수준, 쇼핑몰 업체에 관한 정보의 수량 등이 포함되었음

- Javenpaa et al.(2000)은 지각된 명성(Perceived Reputation)과 크기(Perceived Size)가 소비자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윤성준(2000)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인지도와 명성이라고 주장함
 - 소비자들은 제품의 정보검색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여부를 인지하게 된다고 하였음

- Cheskin Research(1999)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가 소비자의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음.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떠한 형식에 의존해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에 대한 의존도는 경험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음

- 신뢰를 시간과 특정 사이트의 형식적 특성함수라고 주장 했으며, 신뢰형성에는 6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그 중 효과적인 정보검색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음(윤성준. 2000)
-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차원도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재분류되고 측정항목 문구는 해당 서비스에 맞게 조정(Carman. 1990)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존 연구와 인터넷 쇼핑물 특성을 기초로 할 때 인터넷 쇼핑물의 고유한 구매결정요인은 제품 다양성, 정보 제공성, 검색 편리성, 그리고 쇼핑물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음(조철호와 강병서. 2005)
- 또한, Fornell(1992)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안운석과 엄준영(2001)은 전자상거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음



<그림 8-5> 전자상거래 구매결정요인 및 재구매의도

<표 8-15> 구매결정요인별 선행연구 요약

구분	구성개념	기존연구
제품다양성	-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브랜드 및 가격의 다양성	- Pepper and Rogers(1998) - Cheskin Research(1999) - 광수일과 정인근(1999) - 윤성준(2000)
정보제공성	-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믿음의 정도	- Christy and Matthew(2000) - Doney and Cannon(1997) - Lynch et al.(2001) - Warrington et al.(2000)
검색편리성	-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 Pepper and Rogers(1998) - Cheskin Research(1999) - Fong et al.(1998) - 윤성준(2000)
쇼핑몰이미지	- 소비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평판	- Pepper and Rogers(1998) - Cheskin Research(1999) - Fong et al.(1998) - Warrington et al.(2000) - 광수일과 정인근(1999) - 윤성준(2000)

나. 사이버쇼핑몰(인터넷쇼핑몰)과 구매결정요인 관계

- Spiller and Loshe(1998) 및 윤성준(200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관련쇼핑몰 업체의 규모, 인지도, 명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쇼핑몰업체의 특성상 일반 사업체와는 달리 하드웨어적인 규모는 소비자에게 보여지기 힘들며 사이버시장에서 보이는 사이트의 디자인이나 시스템들이 규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또한, 인지도 및 명성을 높이기 위한 쇼핑몰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함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행동은 제품정보탐색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제품다양성, 정보제공성과 검색편리성은 초기신뢰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쇼핑몰업체들이 다양한 브랜드, 가격, 디자인의 제품정보를 제안하여 고객에게 제품력을 통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카테고리별, 키워드별, 가격별 등 상품검색 방법을 다양화하고 검색속도의 향상에 기울이면, 전반적인 신뢰형성이 제고될 것임
- 고객만족이 초기신뢰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신뢰는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는 물론이고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가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함
- 주문처리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적시적소에 상품배달이 이루어져야 함
 - 공급회사와 연대하여 상품의 철저한 A/S, 반품 및 환불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고객의 제품과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함
 - 지불시스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작용되므로 지불방법의 다양화에 고객정보보호에 힘써야 함
- 인터넷쇼핑몰업체들은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
- 고객과의 거래상 고객만족은 초기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궁극적으로 재구매의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가치의 향상을 가져와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
 - 인터넷쇼핑몰은 초기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가. 수산물 전자상거래 현황 및 문제점

- 우선적으로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정확한 Market Share 및 통계자료 등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편임
- 정부기관 및 통계기관 등에서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수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중 '피쉬세일'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긴 하나, 대규모 쇼핑몰인 G-마켓, 인터파크, 디엔샷 등에 비해서는 인지도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또한 수산물에 있어서 '수협' 브랜드와 비교하여 보았을때 상대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약한 것으로 사료됨
 - 대규모 쇼핑몰 등에 입점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각인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현재 먹거리, 관광, 정보 등이 구분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함
 - 농업의 경우 정보화 마을 사이트에서 농촌정보, 농산물 구매, 농촌체험관광 등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구색이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한층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나. 활성화 방안

1) 대규모 포털 쇼핑몰과의 연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신뢰가 높을수록 재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고객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들에 대한 인지도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인지도가 있는 대형 쇼핑몰들과의 D/B연계를 통해 입점하는 형식 등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음

- 대규모 쇼핑몰 등과 연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음
 -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대형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한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

썬 절약될 것이고, 이용자 수가 많은 쇼핑몰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키려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2) 수협 e-쇼핑과 피쉬세일의 연계

- 전자상거래에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몰은 한국수산회가 운영하고 있는 피쉬세일과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협 e-쇼핑을 대표적인 쇼핑몰로 들 수 있음
-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상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초기신뢰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관련쇼핑몰 업체의 규모, 인지도, 명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객만족을 들 수 있음
- 아래 <표 8-1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협 e-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피쉬세일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쇼핑몰의 기능 및 일반소비자의 고객만족도에서는 피쉬세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8-16> 피쉬세일과 수협 e-쇼핑 특징비교

	수협 e-쇼핑	피쉬세일
강점	'수협'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인지도가 높음	쇼핑몰기능에 충실함 일반소비자의 고객만족도가 높으며 재구매율이 60~70%로 소비자신뢰 강함
약점	쇼핑몰기능 약함 일반소비자 구매저조 전문인력부재로 마케팅 저조	브랜드 인지도 약함

-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문몰로써 '수협'이라는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와 피쉬세일의 쇼핑몰 기능에 대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두 전문몰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수협 e-쇼핑과 피쉬세일의 연계는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사료됨

3) 수산물 전자상거래 포탈화

- 현재 수산물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먹거리, 수산정보, 어촌관광 등에 대한 정보들이 한 사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떨어져 있음
 - 먹거리 등은 '피쉬세일'등의 수산물 쇼핑몰에서, 어촌관광은 어촌어항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이용자들의 만족 수준을 높이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쇼핑, 관광, 정보 등이 한 사이트에 망라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농업측에서 시행했던 '정보화마을'사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정보화마을 사업의 경우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더라도 큰 정책 틀의 방향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됨

- 수산물 전자상거래 포탈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원 육성 정책을 시행하기에도 한 곳에 집중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과 쇼핑몰 연계

-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직접 보고, 만지고, 맛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한 구입을 꺼려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보다 더 신선도와 관련이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만지고, 맛보지는 못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임
 - TV에 나오는 홈쇼핑과 같이 호스트가 직접 해당 업체 및 어촌을 방문하여 실제 수

산물의 선도, 크기, 포장과정 등을 보여주고, 약간의 인터뷰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은 수산물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혼합적인 형태로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실제 물품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 또한, 실제고객이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의 이용경험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서비스 필요 할 것임. 이는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과 더불어 소비자의 제품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최근 소비자의 성향 및 트렌드의 반영

- 쇼핑몰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성향과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수산물 인터넷쇼핑몰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최근 트렌드의 반영이 필요함
- ‘농사랑’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건강중시풍조와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를 반영하여 건강을 강조한 친환경농산물 및 Q마트농산물, 유기농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음. 수산물에 있어서도 국산수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 또는 검증절차의 공개 및 청정지역이나 수산물인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또한, 인지도 높은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균일한 배송비 적용 및 쿠폰서비스, 쇼핑몰상품권, 다양한 이벤트성 서비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수산물 쇼핑몰에서도 접목한다면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제4절 소결

-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
- 연장선상에서 사이버쇼핑몰(cyber shopping mall,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이라고도 함)은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가를 말하며,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01년 119조에서 2007년 517조 약 4배이상의 성장을 해왔으며, 국내전자상거래의 약 90%정도는 기업간(B2B)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제 사이버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기업-소비자간(B2C)형태는 전체의 전자상거래 중 약 2%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2000년 1,010억원에서 2007년 3,930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이후 전문몰의 거래액비율은 6.6%에서 2007년 24.6%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의 전문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좋아지며, 농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종합몰에서 전문몰로의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행동은 제품정보탐색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제품다양성, 정보제공성과 검색편리성은 초기신뢰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고객과의 거래상 고객만족은 초기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구매의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가치의 향상을 가져와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은 초기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연구 및 ‘농사랑’ 및 ‘fishsale’의 사례를 통하여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대규모 포탈 쇼핑몰과의 연계, 둘째, 수협 e-쇼핑과 피쉬세일의 연계 셋째, 수산물 전자상거래 포탈화, 넷째,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과 쇼핑몰 연계, 다섯째, 최근 소비자의 성향 및 트렌드의 반영 등을 들 수 있음

<표 8-17>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효과	세부 내용
대규모 포탈 쇼핑몰과의 연계	초기신뢰도 및 인지도의 상승효과	- G-마켓, 인터파크, 디엔샵 등의 인지도가 있는 대형 쇼핑몰들과의 D/B연계를 통해 입점하는 형식 등으로 인지도를 상승 - 홍보 및 광고비용의 절감
수협 e-쇼핑 피쉬세일 연계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	- 소비자의 초기신뢰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관련쇼핑몰 업체의 규모, 인지도, 명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객만족을 들 수 있음 - 수협 e-쇼핑의 브랜드 인지도 + 피쉬세일의 쇼핑몰의 기능 및 일반소비자의 고객만족도 - 두 전문물간의 연계로 인한 수산물인터넷쇼핑몰의 시너지 효과창출
수산물 전자상거래 포탈화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	- 쇼핑, 관광, 정보 등이 한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 소비자들의 이용에 편의성 제공 및 전문성 높임
수산물 먹거리 인터넷 방송과 쇼핑몰연계	제품 신뢰성증가	- 대리인을 통해 수산물의 선도, 크기, 포장과정 및 인터뷰를 통해 제품 신뢰성을 높임 - 실제고객이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의 이용경험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서비스 필요
최근 소비자의 성향 및 트렌드의 반영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	- 먹거리 건강중시풍조 및 웰빙에 관심증가 반영 (국산수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 또는 검증절차의 공개 및 청정지역이나 수산물인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균일한 배송비 적용 및 쿠폰서비스, 쇼핑몰상품권, 다양한 이벤트성 서비스

<참고 문헌>

- 김해경·이경숙, 경제 및 금융자료를 위한 시계열분석, 경문사, 2005.
- 김종호, 수산물 유통마진의 결정구조에 관한 소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2008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수급 및 가격편람, 2008
-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농어촌 비서관 보고자료, 2008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7
- 박수환, 수산물 유통경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2
- 법제처, 수산업법 시행령
- 배상원, 농산물 유통마진 현황과 비용절감 방안, 한국식품유통학회, 2001
- 송정현외 3인, 일본 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와 정책 대응, 수산경영학회, 2008. 6
-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경제사업규정 공판사업요령
- 옥영수(Young Soo Ock), 김상태(Sang Tae Kim), 고봉현(Bong Hyun Ko), 양식 넙치의 가격변동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일본 수산청, 수산물공급이용 축소를 위한 사고와 대처방향, 2006.12
- 일본 수산청, 수산기본계획공정표, 2007
- 일본 수산청장관 통지, 수산물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방침, 2001.3
- 전창근, 수산물의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조사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재)어가안정기금, 수산물 산지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2004년 수산물 조정보관추진조사연구사업보고서, 2005.3
- 조용훈, 수협의 수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1998
- 최병선, 단변량시계열분석, 세경사, 2005.
- 테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유통 변화와 산지의 대응, 농림금융, 2002.2
- 테무라 마사하루, 수산물산지시장이 현황과 과제, 농림금융, 2007.3
- 황하진 외,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경문사. 2006
- 허길행, 농수산물 유통마진 조사방법의 체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해양수산부, 수산진흥종합대책, 2005

堀田忠夫 '産地生産流通論' 大明堂, 1995. 5

東京水産振興會, '水産物産地流通の現況と課題-大規模・中核的 産地市場流通調査報告-'
1988. 10.

山田博信, '改訂現代日本の生産食料品流通-御賣市場流通の展開と課題-' 農林統計協會,
1995. 9

水産廳, 水産加工對策室, '水産加工業の新たな發展を目指して-水産加工施設資金法の改訂等
の水産加工振興策のあらまし-' 地球社, 1989.

中居 裕 '水産物市場と産地の機能展開' 成山堂 書店, 1996

農協流通研究所, '長崎縣園芸産地 競争力強化 市場リサーチ報告書' 1997. 3

婁小 波 '水産物産地流通の經濟學-交渉と競争の視点から' 學陽書房, 1994, 8

東京水産振興會, '水産物産地流通の現況と課題-大規模・中核的 産地市場流通調査報告-'
1998. 6.

北海道水産問題研究所, '漁協販賣事業と産地市場の機能に関する調査研究' 1994. 3

Andrew Harvey,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ime Serise, The MIT Press, 2d ed.,
Cambridge, Mass., 1990

Dickey, D.A. and W.A. Fuller. Distribution of the Estimator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74, pp
427-431,1979

G. Schwartz,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Ann. Statist. 6, pp461~464, 1978

G·S Maddala.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Macmillan, 2d ed., New York, pp
480-481. 1992

Gujarati, D. N. .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Inc., 4th Edition. 2002.

William W. S. Wei, Time Series Analysis - Univariate and Multivariate Method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1994

< 부 록 >

부록1. 최근 재·개정된 수산물 산지유통 법안

1. 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6호], 시행일 2008. 2. 4

제53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어선의 수·규모·설비와 어법(어법)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정수), 선복량(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제한이나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10.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및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5 대통령령 제20567호]

제41조의2 (위판장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3.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揚陸施設)을 갖춘 지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판장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 위판장 관리자

[본조신설 2008.1.25]

제41조의3 (위판장의 지정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5]

부칙 <제20567호,2008.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판장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

조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판장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판장의 위치와 명칭 등 현황을 일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2008.5.8 농림수산물부고시 제 2008-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안)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방법”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정가·수의매매 거부) 거래확인서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한 출하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은 1월의 범위안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정가·수의 매매를 거부 할 수 있다

제7조(세부규정)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매시

장법인과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7.2 대통령령 제 20148호]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7.2>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제19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법 제43조에 따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협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6 농림부령 제 1564호]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4조 (시설기준) 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부록2. 수산물 집하장 설치 운영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수산물 집하장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매식집하장” 이라 함은 경매장을 갖추어 수산물을 수집 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아 경매, 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시설로써 공판장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 이라 함은 집하장 건물(경매장, 사무실, 하주대기실, 냉장실, 저빙실, 위생시설, 오물처리장 등) 및 기타 부대시설(지게차, 팔레트 등)을 말한다.
3. “사업자” 라 함은 집하장의 운영주체인 산지 수협의 대표자를 말한다.
4. “거래관계인” 이라 함은 경매시 집하장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집하장의 시설관리 업무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과 제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 설치

제4조(시설물 설치) ①사업자가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 군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대지, 건물 연면적

○ 기타 시설의 종류· 규모· 구조 및 배치상황

3. 시설 투자액(조달계획 등 포함)
4. 당해 지역 수급실적과 수급전망
5. 직제 및 인원
6. 중도매인 선정기준 및 중도매인 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세부운영계획 등

②집하장의 설치시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입지여건 분석) ①사업자는 수산물의 수집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 어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입지여건을 면밀히 분석 하여야 한다.

②연간 지속적인 물량 출하로 시설의 유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지역의 수산물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6조(하역기계화 등) ①사업자는 집하장 내 물류 유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게차, 팔레트 등 하역장비를 구비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②수산물의 표준화, 규격화를 위하여 어업인 및 출하자에게 적극 지도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운용 및 관리

제7조(시설물의 등기 및 등록)①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절차가 끝나면 관할 읍·면·동의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위 등기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처분제한)①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기간 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집하장을 처분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와 재산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 또는 구조변경) 사업자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용도변경) ①사업자는 입지 및 운영여건의 변화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경우 다음 각호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 시장 · 군수
2. 수산업관련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 : 시 · 도지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해당 직원 중에서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집하장 내부정리, 청소, 시설유지보수,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판장 전환운영) 농안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은 관할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관리) 집하장의 운영 관리는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 판매사업실시 요령 등 중앙회 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0. .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은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설립된 수협 위판장(어촌계 포함)은 이 요령에 의한 경매식 집하장으로 본다.

부록3. 수산물 위판장 지정고시 내역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 위판장 : 180개소(부산 8, 인천 6, 울산 2, 강원 30, 충남 15, 전북 2, 전남 35, 경북 22, 경남 52, 제주 8)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 장				
1	부산 8개소	부산공동어시장	남부민동 691-3,5, 696, 696-1,2, 695-4	64,247	65,287	43,134	위판시설, 업무 시설, 주차시설, 냉동공장 등	부산공동어시장 회장	08-1	
2		자갈치위판장	중구 남포동 5가 117-6,7	2,788	1,136	1,111	위판시설, 창고 등	부산시수산업협동 조합장	08-2	
3		남포동위판장	중구 남포동1가 62-1	656	1,349	463	위판시설, 사무실, 창고 등	부산시수산업협동 조합장	08-3	
4		다대위판장	사하구 다대1동 798-1	15,020	1,717	1,701	위판시설, 창고 등	부산시수산업협동 조합장	08-4	
5		민락위판장	수영구 민락동 113-32	8,990	1,050	672	위판시설, 창고 등	부산시수산업협동 조합장	08-5	
6		제1.2구잠수기수협 부산위판장	중구 남포동4가 37-3	840	480	450	위판시설, 사무실 등	제1.2구 잠수기수협장	08-6	
7		부산동부수협	대변위판장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306-3	909	559	412	위판시설, 사무실 등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장	08-7
8		학리위판장	기장군 일광면 학리 251-8	132	78	78	위판시설 등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장	08-8	
9	인천 6개소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인천 중구 향동 7가62		4,850		경매장, 주차장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장	08-1	
10		연안위판장	인천 중구 북성동 7가 104-14		2,158		유류공급시설, 경매장, 활어수조(12개)	인천수협 경제상무	08-2	
11		소래위판장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198		1,020		유류공급시설, 경매장	인천수협 경제상무	08-3	
12		경인북부수협 의포위판장	인천 강화군 내가면 의포리 547-73	2,175			경매장(천막5동)	경인북부수협 판매사업과장	08-4	
13		웅진수협 연안위판장	인천 중구 북성동 7가 104-14		2,512.2		경매장, 수족관(9개)	웅진수협 판매과장	08-5	
14		영흥수협 위판장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래 8-165		971.58		경매장, 수족관(24개)	영흥수협 유통판매과장	08-6	
15	울산 2개소	방어진위판장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75-6,7,8, 198-16번지	12,123	4,803		위판장및사무실중매입사무실활어위판장및 사무실	울산수산업협동조합장	08-1	
16	정자위판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3번지	4,095	500		간이 위판장	울산수산업협동조합장	08-2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장					
17	강원 30개소	주문진항 위판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679, 312-457	223.75			경량철골조	강릉시수협장	08-1		
“		주문진항 위판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65-21, 265-4	533.20			철근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2		
“		주문진항 위판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512	9,715			철근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3		
“		주문진항 위판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684	1,271.44			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4		
“		주문진항 위판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495	1,703			철근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5		
18		사천진항 위판장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107	165.5			철근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6		
“		사천진항 위판장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105	630			철근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7		
19		우암진항 위판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3	508.8			철근콘크리트	강릉시수협장	08-8		
20		동해시수협	금진항 위판장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24-8	320.6			철근콘크리트	동해시수협장	08-9	
21			목호항 위판장	동해시 목호진동 15-85,15-128,15-152,15-180,15-200,95-37,95-51 동해시 발한동 80-171, 80-182	21,016			철근콘크리트	동해시수협장	08-10	
“			목호항 위판장	해시 목호진동 95-37,15-189	14,123			철근콘크리트	동해시수협장	08-11	
22			어달항 위판장	동해시 어달동 190, 191	1,261			철근콘크리트	동해시수협장	08-12	
23			속초시수협	속초항 위판장	속초시 중앙동 482-251	4,074			철근콘크리트	속초시수협장	08-13
24				속초항(동명) 위판장	속초시 동명동 1-131	7,574			콘크리트	속초시수협장	08-14
25				사진항 위판장	속초시 장사동 548-9, 548-11	194.9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속초시수협장	08-15
26	대포수협 대포항 위판장		속초시 대포동 421-1	1,289			철근콘크리트	대포수협장	08-16		
27	삼척시수협		삼척항 위판장	삼척시 정하동 41-132, 41-179, 41-186	1,594			철근콘크리트	삼척시수협장	08-17	
28			장호항 위판장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1, 3-10, 3-30, 3-31	1,143			철근콘크리트	삼척시수협장	08-18	
29		초곡항 위판장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38	344			철근콘크리트	삼척시수협장	08-19		
30		덕산항 위판장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0, 4-11	659			철근콘크리트	삼척시수협장	08-20		
31	원덕수협	임원항 위판장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1-132, 41-179	1,838			철근콘크리트	원덕수협장	08-21		
32		호산항 위판장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38-12	456			경량철골조	원덕수협장	08-22		
33	고성	대진항 위판장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30-5	502			철근콘크리트	고성군수협장	08-23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장				
34	군수협	거진항 위판장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51	5,923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고성군수협장	08-24	
35		아야진항 위판장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9-3	10,084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고성군수협장	08-25	
36		봉포항 위판장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5	498.9			경량철골조	고성군수협장	08-26	
37		초도항 위판장	고성군 현대면 초도리 15	309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고성군수협장	08-27	
38	죽왕수협	가진항 위판장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1	892			철근콘크리트	죽왕수협장	08-28	
39		공현진항 위판장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55-4	400			철근콘크리트	죽왕수협장	08-29	
40		오호항 위판장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740			경량철골조	죽왕수협장	08-30	
41		문암1리항 위판장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10-76	569			경량철골조	죽왕수협장	08-31	
42		문암2리항 위판장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13-37	390			경량철골조	죽왕수협장	08-32	
43	양양군수협	남애항 위판장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2-7	1,268			철근콘크리트	양양군수협장	08-33	
44		물치항 위판장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7-8	283.68			철근콘크리트	양양군수협장	08-34	
45		동산항 위판장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137-2	132			철근콘크리트	양양군수협장	08-35	
46		기사문항 위판장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89-32	294.12			철근콘크리트	양양군수협장	08-36	
47	충남 15개소	서천수협장항위판장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332-54	1,459			사무실 위판장	서천수산업협동조합장	08-1	
48		서면수협	홍원위판장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7	182			사무실 위판장	서면수산업협동조합장	08-2
49			마량위판장	서천군 서면 마량리 339-5	330			사무실 위판장	서면수산업협동조합장	08-3
50		보령수협	활어위판장	보령시 신후동 950-22	2,854			사무실 위판장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08-4
51			선어위판장	보령시 신후동 95-88번지외3	3,300			빙동,빙장 창고,활어수조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08-5
52			신후수협 대전항수산물위판장	보령시 신후동 2243-2	4,225			사무실 위판장	신후수산업협동조합장	08-6
53			무장포어촌계 활어위판장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57	990			사무실 위판장	무장포어촌계	08-7
54		서산수협	안흥위판장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75-13	450			사무실 위판장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	08-8
55			안흥건어물 위판장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75-20	1,282			사무실 위판장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	08-9
56			도황어촌계 연포위판장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525-223	756			사무실 위판장	도황어촌계장	08-10
57		남면수협	몽산포위판장	태안군 남면 몽산포리686-28	422			사무실 위판장	남면수산업협동조합장	08-11
58			마검포위판장	태안군 남면 신온리 2-32	659			위판장	남면수산업협동조합장	08-12
59			드르니위판장	태안군 남면 신온리 802-4	997			사무실 위판장	남면수산업협동조합장	08-13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장				
60	안면도수협	백사장위판장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69-90	917			사무실 위판장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14	
61		영목위판장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34-66	350			사무실 위판장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15	
62	전북 2개소	군산시수협 비응도위판장	군산시 비응도동 31-2	360	99		활어위판시설	군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08-1	
63		해망동위판장	군산시 해망동 1011-17,20	19,494	3,242		선어위판시설	군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08-2	
64	전남 35개소	목포수협	동부위판장	목포시 금화동 4-2	2,581			위판장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1
65			서부위판장	목포시 금화동 15-1	4,155			위판장, 사무실 냉동냉장시설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2
66		여수수협	선어위판장	여수시 봉산동 100-7	8,065			위판장, 사무실 냉동냉장시설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08-3
67			건어물위판장	여수시 봉산동 100-5	2,069			위판장, 사무실 냉장시설, 판매장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08-4
68			군내위판장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55-12	2,532			위판장, 사무실 활어장, 판매장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08-5
69			남면위판장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3-7	207			위판장, 사무실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08-6
70			거문도수협 위판장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7	700			위판장, 사무실 냉장시설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7
71			제3.4구잡수기수협국동위판장	여수시 국동 1082-7	2,260			위판장, 사무실 냉장시설, 판매장	제3.4구잡수기수협	08-8
72		고흥수협	녹동위판장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92	990			사무실, 냉장시설 위판장, 소매시설	고흥수산업협동조합장	08-9
73			발포물김위판장	고흥군 도화읍 발포리 547-45	99			위판장, 사무실 휴게실	고흥수산업협동조합장	08-10
74			구암물김위판장	고흥군 도화읍 구암리 806-4	83			위판장, 사무실 휴게실	고흥수산업협동조합장	08-11
75			송림위판장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596-1	132			위판장, 사무실 휴게실	고흥수산업협동조합장	08-12
76			사도위판장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733-2	98			위판장, 사무실	고흥수산업협동조합장	08-13
77			독대김위판장	고흥군 과역면 연동리 1	93			위판장, 사무실	고흥수산업협동조합장	08-14
78		나로도수협 수산물위판장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1250-2	528			위판장, 사무실 냉장시설, 매시설	나로도수협	08-15	
79	강진수협	활선어위판장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0-65	664			위판장, 사무실 오폐수처리시설	강진수산업협동조합장	08-16	
80		사초위판장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1-6	367			위판장, 사무실 오폐수처리시설	강진수산업협동조합장	08-17	
81	해남수협	어란물김위판장	해남군 송지면 어란 2045	160			위판장, 사무실 어민대기실	해남수산업협동조합장	08-18	
82		마른김위판장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28-36	561			위판장, 사무실 어민대기실	해남수산업협동조합장	08-19	
83	영광수협	계마위판장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894-8	100			위판시설, 사무실	영광수산업협동조합장	08-20	
84		범성위판장	영광군 범성면 진내리 482-23	580			위판장, 사무실 냉장냉동시설	영광수산업협동조합장	08-21	

< 부 록 >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장				
85		영광수협위판장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38-1	41			위판장고	영광수산업협동조합장	08-22	
86		소안수협수산물위판장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435-3	378			위판장, 창고	소안수산업협동조합장	08-23	
87	완도수협	활선어위판장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00-1	2,528			위판장, 사무실, 판매시설, 수처리시설	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24	
88		건어물위판장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13	1,514			공판장, 냉장시설	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25	
89		금일수협위판장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032	1,368			건어물위판장	금일수산업협동조합장	08-26	
90	진도수협	서망사업소	진도군 임해면 남동리 635-11	1,054			위판장, 사무실 창고	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27	
91		접도사업소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수품항 배후단지 제5번	128			위판장, 사무실	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28	
92		회동사업소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652-3	226			위판장, 사무실	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29	
93		원포사업소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2-3	348			위판장, 사무실	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30	
94		조도지점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556-1	166			위판장	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31	
95		진도군수협위판장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61-1	3,306			위판장, 김창고	진도수산업협동조합장	08-32	
96		신안수협	송도위판장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23외 4필지	3,952			위판장, 사무실	신안수산업협동조합장	08-33
97	송공위판장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718-41	986			위판장, 사무실 면세유통시설	신안수산업협동조합장	08-34	
98		흑산도수협수산물위판장	신안군 흑사면 예리 371-3	660			위판장, 사무실	흑산도수협	08-35	
99	경북 22개 소	포항수협	죽도위판장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3-7	1,234 (365)		선어위판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08-1	
100			동빈활어위판장	포항시 북구 동빈1가 148	1,744 (212)		활어위판 및 주차장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08-2	
101		구룡포수협	활어위판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리 954-2	17,250			활·선어위판장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3
102			잡어위판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리 954-2	5,428 (1,649)			활·선어위판장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4
103			선동위판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리 954-11,12	4,165			냉동수산물 위판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5
104			트롤위판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	5,134			선어위판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6
105			장기위판장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33	3,315 (750)			활·선어위판장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7
106			대보위판장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886-52	494 (392)			활·선어위판장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8
107			경주시수협감포위판장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532 (825)			활·선어위판장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08-9
108			강구수협	강구수협위판장	영덕군 강구면'리 256-48	677			활·선어위판장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109		창포위판장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540 (142)			활·선어위판장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08-11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장				
110	경남 52개소	축산수협	축산수협 위판장	영덕군 축산면리 941-5	6,852			활·선어위판장	축산수산업협동조합장	08-12	
111			대진위판장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	2850 (360)			활·선어위판장	축산수산업협동조합장	08-13	
112		죽변수협	죽변수협 위판장	울진군 죽변면리 20-28	가:897 나:834			활·선어위판장	죽변수산업협동조합장	08-14	
113			원남 위판장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226-7	400			활·선어위판장	죽변수산업협동조합장	08-15	
114		후포수협	후포수협 위판장	울진군 후포면리 623-141	1,426			활·선어위판장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16	
115			사동위판장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500			활·선어위판장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17	
116			구산위판장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500			활·선어위판장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08-18	
117		울릉군수협	태하위판장	울릉군 서면 태하1리	920 (180)			활·선어위판장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	08-19	
118			천부위판장	울릉군 북면 천부1리	2,267 (180)			활·선어위판장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	08-20	
119			저동위판장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2	1,943 (669)			활·선어위판장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	08-21	
120			현포위판장	울릉군 북면 현포리 708-26	13,469 (397)			활·선어위판장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	08-22	
121		경남 52개소	마산수협 위판장		동성동 310-1	7,174.82			위판장 : 5,141.22 물양장 : 2,033.60	조합장	08-1
122	진동수협		광암위판장	진동 요장 267-3	672.51			활어수족관, 위판시설	지소장	08-2	
123			고현위판장	진동 고현 291-3	165.28			수족관, 위판시설	지소장	08-3	
124	제1·2구잠수기수협 마산지소공판장		신포 2가 122-1 신포 2가 122-2	457.26			위판시설	지소장	08-4		
125	기 선 권 현 망 마산지소판매장		오동동 305-2	1,110.77			1층 위판장 : 431.06 2층 하역장 : 345.63 3층 위판장 : 334.08	지소장	08-5		
126	진해수협		속천위판장	속천동 6-2	3,442			사무실,어민휴게실,위생시설,중도매인사무실,주차장	판매과장	08-6	
127			제덕위판장	제덕동 174-52	579			사무실,어민휴게실,위생시설,구내식당,주차장	판매과장	08-7	
128	의창수협		용원위판장	용원동 1111-17	1,584			사무실,어민휴게실,위생시설,주차장	유통사업과장	08-8	
129			안골위판장	안골동 825	1,300			사무실,어민휴게실,위생시설,주차장	유통사업과장	08-9	
130	통영수협		본소위판장		동호동 348	7,907.41			지1층:기계실103.74 1층 : 위판장 등 2,714.92 2층 : 사무실 3층 : 냉장실 등 4층 : 제빙실 등 5층 : 기계실 부1층 : 폐유창고	조합장	08-10
131			제2위판장		동호동 349	976.44			1층:위판장등 796.29 2층:위판장 등 180.15	조합장	08-11

< 부 록 >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 장			
132		도천위판장	도천동 52-21	1,335.88			1층: 위판장 294.24 1층: 부설주차장 179.22 2층: 중매인 사무실 411.06 3층: 중매인 사무실 411.06	조합장	08-12
			도천동 52-22				1층: 위판장 40.3		
133		건유위판장	용남면 장평리 95-11	417.5			위판시설	조합장	08-13
134		옥지수협위판장	옥지동향 581-33	407.97			1층: 위판장 232.29 2층: 사무실 175.68	조합장	08-14
135		사랑수협위판장	사랑금평 91-7	249.4			위판시설	조합장	08-15
136		굴수하식수협 위판장	동호동 350	3,278.53			지 1층: 냉동창고 412.28 1층: 위판장 등 1,022.47 2층: 사무실 등 1,056.89 3층: 사무실 등 1,056.89	조합장	08-16
137		기선권현망수협 본소위판장	정량동 1405	4,440.42			1층: 위판장 등 2,423.68 2층: 사무실 등 2,016.74	조합장	08-17
138		명계수협위판장	명정동 2-4	165			위판시설	조합장	08-18
139		근해통발수협 당동위판장	당동 해상	1,124.16			위판장 직접 점사용 336 간접 점사용 548 상차장 240.16	조합장	08-19
140		서남해수수협 활어위판장	산양읍 삼덕372-10	2,000			위판장(활어임시보관 등)	지소장	08-20
141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위판장	도천동 1007	398.01			1층 위판장 246.01 2층 사무실 152	지소장	08-21
142	삼천포수협	선어위판장	서동 311-17	11,156			위판시설, 오페수처리시설, 양수시설	판매과장	08-22
143		활어위판장	서동 322-61	432			위판시설, 활어이동용 핸드카, 경매용수조, 이동경매대, 양수시설	판매과장	08-23
144		패류위판장	서동 311-134	1,998			위판시설, 양수시설	판매과장	08-24
145		건어위판장	동금동 579-7	654			위판시설, 경매대	판매과장	08-25
146		사천수협활어위판장	서포면 비토 17	978			위판시설, 수족관, 물탱크, 모터시설	판매과장	08-26
147	거제수협	장승포위판장	장승포동 713	653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조합장	08-27
148		능포위판장	능포동 480-43	577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수족관	조합장	08-28
149		성포위판장	사등면 성포 331-1	273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수족관	조합장	08-29
150		옥포위판장	옥포동 1955	511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수족관	조합장	08-30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장			
151	고성군수협	구조라 위판장	일운면 구조라 97-1	336			위판시설, 수족관	조합장	08-31
152		대포위판장	남부면 지구 642-25	587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수족관	조합장	08-32
153		외포위판장	장목면 외포 57-58	234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수족관	조합장	08-33
154		제1,2구잠수기수협 거제지소위판장	장목면 장목319-36	485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기계실	지소장	08-34
155		당항위판장	회화면 당항 526-2	462			1층:위판장 115.5 2층:노인정의 115.5 3층:어민회관 115.5 4층:물탱크외 115.5	조합장	08-35
156		삼산위판장	삼산면 두포 1373-6	118.8			위판시설	조합장	08-36
157		하일위판장	하일면 학림 1519-1	196.8			위판시설	조합장	08-37
158		동해위판장	동해면 양촌 148-1	198.34			위판시설	조합장	08-38
159		맥전포위판장	하일면 춘암790-1	199.69			위판장 : 132.14 사무실 등 : 67.45	조합장	08-39
160		우두포위판장	동해면 장좌40-8	166.84			위판시설	조합장	08-40
161	남해군수협	남포항위판장	고성읍 수남479-5	1,077.2			1층 : 위판장 446.7 2층 : 휴게실 182 3층 : 회의실 448.5	조합장	08-41
162		선어위판장	미조면 미조 168-21	673			위판시설	조합장	08-42
163		활어위판장	미조면 미조 168-40	330			위판시설	조합장	08-43
164		원천위판장	이동면 신전 1148	89			위판시설	조합장	08-44
165		감암위판장	설천면 노량 580-5	165			위판시설	조합장	08-45
166		평산위판장	남면 평산 1783	56			위판시설	조합장	08-46
167		단항위판장	창선면 대벽 6-20	660			위판시설	조합장	08-47
168		선소위판장	남해읍 선소 130	50			위판시설	조합장	08-48
169	제1,2구잠수기수협 남해지소위판장	설천면 문의1392-3	204			위판시설	지소장	08-49	
170	하동군수협	재첩위판장	하동읍 읍내 235-7	311.41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등	조합장	08-50
171		갈사위판장	금성면 갈사 147-12	180.7			위판시설, 사무실, 위생시설 등	조합장	08-51
172		노량위판장	금남면 노량 742-11	300			위판시설, 금용매장 사무실, 위생시설 등	조합장	08-52
173	제주 8개소	한림수협	1위판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8, 22, 29	2,158		선어위판장, 오페수처리장, 중매인사무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08-1
174			2위판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6-61	495		선어위판장, 폐수처리장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08-2
175		제주시수협위판장	제주시 건입동 1439-4	896			위판장, 급냉실, 사무실, 냉장실, 제빙실, 저빙실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08-3
176		추자도수협	추자항위판장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19, 4-20	330			선어위판장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연 번	지역	위판장 명칭	소재지	규모(m ²)			시설명세	관리자	시·도 일련번호
				부지	건축 (연면적)	위판 장			
“ 177		추자항위판장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21	330			선어위판장	추자도수산업협 동조합장	08-5
		신양항 간이위판장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34-1	99.56			선어위판장	추자도수산업 협동조합장	08-6
178		수산물 유통센터	서귀포시 서귀동 667-6	1,409.39			선어 및 활어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사무 실 등	서귀포수산업협 동조합장	08-7
179		성산포수협위판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리 347-5	1,877.69			선어 및 활어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사무 실 등	성산포수산업 협동조합장	08-8
180		모슬포수협활어위 판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 리 697	1,653			선어 및 활어위판장, 직매장, 사무실 등	모슬포수산업 협동조합장	08-9

부록 4. 일본 수산물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방침

(2001년 3월30일 12水魚제4504호 수산청장관 통지)

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본 방침을 참고로 관계자의 협력 하에 산지시장의 계획적인 정비재편 및 적정한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요망한다.

제1 목적

이 방침은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수산물유통 비용의 삭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화·고도화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수산물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 정의

여기서 말하는 '수산물 산지시장'(이하 '산지시장')이란 수산물 도매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으로,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직접 양륙 또는 육송(陸送)으로 생산지에서 수산물을 반입하여 제1단계의 거래를 시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 산지시장 통합의 형태

시장통합에는 물리적으로 복수의 시장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할 경우와 물리적인 하역처리장(통합전의 시장)의 배치는 그대로 두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수산물을 1군데에 집하하지 않고 거래를 시행하는 경우의 2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4 대상이 되는 산지시장의 범위

공정한 가격형성, 시장거래의 효율화, 시장경영의 기반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통합 대상이 되는 산지시장은 연간 취급량이 소규모인 시장 뿐만 아니라 비교적 대규모인 시장도 포함하여 모든 산지시장으로 한다.

제5 산지시장의 적정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 취급금액(물량) 적정규모의 지표

산지시장은 수산물유통의 일약을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출하 및 판매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지시장의 취급규모에 대해 산지시장의 형태, 산지시장의 경영 상황 등의 시점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시에는 '수산물 산지시장의 형태별 목표상'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합시장의 목표로 한다.

한편 취급고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관리비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목표년도에 시장종업원 1인당 취급액의 수준(3억엔) 달성을 목표로 한다.

2. 산지시장의 적정배치

산지시장의 적정한 배치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산지시장 형태별 성격을 감안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집하, 출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집하경비 뿐만 아니라 출하경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물류경비를 고려하여 산지시장 입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따라서 임해지에 한정하지 않고 내륙 또는 교통 요지에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설치시에는 신설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의 유효이용도 고려하도록 한다.

(2) 어항, 도로 등 관련공공시설의 정비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하여 교통사정이 양호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3) 집하권에 대해서는 대상 어업종류, 어종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양륙지점과 산지시장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간 거리(편도)가 대략 40km(자동차로 약 1시간)까지가 기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한군데에 집하하는 일 없이 집배의 효율적인 실시를 통해 보다 광역의 집하권역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5) 산지시장의 배치에 있어 통합시장 간의 연대 및 역할분담에 대해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각 시장이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경우와 특정시장을 중심으로 관련된 시장이 위생적인 입장에 서는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

3. 산지시장의 시설정비

산지시장시설(저온판매장시설, 저장·보관시설, 가공·조제시설, 배송시설, 정보·사무처리시설, 위생시설, 재자원화시설 등을 말한다) 정비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유의하도록 한다.

(1) 온도대별 상품관리시설은 다양한 온도대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일 것

(2) 하역처리시설 등은 작업대 등 작업성을 고려한 구조일 것

(3) 매장시설은 전자화도 포함하여 거래 효율화 및 물류 활성화가 확보되는 구조일 것

(4) 가공·조제시설은 최근의 소비자 수요가 원형어류에서 조리가공품으로 이행하여 그 작업이 중도매와 소매단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산지시장의 역할로 삼아 유통부담 경감과 공급 다양화를 목표로 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채택성을 충분히 의식하는 동시에 시장의 가공기능 강화 및 지역가공업과의 연대 강화도 고려한 것일 것

- (5) 보관·가공처리·배송시설은 소매형태 변화에 대응한 매수인의 기능 확충에 이바지하는 것일 것
- (6) 일반적인 위생관리 및 HACCP 방식에 대응한 시설 정비는 신선수산물의 부패와 세균오염을 피하기 위한 것일 것
또한 해당시설은 도도부현 조례가 정한 '어개류경매영업시설기준'에 일치하도록 하고, '산지어시장품질관리고도화 입문'((사)일본수산회,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을 활용한 거래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수·얼음은 살균수 등 청정수의 공급설비를 정비한다.
- (7) 재자원화시설은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과정에서 자원(유기자원, 어상자 등 무기자원)의 재이용, 환경대책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8) 관련시설은 산지시장이 단순히 도매업자나 매수인이 영업하기 위한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선수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적인 성격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시장운영과 조화된 식품 이벤트 개최, 전시·견학시설, 연수시설, 편리기능을 보유한 시설 등의 정비도 배려할 것
- (9) 상기 시설은 충분한 내구성, 내진성, 내화성을 보유한 구조로 하는 동시에 채광, 통풍, 공간 등을 충분히 배려한 것일 것

제6 산지시장의 적정한 경영·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에 유의하며 산지시장의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경비 삭감, 거래 활성화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동시에 신선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산지시장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점인 만큼 전술한 '산지어시장품질관리고도화 입문'을 활용해 시장관계자는 위생검사체제 정비 등을 통해 적정 위생관리 철저히 노력하도록 한다.

1. 개설자

- (1) 개설자는 시장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장기능의 향상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산지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의 유통 광역화를 고려해 시장 재편, 기능 분담 등에 대해 지방공공단체 등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추진하도록 한다.
- (2) 통합 뒤 산지시장의 개설자는 계통조직 이외에 지방공공단체, 제3섹터 등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산지시장 개설자는 사실상 과거부터 어업인의 자원관리 대응을 지원하거나 어선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 (3) 공정·공개·효율원칙에 근거하여 산지시장의 매매거래방법, 집·분하방법 등의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거래의 공정성, 공개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공표하도록 한다.

- 매수인 자격의 계약기한
- 매수인의 자격조건
- 매수인의 최저매수액
- 수수료율

(4) 소비동향 및 공급체제 변화를 고려하여 각 시장 실태에 걸맞는 거래규칙 확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계자의 합의 형성을 통해 이의 준수를 도모하고, 산지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다.

또한 산지시장의 적정한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 ① 출하자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관계어협의 조합원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② 도매업자에 대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방법으로 한다.
- ③ 매수인에 대해 재편집비 등을 기회로 자금이 풍부하고 판매력이 있는 자를 유치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한다.

(5) 도매시장법(1971년 법률 제35호)에 준하여 매일 도매 예정수량 및 도매업자의 도매 수량 및 가격을 공표한다. 이 때 정보공개와 신속성·광역성·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수산물유통정보네트워크((사)어업정보서비스센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6) 다양한 거래방법의 도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경매 및 입찰거래 효율화에 추가하여 이후의 사업처리, 정보제공 등의 신속화에 이바지하는 기계화에 노력한다.

또한 거래 공정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운영 및 관계사업자의 경영 합리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무처리에 있어 정보기술 도입에 노력한다.

(7)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도매장에서 동일한 산지의 동일품목이 도매업자별로 분산되어 배치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상품 배열 적정화에 충분히 유의한다.

(8) 수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통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자동하역기·반송시스템, 파레트수송시스템, 자동창고 등의 체계적 이용을 통해 하역노동의 생력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간 상호연대를 꾀한다.

그리고 거래방법의 변화, 소매형태의 변화, 상품형태의 변화, 다운도대(多溫度帶)유통의 진행, 시장의 휴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냉장고, 배송센터 등의 보관·배송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이들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품 특성에 걸맞는 하역, 보관 등에 노력한다.

(9) 수급정보, 기타 식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신·발신기로서 시장관계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관련사업자가 참가한 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한다.

2. 도매업자

- (1) 산지시장의 안정된 집하 확보, 상품구색 확충, 산지 및 소비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요자 요구의 산지에 대한 전달에 의한 상품개발 등 도매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 및 경영체질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합병 또는 경영 위양에 의한 통합대형화 내지는 관계업자간의 제휴관계 강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종업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업무의 생력화·표준화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 (2) 경영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부문, 영업부문 사업의 계획적이고 일체적인 운영을 통해 경영비용 삭감에 노력한다. 이 경우 경영비용 삭감의 성과가 위탁판매수수료율의 절감이라는 형태로 어업자에게도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산지시장의 도매업무는 어협의 판매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수수료가 부과금으로 간주되는 등 다른 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된다. 한편 어협의 판매사업 강화 시점에 선다면 채산성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다른 사업에서 독립된 사업일 것, 판매사업 고유의 결산이 공개되는 등 사업부문별 수지결산이 명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매업자가 어협인 경우에는 판매사업 중 도매시장 부문을 다른 어협경영에서 독립시킨 독립채산제(별도 회계화)로 해서 판매사업 중 도매시장 부문의 수익과 경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도매업자가 충분하게 도매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재의 확보·육성, 신규노동력의 확보 및 교육, 숙련노동력 정착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 측면에서도 책임체제를 확립하는 것에 노력한다.

3. 매수인

- (1) 매수인은 산지시장으로 집하되는 다종다양한 상품을 신속, 확실하게 분화하고 가공처리하여 수요자에게 배송하는 기증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체질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 및 상품 실태를 고려하여 종업원이 고령화하여 후계자가 없는 매수인에 대해 시장재편정비 등의 기회를 통해 경영 위양 및 합병에 의한 통합대형화 내지는 관계업자간의 연대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매수인이 경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단순하게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등의 구매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을 통해 상품의 소분, 사전처리, 배송 등 판매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매수인은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보기기의 활용 등을 통해 경영관리시스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 산지시장재편정비계획책정에 관련된 사항

1. 도도부현의 산지시장재편정비계획책정에 있어 지침

도도부현은 산지시장 재편정비계획(이하 재편정비계획)을 정할 때 본 방침을 참고하여 집하량을 감안하고 수요 및 소비의 양적 질적인 변화, 수송조건의 변화, 정보화의 진전 등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도매시장정비기본계획(도매시장법 제4조1항)을 고려하여 산지시장이 식문화·생활문화를 지지하는 기간적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안정공급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또한 재편정비계획을 책정할 때 어련 등 계통조직과 충분한 협의를 신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계획책정단계에서부터 시정촌, 개설자, 생산자단체, 도매업자, 매수인, 소매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계획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방법을 확립해두도록 한다.

- (1) 지역에 있어 산지시장 및 관련시설의 규모·배치 목표(거래를 실시하지 않는 하역장을 포함)
- (2) 시장통합에 대한 방침
- (3) 산지시장시설의 정비내용(시장수, 시장명, 정비계획기간 등)
- (4) 산지시장의 경영·운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 (5) 산지시장의 담당자 확보·육성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2. 목표연도

재편정비계획은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획책정일로부터 약 5년 뒤에 해당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목표연도에 산지시장유통량의 전망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시장 배치, 각 시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산지시장유통량은 수요량과 집하량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3. 도도부현에 있어 다른 수산관련계획과의 관련

재편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수준에서의 수산기반 정비·이용계획, 자원회복계획, 어협합병계획 등 수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의 전개 방향과 정합적으로 책정한다.

4. 재편정비계획과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과의 관계

재편정비계획 책정에 있어 도도부현의 주관은 수산담당부국으로 하고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수산관련부분이 실질적으로 재편정비계획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편정비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8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 합리화에 대한 수산청의 지원

산지시장의 통합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촉진하고 산지시장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시설정비 및 경영·판매에 관한 연수·경영지도 등에 대해 수산청은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 (1) 도도부현의 산지시장재편정비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2에서 게재하는 수산청의 보조사업 대상으로 우선 채택한다.
- (2) 산지시장통합 추진과 함께 일정한 조직·사업기반을 구비한 어협으로 연계되는 합병을 도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지3에서 열거하는 수산청 보조사업 대상으로 우선 채택한다.
- (3) 산지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매장건물의 신설에 있어 다음을 수산청 보조사업 채택요건으로 한다.
 - ① 도매수량, 가격, 거래방법 등의 공표(일별)
 - ② 신규매수인의 공모
 - ③ 개설자에 의한 다음 사항의 공표
 - ㉠ 매수인 자격의 계약기한
 - ㉡ 매수인의 자격조건
 - ㉢ 매수인의 최저 매수액
 - ㉣ 수수료율
 - ④ 도매시장사업 결산 개시

별지1. 수산물산지시장의 유형별 목표상

시장 분류		대량광역유통권형	지역거점형	특정어종유통형
시장 이미지				
시장의 특징	시장의 특징	소비지시장화도 목표로 하는 시장	당일매매권역형 대량광역유통권형 중계시장 시장통합도 대상	전국시장 및 도매상에 대한 수산물 배분도 목표 브랜드 지향 평균단가 1천엔/kg이상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을 상징
	출하권 규모	전국	복수 시정촌(市町村)~현(縣)	전국
	집하권 규모	현(縣)~지역	시정촌~현	현(縣)~지역
	광역자치체 외 출하율	50% 이상		50% 이상
위상				
위상	식품공급기능	광역(1개 도도부현 이상)	도도부현(都道府縣) 내	광역(1개 도도부현 이상)
	지역밀착도		높음	
	도매시장법 상의 평가	지방도매시장 또는 그 후보	지방도매시장 또는 그 후보	지방도매시장 또는 그 후보
배치·시설에 관한 사항				
배치·시설에 관한 사항	입지	집출하권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연안역뿐만 아니라 교통거점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매장시설	○	○	○
	(저온실)	○	○	◎
	주차시설	◎	◎	○
	소분, 소포장시설	◎	◎	○
	저장·보관시설	○	○	○
	수송·반송시설	◎	○	○
	위생시설	◎	◎	◎
	재자원화시설	◎	◎	◎
	정보·사무처리시설	○	○	○
	관리시설	○	○	○
	가공처리시설	○	○	◎
복리후생시설	○	○	○	
관련사업시설	○	○	○	
부대시설	○	○	○	
거래에 관한 사항				
거래의 투명성 확보		거래 결과 등 공표		
도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수치 등은 기준)				
도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수치 등은 기준)	취급금액	50억 엔 이상	20억 엔 이상	12억 엔 이상
	취급수량	24,000톤 이상	5,000톤 이상	1,000톤 이상
	위탁판매수수료율	3~4%	3~4%	3~4%
	시장담당직원 수	15명 이상	6명 이상	4명 이상
	직원1인당 취급금액	3.3억 엔 이상	3억 엔 이상	3억 엔 이상
	매수인(買受人) 수	80명 이상	50명 이상	26명 이상
	위탁판매수수료수입	180백만 엔	70백만 엔	40백만 엔
	운영능력	관로개발 및 경영의 안정화 도모. 또한 이를 위한 인재 육성		
시장사례	宮古(이와테현) 女川(미야기현) 焼津(시즈오카현) 浜田(시마네현) 枕崎(가고시마현)	根室(홋카이도) 敦賀(후쿠이(현)) 宮津(교토부) 香住(효고현) 沖繩(오키나와현)	佐賀(오오이타현, 전갱이 등) 明石浦(효고현, 문어 등) 和具(미에현, 대하 등) 本渡(쿠마모토현, 돔 등) 勝本(나가사키현, 창오징어 등)	

주 : ○ : 주요시설 ◎ : 특히 주요한 시설